

2006년 하반기
조 사 보 고 서

(2006. 6. 1. ~ 2006. 12. 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제1장 개요

제2장 진실규명 접수 및 처리

제1절 접수 및 처리 현황	7
1. 접수 현황	7
2. 처리 현황	13
제2절 조사개시결정 사건 현황	14

제3장 진실규명 결과 보고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21
○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81
○ 태영호 납북 사건	111
○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139
○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82
○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221
○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244

제4장 기록분석 보고

○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	279
-------------------------	-----

제5장 평가 및 과제

제1절 평가	446
--------------	-----

제2절 과제	448
--------------	-----

부록

I. 위원회 일반 현황	451
--------------------	-----

II. 위원회 활동 현황	455
---------------------	-----

III. 위원회 활동 일지(2005. 12. 1. ~ 2006. 12. 31.)	473
--	-----

표 목 차

<표 1> 진실규명 유형별 접수 현황	7
<표 2> 월별 접수 현황	8
<표 3> 위원회 및 시·도별 접수현황	9
<표 4>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	10
<표 5> 민간인집단희생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10
<표 6> 적대세력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11
<표 7> 인권침해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12
<표 8>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13
<표 9> 조사개시결정 현황	14
<표 10>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455
<표 11>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현황	461
<표 12> 해외순회 간담회 개최 현황	463
<표 13>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과의 정례모임 개최 현황 ...	465
<표 14> 2006년 하반기 자료 수집 현황	466
<표 15> 부서별 수집자료 현황	467
<표 16> 조사관 전문교육 실시 현황	468
<표 17> 실지조사 활동 현황	468
<표 18> 현지조사 설명회 개최 현황	469

제 1 장

개 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1조)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 5. 31. 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 1. 법령시행과 함께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조사의 진행,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불능 결정, 화해를 위한 연구활동 등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기본법 제3조).

진실화해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최초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이며, 위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원회 의결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매년 2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2005. 12. 1. ~ 5. 31.까지의 활동 결과를 담은 2006년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였고, 이번에 2006. 6. 1.~2006. 12. 31.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은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개요, 진실규명 접수와 조사개시결정 현황, 조사활동의 성과물인 개별사건의 진실규명 결과 및 기록분석 보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 2 장

진실규명 신청 및 처리

제1절 접수 및 처리 현황

1. 접수 현황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이후 1년 동안('05. 12. 1. ~ '06. 11. 30.) 위원회와 2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총 10,845건이다.

유형별 접수현황은 항일독립운동 274건(2.5%), 해외동포사 14건(0.1%), 민간인 집단희생 7,908건(73.0%), 적대세력 관련 1,687건(15.6%), 인권침해 612건(5.6%), 기타 350건(3.2%)으로 민간인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¹⁾ 사건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 (<표 1> 참조)

<표 1> 진실규명 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총 계	월평균	하반기 (‘06. 6. ~ ‘06. 11.)		상반기 (‘05. 12. ~ ‘06. 5.)	
			계	월평균	계	월평균
합 계	10,845 (100.0)	903.8	7,046 (65.0)	1,174.3	3,799 (35.1)	633.1
항일독립운동	274 (2.5)	22.8	212	35.3	62	10.3
해 외 동 포 사	14 (0.1)	1.2	11	1.8	3	0.5
민간인집단희생	7,908 (73.0)	659.0	4,902	817.0	3,006	501.0
적대세력 관련	1,687 (15.6)	140.6	1,426	237.7	261	43.5
인 권 침 해	612 (5.6)	51.0	314	52.3	298	49.7
기타(비해당사건 등)	350 (3.2)	29.2	181	30.2	169	28.2

※ '06. 11. 30. 현재, 민원실 접수 기준(조사국 재분류 이전)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06. 11. 30. 신청 접수 마감

1) '적대세력 관련'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가운데 토착좌익, 인민군, 중공군에 의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음(이하 동일).

시기별 접수현황은 하반기(7,046건) 접수가 상반기(3,799건) 접수에 비해 85.3% 증가하였으며, 특히 '06. 10.~11. 2개월 동안에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인 총 5,497건(50.7%)이 접수되었다. (<표 1>과 <표 2> 참조)

<표 2> 월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집단희생	적대세력 관련	인권침해	기 타 (비해당사건 등)
계	10,845 (100.0)	274	14	7,908	1,687	612	350
'05. 12.	379 (3.5)	16	2	170	30	77	84
'06. 1.	706 (6.5)	13		522	48	78	45
'06. 2.	861 (7.9)	10		774	41	18	18
'06. 3.	838 (7.7)	7		665	90	65	11
'06. 4.	587 (5.4)	4		511	27	40	5
'06. 5.	428 (4.0)	12	1	364	25	20	6
'06. 6.	293 (2.7)	4		232	32	17	8
'06. 7.	499 (4.6)	9	7	364	68	10	41
'06. 8.	416 (3.8)	5	1	338	46	17	9
'06. 9.	341 (3.2)	16	1	245	44	22	13
'06. 10.	1,096 (10.1)	27		674	355	32	8
'06. 11.	4,401 (40.6)	151	2	3,049	881	216	102

※ '06. 11. 30. 현재, 민원실 접수 기준(조사국 재분류 이전)

시·도별 접수 현황은 위원회에 직접 접수한 건수가 2,909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2,585건(23.8%), 경남 1,203건(11.1%)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부산 310건(2.9%), 서울 282건(2.6%), 광주 231건(2.1%) 등 광역시의 신청은 저조한 편이었다. (<표 3> 참조)

<표 3> 위원회 및 시·도별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집단희생	적대세력 관련	인권침해	기 타 (비해당사건 등)
계	10,845 (100.0)	274	14	7,908	1,687	612	350
위원회 (민원실)	2,909 (26.8)	111	13	1,859	422	371	133
서울	282 (2.6)	15		181	63	16	7
부산	310 (2.9)	10		237	30	20	13
대구	193 (1.8)	9		144	12	20	8
인천	124 (1.1)	7		77	28	5	7
광주	231 (2.1)	7		146	52	15	11
대전	109 (1.0)	3		59	28	12	7
울산	94 (0.9)	1		83	3	4	3
경기	330 (3.0)	9		212	77	11	21
강원	161 (1.5)	4		52	85	15	5
충북	775 (7.1)	3		647	74	6	45
충남	199 (1.8)	4		66	112	9	7
전북	508 (4.7)	17		297	164	17	13
전남	2,585 (23.8)	21		2,132	375	31	26
경북	533 (4.9)	11	1	434	63	12	12
경남	1,203 (11.1)	37		1,007	98	33	28
제주	292 (2.7)	2		275	1	10	4
해외 (뉴욕)	7 (0.1)	2				5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 사건은 총 288건이며, 국내항일운동이 108건(37.6%)으로 가장 많고, 해외동포사도 14건(4.9%)이 접수되었다.<표 4> 참조

<표 4>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의병	3.1 운동	국내 항일	중국 만주	일본 지역	광복군	학생 운동	문화 운동	해외 동포	기타
건수	288 (100.0)	19 (6.6)	36 (12.5)	108 (37.6)	32 (11.2)	16 (5.6)	5 (1.7)	21 (7.3)	4 (1.4)	14 (4.9)	33 (11.2)

※ '06. 12. 31. 현재, 조사국 재분류 이후 기준(이송 및 취하분 제외)

다음으로, 민간인집단희생 관련 사건은 총 7,747건이며, 세부유형별로는 국민보도연맹 관련 사건이 2,557건(33%), 군·경토벌작전 관련 사건이 2,244건(29%) 등으로 가장 많고, 시기별로는 '50. 6. 25.~12. 31.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5,584건(72%)으로 가장 많았다.<표 5> 참조

<표 5> 민간인집단희생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보도연맹	예비검속	형무소	부역혐의	미군관련	여순사건	군경토벌작전	개별사건	기타
계	7,747 (100.0)	2,557 (33.0)	296 (3.8)	548 (7.1)	332 (4.3)	368 (4.8)	887 (11.4)	2,244 (29.0)	410 (5.3)	105 (1.4)
'45. 8.15. ~'50. 6.24.	1,051 (13.6)	75		30		5	696	144	102	4
'50. 6.25. ~'50.12.31.	5,584 (72)	2,415	300	510	254	154	90	1,558	255	48
'51. 1. 1. ~'51.12.31.	1,064 (13.9)	60		10	76	208	84	539	50	37
'52. 1. 1. ~'52.12.31.	41 (0.5)					3		2	26	10
'53. 1. 1. ~'53.7.27	4									4
'53.7.28.~	3							1		2

또한 적대세력 관련 사건은 총 1,620건이며, 세부유형별로는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이 991건(62.0%)으로 가장 많고, 시기적으로는 '50. 6. 25.~12. 31.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1,186건(73.2%)으로 가장 많다. (<표 6> 참조)

<표 6> 적대세력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인민군	좌익세력	빨치산	기타 (간첩, 공산당원 등)
계	1,620 (100.0)	991 (61.1)	282 (17.4)	142 (8.8)	205 (12.7)
'45. 8.15.~'48. 8.15.	44 (2.7)		39		5
'48. 8.16.~'50. 6.24.	65 (4.0)		54		11
'50. 6.25.~'50.12.31.	1,186 (73.2)	802	142	84	158
'51. 1. 1.~'53. 7.23.	295 (18.2)	189	47	42	17
'53. 7.28.~	30 (1.9)			16	14

※ '06. 12. 31. 현재, 조사국 재분류 이후 기준(이송 및 취하분 제외)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관련 사건은 총 564건이며, 세부유형별로는 간첩혐의 등 확정판결 사건이 134건(23.8%), 강제연행 가혹행위 사건이 131건(23.2%)으로 가장 많고, 시기별로는 '80.~'92. 기간이 316건(56.0%)으로 가장 많으며, 기관별로는 군 관련 사건이 189건(33.5%), 경찰 관련 사건이 135건(23.9%) 등으로 가장 많았다.(<표 7> 참조)

<표 7> 인권침해 관련 세부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유형	계	시기별분류					기관별분류					
		45-60	61-71	72-79	80-92	92년 이후	국정 원	군	경찰	기타		
계	564	65	78	92	316	13	82	189	135	158		
확정판결	소 계	134	20	27	17	68	2	31	31	45	27	
	간첩 혐의	소 계	61	4	13	7	37	0	27	11	21	2
		재일교포관련	20	0	1	3	16	0	4	8	8	0
		친인척관련	12	0	0	0	12	0	10	0	2	0
		납북어부	9	0	6	1	2	0	1	1	7	0
		학생제야정치	9	1	4	0	4	0	8	0	0	1
	기 타	11	3	2	3	3	0	4	2	4	1	
	반국가(이적)단체	13	4	1	1	7	0	2	2	6	3	
	찬양고무	4	0	1	0	3	0	0	0	3	1	
	긴급조치	4	1	0	3	0	0	0	0	2	2	
	포 고 령	7	0	4	0	3	0	0	6	1	0	
	반 공 법	7	0	3	2	2	0	1	0	5	1	
	기 타	38	11	5	4	16	2	1	12	7	18	
강제 연행 가혹 행위	소 계	131	22	19	23	60	7	15	53	37	26	
	간첩혐의	28	4	5	4	12	3	10	6	1	11	
	정치적이유	15	0	5	2	8	0	3	7	3	2	
	기 타	88	18	9	17	40	4	2	40	33	13	
강제해직	49	0	9	3	37	0	5	16	4	24		
노동권	12	0	0	4	8	0	2	5	3	2		
언론자유	4	1	0	1	2	0	2	1	1	0		
재산권	44	2	9	13	20	0	8	4	4	28		
의문사	28	2	5	4	15	2	5	4	15	4		
군의문사	28	8	2	8	10	0	0	28	0	0		
전향공작	32	0	0	0	32	0	0	0	0	32		
의문사조사위	40	2	0	2	36	0	5	18	12	5		
다른유형의 사건	19	1	2	7	9	0	1	6	2	10		

2. 처리 현황

2006. 12. 31. 현재, 신청 접수된 총 10,845건 가운데 조사개시(또는 각하)가 결정된 사건은 2,829건(26.1%)이며, 검토 중인 사건은 7,709건(71.0%)이다. 그리고 타 기관 이송 및 취하는 300건(2.8%)이다.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총 7건이며, 그 중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5건이고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은 2건이다. (<표 8> 참조)

<표 8>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

	계	진실규명(불능)결정			조사개시(각하)결정			검토중	타기관 이송 및 취하
		소계	진실 규명	진실 규명 불능	소계	조사 개시	각하		
계	10,845 (100.0)	7 (0.1)	5	2	2,829 (26.1)	2,575 (23.7)	254 (2.4)	7,709 (71.0)	300 (2.8)
항일독립운동	276 (2.5)	2		2	45	13	32	227	2
해외동포사	14 (0.1)				2	1	1	12	
민간인집단희생	7,978 (73.6)				2,507	2,507		5,240	231
적대세력 관련	1,622 (15.0)				38	38		1,582	2
인 권 침 해	588 (5.4)	5	5		72	16	56	487	24
기 타 (비해당사건 등)	367 (3.4)				165		165	161	41

제2절 조사개시결정 사건 현황

2006. 12. 31. 현재까지 총 2,582건(사건수 56건)이 조사개시 결정²⁾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진실규명 유형별로는 항일독립운동 사건 15건(사건수 15건), 해외동포사 사건 1건(사건수 1건),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2,507건(사건수 18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건(사건수 5건), 인권침해 사건 21건(사건수 17건) 등이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직권조사는 총 2건으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신청건수 796건)과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신청건수 201건)이다.

<표 9> 조사개시결정 현황

(단위 : 건)

사건 유형	사 건 명	결정일자	사건수	신청건수	
				결정	소계
계			56(7)	2,582(7)	
항일 독립 운동	소 계		15(2)	15(2)	
	○ 김에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불능)	'06. 4. 25.		1	1
	○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불능)	'06. 4. 25.		1	1
	○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	'06. 6. 13.		1	1
	○ 이성지의 항일독립운동 규명	'06. 8. 8.		1	1
	○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규명	'06. 8. 8.		1	1
	○ 정상윤의 신간회활동 등 항일운동 규명	'06. 8. 22.		1	1
	○ 이윤희의 항일독립운동 규명	'06. 9. 19.		1	1
	○ 박창래의 독립운동 규명	'06. 9. 19.		1	1
	○ 지복동의 행방불명 후 사망한 사건	'06. 10. 30.		1	1
	○ 이태호의 군북면 장날 만세운동 규명	'06. 11. 7.		1	1

2) 진실규명결정(5건) 및 진실규명불능결정(2건) 포함

	○ 흑룡강성 항일열사 214명 진실규명	'06. 11. 7.		1	1
	○ 길림성 183명의 항일행적 진실규명	'06. 11. 7.		1	1
	○ 장동엽의 남원 3·1독립운동 규명	'06. 11. 7.		1	1
	○ 신희종의 항일운동과 명예회복	'06. 12. 5.		1	1
	○ 옥치상의 대구사범학교 사회과학연구회 활동규명	'06. 12. 19.		1	1
해외	소 계		1	1	
동포사	○ 반탁운동가 19인의 소련유형 진실규명	'06. 4. 25.		1	1
	소 계		18	2,507	
민간인 집단 희생	○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사건)	'06. 4. 25.		43	
		'06. 9. 29.		9	244
		'06. 10. 24.		192	
	○ 고양·과주지역민간인희생사건	'06. 4. 25.		42	
		'06. 5. 30.		11	53
	○ 단양곡계굴미군폭격사건	'06. 4. 25.		5	
		'06. 7. 25.		9	14
	○ 경산코발트광산사건	'06. 4. 25.		112	
		'06. 9. 29.		9	121
	○ 문경석달사건	'06. 4. 25.		11	
		'06. 9. 29.		4	15
	○ 함평11사단사건	'06. 4. 25.		152	
		'06. 5. 30.		15	213
○ 청원·진천지역보도연맹사건	'06. 7. 25.		46		
	'06. 5. 30.		125		
○ 산청시천·삼장민간인희생사건	'06. 9. 29.		24	149	
	'06. 5. 30.		19		
○ 청도보도연맹사건	'06. 9. 29.		8	27	
	'06. 5. 30.		17	17	
○ 익산역미군폭격사건	'06. 5. 30.		7	38	

	○ 나주동박골재사건	'06. 5. 30.		27	27
	○ 청원분터골보도연맹사건	'06. 7. 25. '06. 9. 29.		21 32	53
	○ 나주동창교민간인집단희생사건	'06. 7. 25.		2	2
	○ 강화지역민간인희생사건	'06. 5. 30. '06. 10. 24.		32 3	35
	○ 여순사건(구례군봉성산여순사건 병합)	'06. 7. 25. '06. 9. 29. '06. 10. 31.		9 3 288	300
	○ 국민보도연맹사건(직권)	'06. 10. 10.		796	796
	○ 전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직권)	'06. 11. 7.		201	201
	○ 미군관련희생사건	'06. 12. 19.		202	202
	소 계		5	38	
적대 세력 관련	○ 가평민간인희생사건	'06. 4. 25.		2	2
	○ 남양주민간인희생사건	'06. 4. 25.		1	1
	○ 포천민간인희생사건	'06. 4. 25.		2	2
	○ 강릉민간인희생사건	'06. 6. 13.		10	10
	○ 양평민간인희생사건	'06. 4. 25.		11	23
		'06. 5. 31.		3	
'06. 9. 29.			9		
	소 계		17(5)	21(5)	
인권 침해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규명)	'06. 4. 25.		1	1
	○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규명)	'06. 4. 25.		1	1
	○ 김익환일가 고문·가혹행위사건(규명)	'06. 7. 4.		1	1

○ 신귀영일가 간첩 의혹사건	'06. 5. 26.		4	4
○ YH노조 신민당사 농성사건	'06. 7. 4.		1	1
○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06. 7. 4.		1	1
○ 80년 사북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06. 7. 11.		1	2
	'06. 9. 19.		1	
○ 재일교포복송저지공작사건	'06. 9. 5.		1	1
○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사건(규명)	'06. 9. 5.		1	1
○ 진보당 조봉암 사건	'06. 10. 10.		1	1
○ 태영호 납북사건(규명)	'06. 10. 10.		1	1
○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사건	'06. 10. 24.		1	1
○ 아람회사건	'06. 11. 28.		1	1
○ 부일장학회 헌납 의혹사건	'06. 12. 5.		1	1
○ 정준도 의문사 사건	'06. 12. 19.		1	1
○ 석달윤 간첩조작 의혹사건	'06. 12. 19.		1	1

※ **굵은 고딕체**는 '06. 12. 31.까지 진실규명(불능) 결정된 사건이며, ()는 진실규명(불능) 결정된 사건수 및 신청건수

※ **굵은 명조체**는 '06. 12. 31.까지 직권에 의해 조사개시 결정된 사건임

제 3 장

진실규명 결과 보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결정사안】

조용수가 1961. 2. 13.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중립화통일 등 진보적 논지를 중점 보도하자, 5. 16 직후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1961. 10. 31.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5·16 주도세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설치법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근대 입헌국가에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위 특별법이 제정 이전 행위에 대해 3년 6월까지 소급적용(溯及適用)토록 한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혁명재판소의 2심제 재판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2.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처벌법규가 부존재(不存在)한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가 체포·연행하여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 불법감금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再審事由)에 해당한다.
3. 혁명재판소는 위 특별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違憲提請)하지 아니한 채 소

급적용한 위법이 있고,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위 특별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유죄(有罪)판결을 하였고, 민족일보의 논지가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통일방안과 그 내용과 지향점이 달랐음에도 민족일보의 사설 등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왜곡을 한 중대한 위법(違法)이 있다. 또 이영근이 간첩혐의자라거나 이영근으로부터 민족일보 창간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간부의 지위에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판결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민족일보의 사설 등을 게재한 것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민족일보의 사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다.
5.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당시 5.16 주도세력이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쿠데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불법(不法)으로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던 대표적인 신문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6. 민족일보 논지만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생명권을 박탈한 것은 문명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에 해당한다.
7. 따라서 국가는 법률제정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위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499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신청인】 조용준

【결정일】 2006. 11. 28.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의 개요

조용수는 6·25 전쟁 당시 도입하여 재일(在日)거류민단 간부로 활동하다 4·19 직후 귀국, 혁신정당¹⁾인 ‘사회대중당’ 후보로 민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 1961. 2. 13.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당시 혁신계 인물들이 주장하던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 진보적 논지를 중점 보도하였다. 그런데 5. 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 5. 18. 조용수가 연행 된 후 구금상태에서 간첩 혐의자 이영근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민족일보는 폐간 조치되었다.

같은 해 7. 12.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7. 23.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1) “혁신”이라는 용어는 조봉암이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진보당을 혁신정당이라고 일컫은 데서 연유한 것으로, 당시 정치계나 언론 등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등 진보적 정치그룹을 기존 정당과 구별하여 혁신정당 또는 혁신계로 통칭하였음

혁명재판소에 기소하였고, 혁명재판소 심판부(1심)는 조용수에게 소급입법으로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²⁾ 제6조를 적용하여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로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여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28. 사형 선고를 하였고, 상소심판부(2심)는 같은 해 10. 31. “사회단체 간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정당의 주요간부”였으므로 위 특별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형선고를 확정하여, 3심의 기회를 박탈당할 채 결국 조용수는 32세의 나이에 1961. 12. 21.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 집행당하였다.<별표 1> 참조)

당시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인협회 등 국내외 언론인들에 의해 구명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5·16 주도세력이 조용수를 희생양으로 처단하였다는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청인 조용준(조용수의 동생)은 2006. 1.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신청(사건번호 : 마-499)하였다.

II. 의혹 사항

1. 민족일보에 대한 탄압 여부

민족일보가 창간 전 한국일보에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발간취지를 표명하고³⁾

- 2) 5·16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1961. 6. 22.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 동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情)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전민족의 비원인 이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일보가 가장 열렬히 정력을 바치려는 대상이

창간 후 남북협상을 통한 민족자주통일방안에 대한 과감한 논설과 보도를 게재하자 독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짧은 시간 내에 발행부수가 35,000부에 이르러 국내 유력 일간지에 접근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자, 반공을 혁명공약 제1호로 내세운 5·16 주도세력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적용하여 ‘중립화통일방안’ 등의 사설, 기사 등을 문제 삼아 민족일보를 탄압,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고 하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주요간부였는지 여부

당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서 민족일보사를 설립,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인정하여 사형 판결을 확정하였으나, 조용수에게 적용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정당내지 사회단체의 주요간부가 범죄행위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처벌하는 진정신분범⁴⁾을 규정하는 조항이었으므로 조용수가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간부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조용수가 1960. 7. 29. 민의원 선거 시 사회대중당의 공천으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 후 사회대중당은 분열되었고, 공천 당시는 물론 1961. 2. 민족일보를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에도 조용수는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대중당의 간부로 조작하여 처벌하였다는 의혹⁵⁾이 있어 왔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 간에 유혈의 전쟁을 고취하고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가장 준엄한 비판자가 될 것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민족적 애국자에 대하여는 가장 정열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 4)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범죄
- 5) 당시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반국가단체 고무·동조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반공법은 1961.7.3. 제정되었으나 과거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조용수가 정당의 주요간부가 아니라면 신문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조용수는 비신분자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님

3. 이영근이 간첩이었는지 여부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는 조용수가 일본에 도피한 간첩협이자 이영근이 조소수를 통해 송금한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설립하였다고 내세웠으나 이영근은 당시 일본에서 민단을 대변하는 통일일보를 운영하는 등(59~90년) 간첩활동이나 북한의 목적사항 실천과 관련이 없었고, 1990. 5. 24.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지 통일일보를 창간, 대 조총련 투쟁과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것은 이영근이 간첩협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가 민족일보에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것 또한 조작이라는 의혹이 있어 왔다.

4. 민족일보의 북한 고무·동조 여부

민족일보가 게재한 중립화통일, 평화통일, 남북교류, 남북학생회담 제의 등은 당시 진보적 정치인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과는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민족일보의 게재내용이 위 북한의 주장이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고무·동조한 것으로 왜곡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Ⅲ.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전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범위 중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중대한 인권침해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등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본법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건 발생 이후 조용수가 재판을 통해 생명권이 박탈된 사건이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한다. 또 조용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구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새로이 발견된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간부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문서는 동법 제420조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기본법상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하여야 할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피해자 조용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통합을 위한 필요한 상응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 4. 25.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 조사

이 사건 자료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자료조사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 국가기록원 보유자료 : 13건, 625쪽

민족일보 사건 공소장 및 판결, 이와 관련된 이영근의 판결문 및 각종 보고서, 상소이유서 등 소송기록 일부, 기타 참고자료 등 13건, 625쪽을 입수,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보유자료 : 문서 69건, 3,725쪽, 녹화테이프 1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8건, 법무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등의 자료 10건, 국회도서관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 69건, 3,725쪽, 녹화테이프 1개를 입수, 분석

- 일반 공개자료 : 32권, 22,000쪽

한국군사혁명사, 한국혁명재판사, 다른 피고인 이상두, 송지영, 양수정 등이 저술한 회고록 및 5·16을 주도했던 이석제의 회고록 등 공개기록 일반자료 32권 22,000쪽

- 동아일보, 한국일보, 민국일보 등 중앙 일간지의 보도기사

2. 참고인 등 진술청취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진술청취 조사를 한 참고인 명단과 조사일자 등은 <별표 3>과 같다.

3. 자료 및 진술내용 확인, 분석

○ 공소장 및 1심과 2심 판결문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의해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 및 판결내용, 판결에 인용된 증거자료를 파악하였다. 공소장과 판결문 외에 조용수의 진술내용이나 검찰관, 변호인의 주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사 및 재판기록을 찾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검찰청, 국가기록원, 경찰청, 법원, 국정원,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등 어느 기관에도 위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간부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며, 또한 민족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한 평가에 중점이 있었으므로 진실규명에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이영근이 간첩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으나 이영근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여 조사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자료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사회당의 정당등록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입수하여 당시 정당들의 주요간부 명단을 확인하였다.

○ 법무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소장 자료

당시 혁명검찰부에서 검찰관, 수사관으로 복무한 검사, 장교들의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파악하여 조사대상 참고인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제정 및 관련자 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였다.

○ 공개자료

민족일보 관련자 이상두, 송지영, 양수정 등이 생전에 저술한 회고록을 통해 본건 관련 수사 및 재판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한국군사혁명

사』, 『한국혁명재판사』, 혁명을 주도했던 이석제의 회고록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등을 통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확인하였다.

○ 언론보도

이 사건 발생 전 후 시기에 발행된 동아일보, 한국일보, 민국일보 등 중앙 일간지의 보도기사들을 입수·분석, 사건의 발생경위, 수사 및 재판 당시의 상황과 실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별표 4> 참조)

○ 진술청취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를 통해 사건의 배경, 수사경위, 전반적인 의혹사항을 확인하였다.

V. 조사 결과

1. 시대적 배경

가. 혁신세력의 부상

1960년에 발생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후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던 바, 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6. 15. 내각제개헌안이, 같은달 22일 선거법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였고, 다음달 29일 민의원과 참의원 동시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전후하여 여러 혁신정당이 창당되면서 233개 민의원 선거구 가운데서 사회대중당은 121개, 한국사회당은 18개, 혁신동지총연맹은 13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보냈다. 그러나 투표 결과 233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175명이 당선된 데 비해, 혁신계에서는 민의원 5명에 참의원 2명

등 모두 7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치는 열세를 면치 못하였고, 당시 조용수는 사회대중당의 공천을 받아 경북청송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나. 통일 논의의 활성화

1960년 7·29선거에서 혁신정당들은 평화통일론을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켰고, 민주당도 평화통일 추구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 시기에는 해외동포 김삼규, 김용중 등이 주장하는 중립화통일론이 국내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해 8. 15. 북한에서도 '남북연방제안'을 제의하는 등 통일 논의가 본격적인 정치문제로 등장하였다.

1960. 9. 3.에는 7·29선거에서 참패한 혁신정당·사회단체들이 모여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 준비위원회를 발기하고, 9. 30. 민자통을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에 입각한 통일방안을 발표하였고,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한 국회부의장 서민호 등이 통일방안의 획기적 발상전환을 역설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 통일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통일 논의는 대학가에서도 제기되었던 바, 서울대학교에서는 1960. 11. 1. 서울대학교민족통일연맹(민통련) 발기인 대회가 열려 통일에 매진한다는 선서를 채택하였고, 경희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민통련 또는 민족통일연구회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4월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대거 통일운동에 나섰다. 1961. 5. 3. 서울대 민통련은 대의원 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고, 5. 5.에는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이런 활동에 대해 '용공분자'라고 하면서 긴장하였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반면, 혁신정당들과 민자통 등에서는 일제히 적극 지지를 표명하였고, 1961. 5. 13.에는 민자통

의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를 개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이와 같이 정치계, 재야단체,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통일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번져가던 시기였다.

다. 민족일보의 창간

1960년 7·29 선거 후 혁신계 정치인들은 2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하였던 바, 첫째는 혁신계 정치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둘째는 혁신계를 대변할 신문을 창간하는 것이었다.⁶⁾ 민족일보의 탄생은 그러한 활동의 산물이었다.

민족일보 설립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조용수는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고, 최근우(한국사회당 당수), 서상일·윤길중(통일사회당), 고정훈(혁신당 당수), 이종률(민족민주청년연맹 고문) 등이 취체역(이사)으로 참여하여 서울 정동에 있는 월간지 희망사의 건물과 시설을 인수, 사옥을 마련하고, 1961. 2. 13. 그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민족일보는 창간하자마자 통일 문제, 한미경제협정 문제, 반공법 문제 등 당시 한국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한 문제와 관련한 논설과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고, 세간에 큰 인기를 얻었다. 민족일보는 당시 매일 3만 5,000부 가량 발행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주요 신문이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는

6) 본건 1심 판결문에는 민족일보 창간과정에 대하여 “……공소 외 이영근(48세)과 수시 접촉하여 당시 국내정계의 혼란 무질서를 틈다 축출(簇出)한 혁신계 각 정당을 통합함과 동시에 그 혁신계 대변지를 발행할 것을 협의하고……(중략)……동년 10월 중순경부터 동년 11월 3일경까지 간에 수차에 궁(互)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소재 희다방, 양지다방, 우일다방, 기타 옥호불상 요리점 등에서 국내 혁신계정당의 지도자격인 윤길중, 서상일, 이동화, 최근우 등과 접촉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협상, 남북교역을 추진키 위하여 분열된 국내혁신계의 단합과 혁신계대변지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중략)……서기 1961년 1월 하순경까지 간에 전시 희다방, 양지다방, 아서원 등에서 공소 외 서상일, 윤길중, 고정훈, 최근우, 안신규, 이동화 등과 합동하여 서상(敍上)한 혁신계의 단합과 아울러 동 단합된 혁신계 대변지로서 일간신문사 민족일보사를 창설키로 합의를 보고……”라고 판시

미치지 못했지만 짧은 시기에 비하면 단숨에 많은 독자를 확보한 것이었다.

민족일보의 창간은 미국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신문 창간 사흘 후인 1961. 2. 16. 주한 미국대사관은 본국 국무부에 개혁세력의 신문이 만들어졌다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⁷⁾

2. 5·16 군사정변과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5. 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서울과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장악한 군부는 기본정책으로 혁명공약 6장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금융 동결, 공항 및 항구 봉쇄, 의회 해산, 전 각료 체포령을 내렸으며,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 입법·사법·행정권 등 일체의 정권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의장(장도영 중장)과 혁명 5인위원회(박정희 소장, 채명신 준장, 윤태일 준장, 송찬호 준장, 김동하 예비역소장)를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 문화, 정보, 행정의 각 분과별 부서로 구성되었다.

1961. 5. 19.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⁸⁾로 개칭, 구성 당시 의장에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박정희 소장을 선출하였고, 같은 달 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각 부문별 통치조직으로 행정, 내무, 외무국방, 재무, 법무, 문교, 건설, 농림, 상공, 보사, 교통, 체신, 공보, 공안 등 14개 분과를 두었고, 각 분과위원으로는 현역 군인을 임명하였다.

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

1961. 6. 6.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장악하면서 동법 제24조 헌법과의 관계에서 비상조치

7) 「주한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1961. 2. 16.)」, Central Decimal Files 795B.00, RG59, National Archive at College Park, Maryland, U.S.A.

8) 국가재건최고회의 발간 『한국군사혁명사』(1962),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발간 『한국혁명재판사』(1962) 등 공공기록 종합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비상조치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스스로 국가기능상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동법 제9조에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3조를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각수반 임명권과 내각임명에 대한 사전승인 및 해임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행정 각부로 하여금 중요 정책 수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모든 조직을 통제하였고, 동법 제17조를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에 관한 행정권을 지시, 통제하였으며, 동법 제18조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였고, 법원행정처장 및 일반법관 임명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법권을 장악하였다.

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를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하여금 5·16 이전 또는 그 이후의 반국가행위, 반민족적 부정행위자 또는 반혁명행위자 등을 수사심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 6. 21.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을 제정하여 혁명재판소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및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을 심판하도록 하고, 그 부칙에 동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같은 달 22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에서 3년 6월 소급규정을 두었다.

다.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의 설치

1961. 7. 12.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를 설치하고,9)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

별법」 및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와 심판을 담당하게 하였다.¹⁰⁾

혁명재판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판부 5부와 상소심판부 2부를 두어 2심제로 하였던 바, 심판부는 재판장 1명, 법무사 1명, 심판관 3명 등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재판장은 현역 군인 중에서, 심판관은 군법무관과 법관, 변호사 중에서 혁명재판소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상소심판부는 재판장 1명, 법무사 1명, 심판관 5명 등 7명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재판장은 현역군인 중에서, 법무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심판관은 법관 2명과 국군현역장교 및 변호사 중에서 각 1명씩 혁명재판소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혁명검찰부는 혁명검찰부장 1명을 두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혁명검찰부에 두는 30명 이내의 검찰관은 혁명검찰부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라. 소결

이와 같이 5·16 주도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의해 다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권을 부여(법 제9조)하였다. 이 비상조치법 제24조는 헌법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16 주도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9) 국가재건최고회의 발간, 『한국군사혁명사(1962)』 중 관련 내용

10)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특별법,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제1항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는 “전 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동법이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을 제정한 것은 근대 입헌민주국가에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¹¹⁾

또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3년 6월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혁명재판소에서 2심제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¹²⁾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1962. 12. 26. 제정된 헌법이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해 “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군사정변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¹³⁾ 더구나 입헌민주주의 및 적법절차에 위반된 법률이 소급

11) 당시 헌법 제31조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규정

12) 당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민족일보 관련자에 대한 수사과정의 위법성 여부

가. 불법수사 여부

1) 연행·구금과정

5·16 군사정변 이틀 후인 1961. 5. 18. 전격적으로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은 민족일보 사옥에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고, 연행 후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곧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¹⁴⁾

이와 관련하여 1961. 5. 27. 제9차 국가재건최고회의 의회에서 ‘구속된 자 처리의 건’이란 안건으로 ‘구속된 자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군·경·검의 합동으로 용공 여부를 조사하여 A(주동), B(행동), C(희박)급으로 분류하여 C급은 석방조치토록 금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고, 1963. 8. 30.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군사혁명사 제1편 상권(830~831쪽)에서 ‘용공수사 강화’라는 항목에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라는 제목으로 ‘용공분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사정변 직후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맹렬한 수사 활동으로 용공불순분자 처리에 다대한 공적을’ 남겼으며, ‘용공분자 처리에 있어서 그들 죄과의 경중에 따라 A·B·C·D·E급으로 나누어 분류처리하면서 A급은 혁명검찰부에 송치하였고, B급은 군법회의 검찰부에, C급은 민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D급은 중앙심사결과 처리 석방되었고, E급은 지방 심사

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14) 이상두회고록, 『자물쇠 공화국, 옥창 너머 푸른 하늘이』(범우사, 1972. 10. 10)

결과 석방분류 처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연행되었던 민족일보 상무 정규근은 사복을 입은 수사관이 정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으나 정보부가 어느 기관인지 잘 몰랐다고 진술(2006. 5. 24. 조사)하였고, 민족일보 논설위원 이상두는 회고록에서 권총을 휴대한 사복 차림의 특무기관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⁵⁾ 당시에는 아직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지 않았을 때이다.¹⁶⁾ 정규근은 연행 후 바로 수감되었던 중부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후 혁명검찰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2006. 5. 24. 조사)하였고, 이상두는 회고록에서 중부경찰서 수감중 치안국 분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후 다시 혁명검찰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¹⁷⁾

이상을 종합하면, 민족일보 관련자들은 5·16 주도세력이 설치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연행·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후 A급으로 분류되어 혁명검찰부에 송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일보 관련자들은 1961. 5. 18. 연행된 후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혁명검찰부가 설치되고 나서 그곳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구금일로부터 66일 만인 1961. 7. 23.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다.

혁명명검찰부에 송치된 후, 혁명검찰부 검찰관 윤OO은 당시 민족일보 관련자들의 경우 부장검찰관인 오OO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2006. 7. 14. 조사)하였고, 위 정규근은 김OO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2006. 5. 24. 조사)하였으며, 위 이상두는 회고록에서 오OO 검찰관(육군중령, 군법무관)과 김OO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⁸⁾ 양실근은 민족일보 임원들은 김OO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은 최대현이라고 기억되는 군인(대위 또

15) 위 이상두회고록

16) 「중앙정보부법」은 1961. 6. 10. 제정, 공포되었음

17) 위 이상두회고록

18) 위 이상두회고록

는 소령)에게 조사를 받다가(혁명검찰부 명단에는 최대현이라는 이름은 없고, 혁명검찰부 명단에는 검찰관으로 최OO 대위가 있으나, 최OO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음¹⁹⁾) 마지막으로 검찰관 오OO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2006. 9. 27. 조사)하였다. 혁명검찰부에서는 검찰관 OOO과 OOO 검사가 주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결

당시 조용수 등에게 소급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1961. 6. 22. 제정되기 이전인 상황에서 체포·구금되었고, 당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수사기관 10일, 검찰 10일이며, 검찰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²⁰⁾ 1961. 5. 18. 체포·구금된 때로부터 66일간 구금되었다가 7. 23. 기소되었다.²¹⁾

1961. 5. 17. 발령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는 계엄지역 내에서 필요한 경우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없이 집행할 수 있고 군사재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금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1961. 5. 16. 선포된 비상계엄은 5. 27. 12:00 해제되고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은 부칙에서 이미 수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동법에 의해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이

19) 주민등록이 전산화된 1989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이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함

20) 당시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1) 1961. 8. 28. 선고한 1심판결은 민족일보 관련자 이상두 등에게 구금일수 100일 또는 70일을 기본형에 산입하였음

위헌인데다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사는 적법절차상 위반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당시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30일을 위반한 구금기간은 불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구금은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나²²⁾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나. 민족일보에 대한 탄압 여부

1) 수사착수 배경

당시 육군중령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석제는 회고록²³⁾에서, 5·16 직후 자신이 육군본부 상황실에서 상황을 점검하던 중 미국이 혁명지도자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예비역중령의 배경을 뒷조사하고²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에 '미국의 사상공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혁명군이 강력한 반공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만큼 미국 측에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줘야만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도연맹원'²⁵⁾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게 보여주고자 결심하였고, 그 결과 '전국 각지의 군과 경찰, 헌병대에 비상을 걸어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으며, '나중에는 보도연맹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혁신정당 관련자, 좌파이데올로기에 물든 지식인, 사회단체 지도자, 노조 지도자 등 4,000여 명에 이르는 사회 불만세력

22) 당시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3) 이석제회고록,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121~128쪽 (서적포, 1995. 5. 18)

24) 프레시안 2001. 11. 15.자 「발굴-현대사의 뒷 모습 <1> 박정희의 전력」 참조, 프레시안은 National Archive at College Park, Maryland, U.S.A. 소장 문서 번역본을 싣고 있음

25) 보도연맹원은 한국전쟁 때 희생되었고 그 이후 만들어진 적이 없으므로 전쟁이 나면 구금을 할 대상자 명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과 좌익 활동 경력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체포, 수감했다고 적고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 21. 민주당정권하에서 자유당정권 시기의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을 맡았던 검찰관 17명 및 부장판사 1명을 예산낭비 및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뢰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고, 조흥만 치안국장은 5. 22. 용공분자 등 2,014명을 검거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는데(1961. 5. 23. 동아일보 기사), 이 중 교원노조 간부들이 약 1,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²⁶⁾ 치안국장은 같은 날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1961. 5. 23. 한국일보 기사).

이와 관련하여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이 연행된 1961. 5. 18. 주한 미국대사관은 “쿠데타 세력이 당시 한국 정보기관들이 갖고 있던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적으로 체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전문을 본국에 송부하였다.²⁷⁾

1961. 10. 25.부터 진행될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재판을 앞두고 9. 26. 주한 미국대사관은 본국 국무부에 1심 재판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면서 민족일보는 그 명성 때문에 군사정권에 의해 혁명재판의 첫 좌익사건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²⁸⁾

5·16 당시에는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고, 그 후 6. 22.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선거에 관련된 살인, 상해, 방화, 손괴 등)는 민주당 정권 하의 7·29 국회의원 선거, 제6조는 혁신계열, 제7조(단체적 폭력행위)는 정치깡패 등 조직폭력배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동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고무, 동조하는 자들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26)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362쪽, (도서출판 푸른나무, 1989)

27) 「주한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 (1961. 5. 18.), Central Decimal Files 795B.00, RG59, National Archive at College Park, Maryland, U.S.A.

28) 「주한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 (1961. 9. 26.), Central Decimal Files 795B.00, RG59, National Archive at College Park, Maryland, U.S.A.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위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2) 소결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먼저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다음 그들에게 적용될 소급입법을 만들어 기소와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과정을 밟았다. 조용수에 대하여는 사장의 지위에서 게재한 민족일보의 논설 등을 정당의 주요간부 지위에서 게재한 것이며 그 내용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왜곡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확인²⁹⁾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형 없이 사형을 집행하여 생명권을 박탈하였다.

당시 대외적으로 5·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³⁰⁾ 대내적으로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군사정변의 제1호로 '반공'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으로부터 핵심 주체세력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자 대외적으로 반공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혁명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9)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은 1961. 8. 24. 법 개정을 통해 형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제9조의 2(형의 집행) ① 혁명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은 미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전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죄상이 경미한 자 3. 개전의 정이 농후하고 재과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즉 확정된 형의 집행단계에서까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가 확인하는 규정

30) 5·16 주도세력들의 이른 바 '혁명공약' 제1항이 반공태세 확립이었음. 2항은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미국 등 자유우방과의 유대, 3항은 '부패와 구악일소', 4항은 민생고 해결과 국가자주경제 재건, 5항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6항 정권이양과 복귀(군인), 최선의 노력을 경주(민간) 등이었음. 1, 2항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며, 3항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었음

4. 혁명재판소 판결의 위법성 여부

가. 재판 결과

1961. 7. 23. 기소(검찰관 오재욱)된 후, 1심 심판부에서 같은 달 29. 첫 공판이 열렸고, 다음 달인 8. 28.에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정당, 사회단체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조용수 등 3명에 대하여 사형, 이상두 등에게는 범행방조 혐의로 15년 형에서 5년형까지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심판부 제2부(재판장 : 김홍규 육군대령, 법무사 : 김봉한 육군대령 심판관 강현태 육군대위, 이회창 판사, 차영조 변호사)가 민족일보 관련자들에게 내린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민족일보 관련자들의 혐의내용은 <별표 5>와 같음).

사 형 :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징역 15년 : 이상두

징역 10년 : 양수정, 이진호

징역 5년 : 정규근, 양실근

무 죄 : 이종률, 전승택, 김영달, 조규진, 장윤근

심판부가 판시한 조용수에 대한 사형판결의 요지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중인 상태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이영근이 조소수를 통하여 송금한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설립하여 동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북괴뢰집단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북괴뢰집단의 주장내용에 상응한 한국의 중립화와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 경제, 서신, 문화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적극 찬동,

추진한다는 지(旨)로 사설, 논설, 기사 등을 게재, 발간케 하여 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이북 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1심 심판부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조용수 등이 상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요지는 '민족일보사는 상사(商社)로서 특별법에 규정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므로 조용수는 사회단체의 주요간부가 될 수 없어 원심판결은 관할위반이며, 이영근은 간첩이 아니고 이영근에게서 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민족일보의 기사내용은 이북괴뢰집단을 고무·동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1961. 10. 25. 재판장 육군대령 전우영 주재하에 상소심판부 1회 재판 후 같은달 31일 선고공판에서 조용수 등 6명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이건호 등 4명에 대하여는 원심파기가 선고됨으로써 조용수의 사형이 확정되었다.³¹⁾ 상소심판부 제1부(재판장 : 전우영 육군대령, 법무사 : 문석해 육군중령, 심판관 : 선우주 공군대령, 정기순 공군중령, 이준웅 판사, 양희경 판사, 계철순 변호사) 선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³²⁾

상소기각 :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정규근, 양실근, 조규진

원심파기 징역 10년 : 이상두, 이종률

원심파기 징역 5년 : 양수정, 이건호

조용수에 대한 상소심판부 판결 요지는 '원심에서 민족일보사가 특별법 제6조의 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의율착오이나, 조용수는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서 본건 범행의 수단으로 민족일보사를 설립, 판사의 범죄를 수행하였으므로 정당의 주요간부 지위에 있는 자로 원판결과 동일 법조로 처단될 것이

31)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서 혁명재판소 심판부와 상소심판부만을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소심판부의 재판을 형사재판의 상고심으로 한정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고 사형이 확정됨

32) 양실근은 2006. 9. 27. 조사에서 2심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결과는 나중에 통지를 받아 알았다고 진술하고 이상두는 위 회고록에서 2심 재판결과를 면회 온 사람을 통해 들었다고 기록

므로 의율착오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으며, 이영근이 간첩이 아니라는 점 등은 조용수의 범죄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조용수 등에 대해 사형판결이 내려지자 국제펜클럽과 국제신문인협회(IPI) 등 으로부터 항의문이 당도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석방운동이 벌어졌다. 그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송지영, 안신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으나, 여기서 조용수는 제외되었고, 1961. 12. 21.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나.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주요간부였는지 여부

당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서 민족일보사를 설립,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인정하여 사형 판결을 확정하였으나, 조용수에게 적용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정당 내지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일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진정신분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가 아니라면 그 요건이 결여되어 사형 선고는 중대한 위법이 있게 된다.

1) 사회대중당의 창당과 분열

조용수는 1960년 7·29 선거시 사회대중당(1960. 5. 13. 결성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하 창당준위)의 공천을 받아 민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7·29 선거 이후 사회대중당 창당준위는 해체되었고, 4개 정당이 차례로 창당되었다. 즉, 7·29. 선거시 사회대중당은 창당준위 상태였으나, 선거 직후 내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4개 정당이 창당되었다.

1960. 11. 24. 김달호계의 사회대중당 창당(1960. 11. 18. 정당등록)

1960. 11. 27. 사회당 창당(1960. 12. 14. 정당등록)

1961. 1. 8. 혁신당 준비위원회 결성(정당등록일 미확인)

1961. 1. 21. 통일사회당 준비위원회 결성(1961. 4. 3. 정당등록)

민족일보는 사회대중당 준비위가 해체된 후인 1961. 2. 13.에 창간되었으므로, 혁명재판부가 인정한 사회대중당은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이고, 이 정당은 조용수가 민의원 후보로 출마한 7·29 선거 당시의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와는 전혀 다른 정당이다. 따라서 조용수가 민족일보 운영 당시에 있었던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인지 여부가 주요쟁점이다.

2)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의 간부 여부

1960. 5. 13. 사회대중당 창당준위 당시 「정당에관한규칙(군정법률55호)」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자료가 남아 있지 않지만,³³⁾ 당시 언론보도 기사에는 사회대중당 창당발기인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창당준위 간부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1960. 5. 14. 세계일보에 보도된 사회대중당 창당발기인 명단, 1960. 6. 17. 세계일보에 보도된 사회대중당 창당준위 대표자대회 임시의장단 명단, 1960. 6. 18.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회대중당 대표총무위원 및 총무위원 명단, 1960. 6. 19. 세계일보에 보도된 사회대중당 각 위원회 위원장 명단, 1960. 6. 28.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회대중당 집행부 및 선거대책위원회 각 부서장 명단에도 조용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의 간부를 소개한 어느 명단에도 조용수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다.

- 사회대중당 창당 발기인 명단(1960. 5. 14. 세계일보 아침판 및 저녁판 기사)
김달호, 김성숙, 유병목, 유한중, 이동화, 이근구, 박기출, 서상일, 윤길중, 윤우현, 최근우
-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대회 임시의장단 명단(1960. 6. 17. 세

33) 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조항은 1962. 12. 31. 정당법 제정 시 비로소 규정됨

계일보 저녁 판 기사)

서상일, 최근우, 박기출, 송남현, 김달호, 김성숙, 정화암, 이근구, 유병목,
윤길중, 조현식, 이동화, 조규희

- 사회대중당 대표총무위원 및 총무위원 명단(1960. 6. 18. 세계일보 아침 판,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표총무위원 서상일

총무위원 이근구, 김성숙, 정화암, 서상일, 이동화, 박기출, 송남현, 조현
식, 김달호, 김기철, 윤길중, 유병목, 임갑수(경남), 유한중(경
북), 조기하(전북), 김주섭(전남), 신창균(충북), 송두재(충남)

통제위원회 위원장 최근우

통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하

간사장 윤길중

- 사회대중당 각 위원회 위원장 명단(1960. 6. 19. 세계일보 아침 판, 조선일보)

조직위원장 김기철

선전위원장 유병목

기획위원장 이동화

선대위원장 조현식

재정위원장 구익균

인권옹호위원장 장홍염

국토통일추진위원장 박노수

- 사회대중당 집행부 및 선거대책위원회 각 부서장 명단(1960. 6. 28. 조선일보)

상무위원회 상무부장 김종원, 경리부장 박찬훈, 연락부장 홍순일

조직위원회 조직부장 김세룡, 청년부장 권대복, 학생부장 정구호, 농어
조부장 김일우, 노조부장 안필수, 문화부장 최석채, 부녀부

장 윤복덕

선전위원회 선전부장 김수한, 출판부장 황귀성, 교양부장 강진국, 섭외
부장 김영찬, 정보부장 황빈

선거대책위원회 서무부장 김창성, 기획부장 안필수, 심사부장 홍성환,
조사통계부장 유월강, 조정부장 김세룡, 선전부장 명노
성, 재정부장 박찬훈

3) 김달호계 사회대중당 간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자료인 1960. 11. 15. 국무원에 제출된 김달호계 사
회대중당 정당등록신고서에 등재된 주요간부 명단과 1960. 12. 5. 국무원에 제
출된 김달호계 사회대중당 정당변경등록신고서에 등재된 주요간부 명단에는 조
용수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바,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의 정당등록신고서
및 정당변경등록신고서에 등재되어 있는 주요간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960. 11. 15. 국무원 제출 “사회대중당 정당등록신고서” 등재 주요간부
조직위원장 조중찬, 선전위원장 이창호, 정책위원장 심돈섭, 재정위원장
김능수, 선거대책위원장 노광신
- 1960. 12. 5. 국무원 제출 “사회대중당 정당변경등록신고서” 등재 주요간부
중앙집행위원장 김달호, 서기장 정인훈, 부서기장 심돈섭, 당무위원장 심
돈섭, 조직위원장 조중찬, 선전위원장 선우정, 부녀위원장 미정(未定), 정
책위원장 김병휘, 선거대책위원장 정인훈, 인권옹호위원장 김용겸

4) 통일사회당 간부 여부

1961. 3. 19. 정당등록을 신고한 통일사회당 정당등록신고서와 1960. 12. 6. 정
당등록을 신고한 사회당 정당등록신고서에도 조용수는 간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³⁴⁾

5) 혁신계 정당 관계자들의 진술

민족일보 발간을 전후하여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사회당 등 혁신계 정당에서 활동한 정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용수의 정당활동 여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용수는 당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 및 김달호계 사회대중당 등 정당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조용수의 진주중학 동창으로서 민족일보 상무취체역을 지낸 정규근은 당시 조용수가 민족일보 운영에만 전념하였고, 정당활동은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2006. 5. 24. 조사)하였고, 사회대중당 창당준위 경북 경산군당위원장이었고 분당 후 사회당에 참여한 강창덕은 조용수가 당시 생소한 사람이었고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에서도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혁신계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서 건너와 공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천 후에야 알았으며, 낙선 후에도 그가 정당 활동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후 창당된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2006. 5. 25. 조사)하였다.

또한 사회대중당 창당준위 선전위원장이었고, 이후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에 참여한 김충섭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에서 간부로 활동한 적이 없고 경북 청송에서 후보로 출마한 사실도 몰랐으며, 사회대중당에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으며, 분당 후 자신은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에 참여하였으나, 조용수는 참여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2006. 5. 26. 조사)하였다.

사회대중당 창당준위 조직차장이었고, 분당 후 통일사회당 통일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태영은 사회대중당 창당준위 공천심사위원회에 실무자로 참여하였는데, 조용수에 대해 공천신청을 한 일본교포의 한 명으로 알고 있으며, 이영근의 추천으로 윤길중을 통해 공천받았다고 생각하며, 공천을 받아 출마한

34) 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신고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함

것 외에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에서 활동한 일은 없었으며, 낙선 후 어느 당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당 쪽에 일한 적이 없다고 진술(2006. 6. 7. 조사)하였다.

당시 혁신계 인사들과 재야활동을 하였고, 후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창일은 자신도 사회대중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정치 활동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윤길중, 강창덕 등 혁신계 정치인들과 자주 교류하며 지냈으며,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에서 활동한 적은 없으며, 분당 후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2006. 6. 7. 조사)하였으며,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은 조용수가 '민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없고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공천을 받기는 어렵고 공천 받을 곳이 사회대중당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2006. 7. 13. 조사)하였다.

6) 소결

조용수가 운영한 민족일보사는 영리법인으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 6조에서 인정한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므로 민족일보사를 운영한 행위를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고, 사회대중당 창당준위나 김달호계 사회대중당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자료나 당시 언론보도에서도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 활동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당시 혁신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에서 간부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용수는 민족일보사 사장 재직 당시 김달호계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 활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의원 출마 시 공천을 받았던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에서조차 직책이나 활동 면에서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조용수는 정당의 주요간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특별법 제6조가 규정하는 진정신분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용수에 대한 사형 선고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³⁵⁾

이 점을 증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1960. 11. 15. 국무원 제출 ‘사회대중당 정당등록신고서’ 및 1960. 12. 5. 국무원 제출 ‘사회대중당 정당변경등록 신고서’는 당시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가 정한 재심 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간부의 지위에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였다 고 인정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판결은 그 자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민족일보의 사설 등을 게재하는 것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민족일보 사장의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영근이 간첩이었는지 여부

1) 수사 및 판결내용

당시 혁명검찰부는 이영근의 기소혐의 내용을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 기재하여 마치 이영근이 간첩인 것처럼 주장하였고, 당시 상황을 전하는 언론기사에서도 이영근은 간첩으로 단정 보도되었다(1961. 5. 23. 조선일보 기사). 또한 혁명재판소 1심 판결은 대남간첩 혐의로 1951. 12. 30.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던 1956. 1. 19. 보석 상태에서 석방되어 도피, 1958. 4. 12. 일본으로 밀항한 공소외 이영근이 조소수를 통하여 조용수에게 송금한 3,810만 원을 받아 민족일보를 설립하였다고 판시하였다.³⁵⁾

조용수가 이영근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동인이 간첩이라는

35) 1961. 11. 20. 혁명재판소는 본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회의에 제출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 특별법」 제6조 소정의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가 간부직을 떠나 개인 자격으로 동조 소정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 동조의 위반행위로서 동조에 問擬處斷할 것인가”라는 자문안건에 대하여 “개인 자격으로 동조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동조에 問擬處斷할 수 없다”고 답하였음(『혁명재판사』 제2집, 44쪽)

36) 통일일보사 발간, 『창암 이영근 선생 저작집, 조국통일로의 이 한길』(1992)

증거도 없다는 상소이유에 대하여 상소심판부 판결은 이영근이 간첩이 아니다 등은 범죄사실인정에 소장(消長)이 없다고 단순히 판시하고 있다.

2) 도일(渡日) 전의 활동

이영근은 1919년 충북 청원군에서 출생, 일제강점 시기 항일운동에 참여, 1944년 여운형이 만든 건국동맹에 가담하였고, 해방 직후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이 조직한 사회민주당의 선전국장을 지내기도 하였다.³⁷⁾

1951년 이영근은 조봉암 국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창당 사무국의 책임자로 일하던 중 대남간첩단 사건의 혐의자로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된 후,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이영근은 1951년 당시 조봉암이 신당을 창당하는 데 관여하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진보계 정당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특무대로 하여금 자신과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김용, 치안국 교육과장 이일범 등을 엮어 대남간첩단 사건을 공작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⁸⁾

위 대남간첩단 사건의 재판은 6차례에 걸쳐³⁹⁾ 진행되었던 바, 부산지방법원에서 1차 재판이 열린 지 10년도 더 지난 196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궤석재판에 의해 형이 선고되었다. 간첩혐의에 대하여는 간첩이었거나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고 최종심에서 확정되었다. 국가보안법(지정가입, 자진방조)과 간첩예비죄에 대하여는 1심 판결에서는 전쟁 중 복귀에 체포되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신변이 위협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정치보위부에 가입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을

37) 위 『창암 이영근 선생 저작집, 조국통일로의 이 한길』(1992), 540쪽(발자취)

38) 이영근 기고, 「진보당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 업적을 되돌아본다」, 정태영, 오유석, 권태복 엮음, 『죽산 조봉암 전집』 제4권(세명서관, 1999), 266쪽

39) '52. 5. 26. 부산지방법원 → '53. 12. 19. 대구고등법원 → '55. 8. 12. 대법원 → '58. 1. 23. 서울고등법원 → '60. 11. 18. 대법원 → '62. 6. 8. 서울고등법원

들어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해 형 면제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판결 이후 불가피성을 인정키 어렵다는 취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3) 일본에서의 활동

이영근과 함께 일본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그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1965년경 이영근이 주도하여 설립한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⁴⁰⁾에서 초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 66년 말부터 이영근이 운영하던 통일일보사에 입사, 97년부터 통일일보 사장직을 맡은 강창만은 이영근이 생전에 조용수 추도식 등에 참석하여 '조용수는 내가 죽게 만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민족일보와 관련하여 회고하였는 바, '민족일보 설립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민족일보 설립에 조총련은 관련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아울러, 통일일보를 통해 주장한 이영근의 통일론 등은 당시 북한에서 주장한 연방제통일론과 그 내용이 다르며, 그 원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고 진술(2006. 10. 12. 조사)하였다.

1965년경 일본 와세다대학 학생으로서 이영근이 지도하는 청년단체인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동맹'⁴¹⁾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통일운동을 펼친 이춘웅(민족일보 연대포럼⁴²⁾ 간사)은 당시 이영근은 조총련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조봉암 구명운동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하였고, 민족일보 설립에 조총련계 자금이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으나, 이영근의 사상, 활동내용은 조총련과 관련이 없었으므로 민족일보 설립에도 조총련은 관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2006. 10. 10. 조사)하였다.

조용수의 진주중학과 메이지(明治)대학 선배인 정동화는 한국전쟁 때 학도의

40) 이영근이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황영만(00~06 민단중앙본부 부단장, 전 통일일보사 전무 역임)이 초대 회장을 역임

41) 이영근이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와 함께 설립한 청년단체

42) 일본에서 결성된 조용수 추모모임. 추모행사와 조용수 명예회복 사업 등을 하고 있음

용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던 여객선에서 조용수를 만났으며, 그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조용수가 메이지(明治)대 수료 후 민단 중앙본부 조직부장을 맡고 있던 정동화의 조직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59년 재일교포 북송반대운동을 벌일 무렵 조용수가 조봉암 구명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한국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느냐고 주의를 준 적이 있고, 조용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그의 죽음은 5·16의 본보기 희생양이고 이영근은 당시 반정부 활동은 하였으나 민단이나 조총련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2006. 10. 11. 조사)하였다.

전 오사카 총영사 조일제는 중앙정보부 차장보로 근무하다 74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부임했을 때 이영근을 처음 만났고, 이듬해 5월부터 이영근과 협력하여 조총련을 포함한 재일교포 추석성묘단 모국방문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는데, 이영근은 조봉암 구명운동 등 당시 한국정부를 반대하는 반한(反韓)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단이나 조총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통일운동을 하였고, 당시 민단에서 발행하던 신문은 무력하였고, 이영근이 발행하던 통일일보가 재일교포들의 대변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2006. 8. 3. 조사)하였다.

통일일보 부사장을 역임한 박진목은 이영근의 권유로 통일일보 부사장을 맡았던 바, 이영근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민족통일을 추진하는 정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통일신문을 발간했고, 이영근은 민단과 조총련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았으며, 김일성 같은 사람이 존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진술(2006. 8. 8. 조사)하였다.

4) 민족일보 창간자금

민족일보에 대한 자금출처 논란은 신문창간 전부터 있었다. 1961. 1. 30. 민주당 김준섭 의원이 4·19 이후 일본의 이영근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 자금이 특정 정파의 정치활동과 일간신문 창간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자,⁴³⁾ 이튿날 통일사회당의 윤길중 의원은 민족일보 창간 자금을 일본공산당이나 조총련계에서 들여온 것인 양 뒤집어씌우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문발행을 준비하는 조용수는 민단에서 활약한 청년으로 재일교포 북송반대운동에 앞장 선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⁴⁾

국회에서 신문사 창간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그 이튿날인 1961. 1. 31. 조용수는 한국일보에 “민족일보를 모함함에 반박하여”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여, 자금은 거류민단 및 그 주변의 양심적 기업가들한테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⁴⁵⁾

박주식 치안국장은 1961. 3. 6.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민족일보 운영자금이 일본 조총련 계에서 들어오지 않았는가 조사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조사결과가 어떤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족일보의 운영자금이 조련 계에서 유입되었다는 데 대해 이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1961. 3. 7. 민족일보 기사).

조용수는 재판정에서 신문사 설립자금은 이영근의 돈이 아니고 이영근은 자금모집 과정에서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⁴⁶⁾ 1961. 8. 4. 5회 공판에서 고정훈은 민족일보 자금이 조소수가 재일경제인협회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1961.8.5. 동아일보 기사).

조용수의 변호인은 재일동포 이희원, 배기호, 박용구, 정동필 등 재일거류민단 간부이거나 또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받은 돈이고, 그들은 북한 괴뢰정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⁷⁾ 재판부는 위 이희원, 배기호, 박용구, 정동필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2006. 5. 1. 신청인 조사), 더구나 공소장에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기재된 조소수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지 않은 채 조용수가 이영근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43) 1961. 1. 30, 국회 민의원 제14차 회의록

44) 1961. 1. 31, 국회 민의원 제15차 회의록

45) 1961. 2. 2, 한국일보, “민족일보를 모함함에 반박하여”

46) 1961. 8. 2, 동아일보 조간 기사 “이영근은 모금만 담당”

47) 조용수의 상고이유서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5)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1990. 5. 14. 이영근이 사망하자 5. 24.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지 통일일보를 창간, 대 조총련 투쟁과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

6) 소결

이상과 같이 조용수 사건 판결 당시는 이영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간첩죄에 대하여는 1심부터 무죄를 선고한 상태였다. 이영근에게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공소장에서 이영근이 조소수를 통해 민족일보에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었던 만큼 조소수는 상당히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사기관이 그를 석방하고(1961.8.2. 동아일보)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영근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변호인이 창간자금을 대었다는 민단체 재력가들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혁명재판소가 증인신문 등 자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조용수는 민족일보의 "자금은 거류민단 및 그 주변의 양심적 기업가들한테 받은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해명하였다는 점, 치안국장 "민족일보의 운영자금이 조련 계에서 유입되었다는 데 대하여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상과 참고인들의 이영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판결이 이영근이 간첩혐의자라거나 이영근이 민족일보의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민족일보 논설 등 북한 고무·동조 여부

1) 고무·동조로 인정된 민족일보 논설 및 기사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민족일보의 주장에 대해 ‘무정견한 중립화안이나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 경제·서신·문화교류 및 남북학생회담은 대한민국을 민족적 교류 및 원조라는 가면 하에 점차적으로 적화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북괴뢰집단의 합법을 가장한 적색 침략전략으로서 그네들이 일관하여 주장, 선전하고 있는 위장 평화공세, 즉 간접 침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북괴뢰집단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인정한 민족일보의 사설 및 기고, 기사 제목만을 나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문의 기고 및 기사는 신문사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북한에 대한 고무·동조인지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공소장 및 판결에서 언급한 사설 등 제목은 <별표 6>과 같다. 판결이 인용한 사설제목은 토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당시 각계에서 주창하였던 여러 통일방안 중 중립화통일에 중점
- 중립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前단계 조치로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주장
- 남북교류를 위한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주창에 대해 지지를 밝히고 각계의 지원을 요구

2) 중립화통일론

가) 민족일보의 중립화통일 주장

민족일보 논지를 보면 미·소 양국의 타협과 보장 없이는 남북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동서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한국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서 평화공존의 타결로써 중립화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⁴⁸⁾고 전제한 뒤, 중립화통일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대전제가 되었으므로 통일을 위해 미·소 양국을 비롯한 관계 제국들의 협조를 얻고자 노력하는⁴⁹⁾ 한편, 전 혁신계 세력과 온 민족이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하여⁵⁰⁾ 중립화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나) 중립화통일론의 대두

4·19 이후 중립화통일론을 제기한 대표적 인물은 일본에서 중립화통일운동을 벌인 김삼규와 미국에서 활동하며 중립화통일론을 펼친 김용중을 들 수 있다.

김삼규는 한반도 분단을 미·소 냉전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미·소 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는 일방적 통일은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통일은 어느 세력권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화통일의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중은 1961. 2. 장면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정학적 현실을 인식하고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나라의 중립화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민족일보 1961. 2. 19. 기사).

한반도 중립화통일안을 주장한 외국인으로서 미국 상원의원 맨스필드는 오스트리아식으로 중립국화 시키자고 제안하였으며, 한국 공산주의운동사를 저술한 미국의 정치학자 스칼라피노도 한국의 중립화를 제의한 바 있다.

이렇듯 중립화통일론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으며, 4·19 이후 통일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통일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혁신정당과 중립화통일론

4·19 이후 혁신정당들은 서로 경쟁하듯 통일론을 주창하였는 바, 이들의 통

48) 1961. 2. 23. 사설 “통일방안에 관한 시비 -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모함을 삼가라”

49) 1961. 5. 15. 사설 “범민족적 통일운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50) 1961. 2. 27. 사설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민족이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일론은 두 가지 범주로 대별된다.

- 사회대중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의 발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민족건양회가 주창한 자주통일론(남북협상론)
- 통일사회당 및 그 자매단체인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이하 중통련), 혁신당, 사회대중당이 주창한 중립화통일론

민자통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확정하지 않았고, 민족건양회가 민족혁명론에 입각한 자주통일론을 주장하였고, 중통련의 중립화통일론은 국제현실을 인정하고 미·소의 이해 조정을 전제로 한 국제기구를 통해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은 괴뢰정권이고 연방제통일방안 또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흉계로 보고 있었다.⁵¹⁾

이와 관련하여 민족일보는 북한체제나 그 지배자인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에서 혁신계 중에서 온건하다고 볼 수 있는 통사당과 중통련의 통일방안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라) 북한의 통일정책과 중립화통일론 비교

김일성은 1960. 8. 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였는 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 실시
- 남한이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 실시”를 제의
-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 조선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 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시⁵²⁾

51) 1961. 3. 16. 민족일보 기사 “공산화시킬 흉계, 통사당 북괴의 연방제안 규탄”

위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요약하면,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현존하는 남북의 상이한 정치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남북의 두 정부가 각각 독자적인 정부 활동을 계속하되,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서 하나의 조정기구를 만들고, 그 조정기구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여 통일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립화통일론은 남북 분단을 미·소 냉전체제의 산물로 보고, 친소일변도나 친미일변도는 모두 조국의 양단과 민족분열을 조장 내지 반항구화할 뿐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미·소 양국의 화해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런 냉전체제 주체의 화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영세 중립화통일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⁵²⁾

마) 소결

북한의 통일방안은 일체의 외세 간섭이 없이 민족 내부적인 협상에 의해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의 체제도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중립화통일론은 미·소 양국의 이해 조정을 전제로 한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의 정치체제와 전혀 다른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통일과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통일방안은 두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하나의 조정기구를 만들어 접근하자는 것인데 비해, 중립화통일론은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통일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즉, 중립화통일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나 그 지배자인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민족일보가 주장한 중립화통일론과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그 내용이나 지향점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일보의 중립화통일 주장은 혁신계에서 주장한 새로운 통일방안이

52) 통일부, 『2004 북한개요』, 468쪽

53) 노중선 저, 『4·19와 통일논의』(사계절, 1989. 4. 19), 67쪽, "1961. 2. 21,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발기위원회 성명서"

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주장이나 북한이 지향하는 기본노선과 동일하다고 규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중립화통일론이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남북교류 주장

가) 민족일보의 남북교류 주장

민족일보의 논지는 중립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前) 단계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던 바, 즉 “서신과 인물의 왕래와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남북 자유선거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이 조건의 강화와 영속을 위하여 물질교류까지 추진해야 한다”⁵⁴⁾고 하면서, “전면적인 남북교류에 문제가 따른다면 정치성과 위험성이 작은 체육교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⁵⁵⁾고 주장하였다.

나) 남북교류 주장의 배경

남북교류 주장은 4·19 이후 통일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으로, 민족일보뿐 아니라 영남일보, 민국일보 등 다른 신문에도 게재되었다. 정계에서는 주로 혁신정당들이 남북교류 추진을 주장하였으나, 보수정당 내에서도 일부 소장파 정치인들은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⁵⁶⁾

당시 신민당 소속의 서민호 국회부의장은 정치적 통일모색에 앞서 “남북 서신교류 및 체육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1961. 1. 5. 동아일보 조간 기사), 우선 도쿄올림픽 동시참여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를 제안하였고, 신민당 원내총무 양일동 의원은 “남북을 통한 민간 사회단체로 통일협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

54) 1961. 5. 16. 민족일보 논설 “민족의 자주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자”

55) 1961. 5. 12. 민족일보 논설 “우선 체육교류부터 시작하자”

56) 당시 장면 총리와 민주당, 신민당의 노장과 의원들은 중립화통일안과 남북교류 주장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견지한데 반해, 청조회 등 신민당 내 소장파 의원들은 남북교류 추진을 주장, 대립하였음

어 그 기구가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할 것이며, 통일의 방안은 중립화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1961. 5. 5. 동아일보 조간 기사).

당시 신민당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청조회 소속 의원들은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남북교류보다 재건이 더 시급하다”는 노장파와 대립한 바(1961. 2. 20. 동아일보 조간 기사), 청조회 소속 이상신 의원은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한 당 간부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고루하며, 제한된 남북교류는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하였고, 청조회 소속 김영삼 의원도 남북교류론은 양보할 수 없는 선(線)이라고 주장하였다(1961. 5. 16. 동아일보 조간 기사).

이렇듯 남북교류 주장은 당시 민족일보뿐만 아니라 영남일보, 민국일보 등 언론계, 혁신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정치권에서도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었다.

다) 소결

당시 남북교류 주장은 통일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언론매체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주장되었으므로 민족일보의 남북교류 주장만을 북한에 이익이 됨을 알면서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4) 남북학생회담 지지

가) 민족일보의 남북학생회담 지지 및 지원 주장

남북교류 활성화를 중립화통일론의 전제로 본 민족일보 논지는 서울대 민통련 소속 학생들이 통일의 전제로서 언론, 문화, 사회단체 및 서신 등의 교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남북의 집권자들은 이 학생들의 결의와 행동을 위협하거나 경원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야 한다”⁵⁷⁾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적 사상의 차이를 초월해서 순수한 민족적 감정을 기초로 한 남북의 학생회담을 열자는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의 제의는 통일축진을 위하여 지극한 의의를 갖는 것”⁵⁸⁾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주장한 남북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정부와 혁신계에게도 그 실현을 위한 지지와 편의제공을 당부하였다.

나) 남북학생회담 주장의 배경

4·19 이후 국내 각 대학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통일문제연구회를 만들어 각종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60. 9. 24.~25. 고려대학교에서는 “민족통일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전국대학생 시국토론대회’가 개최된 바, 통일의 필요성과 아울러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 새로운 통일방안 제시 등 통일문제가 광범하게 논의되었고(1960. 9. 25. 한국일보 사설), 1960. 11. 2. 서울대학교에서는 “기성세대와 학생간의 통일문제 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기성세대 5명과 학생 5명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1960. 11. 3. 한국일보 기사).

한편, 1960. 11. 1. 통일문제를 실천적 행동으로 옮기려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대학교민족통일연맹’을 결성, 통일방안 제시 및 통일여론 조성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등 학생운동세력 내에 통일열기가 고조되었다(1960. 11. 2. 한국일보).

그리고 마침내 1961. 5. 3. ‘서울대학교민족통일연맹’은 남북문화교류의 전제로서 먼저 남북한 학생들이 모임을 갖자고 제의한 바(1961. 5. 4. 한국일보 기사), 1961. 5. 5. 전국의 18개 대학과 1개 고등학교의 학생대표가 참가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로 이어졌고, 이 대회에서는 “5월 내에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개최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⁵⁹⁾

57) 1961. 5. 5. 민족일보 논설 “조국통일의 선봉들에 감사한다”

58) 1961. 5. 16. 민족일보 논설 “민족의 자주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자”

다) 남북학생회담 찬반 논쟁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자, 당시 정부 대변인은 “남북학생회담 개최 주장은 정부방침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1961. 5. 6. 한국일보 기사), “만약 학생들이 판문점에 가는 일이 생기면 전원 체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정당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하며 장면 정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1961. 5. 7. 한국일보 기사).

그 외 각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남북학생회담 제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주로 혁신계 정치인 및 사회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보수적인 단체 및 정치인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1961. 5. 6. 한국일보 기사).

라) 소결

민족일보 논지가 주장한 남북학생회담 지지 표명은 민족일보의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 4·19 이후 통일논의가 활성화 되는 분위기에서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학생회담은 당시 활발했던 통일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 자체가 북한에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민족일보가 직접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한 것도 아니고, 또한 민족일보만이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중립화통일론의 전제로 남북교류를 주장한 민족일보로서는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⁶⁰⁾ 남북교류 주장은 다른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보수

59) 1961. 5. 6. 한국일보 기사 “남북학생교류안을 이렇게 본다. 정부, 정당, 학계, 경제계의 견해”

여당 의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이었고, 민족일보만 남북교류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다.

5) 소결

민족일보의 대 북한 인식은 다음에서 보는 민족일보의 사설에서 잘 드러나는 바, 북한체제나 그 지배자인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즉, 민족일보는 1961. 4. 20.자 사설 “북한의 유엔참석 통보와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행동에 대하여 여전히 상투적인 힐난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투적 주장은 오히려 동서 냉전을 격화 또는 촉진시키는 것이며, 통일을 갈구하는 인민의 의사와 거리가 먼 것으로 그들의 자결원칙은 ‘상투적인 아전인수적 건강부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1961. 3. 23.자 사설 “조국분단의 책임은 남북의 집권당이 다같이 져야 한다”를 통해 국토분단의 책임을 “북한괴뢰정권” 아니면 “남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에게만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은 이승만과 김일성 두 독재정권이 허세로 부르짖어온 선전이었으며, 미·소와 이들의 냉전전략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온 남북의 집권자들이 통일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족일보는 1961. 4. 25.자 사설 “남북의 집권자들은 부질없는 선전전만을 일삼지 말라”를 통해 북한 공산정권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를 강점” 운운하며 동서 냉전 상 소련측 입장만 지지해오던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남북의 집권자들은 부질없는 선전전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적이고 동서 냉전 어느 한쪽만을 추종하지 않는 노선에서 통일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장하였고, 1961. 5. 11. 자 사설 “북한정권은 먼저 민족자주 정신에서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를 통해 남북학생회담 제의와 관련 김일성은 아전인수적이고, 자가도취적이며,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바,

60) 민족일보는 남북회담을 정치적 선입견을 제외한 비정치적 교류로서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첫째, 김일성은 순수 애국심에서 나온 남한 학생들의 노력이 마치 자기 일과의 정치목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착오, 둘째, 김일성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심지어 여행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참상에 대해 왜 일언반구도 없는지 묻고 싶으며, 남한 동포들은 시민의 기본권리가 무자비하게 박탈당하는 김일성 정권의 공산독재정치의 힘을 빌릴 의사가 없고, 셋째, 김일성은 외세의 간섭 없이 조선 인민에 의해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민족이익의 유일한 대변자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소련의 냉전전략을 일방적으로 추종해 왔다는 의미에서 반민족적 과오를 범해 왔고, 넷째, 김일성이 진심으로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 동포들에게도 통일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발표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족일보가 주장한 중립화통일론은 혁신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체제나 김일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고, 하나의 한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과는 그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으며, 그 전제로서 제기된 남북교류론 역시 그 내용과 지향점이 북한에서 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 주장이 유사하다고 해서 북한의 기본 노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북학생회담 지지 역시 그 주장 자체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 도출된 찬반양론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일보의 논지가 북한의 통일방안 노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민족일보 사설이나 기사의 어떤 대목이 북한을 고무, 동조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또한 그 사설과 기사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그 제목만을 언급한 채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고 판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VI. 결론

1. 진실규명

5·16 주도세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설치법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근대 입헌국가에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위 특별법이 제정 이전 행위에 대해 3년 6월까지 소급적용토록 한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혁명재판소의 2심제 재판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처벌법규가 부존재한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가 체포·연행하여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혁명재판소는 위 특별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지 아니한 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고,⁶¹⁾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위 특별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유죄판결을 하였고, 민족일보의 논지가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통일방안과 그 내용과 지향점이 달랐음에도 민족일보의 사설 등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왜곡을 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또 이영근이 간첩혐의자라거나 이영근으로부터 민족일보 창간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간부의 지위에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였

61) 당시 헌법 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고 판단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판결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민족일보의 사설 등을 게재한 것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민족일보의 사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당시 대외적으로 5.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쿠데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불법으로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던 대표적인 신문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민족일보 논지만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생명권을 박탈한 것은 문명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에 해당한다.

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2. 권고

국가는 법률제정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등 인권 침해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위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⁶²⁾

62) 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별표 1> 조용수 등 민족일보 사건 일지

발생일	내 용	비 고
1930. 4.24.	조용수 경남 함안 출생	조용수와 민족일보 (원희복 著)
1950.	연희전문학교 정경학부 입학	"
1950.	하만복의원 보좌관 (경남 경찰국 경사)	"
1951. 9.25.	일본으로 건너감. 明治大 政經學部 2學年 편입학	"
1954.	재일 거류민단 중앙본부 조직차장, 민주신문 상임 논설위원	"
1959. 4.	조봉암 구명 서명운동위원회 가입	"
1959.12.	재일거류민단 토치키현 부단장 유태하 공사 추방운동 토치키현 위원장 재일 한국인 북송반대 토치키현 위원장	"
1960. 7.29.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국회의원 출마, 낙선	"
1960.11. 4.	再次 渡日	"
1960.12. 6.	조용수 귀국 중에 김포공항에서 메모를 압수당함	동아일보 '60.12.7.
1961. 1.25.	주식회사 민족일보 설립, 사장 취임	조용수와 민족일보 (원희복 著)
1961. 1.30.	국회 민의원 회의에서 議員들 사이에 조용수의 압수당한 메모를 두고 논박	동아일보 '61.1.31.
1961. 2.13.	민족일보 창간,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고,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이라는 社是로 창간	민족일보 창간호
1961 .3.6.	박주식 치안국장 민족일보설립과 관련 조총련계 자금유입설 수사결과에 아는 바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	한국일보 '61.3.7.
1961. 5.16.	5.16 군사정변, 당일 9시를 기해 계엄령 선포	동아일보 '61.5.16.
1961. 5.16. 직후	이석제의 회고록에서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좌익사상 의심을 역전시키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석제가 육본상황실에서 비상한 조치를 구상, 전국의 군과 경찰, 헌병대에 직접 비상을 걸어 혁신정당 간부 및 보도연맹 관련자 등의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고 記述함.	이석제회고록 123쪽~124쪽

	“보도연맹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자”라고 記述함	
1961. 5.17.	포고령 제10호 발표 계엄지역내에서의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	조선일보 '61.5.17.조건
1961. 5.18.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비롯한 간부 일행 특무대에 의해 중부서로 연행 당함	이상두회고록 286쪽
1961. 5.19.	민족일보 폐간	
1961. 5.23.	조흥만 치안국장, 민족일보 조총련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수수하여 반국가행위를 하여 그 일당을 체포하였다고 발표	한국일보 '61.5.23.
1961. 5.27.	'61.5.16. 상오 9시에 발표된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변경선포	한국혁명재판사 제1집
1961. 6. 4.	김(중필) 중앙정보부장, 외신기자에게 5·16혁명 경위 언급	한국군사혁명사
1961. 6. 5.	김 중앙정보부장, 기자회견에서 혁명경위 밝히고 반혁명세력에 대해 경고	한국군사혁명사
1961. 6. 6.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공포, 법률 제43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6.10.	중앙정보부법 제정·공포, 법률 제619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6.21.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제정·공포, 법률 제630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6.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법률 제633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7. 3.	반공법 제정·공포, 법률 제643호 인신구속에따른임시특례법 제정·공포, 법률 제644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7.12.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의 시무식 및 심판관, 검찰관의 임명식 거행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7.23.	민족일보 사건 혁명재판부에 기소(혁공 제1호) 오재욱 검찰관	동아일보 '61.7.29.
1961. 7.28.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제1회 공판	동아일보 '61.7.29.
1961. 8. 1.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제2회 공판	동아일보 '61.8.2.
1961. 8. 2.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제4회 공판	동아일보 '61.8.3.
1961. 8. 4.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제5회 공판	동아일보 '61.8.5.
1961. 8.10.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제6회 공판	동아일보 '61.8.11.
1961. 8.11.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제7회 공판	동아일보 '61.8.12.

1961. 8.28.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심판부 선고공판, 조용수 등 사형 선고	동아일보 '61.8.29.
1961. 9.20.	국제신문인협회 항의문 발표	조용수와 민족일보 (원희복 著)
1961.10.25.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부 상고심 변론 공판	동아일보 '61.10.26.
1961.10.31.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소 상소심 선고 공판, 조용수 상고 기각	동아일보 '61.11.1.
1961.12.20.	박정희의장, 조용수 등 특수범죄처벌법위반 사형수들의 선고 확정	서울형무소 국가기록원
1961.12.21.	조용수 등 특수범죄처벌법 위반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서울형무소 국가기록원
1961.12.22.	조용수 등 특수범죄처벌법 위반 사형수들의 출소(시신 인계)	서울형무소 국가기록원
1962. 1.13	국제저널리스트 협회 1961년도 국제 기자상 추서결정	조용수와 민족일보 (원희복 著)
1990. 5.24.	통일일보 사장 이영근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국가기록원

<별표 2> 자료조사 현황

구 분	자 료 명	자료생산원	수 량	출 처
국가기관	사회대중당 정당등록신고서 등	국무원 사무국	6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회대중당 변경등록신청서 반려의견	"	1쪽	"
	사회대중당 변경등록신청서	"	6쪽	"
	통일사회당 정당등록신고서	"	7쪽	"
	통일사회당 등록신청의 건	"	11쪽	"
	사회당 정당등록신고서	"	7쪽	"
	정당단체등록증	"	1쪽	"
	사회당 정당변경신청서	"	4쪽	"
	이영근 영예수여 증명서	행정자치부	1쪽	행정자치부
	혁명검찰부 명단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1쪽	한국군사혁명사 2권 11쪽
	이영근 영예수여 관련 국무회의록	총무처	13쪽	국가기록원
	민족일보사건 공소장	혁명검찰부	14쪽	혁명재판사 제3집
	민족일보사건 판결문 심판부	혁명재판소	13쪽	"
	민족일보사건 상소심	"	53쪽	"
	국가재건최고회의록	국가재건최고회의	8쪽	국회도서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	4쪽	"
	한국군사혁명사 상권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5쪽	"
	한국군사혁명사 국내 관련 일지	"	17쪽	"
	혁명재판소 법률자문위원회 회의자료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2쪽	한국혁명재판사 제2집
	사형수 확정 보고에 관한 건	서울형무소	3쪽	국가기록원
	사형확정수 출소보고의 건	서울형무소	3쪽	국가기록원
	사체검안서	서울형무소	5쪽	국가기록원
	혁명검찰부 검찰관 등 병적확인 결과 회신	육군본부 등	20쪽	육군본부

	혁명검찰부 검찰관 인적사항 조회	네이버 검색 등	7쪽	
	군사혁명의 원인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22쪽	한국군사혁명사 상권 173~194쪽
	혁명검찰부 검찰관 주민조회 결과	행자부	2쪽	
	참고인 인적사항 조회	외교통상부 등	1쪽	
	한겨레 등 인터넷 보도	한겨레	3쪽	
	혁명검찰부 검찰관 인사기록카드	법무부	8쪽	
	이재항, 이종률 인적사항 보고	혁명검찰부	2쪽	판결문
	송지영 등 국회의원 경력자료	국회 사무처	2쪽	
	송지영 등 영예수여 증명서	행정자치부	8쪽	
	국회 민의원 회의록	국회도서관	11쪽	
	혁명검찰부장 박창암 사망 확인	한국일보 2003.11.12.	1쪽	
	이영근의 1951년도사건 판결문(여섯 번의 재판)	대법원 등 1952년~1962년	244쪽	국가기록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과 기능	한국군사혁명사	22쪽	
언론기관	민족일보재판 미국비밀 보고서	한겨레신문사		
	민족일보 논설 및 기사	민족일보사	21쪽	민족일보 영인본
	사회대중당 관련 보도기사	세계일보사 (민국일보의 옛이름)	5쪽	세계일보 '61.5.14 등
	"	동아일보사	1쪽	동아일보
	"	조선일보사	4쪽	조선일보
	조용수 사형선고 및 집행 보도기사	민국일보사 외	6쪽	한국일보, 민국일보
	조용수 등 사형선고 기사	민국일보사	2쪽	국회도서관
	조용수 등 사형선고 기사	한국일보사	4쪽	
	사회대중당 창당 관련 기사	세계일보사 등	16쪽	
	민족일보 창간 자금 관련 보도기사	한국일보사 등	5쪽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 관련 기사	동아일보사	7쪽	
	민족일보 논설 및 기사	민족일보사	8쪽	

	한국일보 통일론 관련 기사	한국일보사	7쪽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62쪽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48쪽	
	신동아 85년 6월호	동아일보사	5쪽	
	신동아 99년 2월호	동아일보사	7쪽	
	월간조선 90년 8월호	조선일보사	9쪽	
	민족일보와 혁신계 언론 필화 사건	정진석 한국외대 교수	15쪽	신문연구 90년 여름호
	통일연구 4권	서경대 통일문제 연구소 김유원	18쪽	1999.12.
	언론운동으로서의 민족일보의 성격	김자동	18쪽	한국사회변혁운 동과 4월혁명
	자주통일의 꿈 민족일보와 조용수	정문화 편집국장	2쪽	월간 말 1992. 2.
	영남일보 1961년 통일관련 논설	영남일보사	25쪽	
	1961년 주한 미 대사관 비밀 보고서	미 국무성	6쪽	한겨레신문
	1961년 주한 미 대사관 비밀 보고서 번역본	미 국무성	8쪽	한겨레신문
	통일조선신문 기사	통일일보사	7쪽	
도서자료 / 민간자료	민족일보와 조용수	원희복 著	민족일보 사건의 전체설명과 소개 436쪽	신청인 제출
	민단50년사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1032쪽	
	만화 박정희	시대의창 백무현, 박순찬	1,2권. 420쪽	
	祖國統一로의 이 한길	통일일보사	546쪽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노중선	300쪽	
	한국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1950년대편 1,2권 660쪽	
	한국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1960년대편 1,2권 660쪽	
	권일 회고록	도서출판 한민족	485쪽	

역사문제 연구 2004. No.12	역사비평사	99쪽	
이석제 회고록	(주)도서출판 서적포	210쪽	
옥창너머 푸른 하늘이	이상두 회고록	48쪽	
우수의 일월	송지영 著 유성출판	6쪽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양수정 著 휘문출판사	4쪽	
명인옥중기	필중서관	23쪽	
한글판 민족일보 사건 공소장, 1, 2심 판결문	민족일보 연구	107쪽	

<별표 3> 생략

<별표 4> 언론보도 현황

보도일자	주요 보도 내용	출 처	비 고
'60.12. 7.	불온문서발신--경찰은 12월 6일 하오 김포공항에서 일본에서 不穩油印物を 국내로 발송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在日 민주신보 논설위원 조용수를 연행함.	동아일보	
'60.12. 8.	連行된 사실없다고--윤길중 등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서 귀국한 조용수는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	동아일보	
'61. 2. 3.	민족일보에 朝總聯 資金 流入說--김준섭의원은 2월2일 민의원 회의의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난번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명칭을 지칭하지 않았는데 윤길중의원이 「민족일보」, 「조총련」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는 발언을 하며 민족일보의 조용수의 朝總聯 關聯與否, 이영근의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지, 朝總聯資金이 投入되었는지 등의 질문을 함. 이에 윤길중의원은 김의원이 막연한 풍설로 음모 조작을 하고 있다고 반박, 이어 박권희의원은 在日同胞를 빨갱이로 몰려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언급.	동아일보	'61.1.30. '61.1.31. '61.2.2. 민의원 속기록 참조
'61. 3. 7.	조련계설 모른다 --朴治安局長 민족일보 자금조사에 언급 3.6. 정례기자회견에서 박주식 치안국장은 민족일보 운영자금의 朝總聯系 關聯說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떤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운영자금이 朝總聯界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언급함.	민족일보	5.16 이전까지 민족일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언급 없음.
'61. 5.23.	치안국, 61.5.22. 민족일보 背後關係 發表--이영근(조봉암의 비서) 指令하에 평화통일론을 주창하면서 혁신계정당의 기관지발간을 계획함. 민족일보 정체도 드러나 조련서 정치자금 2억원 투입. 조흥만 치안국장의 발표로 日本 朝總聯系로부터 약 2억원을 국내에 유입, 국내혁신 세력을 규합하고 革新諸政黨의 機關誌를 發刊하고..... 북한 괴뢰집단이 주장하는 평화통일론을 선전하는 등 괴뢰집단이 지향하는 목적수행에 적극 활약해 온 혐의.	조선일보 한국일보	조용수 등이 불법 연행된 지 4일만에 전모 발표
'61. 7.23.	민족일보사건 조용수의 13명 革檢刑 제1호로 起訴됨. 檢察官 吳在玉	공소장	
'61. 7.29.	管轄權 異議 却下. 辯護人 신청으로 公判延期--민족일보사건 첫 공판--재판장-김홍규대령, 검찰관-오재옥중령. 재판부 변론 준비로 인한 공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임. 검찰의 공소장 낭독이 끝나자 변호인은 관할권 이의신청, 재판부는 각하.	동아일보	1회 공판 7.29.
'61. 8. 2.	이영근은 모금만 담당, 혁신계의 정치인으로만 알았다. 趙被告, 공판에서 진술--이영근을 간첩으로 지칭하고 변호인은 조소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측은 무역업자 조소	동아일보	2회 공판 8.1.

	수는 용공분자로 구속되었다가 합동심사를 거쳐 석방되었으므로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언급.		
'61. 8. 3.	조용수 장인으로부터 民族日報 運營資金 나왔다고 傳聞--편 집국장 이종률은 同社의 운영자금은 조용수의 장인에게서 나왔다고 들은 바 있다고 증언	동아일보	4회 공판 8.2.
'61. 8. 5.	아무일 안했다 윤길중 증인 증언--8.4. 상오 9시 민족일보 사건 제5회 공판에서 윤길중은 조피고로부터 1,700만원을 받았으나 이영근으로부터 나온 것은 몰랐다, 고정훈은 민족일보 자금이 조소수가 在日經濟人協會에서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 민족일보이사 최근우 西大門 刑務所에서 8.4. 오후 7시 死亡	동아일보	5회 공판 8.4.
'61. 8.11.	증인 심문·증거채택을 종결--8.10. 상오9시 공판개정 변호인이 교수 36명의 진정서 제출, 유진오 고대총장 외 35명 진정서 제출, 이재항(전 주일총영사) 증인은 조용수피고가 조봉암救命運動과 在日同胞北送反對運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	동아일보	6회 공판 8.10.
'61. 8.12.	特別法 불해당 각 피고의 변호인 변론--송지영은 태양신문사 활동 시에 이영근과 알았으며 그로부터 정치자금이나 혁신계통합의 지령을 받은 바 없다고 언급하며 "특수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 이건호 피고는 反共鬪爭의 선봉--이 피고는 열렬한 민주주의 신봉자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탁월한 법학자이며 반일, 반공, 반독재투쟁의 선봉이라고 언급함.	동아일보	7회 공판 8.11.
'61. 8.13.	민족일보 사건 네 피고에 死刑求刑,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양실근 등. 이상두 15년, 나머지 8명 5년 혁명재판--김찰은 "민족일보는 이북괴뢰와 통하는 혁신계인사들의 정치적 인사들의 집합체이며 민족일보의 노선은 북한괴뢰를 이롭게 하는데 대하여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말함.	동아일보	구형 공판 8.12.
'61. 8.29.	민족일보사건 조·송·안·세피고에 사형 이상두 15년 양수정 이견호 10년 혁제 언도. 정규근 양실근 5년, 5명 무죄. 言渡하자 한 때 소란, 死刑받은 三被告人 泰然	동아일보	1심 선고공판 8.28.
'61.10.26.	2審서 上告棄却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 등 民族日報 事件革裁 네 被告의 辯論만 再開--李鐘元김찰관은 '민족일보가 사회단체가 아니며 북한괴뢰의 이익이 되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상소이유를 이유 없다'고 반박함.	동아일보	상소심 변론공판. 2심 검찰관은 이종원.

	懲役 10年 이건호, 三被告는 量刑줄고--원심에서 민족일보의 사회단체적용은 의율착오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용수가 社會大衆黨의 主要幹部인 혁신정당의 대변지인 민족일보를 설립하였고 송지영 등은 조와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이 판결은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에 규정한 사회단체의 개념으로 조직의 비영리성과 개방성을 들었으며 민족일보사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31.
'61.12.21.	趙鏞壽 民族日報社長 死刑執行--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20일 혁명재판소에서 형의 확정판정을 받은 민족일보사건의 조용수, 고대생대모대 피습사건의 임화수, 사회당사건의 최백근, 내무부 부정선거사건의 최인규, 중앙발포사건의 곽영주 등 다섯 피고에 대한 사형판결 확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21일 상오 발표. 다섯 被告 絞首刑執行--오늘 하오 2시 50분부터 4시 24분까지 서울刑務所서 가족들 아침에 무심코 면회	동아일보 한국일보	사형집행
'62. 1.27.	1962. 하바나발 타스통신에 의하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國際記者同盟實行委員會 定期會議에서 한국의 民族日報 사장 조용수씨에게 국제기자상을 수여한다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쿠데타정권이 혁명재판에서 조용수씨 등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규탄하는 항의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	통일조선 신문	

<별표 5> 생략

<별표 6> 고무·동조로 인정된 민족일보 논설 등

발행일	형태	공소장에서 고무·동조로 적시한 논설의 주제목	재판부 인정여부
5. 16	논설	민족의 자주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까지 정세를 발전시키자	○
5. 15	논설	범민족적 통일운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
5. 12	논설	우선 체육교류부터 시작하자	○
5. 9	논설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티브를 빼기지 말자	○
5. 8	논설	통일への 전진을 위하여	○
5. 7	논설	학생들의 통일의욕을 무정견으로 억압치 말라	○
5. 9	논설	조국통일의 선봉들에 감사한다	○
4. 22	논설	통일외교에 실패한 장 정권은 물러가야 마땅하다	○
4. 9	논설	남북교역의 시기는 성숙하였다	○
2. 27	논설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 민족이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되어야 한다.	○
2. 23	논설	통일방안에 관한 시비 -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모함을 삼가라	○
5. 16	기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와 통일문제 - 통일을 원치 않는 태도	○
5. 16	기고	너희를 저주하노라 - 소위 반공련의 지상 성명을 읽고	○
3. 20	기고	장면 정권과 반민주법안 - 대중을 농간말라	○
5. 7	사건기사	남북학생회담 편의 제공하라	○
5. 12	사건기사	남북학생교류 촉구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의	○
5. 6	사건기사	통일은 먼저 남북교류로 시작하자	○
5. 5	사건기사	남북학생회담을 갖게 하라	○
5. 4	사건기사	통일위한 선행조건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열자	○
4. 20	사건기사	젊은 사자들의 침묵데모, 이북 쌀 남한 전기	○
5. 7	사건기사	우렁찬 통일への 고동	○
5. 15	사건기사	민통련서 학생회담 구체안을 제시	제외
5. 14	사건기사	남북학생회담 실현위해 지원하라	제외
4. 21	사건기사	기성보수세력에 대한 일대 각성 촉구	제외
3. 20	논설	분조사 운운의 협박으로 학생들이 반민주악법 반대투쟁을 억압치 말라	제외

3. 13	논설	반민주악법 반대투쟁을 위해 온 민주세력은 공동전선을 펴라	제외
3. 12	논설	반공특별법은 기본권 유린이다	제외
4. 9	강연요지	반공법으로 자유를 박탈	제외
5. 1	논설	메이데이 노동자는 각성하라	제외
5. 7	사건기사	남북학생회담 편의 제공하라	제외
4. 10	사건기사	악법 철회 탄압중지를 요구	제외
3. 25	사건기사	통곡하는 민주광장	제외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결정사안】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섬마을에 거주하던 김익환 등 일가 3명이 1971년 9월 중정 여수출장소 소속 요원들에게 간첩 관련 혐의로 강제연행되어 5일간 고문·가혹행위를 당하고 석방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중정 여수출장소 소속 요원들이 막연히 피해자들이 간첩혐의자와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예단만으로 적법(適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그 혐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가혹행위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 석방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2. 중정 여수출장소 요원들은 1971. 9. 20. 오전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에서 김정례를 눈을 천으로 가린 채 경비정에 태워서, 9. 20. 오후 군수실에서 김익환을, 9. 21. 위 백야리에서 강덕례와 고순자를 경비정에 태워 각각 중정 여수출장소로 사용 중이던 여수시청 관사에 강제연행하였다.
3. 위 장소에서 5일간 김익환은 몽둥이 등으로 온몸이 멍투성이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하여 현재까지 왼쪽어깨가 내려앉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김정례는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적 폭행과 협박, 모욕, 가혹행위를 당한 후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기출하여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고, 강덕례는 무차별

적인 폭행을 당하여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4. 이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은, 문명(文明)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야만적 인권유린(人權蹂躪) 사건이며, 동시에 고립된 섬마을에 거주하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弱者)가 당시 정권의 과도(過度)한 반공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수십 년간 고통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를 외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5. 따라서 국가는 수사착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연행,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라-39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신청인】 김기웅

【결정일】 2006. 11. 28.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섬마을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익환(당시 42세), 강덕례(당시 32세), 김정례(당시 26세)가 1971. 9. 20.경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소속 직원들에게 간첩 관련자로 강제연행되어 당시 여수출장소 조사실로 사용되던 여수시청 관사(현 동문동사무소)에 5일간 감금되어 고문·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지금까지 정신장애 등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청인 김기웅(피해자 강덕례의 장남)은 그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국가를 대상으로 싸움을 해봤자 패소할 뿐이다”라는 반응을 들었고, 2004. 10. 29. 국가정보원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으나,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 여부 판단 불가”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신동아』(2004년 11월호)에 “간첩 누명 쓰고 혹독한 고문 받은 두 여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첨부해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국가정보원에서는 “당시 소장은 1975. 10. 중정에서 면직된 후 미국 이민을 가서 현재 근황을 알 수 없고 당시 근무한 직원은 신청인 관련된 내사나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결국 신청인은 이상의 내용을 담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자 김익환 등 고문·가혹행위 사건을 2006. 12. 5. 진실규명 신청하게 되었다.

II. 의혹 사항1)

1. 강제연행, 불법구금 여부

피해자들과 한 동네에 살던 황OO가 6·25 때 부역을 한 이OO과 피해자들이 관련이 있다고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에 체포하여, 그것을 빌미로 적법절차 없이 강제연행, 불법감금되었는지 여부

2. 고문, 가혹행위 여부

강제연행된 피해자들이 1971. 9. 20.경부터 5일간 당시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던 여수시청 관사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는지 여부

1) 신청인 김기웅이 제보하여 박은경 기자가 발굴 취재한 “간첩 누명쓰고 혹독한 고문 받은 두 여인의 잃어버린 30년”(『신동아』 2004년 11월호) 보도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음, 「사건기록」 13~20쪽

3. 고문후유증 존재 여부

피해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 김정례가 고문후유증으로 심각한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현재까지 결혼을 못하고, 피해자 강덕례 역시 고문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였는지 여부

Ⅲ.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전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범위 중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중대한 인권침해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등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고문·가혹행위를 비롯하여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개인의 삶의 파괴, 가족관계 해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피해자 김익환 일가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통합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 6. 13.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조사 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이 사건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의혹사항에 대해 진실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조사하였다.

- 『신동아』 2004년 11월호 보도기사
이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내용을 담은 보도내용
- 『여수시청 1975~1976 관사매각관계철』
1971년 당시 ‘여수시청 관사’의 위치 확인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1972. 「여수시 항공사진 파일」
1971년 당시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의 위치 확인 자료
- 국가정보원 관련기록 부존재
국정원의 회신에 의하면²⁾,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접수대장이나 내사 사건

2) 2006. 7. 18. 「국가정보원 회신문」(수조-2569), 「사건기록」 220~221쪽

부 기재 등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영장발부 관련 조회결과 관련 문서의 보존연한(15년)이 지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³⁾, 관할 여수경찰서 및 여수해양경찰서에 조회결과 당시 경비정 운행일지는 보존연한이 지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⁴⁾

2. 진술청취

이 사건 피해자 및 목격자, 마을주민 등 참고인 30명에 대해 총 60회의 진술청취 조사를 진행하였다.

- 피해자들의 진술
연행 과정, 고문·가혹행위, 고문후유증에 대한 진술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마을 주민 17명의 진술
피해자들의 연행 여부, 피해자들이 고문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고문후유증으로 고생을 한 점 등 진술
- 당시 간첩 관련 제보자 황OO의 진술
간첩 관련 제보경위,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로 사용된 여수시청 관사에서 피해자 김익환과 김정례를 목격한 사실
- 前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근무자 2명의 진술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의 운영실태, 임시사무실 사용 여부 및 장소, 여수출장소 근무자에 대한 진술

3) 2006. 11. 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총무과-3565), 「사건기록」 747쪽
2006. 10.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사무과-6838), 「사건기록」 744쪽
4) 2006. 11. 22. 「여수경찰서」(경무과-7679), 「사건기록」 771쪽
2006. 11. 06. 「여수해양경찰서」(경비통신과-5183), 「사건기록」 748쪽

3.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감정⁵⁾

피해자들의 현재 정신상태 및 고문과 정신장애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 2006. 7. 10.부터 8. 7.까지 5회에 걸쳐 감정인(정신과 전문의 조중근 박사)의 진료실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 심리검사를 실시

V. 조사결과

1. 사건 발생의 배경

가. 시대적 배경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인해 개인의 사상과 행동이 극도로 제약당한 측면이 있다. 특히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이 1969년 3선개헌을 통해 집권연장을 기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게 커지면서 많은 시국사건이 발생하였다.

시국사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간첩 사건인 바,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란 극형을 면하기 어려운 최고의 죄목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⁶⁾ 1953년 7월 이후 1990년에 이르는 37년 동안 매해 평균 10건 정도 간첩 사건이 발표되었고, 김익환 일가 사건이 있었던 1971년에는 13건의 간첩 사건이 발생하였다.

간첩 사건은 1970년을 정점으로 '남파' 간첩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월북 및 행불자가족', '납북귀환어부', '재일동포'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한 바, 위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북한과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한국 사회에서 인적·물적

5) 2006. 9. 20. 정신과 전문의 조중근 박사의 '강덕례, 김정례에 대한 정신의학적 보고서', 「사건기록」 595~617쪽

6)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399~421쪽

기반이 취약한 소수자 그룹에 속하여 반공정책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처지에 있었다.

1971년에는 간첩 사건 외에 시국사건도 유난히 많이 발생한 바,⁷⁾ 유신체제의 등장을 알리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는 등 국가안보태세 확립이 강조되었다.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은 1971. 9. 여수 지역의 한 섬마을에서 월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사회 반공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한 실례이다.

나. 피해자들의 환경

1971년 당시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는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18.5km 떨어진 섬마을이었다. 1929년에 세워진 백야도(리) 등대는 여수와 목포간 항로의 주요 표지로서, 육지로 통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과 개인 소유의 배뿐이었다.⁸⁾ 백야리 거주민인 김익환 일가는 장남 김학봉, 피해자인 차남 김익환, 삼남 김인환, 사남 김영휘 등 4형제이고, 피해자 강덕례는 김인환의 처이고 피해자 김정례는 김학봉의 딸이다.⁹⁾

사건 발생 당시 김익환(당시 42세)은 화정면사무소 부면장으로서 상록수 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1971. 9. 17.)을 받은 청렴 공무원이었고,¹⁰⁾

-
-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사건사전'
- 2. 14.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3.~4. 학생들의 교련반대 시위
- 4. 27. 제7대 대통령선거 및 그 부정 규탄 시위
- 8. 23. 실미도 부대원 탈출 사건
- 8. 27. 사법부 파동
- 10. 15. 위수령 발동과 공수병력 학내 투입(대학생 강제징집)
- 11. 13.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 12. 6. 국가비상사태 선언
- 12. 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변칙 통과
- 8) 화정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open_content/zone/hwajung) 「화정면 백야리 소개」
- 9) 2006. 7. 13. 「김기웅 진술조서」 2쪽. 「사건기록」 190쪽

피해자 강덕례(당시 32세)는 육지인 세포리에서 위 김인환에게 시집을 와서 모내기 등 농사일을 잘해서 동네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로 데려가려 하였으며, 성격이 활달하여 놀기를 좋아했다.¹¹⁾

김정례(당시 26세)는 아버지 김학봉이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가하면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작은아버지 김익환의 양녀로서 함께 살았으며, 큰 키에 얼굴이 예쁘고 음식도 잘해서 동네잔치 때마다 불러 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은 처녀였으며,¹²⁾

신청인 김기웅(당시 12세)은 피해자 강덕례의 장남으로 1971년 화정중앙초등학교 졸업 후 여수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화정면 백야리를 떠나 육지로 유학하였기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¹³⁾

다. 신고 경위

이 사건의 발단은 간첩혐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바, 피해자 강덕례는 “당시 조사를 하던 사람들이 ‘황OO를 아느냐, 황OO가 말하기를 당신이 보리밭에서 이OO은 간첩이라고 말했다더라. 그래서 당신을 잡아다 취조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06. 9. 12. 조사).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황OO는 1971년경 유창회운이라는 여객선 선박회사에서 입출항 점검과 화물 송부일을 하였는데, 1971. 9. 초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OO¹⁴⁾의 소개로 여수 충무동에 있는 선술집에서 김OO¹⁵⁾를

10) 2006. 7. 26. 「고갑석 진술조서」 2쪽. 「사건기록」 309쪽

11) 2006. 7. 27. 「김주엽 진술조서」 2~3쪽. 「사건기록」 258~259쪽

12) 2006. 7. 26. 「김용환 진술조서」 2쪽. 「사건기록」 265쪽

13) 2006. 7. 13. 「김기웅 진술조서」 2쪽. 「사건기록」 190쪽

14) 황OO는 당시 외삼촌 고OO이 여수시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있어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때 사무장으로 있던 김OO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15) 황OO가 김OO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장 OOO의 매제이고 여수시 남면 출신이라고 진술하여 김OO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OOO 부인 김OO의 호적을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기록상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남면 24개 마을이장과 16개 어촌계장들과 유선전화 통화를 통해 탐문하였으나 김OO를 찾지 못하였음. 「사건기록」 350~351쪽

만나 술을 마시며 당시 개최중인 남북적십자회담¹⁶⁾을 주제로 대화하였다. 김 OO가 지나가는 말로 ‘주변에 전쟁 때 부역했던 사람 없냐고 묻기에 별 생각 없이 ‘이OO은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고 6·25 때 인민군에 부역한 사실이 있다. 이OO이 같은 동네 사는 김익환씨 어머니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고향을 떠났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갑자기 고향(화정면 백야리)에 나타나 풍수를 본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후 10여 일쯤 지나 김 OO와 김OO을 만났더니, 김OO가 ‘내 매제가 중앙정보부 여수소장인데, 이OO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봐주면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고향(화정면 백야리)으로 가서 평소 조카라고 불렀던 김정례에게 물어본 바 ‘오빠, 그 사람 이북으로 가버렸어요’라는 대답을 들었고 김OO에게 그 사정을 그대로 전한 일이 있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장인 O소장¹⁷⁾에게 위 사건을 직접 신고한 사실은 없다. 아마도 자신의 말을 들은 김OO가 O소장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06. 5. 18. 및 9. 22. 조사).¹⁸⁾

신고 접수에서 연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위 O소장의 전임이었던 문OO은¹⁹⁾ 경험상 대공협회의 중요사항은 중앙정보부 광주지부에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자체 내사를 진행하여 중요사항이 밝혀지면 광주지부에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06. 8. 30. 조사).

16) 재정경제부 남북경제협력과에 따르면 1971년 18회에 걸쳐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음.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 (5회,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제1차 : 8. 20, 제2차 : 8. 26, 제3차 : 8. 30, 제4차 : 9. 3, 제5차 : 9. 16.

*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13회,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제1차 : 9. 20, 제2차 : 9. 29 등 11회 진행

17) ‘O소장’은 ‘OOO’으로 밝혀짐

18) 2006. 9. 22. 「황OO 2회 진술조서」 2쪽, 「사건기록」 622쪽

19) 2006. 8. 30. 「문OO 진술조서」 3쪽, 「사건기록」 466쪽

라. 소결

현재 국가정보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접수대장이나 내사사건부 기재 등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나, 위 황OO가 김OO로부터 “OOO 소장이 좋은 직장을 구해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부역자 출신 이OO의 활동과 행적이 의심스럽다, 고향인 화정면 백야리에 나타나 풍수를 본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김익환의 어머니 집에서 숙식을 해결한 일이 있다. 김정례가 이OO이 북한으로 갔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김OO가 OOO 소장에게 제보하였고, 여수출장소 근무자들이 이OO의 간첩행위 및 피해자들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제연행·불법감금 여부

가.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김익환은 모범 공무원인 상록수 공무원으로 뽑혀 1971. 9. 17. 대구문화기념관에서 대통령 표창²⁰⁾을 받고 사나흘 동안 모범부락 시찰 등 행사에 참여한 후, 1971. 9. 20.경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화정면사무소에 복귀하자마자 출장명령이 있어 막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여천군청 군수실에서 행정좌담이 있다며 여천군청 군수실로 오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정기여객선이 없어 화정면에서 私船(개인배)을 얻어 타고 여수 선착장에 도착하니 군수의 관용차량(1111호)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 그 차를 타고 여천군청에 도착하였다.

여천군청 군수실에는 박남칠 여천군수,²¹⁾ 이교상 내무과장,²²⁾ 임신태 행정과

20) 2006. 8. 11. 여수시청에서 입수한 ‘김익환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수상경력에 “1971. 9. 17 대통령표창” 기재, 「사건기록」 359쪽

21) 「여수시 역대 시장, 군수 명단」에 “박남칠(1971. 8. 20~1972. 1. 25) 여천군수 역임”, 「사건기록」 207쪽

22) 「이교상 인사기록카드」 “1970. 5. 31~1972. 9. 17. 여천군 내무과장 역임”, 「사건기록」 485쪽

장²³⁾이 있었고 박남칠 군수가 '상을 받아 축하한다'라며 5분 정도 짧은 대화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명미상의 외부인들이 와 '함께 가지지요'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강제로 데려갔다.²⁴⁾

연행된 곳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기와집이었고, 거실 같은 다다미방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받고 5일 후인 1971. 9. 24. 석방되었으며, 석방 후 2~3년 뒤에 그곳이 '여수시청 관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2006. 5. 17. 조사).

피해자 김정례는 "1971. 9. 20. 오전 김익환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 서너 명이 찾아와 김익환 집을 수색하였다. 그 와중에 강덕례와 김인환이 왔다. 그들은 '네가 김정순(김정례의 아명)이냐고 물었고 '네'라고 대답하니 다짜고짜 천으로 눈을 가린 채 양쪽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 배에 태워 연행하였다. 그 후 눈을 가린 천을 풀어주어 주위를 살펴보니 책상 하나가 놓여 있는 조그만 방인데,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구에 불이 켜져 있고, 의자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6. 26. 조사).

피해자 강덕례는 "자신과 남편 김인환, 황OO(황OO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김정례를 경비정에 태워 연행해 갔으며, 김정례가 연행된 다음 날인 9. 21. 낯선 사람들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시숙 김익환의 집에 찾아와 집을 쭉대밭으로 만들기에 왜 그러냐고 묻자 이OO이 보낸 편지를 찾는다고 하였다. 자신과 김익환의 처 고순자가 불을 때려고 아궁이 옆에 놔두었던 책더미에서 이OO에게서 온 노란봉투에 들어있는 편지²⁵⁾를 찾아 그 사람들에게 주자 자신과 고순자²⁶⁾의 눈을 가린 채 경비정에 태워 연행하였다. 낯선 사람들이

23) 「임신택 인사기록카드」 "1971. 9. 6~1973. 12. 27 여천군 행정계장 역임", 「사건기록」 364~365쪽

24) 『신동아』(2004년 11월호) 보도기사 - 김익환은 강성준과 차아무개가 군수실에서 연행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사건기록」 15쪽

25) 2006. 5. 17. 「김익환 진술조서」 5쪽, 「사건기록」 38쪽
- 김익환이 이OO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OO이 "조상님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냄

눈을 가린 것을 풀어주었을 때 방같이 생긴 곳에 책상이 하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9. 12. 조사).

나. 목격자 진술

당시 마을주민 고영자는 큰집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경비정을 탄 사람들이 김정례를 데려갔다고 하여, 김익환의 집에 가니 작은어머니(강덕례)가 낫을 놓고 앉아 있더라고 진술하였으며(2006. 7. 27. 조사),

마을주민 김주엽은 1971. 9. 중순경 손윗동서와 시누이 2명과 함께 밭에서 마늘을 심고 있을 때 선착장으로 경비정 한 척이 왔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 서너 명이 내려 마을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일을 마친 후 집에 있던 딸(당시 6세)의 이야기를 듣고 김익환의 집에 가보니 집안이 온통 난장판으로 사방에 책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방안에도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으며, 후에 마을사람들로부터 김정례가 경비정에 실려 연행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5. 17. 사실확인서).

마을주민 김명환, 김윤자, 김용환, 김영휘, 손의봉, 신연지, 고영채, 고근석, 고영태, 김남심, 김수석, 최말심, 강활현, 고영자는 1971. 9.경 김익환, 김정례, 강덕례가 연행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연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5. 16. 또는 5. 17. 각 사실확인서, 2006. 7. 26. 조사).

당시 화정면사무소 직원 고갑석은 1971. 9.경 김익환이 대구에 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상 직후 한동안 결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06. 7. 26. 조사).

황OO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사무실로 사용된 ‘여천군청 관사’(당시 여수시청 관사, 現 여수시 동문동사무소 위치, 관문동 517번지)는 기와집에 마당이 넓었고 들어가니 문 바로 입구 쪽에 있던 사무실에 김익환이 있었고, 입구에서

26) 고순자는 강제연행 당일에 석방되었음

정면으로 떨어진 방안 쪽에 김정례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06. 5. 18. 및 9. 22. 조사).

다. 여수출장소 근무자 진술

前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장 문OO은 대공협이자 연행이나 가택 수색시에는 영장을 제시하거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때에 따라 경찰에서 나왔다고 위장하기도 했고, 당시는 중앙정보부 말이면 다 되는 시기였기에 여수경찰서에 말만 하면 얼마든지 경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2006. 8. 30. 조사).

前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첩보망원 김OO(문OO, OOO이 중정 여수출장소장으로 있던 1970~75년 동안 첩보망원으로 활동)은 前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장 문OO과 함께 해경에서 운영하는 경비정을 타고 화정면 백야리 부근의 섬마을에 가서 누군가(본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임)를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²⁷⁾

라. 소결

前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장 문OO은 당시 대공협이자 연행이나 가택 수색시에는 영장을 제시하거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때에 따라 경찰에서 나왔다고 위장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며, 당시 마을주민들도 피해자 김정례와 강덕례가 낯선 사람들에게 연행되어 경비정을 타고 갔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직원들이 1971. 9. 20. 오전 김익환의 집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 김정례의 눈을 천으로 가린 채 경비정에 태워 강제연행하였고, 1971. 9. 20. 오후 군수실에서 김익환을 강제연행하였으며, 1971. 9. 21. 이OO의 편지를 찾기 위해 김익환의 집을 수색하고 고순자로부터

27) 2006. 9. 18 김OO 진술조서 11쪽, 「사건기록」 570쪽

노란봉투에 들어있는 이OO의 편지를 받은 후, 강덕례와 고순자를 경비정에 태워 강제연행하여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로 사용하던 여수시청 관사에 불법구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고문·가혹행위 여부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 김익환은 “1971. 9. 20.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조사실로 사용된 여수시청 관사의 다다미방 같은 곳으로 연행되자 수사관 3명이 몽둥이로 ‘이OO은 6·25 때 부역자이며 현재 고정간첩인데, 너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라며 이OO이 있는 곳을 대라고 강요하면서 몽둥이로 치고 뺨도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오후 내내 두들겨 뺐다. 그 중 한 명은²⁸⁾ 차경철로 1948.~1950.경 고향인 ‘화정지서’에 근무하여 얼굴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밤에 곰곰이 생각하니 1~2년 전에 이OO에게서 편지가 온 적이 있어 다음날 수사관들에게 이OO의 편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OO의 편지 이야기를 들은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더니 세단 차를 타고 나갔으며, 여천군청 내 무과장 이교상, 행정계장 임신탉이 면회를 와서 ‘이 사람은 상록수 공무원이고 하니 좀 봐주라’고 말하고 갔다. 그 다음날 집사람(고순자)이 다녀갔는데 대화도 못하고 5분 정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넷째날, 황OO가 조사실로 들어와서 얼굴을 보았지만 직접 대화하지 못했다. 다섯째날, 오전 이OO을 대면시켜 주어 이OO이 잡혀 와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이OO은 ‘나 때문에 동생까지 고생을 한다, 이제 석방되어 집에

28) 2006. 9. 1. 전남지방경찰청 「차OO 인사기록카드 사본」, 「사건기록」 489쪽

- 김익환은 차경철이 화정지서에 근무하여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문OO이 전직 경찰 출신 차OO을 첩보망원으로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차OO이 화정지서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차경철과 차OO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차OO은 1995. 5. 9. 사망하였음.

가는데 차비가 없다'고 하기에, 주머니에서 3천 원을 꺼내주고 헤어졌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이OO을 만난 것을 말하지 말 것', '조사받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 것', '간첩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 것'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각서를 쓰고 석방되었다. 석방 후 화장실에 갈 때도 작대기를 짚고 갈 정도로 아팠고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동네사람들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볼 때는 아픔을 참고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했으나 안 보일 때는 담벼락을 짚고 절뚝절뚝 걸어다녔고, 몽둥이에 맞아서 왼쪽 어깨가 내려앉아 양복 상의에 어깨심을 3개나 더 넣어야 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06. 5. 17. 조사).

피해자 김정례는 “눈을 가린 천을 풀어줘 주위를 살펴봤더니 책상 하나가 놓여 있는 조그만 방인데²⁹⁾,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구에 불이 켜져 있었고 의자에 낫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다가 다가와 갑자기 발로 머리를 차 쓰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 남자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패대기치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했고, 벽에 세워져 있던 몽둥이를 가져와 마구 두들겨 패면서 ‘대답하기 그렇게 힘들어, 한마디면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 ‘이OO하고 북한에 갔다 왔잖아, 대답해’라고 진술을 강요하였다. 그 남자는 머리, 얼굴, 등, 다리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때리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 바짝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짹짹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곧 실신하였다. 눈을 떴을 때는 팬티까지 모두 벗겨져 있어 다시 정신을 잃었다. 한참 지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발가벗겨져 있었다. 책상 앞에 남자 두 사람이 있어 ‘제 옷 주세요, 제 옷 주세요’ 하면서 옷을 달라고 하자,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막대기로 양쪽 젖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히죽거렸고, ‘이OO이 간첩이라고 하면 옷 주지’, ‘이북 갔다 왔다고 불면 몸 가리게 수건이라도 한 장 줄 텐데’하며 계속 찢렸다. 다른 한 남자는 ‘네가 그러고도

29) 2006. 6. 26. 김정례가 조사를 받던 장소를 직접 그려서 제출함, 「사건기록」 142쪽

살아서 나갈 것 같으나, ‘그깃 몸뚱이 발가벗겨진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북 몇 번 갔다 왔어’, ‘말 안 해’, ‘이 젓통을 도려낼 년’, ‘여기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쥐새끼를 죽여 없애는 것보다 쉬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O O OOOOO OO O OOO OOOO 의식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으며, 온 몸이 아팠고 하체가 무척 아파서 몸을 둘러보니 다리 쪽으로 하혈을 하여 통증이 심하였다. 며칠 후 거기서 조사받았다는 것, 연행되어 왔다는 말을 했다가는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듣고 석방되었다. 석방 후 집에서 옷을 벗어 보니 온몸이 푸른 옥색이었고 섬이라서 병원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고 혹시 누가 알까봐 동네도 나다니지 못했다. 마을에 사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석방된 지 한 달도 안 돼 겨우 차비만 쥐고 고향마을을 떠나 집안 식구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서울로 왔다. 서울 육촌 오빠 집에서 얼마간 살면서 식당, 공사판 등을 돌아다니며 온갖 험한 일을 하였으며, 신문지를 깔고 다리 밑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다. 석방되어 집에 온 후부터 계속 하혈을 하였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너무나 심했다. 한 달쯤 후 서울에 와서도 너무 아파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았으나, 그 후에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그 뒤로도 계속 하혈을 하였다. 간혀서 고문당할 때 느꼈던 공포심이 너무 끔찍했기에 지금도 밤에 잘 때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단지 않으며, 길거리를 가다가 황OO 비슷한 사람만 봐도 놀라고, 그때 고문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눈에 띄거나 비슷한 목소리만 들려도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혹시 누가 다시 잡아가지나 않을까 무섭고, 길거리를 다녀도 불안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두렵다”라고 진술하였다(2006. 6. 26. 조사).

피해자 강덕례는 “처음에 낯선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앉았고, 어렸을 때부터 시집와서 생활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 사람들이 ‘이OO에게 밥을 해줬냐, ‘이OO이 잘 방을 닦아주고 이부자리 펴줬지’, ‘보리밭 매러 가서 이OO이 간첩이라는

소릴 한 적 있지'라고 말하면서 신발짝을 벗어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질질 끌고 다녀서 실신을 했다. 계속 모른다고만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간첩에게 밥해 먹이고 재워줬으니 그간 얼마나 통간을 하고 살았냐, '이 OO이 간첩이라는 소리를 해놓고 왜 안 했다고 하나며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넘어뜨리고 몽둥이로 때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처박아서 몇 번을 까무라쳤다. 실신하였다가 깨어나니 방이 아니라 거실 같은 곳에 떨치를 꿰이는 큰술 같이 생긴 것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머리채를 잡아서 술에 빠뜨릴 듯이 잡아채 던졌는데, 술에 빠지지 않고 옆으로 넘어지자 그 사람들이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또 실신하였다. 그 사람들이 정체모를 약도 먹었는데, 약을 먹고 깨어나보니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 젊은 여자가 '오메 그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깨어나지 말지'라고 말했다.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한 후 내보내주어 복도로 나오는데 갑자기 '광주 본서에서 알면 시끄러워진다'며 광주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 집에 가라고 하며 방으로 밀어 넣었고 그들이 방 앞을 지나가자 보내주었다. 석방 후 몸이 너무 아파 늘 누워서 지냈고 친정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으며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똥물까지 먹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9. 12. 조사).

나. 목격자 진술

황OO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000 소장의 호출을 받고 남도여관에서 만났으며, 前 여수경찰서 강력계 출신인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첩보망원 OO³⁰⁾의 안내로 여수출장소 조사실로 사용된 여천군청 관사에 가서 입구에서 정면으로 떨어진 방 안쪽에 김정례가 있는 것을 보았고, 000이 있는 자리에서 김익환이 OO에게 뺨을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2006. 9. 22. 조사),

당시 마을 주민 김윤자는 강덕례가 석방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팔과 다리

30) 문OO이 후임 000 소장이 전직 경찰 출신인 'OO'을 첩보망원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탐문조사한 바, OO은 2005. 8. 29 사망하였음

를 주물러주다가 보니 다리가 온통 멍이 들어 있었고 온몸이 거무스름했다고 진술하였으며(2006. 5. 17. 조사),

김주엽은 강덕례가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다가 구들장이 무너진 일이 있을 정도로 활발했는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몸이 아프다며 아무 곳이나 누웠다고 진술하였고(2006. 7. 26. 조사),

고영자는 강덕례는 석방된 후에 ‘가다마이’(양복)를 입은 외지 사람들만 보면 경기 부리듯 쓰러지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06. 7. 26. 조사),

김명환은 강덕례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끌려갔다 석방된 후에는 말수가 적어지고 항상 피곤한 모습이었으며 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06. 7. 26. 조사),

손의봉은 강덕례가 석방된 후 7년이 지났지만 곳은 날이면 온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2006. 7. 26. 조사),

고영자는 김정례가 석방된 후 집에 왔다가 입고 있던 몸빼를 내려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를 보여주었는데 온통 먹물이 든 것처럼 변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06. 7. 26. 조사),

김용환은 김정례와 한 살 차이여서 잘 어울려 놀았는데, 음식도 잘하고 항상 웃으며 활달했는데, 조사받고 석방된 후에는 마을에서 본 적이 없고 근황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2006. 7. 26. 조사),

김익환의 처 고순자는 김익환이 석방된 후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간신히 다녀왔으며 어깨죽지와 허리, 팔다리가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2006. 5. 19. 조사),

김익환의 막내동생 김영휘는 김익환, 강덕례가 끌려갔다 석방된 후 집에서 치료를 받았고 김정례는 석방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7. 26. 조사).

이외에 당시 마을주민 고영채, 고근석, 고영태, 김낭심, 김수석, 최말심, 강활현, 김인구 등이 김익환, 강덕례가 끌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김정례는 갑자기 사라져서 이후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등(2006. 5.16.~17. 「마을주민 사실확인서」) 여러 사람들이 김익환 일가의 피해사실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다. 정신감정 결과

두 여성피해자 김정례, 강덕례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후유장애를 호소하여 이들의 현재 심리상태 및 고문과 정신장애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다. 정신감정은 정신과 전문의 조중근 박사가 진행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³¹⁾

피해자 김정례는 사건 이후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며 폐쇄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현재도 당시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상황, 활동을 피하려고 하며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고,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의 남자만 봐도 실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OO OOO OOO OO OOOO O OO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먹이다 ‘평생 잊고 살았으면 했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31) 2006. 9. 20. 정신과 전문의 조중근 박사 ‘강덕례, 김정례에 대한 정신의학적 보고서’, 「사건 기록」 595~607쪽

- 첫째, 강덕례, 김정례의 진단적 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기분부전증(만성 우울증)’이다.
- 둘째, 강덕례, 김정례의 정신과적 문제들은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 강덕례, 김정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넷째, 정신과 문제 이외의 의학적 문제들이 당 사건에 대해 갖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밀한 의학적 평가가 요구된다.
- 다섯째, 증상들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는 바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치료 후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은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인 바 새로운 사실들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강덕례, 김정례의 진술은 진실된 것으로 사료된다.

거의 실신할 듯하여 보호자를 불러 진정시켜야 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적 활동과 직업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사건이 재경험되는 듯한 느낌과 불안, 공포, 사건에 대한 악몽, 경계심의 증가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³²⁾에 해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피해자 강덕례는 상담 도중 특히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몹시 흥분하며 불안해 하였고, 시간이 오래 되어서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지만 사건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 불안, 공포, 악몽, 경계심 증가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라. 소결

일반적으로 고문, 가혹행위나 OOOO 밀실에서 은밀히 자행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그 정확을 살피고, 상해나 후유증에 근거하여 가혹행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인정된다.

당시 큰 키에 얼굴이 예쁘고 음식도 잘해서 동네잔치 때마다 불러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은 26세의 처녀 김정례는 석방 후 가혹행위 OOOOO OOO OO 후유장애로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남편 김인환에게 시집 와서 농사일을 잘하고 성격이 활달하였던 32세의 강덕례는 석방 후 가혹행위로 인한

3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p.42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다음의 몇 가지 핵심적 사항으로 구성됨.

첫째,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이 있어야 함. 둘째,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은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공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셋째, 극심한 외상에 노출된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특징적인 증상들은 외상적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기, 외상과 관련된 자극들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그리고 일반적 반응성들의 둔화, 각성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의 지속 등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함. 넷째, 전체 증상들이 나타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 함. 다섯째,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능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 등에 있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고통 또는 손상을 반드시 야기함.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SM-IV)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기준들에 부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후유증을 갖게 되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장소의 상태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굳이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마을 주민들이 당시 목격한 피해자들의 상해 및 후유증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가혹행위와 정신적 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당시 밀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김익환은 강제연행되어 몽둥이 등으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당하여 현재까지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김정례는 눈을 가리운 채 강제연행, 고립무원의 밀실에 감금되어 낯선 남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적 폭행과 협박, 모욕을 당하여 실신하였고, OOOO O OOOOO OO O OOO OOOO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을 갖게 되고, 고향을 떠나 가출하여 사회 활동 및 직업 생활을 하지 못하고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고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사건이 재경험되는 듯한 느낌과 불안, 공포, 사건에 대한 악몽, 경계심의 증가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강덕례는 남성들에게 집단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실신하였고,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현재도 사건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 불안, 공포, 악몽, 경계심의 증가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4. 중정 여수출장소의 개입 여부

가. 여수출장소 운영 실태

이 사건은 일체의 공식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보부라는 기구가 사건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OO은 지방조직인 ‘지부’와 그 산하 조직인 ‘출장소’의 근무인원 및 첩보망원 운영실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06. 8. 30. 조사).

서울에 중앙정보부 본부가 있고 각 도청 소재지급에 지부가 배치되며, 각 지부 산하에 출장소나 상담소 등이 분산되어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에 광주지부가 있으며 그 외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중요 지역인 여수에 출장소를 두어 운영하였다. 통상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부에는 수십 명의 중정 정식 직원들이 근무하였으나, 출장소 등 작은 단위의 근무지에는 대개 각 지부에서 파견된 1~2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실정이었다.

여수출장소의 경우 문OO이 근무하던 출장소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혼자서 근무하였으나, 후임 OOO 소장 때에는 1명이 더 추가 배치되었다. 출장소 등 작은 단위의 근무지에서는 파견 직원이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지 고용원을 이용하거나 통상 첩보망원이라 부르는 업무보조자를 두어 운영하였다. 첩보망원의 선발 및 관리는 주로 선임자들이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선발하였던 바, 그 인적 사항을 적은 첩보카드를 해당 지부에 보고하면 지부에서 신원조회와 면접을 통해 승인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첩보망을 운영하였다. 첩보망원에 대한 보수는 해당 지부에 청구하여 망원 관리자가 전달하는 시스템이고, 첩보수집이나 기타 지시사항은 망원 관리자가 직접 만나서 전달하여 보안유지를 담당하였다.

국가정보원의 회신에 의하면 1971년 당시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에 근무한

정식 직원은 000, 이00,³³⁾ 문00 등 3명이다.³⁴⁾

나. 당시 여수출장소 근무자

위 문00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김00을 첩보망원으로 활용했다고 진술하였다(2006. 8. 30. 조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1970년경 여수에서 첩보망원으로 발탁되어 문00, 이00와 함께 근무하였던 김00은 자신의 근무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06. 9. 18. 조사).

1971. 9.경부터 문00의 후임 000 소장, 차00, 00, 강00, 젊은 여급사와 함께 근무하였으며, 주로 밀수 관련 첩보를 전해주는 일을 하여 1~2개월에 한 번씩 첩보가 입수되었을 때만 중정 사무실로 출근했다.

000 소장은 당시 여수에서 제일 큰 남도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출장소 사무실로 사용하던 여수시청 관사에는 택시로 출퇴근하였다. 1~2개월에 한 번씩 밀수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보고하면, 밀수 관련 선원들을 그곳으로 불러 차00, 00에게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조사 후 각서나 서약서를 받고 석방하였다.

김00은 1975년경 000, 차00과 함께 밀수사건 관련 비리 혐의로 서울 광화문 새문안교회 앞에 있는 중앙정보부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첩보망원을 그만두었으며, 000은 '허봉용 밀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³⁵⁾

당시 0소장은 밀수 사건에 연루된 선원들을 여수출장소 조사실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경찰 출신의 차00, 00 등을 조사에 참여시켰으며, 수사경험이 없는 강00과 김00에게는 조사가 끝나면 조사내용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33) 김00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00은 보안대에서 근무하다가 중앙정보부로 온 사람이라 수사업무에 매우 뛰어났다. 2006. 7. 18. 국가정보원 회신문(수조-2569)에 의하면 이00은 1975. 3.경 사망함, 「사건기록」 220쪽

34) 2006. 7. 18. 「국가정보원 회신문」(수조-2569), 「사건기록」 220쪽

35) 1975. 12. 30. 경향신문, 「중정 여수출장소장 000 구속기사」, 「사건기록」 583쪽

각서를 쓰게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000의 「舊주민등록카드」에³⁶⁾ 부착된 사진을 위 문00, 김00, 황00에게 보여준 바, 세 사람이 모두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장으로 근무한 '0 소장'이 맞다고 진술하였다.³⁷⁾

김익환은 『신동아』(2004년 11월호)와 인터뷰하면서 여천군청 군수실에서 강성준과 '차아무개'에게 연행되었다고 하였는데,³⁸⁾ 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차경철'을 고향인 화정지서에 근무하여 얼굴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몽둥이로 치고 간첩이라고 시인하라며 뺨을 때리고 발길질도 했다고 진술하였다(2006. 5. 17. 조사).

황00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에 '강 수사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06. 5. 17. 조사), 강덕례는 조사받을 때 누군가를 '강 주사'라고 불렀는데 자신이 진주 강씨이기에 조사실 사람들 중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006. 9. 12. 조사).

이에 강성준 또는 강 수사관, 차아무개 또는 차경철의 인적 사항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한 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하였다.

당시 여수 공화동 예비군중대장 김00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에 근무한 친구 강00을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숙소로 사용하던 남도여관 앞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³⁹⁾

문00은 000이 강00을 첩보망원으로 뽑아서 활용하였는데 보통 키에 몸이 뚱뚱한 편이고 목 뒤에 혹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2006. 8. 30. 조사),

36) 2006. 8. 21. 전남 고흥읍사무소 「000 주민등록표」 입수, 「사건기록」 446쪽

37) 000은 중앙정보부를 사직한 후 1980. 12경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기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그의 아들 '000'과 전화통화를 시도한 바, "부친이 현재 뇌출혈 등을 이유로 4년간 와병중이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 일로 인해 부친이 충격을 받아 돌아가실까 우려되며 자신으로서는 부친이 이런 문제를 모르는 채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우리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사건기록」 683~684쪽

38) 『신동아』(2004년 11월호) 보도기사, 「사건기록」 15쪽

39) 2006. 7. 27. 당시 공화동 예비군 중대장인 김00 면담, 「사건기록」 325쪽

김OO은 강OO이 여수상업고등학교 야간 출신으로 팔자걸음이 인상적이고 머리 뒤에 혹이 있으며, 중앙정보부 발송공문을 관공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06. 9. 18. 조사).

강OO의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입수하여⁴⁰⁾ 그의 사진을 문OO, 김OO에게 각각 보여준 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첩보망원으로 활동한 강OO이 맞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익환이 언급한 강OO은 여수출장소 첩보망원으로 활동한 강OO으로 판단된다.

또한 前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장 문OO은 전직 경찰 출신의 '차OO'을 첩보망원으로 뽑아 활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OO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⁴¹⁾ 입수하여 확인한 바, 차OO은 여수경찰서 화정지서(1953. 5. 30~1954. 4. 18) 및 여수경찰서 사찰계(정보과)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

차OO의 사진을 위 문OO, 김OO에게 각각 보여주니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첩보망원 차OO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김익환이 자신을 연행, 조사하였다고 언급한 차아무개 또는 차경철은 실재 인물 차OO인 것으로 판단된다.⁴²⁾

첩보망원으로 활동하였다는 OO에 대해 조사한 바, 황OO는 최 수사관이 자신을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조사실로 사용된 여천군청 관사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고, 그가 조사실에서 김익환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항의하자 정강이를 걷어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으며(2006. 5. 18. 조사), 최 수사관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 어깨가 벌어진 전형적인 수사관 타입이라고 진술하였다(2006. 9. 22. 조사).

위 김OO은 OO은 덩치가 컸고 강력계(형사과) 경찰 출신으로 시내 도박판과 주먹계의 시시비비를 중재할 정도로 꽤 알려져 있었으며, 권투시합 심판까지

40) 2006. 7. 27. 여수 동문동사무소 「강OO 개인별주민등록표」 입수, 「사건기록」 331~332쪽

41) 2006. 9. 1. 전남지방경찰청 「차OO 인사기록카드」 입수, 「사건기록」 489~491쪽

42) 차OO은 1995. 5. 9. 사망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보고 다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2006. 9. 18. 조사).

OO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⁴³⁾ 입수하여 확인한 바, 그는 여수경찰서 화정지서(1965. 10. 1~1966. 5. 8) 및 여수경찰서 수사계(형사과)에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 OO의 사진을 문OO, 김OO, 황OO에게 각각 보여주니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첩보망원 OO이 맞다고 하였다.⁴⁴⁾

당시 여수경찰서 정보과 직원 김OO은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에는 현지 채용한 강OO, 차OO, OO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수경찰서 등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정보보고를 받았고, 보고가 늦을 경우 “똑바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는 등 중앙정보부의 정식 직원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⁵⁾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여수출장소에 근무한 정식 직원은 OOO 소장 1명으로 파악되나, 전임 문OO이 운영하던 첩보망원 OOO과 OOO을 후임자 OOO이 일정기간 업무보조자로 활용하는 한편, OO, OOO 등을 추가 선발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직 경찰 출신의 OO, OOO 등 일부 첩보망원은 조사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여수출장소 사무실의 실재

위 문OO은 여천군청 관사를 여수출장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수시청 기록물관리과에서 입수한 여수시청 「1975.~1976. 관사매각관계철」에는 조사장소로 지목된 現 여수시 동문동사무소(여수시 관문동 517번지)가 여수시 총무과장 관사로 표기되어 있고, 사건 당시 여수시 항공사진을 입수하여 문

43) 2006. 9. 19. 전남지방경찰청 「OO 인사기록카드」 입수, 「사건기록」 591~594쪽

44) OO은 2005. 8. 29 사망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5) 바-2621(태영호 납북사건) 사건과 관련하여 2006. 11. 10. 김OO의 자택에서 진술청취 도중 그가 여수경찰서 정보과에 장기 근무를 하였기에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근무자에 대해 문의하였다. 「사건기록」 769쪽

OO, 김OO, 황OO 등에게 보여주자 세 사람 모두 現 동문동 동사무소 위치가 자신들이 말한 여천군청 관사(당시 여수시청 총무과장 관사로 사용)가 있던 자리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여수출장소 사무실은 여수시청 관사(現 여수시동문동사무소)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1. 진실규명

조사결과,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소속 직원들이 막연히 이OO이라는 인물이 간첩이라거나 피해자들이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예단만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그 혐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가혹행위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 석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9. 20. 오전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직원들은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김익환의 집에 들이닥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이OO이 북한으로 갔다고 황OO에게 말한 김정례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경비정에 태워 강제연행하였고, 9. 20. 오후 군수실에서 김익환을 강제연행하였으며, 9. 21. 강덕례를 경비정에 태워 강제연행하여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로 사용 중이던 여수시청 관사에 불법감금한 채 조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김익환은 강제연행되어 몽둥이 등으로 온몸이 멍투성이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하여 현재까지 왼쪽어깨가 내려앉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김정례는 눈이 가려진 채 강제연행, 고립무원의 밀실에 감금되어 낯선 남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적 폭행과 협박, 모욕을 당

하여 실신하였고, 0000 0 00000 00 0 000 0000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과 고통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을 갖게 되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가출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 및 직업 생활을 하지 못하고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럽고 고립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사건이 재경험되는 듯한 느낌과 불안, 공포, 사건에 대한 악몽, 경계심의 증가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강덕례는 남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실신하였고, 그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현재도 사건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 불안, 공포, 악몽, 경계심의 증가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은,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될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야만적 인권유린이다.

또한, 이 사건은 고립된 섬마을에 거주하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당시 정권의 과도한 반공정책에 희생양이 되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호소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고통을 안고 살아온 것을 외면해 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위 사건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2. 권고

국가는 수사착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연행,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영호 납북 사건

【결정사안】

태영호 선원들이 1968. 7. 3.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을 월선(越線), 북한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어로(漁撈)작업을 하여 반공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971. 3. 12.부터 1975. 4. 24.까지 4차례에 걸쳐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태영호 선원들은 4개월여 북한에 억류(抑留)되어 있다가 귀환(歸還) 후 여수 경찰서에서 34일 동안, 부안경찰서에서 30여 일 동안 불법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2. 태영호 선원들은 부안경찰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태영호가 월선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를 하며 몽둥이로 구타 등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한 상해(傷害)와 후유증(後遺症)으로 고통을 겪었다. 위 불법감금 등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를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정읍지청은 기소한지 11일 후 태영호가 '월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북한 경비정(警備艇)이 나포(拿捕)하였다'는 해군본부의 회신문(回信文)을 접수하였지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4. 정읍지원은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허위자백에 의존하여 아무런 물증도 없이 태영호가 북한으로 탈출하였다고 반공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5. 피해자들은 반공법 위반의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기피(忌避)와 승선(乘船) 거부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6. 이 사건은 1968. 11. 어부들의 납북(拉北)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환 납북어부들을 무조건 입건(立件)한 당시 수사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공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 정책에 의해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들이 피해를 당한 대표적 사례이다.
7.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2621 태영호 납북 사건

【신청인】 강대광 외 4인

【결정일】 2006. 12. 5.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의 경과

1968. 6. 4.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사는 강대광(선주), 정몽치(선장), 박헌태, 이종섭, 박상용, 강용태(이상 선원), 전남 여수에 사는 박종윤(기관장), 박종옥(선원) 등 8명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 소재의 위도항에서 목조기관선 태영호(원 소유자 정병채)에 승선, 출항하여 경기도 용진군 소재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작업(병치잡이)을 하던 중, 같은 해 7. 3.경 북한 경비정에 나포, 억류되었다가 약 4개월 후인 10. 31. 연평도 해상에서 풀려났다.

당시 이들은 한국 경비정에 견인되어 인천경찰서에서 3일간 조사를 받은 후, 11. 3. 선박 태영호의 주소지인 여수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산업법위반(어로저지선 침범) 및 반공법 위반(탈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송치의견¹⁾을

개진한 여수경찰서의 수사결과 보고를 받아들인 순천지청의 수사지휘²⁾에 따라 구금 34일 만인 12. 7. 전원 석방되었다.

한편, 순천지청은 주소지가 여수인 박종옥과 박종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다음, 1969. 4. 29. 그들의 수사기록과 함께 나머지 선원들의 주소지 관할 지청인 정읍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태영호 선원들 중 위도면이 주소지인 강대광, 정몽치, 박헌태, 이종섭, 박상용 등은 정읍지청이 사건을 이송받기 전인 1969. 3. 15. 부안경찰서 정보과로 연행되어 1개월 가량 불법감금되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풀려났다.³⁾

1969. 4. 29. 순천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검사 김제태)은 수사를 진행하여 9. 16.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 북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어로 작업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혐의로 여수거주자 박종윤, 박종옥과 부안거주자 강대광, 정몽치, 박헌태, 이종섭, 박상용 등 7명을 기소하였다.⁴⁾

1971. 3.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사 강신영)은 정몽치, 강대광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헌태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1971. 11. 28. 같은 지원(판사 김용구)은 박상용에게, 1973. 10. 31. 같은 지원(판사 심일동)은 이종섭에게, 1975. 4. 24. 같은 지원(판사 오탄)은 박종옥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들 6명은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⁵⁾

- 1) 「남북귀환어부 강대광 등 탈출 및 수산업법 위반 사건기록」 (이하 사건기록), 2권, 391쪽
- 2) “1. 남북귀환어부 중 범증이 없는 자 등은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 규정에 의거, 귀견대로 불기소 송치”
- 3) “1969. 3. 15. 부안경찰서 정보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 부안경찰서 정보과 수사보고서, 「조사기록 5권」, 1089쪽
- 4) 강용태는 남북 당시부터 몸이 아팠으므로 조사 및 기소에서 제외되었음
- 5) 박종윤은 선고 전에 사망하였음

이 사건은 2006. 3. 22. 태영호 선주 강대광을 비롯하여 선원 이종섭, 선원 박상용, 유가족 정태환(선장 정몽치의 아들), 유가족 박화심(선원 박헌태의 여동생) 등 5명이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사건의 쟁점 및 의혹 사항

1. 불법감금 여부

태영호 선원 8명은 여수경찰서에서 1968. 11. 3.부터 같은 해 12. 7.까지 34일 동안, 그리고 부안군 위도가 거주지인 선원 5명은 부안경찰서에서 1969. 3. 15.부터 40여 일 동안 구속영장없이 불법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1969. 3. 15. 부안경찰서 정보과 수사관들은 부안군 위도에 거주하던 태영호 선원 5명을 강제연행하여 월선 및 탈출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며 구타 및 물고문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3.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 월선, 탈출 여부

당시 태영호가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장소로부터 북쪽 지점에서 해군함정 52호가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의 경비정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경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태영호가 어로작업을 한 곳은 실제로는 남한 해상이었다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의 범위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생명권 침해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허위조작 사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본법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이 허위조작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속하고, 이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태영호 선원들이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해군본부 회신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가 정하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해당되므로 재심사유가 있어 이 사건은 기본법상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여야 할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가족

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 10. 10.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당시의 시대 배경,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내용, 수사과정과 고문 등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 여부,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 월선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위해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입수, 분석·검토하고 피해자, 수사경찰, 마을주민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1. 자료조사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문 : 10쪽
사건의 개요, 판결 내용, 판결에 인용된 증거자료 등 확인
- 전주지검 정읍지청 소장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 1,194쪽
사건발생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 증거자료목록, 진술내용, 혐의사실 등 확인
-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 20쪽
대검찰청이 발행한 월간지 『검찰』(1969년 9월호), 남북어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실태 자료, 내외문제연구소 주최 좌담회(1970. 8. 6), 북한 실정에 대한 남북어부들의 홍보발언 자료
- 언론 보도 : 3쪽

태영호 선원 등 납북어선 37척과 288명의 어부들이 풀려났다는 보도기사

2. 진술청취

- 피해자 진술
강대광, 이종섭
-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의 진술
김OO, OOO, 김OO 등 3명
- 마을주민 등 참고인 진술
김영산, 이춘식, 장춘섭, 강대남, 김상오 등 5명

V. 조사결과

1. 납북어선·어부 처벌의 배경

1960년대 후반 북한은 남한 어선을 적극적으로 나포, 선원들을 억류하여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하고 산업체와 유명 관광지를 견학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발달상을 홍보하는 데 이용하였던 바, 그 목적을 위해 고기떼를 따라 북한 해상으로 들어간 어선들뿐 아니라 북한 경비정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해상에까지 내려와 강제로 나포해 가기도 하였다.

이에 남한에서도 경비정을 보내 조업어선들의 어로저지선 접근과 북한 경비정의 남한 어선 나포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서고 있었으나, 고기떼를 따라 움직이며 바쁘게 조업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의로 월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통례였다.)⁶⁾

그러나 북한 경비정들의 무차별적인 남한 어선 나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나포 선원들이 남쪽의 지형지물, 관공서 및 경비초소의 위치 등을 말함으로써 북한 무장공비 침투를 위한 정보로 제공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당국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68. 11. 9. 내무부는 해상 조업중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수산업법과 반공법을 적용,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경향신문 1968. 11. 9. 기사). 남북어부 사건을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 행위로 이해하고 장기간 억류당한 고초를 위무하는 식으로 관용 처우하던 입장에서⁷⁾ 엄정 처벌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이 내려진 배경에는 1968. 11. 2. 울진·삼척지구에 대량 침투한 무장공비 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과 법원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어로저지선을 월선하여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반공법을 적용, 처벌하기 시작하였다.⁸⁾ 즉 검찰은 고의로 월선하지 않더라도 월선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미필적 고의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그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범의 외에 따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의사나 이동상태의 계속을 필요로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남북어부들의 월선행위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반공법 소정의 탈출죄를 구성한다”⁹⁾고 판결하였다.

결국 1968. 11. 이후부터 남북어부들은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납북되었다는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68. 7. 5. 선고, 68노158」

7) 임상현, 「남북어부의 죄책」, 『검찰』 (1969. 9.), 162쪽 ; 「사건조사기록」, 232쪽.

8) 「춘천지방법원 1968. 11. 12. 선고, 68노158」

9) 「춘천지방법원항소부 1968. 11. 12. 68노158」

사실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태영호 사건을 수사한 전 여수경찰서 정보과 형사 김종숙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되는 바, 그는 “납북어부들은 반공법 위반자였기에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하고 조사결과도 보고하였으며, 과장이나 계장이 혐의가 없는 자도 구속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으나, 무엇 무엇을 위반했으니 조서를 확실히 받으라고 지시하면 목이 달아나지 않기 위해서 구타를 해서라도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2006. 11. 10. 면담조사).

요컨대, 태영호 납북 사건은 납북어부에 대한 정부정책이 관용에서 처벌 위주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한 선례가 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2. 수사 경위

1968. 10. 31. 연평도 해상에서 풀려난 태영호 선원 8명은 한국 경비정에 견인되어 인천경찰서에서 사흘간 조사를 받은 후, 11. 3.부터 12. 7.까지 여수경찰서에서 34일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은 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거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이송되었다. 부안군 위도 거주 선원들은 이와 별개로 부안경찰서에서 1969. 3. 15. 30여 일 이상 불법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의 수사경위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건의 초기 처리과정

사건을 인천경찰서로부터 이송받은 태영호 선박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여수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은 태영호 선원들이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중 1968. 11. 25. 중앙정보부 광주지부로부터 “범죄 혐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귀가조치시키고 계속 동정을 내사, 찬양고무

행위 유무를 내사할 것(혐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입건 송치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¹⁰⁾

이에 11. 27. 여수경찰서는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월경, 불법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반공법 제6조제4항 및 수산업법 제20조제4항 등을 위반하였으나 납북된 지역이 위험지역이라는 인식과 월경 탈출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불구속 의견 송치 위계"라는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에게 보고하였고,¹¹⁾

11. 28. 순천지청(박상천 검사)은 "납북귀환 어부 중 범증 없는 자 등은 정보 및 보완업무 조정 감독 규정에 의거, 귀견대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수사지휘를 하였으며,¹²⁾ 12. 3. 여수경찰서는 이 사건을 순천지청으로 송치하였다.¹³⁾

12. 7. 순천지청은 태영호 선원 8명을 석방하고, 주소지가 여수인 박종윤과 박정옥만을 추가 조사한 후, 다음해인 1969. 4. 29. 나머지 선원들의 주소지 관할의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사건 전체를 이송하였다.

한편, 사건이 순천지청에서 정읍지청으로 이송되기 전인 1969. 3. 15. 부안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안군 위도에 거주하는 강대광, 정몽치, 박상용, 박헌태, 이종섭 등 5명을 강제연행한 후 30여 일 이상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석방하였다. 또한 위도 주민들을 상대로 이들이 북한을 고무·찬양하였는지에 대해 내사하였다. 1969. 7. 위 사실에 대해 부안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고, 부안경찰서장은 7. 19. 정읍지청장에게 보고하였다.¹⁴⁾ 위 보고서에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 등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10) 중광대 제82호, 1968. 11. 25. 「사건기록 4권」, 794쪽.

11) 여수경찰서 정보 2061-2075, 「사건기록 4권」, 795쪽.

12) 순천지청의 전언 통신문, 「사건기록 4권」, 797쪽.

13) 정지검 제503호, 정읍지청, 「사건기록 5권」, 1194쪽.

14) 부안경찰서 수사보고 요약, 「사건기록 5권」, 1090쪽.

나. 정읍지청의 수사 과정

1969. 4. 29. 순천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정읍지청은 6. 19. 박상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으로 7. 2. 정몽치, 7. 8. 강대광, 강용태, 박헌태, 이종섭에 대해 조사하였으며,¹⁵⁾ 태영호가 군사분계선을 고의로 월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 19. 국립중앙관상대에 태영호가 납북되었던 1968. 7. 3.의 기상상태 및 조류관계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¹⁶⁾ 이어 1969. 8. 12. 다시 해무청장에게 연평도 지역의 기상상태 및 조류관계 의뢰공문¹⁷⁾을 발송하였다.

이어 9. 9.에는 해군본부 법무감,¹⁸⁾ 해군인천경비부 사령관¹⁹⁾ 앞으로 1968. 7. 3. 연평도 근해 어로저지선 이남에서 어로 작업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어선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던 바, 9. 27. 해군본부로부터 태영호 선원들이 월선하지 않았으며, 북한 경비정이 남한 해상으로 넘어와 나포해 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위 해군본부 회신문을 받기 전인 1969. 9. 12. 정읍지청은 중앙정보부장에게 “납북된 지점이 군사분계선이나 월선한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조류와 해풍으로 어로 작업한 지점보다 상당히 북쪽 해상으로 이동되어서 어로저지선을 넘은 군사분계선 근처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조류나 해풍에 따라 동선을 월선할지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사건처리 협의요청²⁰⁾을 하였고, 나흘 뒤인 9.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태영호 선원 7명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하였다.²¹⁾

15) 박상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기록 4권」, 886쪽.

16) 정읍지청 발신의 공문서, 「사건기록 5권」, 1123쪽.

17) 정읍지청 발신의 공문서, 「사건기록 5권」, 1125쪽.

18) 정지검 제493호, 정읍지청. 「사건기록 5권」, 1162쪽.

19) 정지검 제492호, 정읍지청. 「사건기록 5권」, 1164쪽.

20) 정지검 제503호, 정읍지청. 「사건기록 1권」, 63쪽.

21) 「사건기록 1권」, 5쪽.

3.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여부

가. 여수경찰서

1) 피해자 진술

여수경찰서는 1968. 11. 3.부터 12. 7.까지 34일 동안 선원 8명을 불법구금한 채 조사를 진행하였던 바, 강대광, 박상용, 이종섭은 “선원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채 경찰서 아닌 시내의 모 여관에서 선원 1명당 경찰관 1명씩 배치된 상태에서 20여 일 동안은 자술서를 썼고, 10여 일 동안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²⁾

2) 수사기록

태영호 선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살펴본 바, 1969. 9. 16.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사건을 정읍지원에 기소하기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었으며,²³⁾

여수경찰서 수사기록에는 선장 정몽치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일은 1968. 11. 7.로,²⁴⁾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일은 11. 28.로 기록되어 있다.²⁵⁾

부안경찰서가 정읍지청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태영호 선원들이 “귀환 후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968. 12. 7.경 귀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부안경찰서

1) 피해자들의 진술

강대광 이종섭, 박상용은 “부안군 위도에 거주하는 선원들은(강용태는 제외)

22) 피해자 강대광 5. 25.자, 박상용 2006. 10. 19.자, 이종섭 11. 8.자 각 진술조서. 「조사기록」, 26쪽, 143쪽, 256쪽.

23) 강대광 등 피해자들도 구속영장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24) 「사건기록 2권」, 403쪽.

25) 「사건기록 4권」, 802쪽.

여수에서 석방되고 3개월여 후인 1969. 3. 15. 부안경찰서 경찰들이 찾아와 경비정에 태워²⁶⁾ 데려간 뒤 다시 여인숙에 2~3명씩 구금된 채 선원 1명당 경찰관 1명씩 배치된 상태에서 40여 일 동안 자술서와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주시내 모처의 지하실로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⁷⁾

2) 참고인 진술

위도 마을의 이장이었던 김영산은 정몽치가 "여름에 배 타고 나갔다가 겨울에 돌아왔고" "부안경찰서에 여러 번 불러갔다 돌아왔는데 한 달 넘게 있었던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2006. 11. 29. 조사),

정몽치의 며느리 김종례는 시아버지가 부안경찰서로 소환되어 갔다가 약 40일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²⁸⁾고 진술하였으며,

박헌태의 여동생 박하심은 "오빠가 귀환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어디론가 갔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돌아왔다"²⁹⁾고 진술하였다.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였던 장춘섭은 "강대광이 부안경찰서에 여러 번 불러다녔고, 한번은 꽤 오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30. 조사).

같은 마을에 살았던 강대광의 사촌 강대남은 "강대광이 부안경찰서에 여러 차례 끌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한번은 한 달 넘게 불러갔다 온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30. 조사).

3) 수사 경찰관의 진술

당시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이었던 김OO는 자신이 정보과에 부임한 날짜가

26) 이종섭 진술조서, 「조사기록」, 258쪽.

27) 참고인 박상용, 강대광, 이종섭 진술조서, 「조사기록」, 152, 171, 256쪽.

28) 참고인 김종례 진술조서, 「조사기록」, 137쪽.

29) 신청인 박하심 진술조서, 「조사기록」, 162쪽.

1969. 3. 17.인데, 그때 태영호 선원들이 불러와 조사를 받았고, 자신도 직접 참여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30여 일 정도였다고 진술하고(2006. 10.13. 및 11. 16. 조사),

역시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이었던 최OO는 태영호 선원들이 여인숙에서 조사를 받다가 전주로 며칠간 끌려갔다 오는 등 여러 날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9. 조사).

4) 수사기록

부안경찰서장은 7. 19. 정읍지청장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1969. 3. 15. 부안경찰서 정보과에서 동인(태영호 선원) 등을 임의동행하여 납북 당시의 공모사실 여부와 월선 인식 여부 등 범죄사실을 추궁”³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소결

태영호 선원 8명은 1968. 10. 31. 북한의 억류에서 풀려난 후 인천경찰서에서 사흘간 조사를 받았고, 여수경찰서로 이송되어 11. 3.부터 12. 7. 석방되기까지 34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수사를 받았다.³¹⁾

또한, 부안경찰서 정보과 수사관들은 경찰서, 여인숙, 전주시내 모처 지하실 등지에 태영호 선원 강대광, 정몽치, 박상용, 박헌태, 이종섭 등 5명을 30여 일 이상 불법구금하였는 바,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³²⁾를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30) 「사건기록 5권」, 1089쪽.

31) 「사건기록 5권」, 1092쪽.

32) 형사소송법 제207조(긴급구속과 영장발부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1. 9. 1.> ②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재심사유에 해당되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여수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고 위 불법감금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제422조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가. 피해자 진술

강대광은 “자신은 10. 19. 여수경찰서에서 당한 가혹행위로 큰 후유증을 겪지 않았으나, 자신과 함께 가장 많은 가혹행위를 당한 선장 정몽치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안경찰서에서 당한 가혹행위는 훨씬 강도가 강하였다”고 진술한 바, “정보과 직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거나 군홧발로 아무 곳이나 걷어차기 예사였고 테이블에 올라가 무릎을 꿇어앉게 하고서 몽둥이로 허벅지를 때리거나 발바닥을 때렸으며, 차에 태워 지하실이 있는 건물로 데려가 옷을 전부 벗긴 후 병원침대 같은 곳에 눕히고 손과 발을 침대모서리에 묶은 다음 머리가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머리카락을 아래로 잡아당겨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 노란 양철주전자에 있는 물을 수건 위에 부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10. 19. 2차 조사)³³⁾

박상용은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점심 때쯤 전주에 있는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다른 사람들은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인하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을 몽둥이로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병원침대 같은 데 눕히더니 손발을 묶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그 위에 노란주전자의 물을 부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10. 19. 조사).³⁴⁾

33) 신청인 강대광 진술조서, 「조사기록」, 170쪽.

이종섭 또한 “부안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술 내용을 가르쳐주며 진술하라고 하였고, 이를 부인하자 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몽둥이로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겨 알몸인 상태로 의자에 앉혀 두고는 ‘전기고문을 받을래 아니면 물고문을 받을래’라고 위협”하였으며, 실제로 합지박에 담긴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가혹행위를 당한 장소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상당히 넓었으며, 병원용 침대 같은 것이 앞쪽에 놓여 있고 그 위에 합지박 같은 물그릇과 주전자가 있었고, 그 우측 벽면 부근에 전기선이 나와 있었는데 그 끝에는 전기고대기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8. 조사).³⁵⁾

나. 목격자 진술

정몽치의 며느리 김종례는 “시아버지는 부안경찰서에 끌려갔다 오는 날 배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져 남편이 집으로 업고 갔으며, 동네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06. 10. 17. 조사).³⁶⁾

위도 마을의 이장이었던 김영산은 “부안경찰서 경찰관들이 정몽치를 감시하여 달라고 자주 찾아와 못살게 굴었고, 정몽치가 집에 있는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지 감시했으며, 정몽치가 부안경찰서에 끌려간 후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던 바, 정몽치의 딸이 쪽배를 타고 가서 그를 싣고 왔는데 쪽배에서 내리자마자 폭 주저앉자 정몽치의 아들이 달려가서 업고 갔으며, 정몽치는 여러 번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갔다오기만 하면 거룡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거의 걸음을 걷지 못했고, 한번은 자신이 쪽배로 데려왔는데 그날도 걷지 못하여 업어서 데려다주었으며, 정몽치가 부안경찰서 직원들이 두들겨 패고 전기를 쏘고 얼굴에다 수건을 씌운 후 그 위에 물을 부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경찰관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부안경찰서, 전주

34) 신청인 박상용 진술조서, 「조사기록」, 153쪽.

35) 신청인 이종섭 진술조서, 「조사기록」, 252쪽.

36) 참고인 김종례 진술조서, 「조사기록」, 137쪽.

에 있는 경찰서라고만 했으며, 정몽치는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여 거의 바깥 외출을 하지 않은 채 방안에만 누워 있었고, 그 부인이 멍이 들거나 뼈마디가 저리는 데 좋다고 하여 똥물을 수없이 먹였고, 가슴에 한이 맺혀 그러니 열을 식혀야 한다며 밭에 심어둔 생지황즙도 수없이 먹였다. 눈이 흐려져서 신문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눈이 아프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29. 조사).

마을 주민 장춘섭은 “강대광이 부안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는데 객선에서 내려 걸어오는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자신이 어깨를 부축하여 집까지 바래다주었으며, 당시 그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부안경찰서에 다녀온 후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 달 넘게 누워만 있었고, 뺨속까지 아프다고 하여 뼈에 좋다는 우슬뿌리와 청호 등을 해주었다. 강대광의 어머니가 똥물을 먹인다고 구하러 다녔고, 그 처가에서도 산에서 나오는 약초를 캐러 다녔다. 병원이 없었기에 약초란 약초는 다 먹였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30. 조사).

마을 주민 강대남은 “강대광이 여수에서 돌아온 날 꼼짝 않고 잠을 잤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사를 받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뺨을 수없이 맞고 몽둥이로 구타도 당했다고 했다. 10여 일 정도 누웠다가 일어나 활동하였는데 집 밖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여러 차례 부안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한번은 한 달 넘게 있다가 온 적도 있다.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한동안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으며, 계속 아프다고 하여 강대광의 형과 함께 온 산을 뒤져 약초를 캐다 주었다. 강대광의 어머니와 그 부인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똥물을 구하러 다녔고, 약초도 캐러 다녔다. 강대광은 만나면 간첩이 되는 줄 알고 아무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30. 조사).

정몽치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춘식은 “당시 마을에는 11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김영산이 마을 이장이었다. 자신은 당시 15세 정도여서 정몽치와 직

접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북한에 가기 전에는 체격이 건장하고 무척 건장한 분이였다. 경찰관들이 자주 정몽치의 집을 찾아오고 또 경찰서에 불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 당시 자신의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한테서 정몽치가 경찰서에 붙들려 가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반병신이 되었다고 들었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하였다고 들었다. 재판을 받아 반공범인가 하는 죄를 지었다고 소문이 나자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태워주지 않으려고 했고, 정몽치의 자식들도 취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29. 조사).

다. 수사경찰관의 진술

당시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 김OO는 “태영호 선원들은 전주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자 전북도경 정보3계(대공담당)에서 데려오라고 하였으며, 그곳에 갔다오면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구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뺏하러 그곳(대공분실 지하실)으로 데려가 조사하였겠는가”³⁷⁾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 최OO는 “그 사람들이 전주에 불려가 며칠 머물다가 왔는데, 전주에서 진술서도 작성했는지 돌아올 때 가져왔으며, 자신은 그 자술서와 진술조서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³⁸⁾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장소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장소의 구조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일치하고, 부안경찰서 경찰관들이 태영호 선원들이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하였

37)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조사기록」, 288~289쪽.

38) 참고인 최OO 진술조서, 「조사기록」, 265쪽.

으며,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들이 부안경찰서에 수차례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귀가할 때 심한 부상을 입어 걷지도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극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활동조차 못하였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캐러 다녔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 태영호가 월선하지 않았음에도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허위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30여 일 이상 장기간 불법구금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들 5명이 부안경찰서에서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음이 인정된다.

고문, 가혹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시효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고, 가혹행위가 증명되었으므로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 월선 여부

가. 공소장 및 판결문

공소장 및 판결문에는 태영호 선원들의 범죄사실을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 북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어로 작업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적시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

그러나 피해자 강대광은 “태영호는 어로저지선을 넘거나 군사분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았다. 당시 수많은 배들이 그 부근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안강망 어선의 경우에는 그물 한 틀을 걷어 올리는 데 20~30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으나, 태영호는 유자망이기 때문에 그물을 설치하고 걷어 올리는 데 빨라야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경비정을 피해 월선할 수 없다. 당시 태영호는 소연평도 서남방 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었고, 그 북쪽에 해군함

정 55호가 위치해 있었는데 북한 함정 2대가 분계선을 넘어와 태영호를 납치해 갔다”고 진술하였고(2006. 5. 24. 조사),

피해자 박상용, 이종섭도 태영호가 분명 남한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었는데 북한 경비정이 침투하여 강제로 태영호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각 2006. 10. 19. 및 11. 8. 조사).

다. 해군본부의 회신문

1969. 9. 16.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태영호 납북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소를 제기한 후인 9. 27. 정읍지청에 도착한 해군본부 회신문에는 “어선 태영호가 주장하는 납북일시 및 당군 사건일지의 조사결과 68. 7. 3. 오후 연평도 서남방 6마일 舊어로저지선(38°35'45"에서 1969. 3. 10. 38°34'45"로 조정) 남방 1.5마일 (37-37N, 125-32E) 지점에서 선명불상의 어선 1척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납된 사실이 있음³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기소 이후에 검찰에 도착한 위 해군본부의 회신문은 강대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두 번째 장에 봉투째 끼워져 있을 뿐 기록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공판기록에도 정읍지원이 이것을 증거로 제출받았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라. 소결

위 해군본부 회신문에 의하면 태영호 선원들이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이 회신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40)가 정하는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해당되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조사기록」, 62, 281쪽.

40)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위 회신문은 “월선하여 북괴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무죄증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였다. 당시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무죄를 증명하는 위 회신문을 받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⁴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위 회신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읍지원은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월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자백에 의존하여 북한으로 탈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6. 형사처벌 이외 피해 실상

태영호 선원들은 수사과정에서 당한 가혹행위와 사건 조작으로 인해 받은 형사처벌이라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외에, 반공법 위반자로 낙인찍힌 이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회적 편견, 그에 따른 지인들의 기피와 승선 거부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였다.

가.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신청인 강대광은 “산업시찰이니 뭐니 하면서 수시로 불러 다녔으며 경찰관이 집에 하숙하면서 감시하였다”⁴²⁾고 진술하였고,

41) 당시 검찰청법 제5조 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42) 강대광 진술조서 2차, 「조사기록」, 172쪽.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 이OO, 김OO 등이 강대광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강대광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피해자 박상용은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풀려난 후에는 경찰관들이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집에 방문하는 친척들에게 접근하여 무슨 일로 다녀가는지, 내가 북한을 찬양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는 등 감시”가 심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너희 집에 간첩이 와서 밥을 먹고 갔다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며 전주에 있는 지하실로 데리고 가 두들겨 패더니 ‘대질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자 ‘일단 보내주지만 다음에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사받은 사실이나 고문받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보내주었고, 한번은 새벽에 위도 지서로 나오라고 하여 갔더니 ‘방첩대원’이라는 사람들이 방망이로 마구 두들겨 패고는 ‘너희 집에 간첩이 왔다갔는데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더니 ‘서울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가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바쁘니 다음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며 보내주었다”⁴³⁾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이종섭은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 서울로 와서 막노동을 할 때 누님 집에 주소를 두었는데 경찰관들이 드나들면서 나를 찾는다고 귀찮게 하자 누님이 주소를 옮기라고 하였으며, 정읍지청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재판을 기다리다 군대에 입대를 하였는데 군대에서도 상시적으로 감시를 받았다. 제대 후에 구속이 되었는데, 교도소 내에서는 반공법 위반자라고 거의 매일 재소자들에게 시달렸다.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정읍에서 취직을 하였으나 부안경찰서의 담당 형사가 찾아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요구하여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정몽치의 며느리 김종례는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경찰에서 오라 가라, 검찰청에서 오라 가라, 법원에서 오라 가라고 하여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했다. 경찰관들이 상시적으로 시아버지가 집에 있는지 감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3) 박상용 진술조서, 「조사기록」, 150, 155, 156쪽

1969. 7. 부안경찰서 수사보고에는 “동인 등이 거주하는 위도 전역에 걸쳐 유무급 망원을 수명 부식하여 현재까지 엄밀 내사 시켰으나”, “위도 주민 등에게 북괴를 고무찬양한 사실을 내사하기 위하여 위도에 출장하여 주민을 상대로 엄밀히 수사 방증수집에 임하였는 바”⁴⁴⁾라고 기술되어 있고,

당시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 김OO는 “태영호 선원들을 치안국에서 내려온 납북귀환어부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였으며, 월 1~2회 또는 지침에 의해 동향을 파악하여 카드에 기재하고 관리대상자가 이사를 가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카드를 보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⁴⁵⁾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태영호 선원들의 거주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람들의 기피와 승선 거부

피해자 강대광은 “가혹행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것은 동네사람들이 무슨 간첩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접촉을 피하여 겪은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처가에서도 북한에 갔다온 사람과 살아가는 안 된다며 집사람에게 서울 언니 집으로 가라고 다그쳐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 것을 겨우 무마시켰다”⁴⁶⁾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박상용은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감시가 심하여 동네사람들이 나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하였고, 배를 타려고 했으나 아무도 태워주지 않아 생계가 막막하여 김발작업 등을 하면서 밑바닥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4) 「사건기록 5권」, 1089, 1090쪽.

45)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조사기록」, 289쪽.

46) 강대광 진술조서 2차, 「조사기록」, 172쪽.

피해자 이종섭은 “부안경찰서의 담당 형사가 이사를 가라고 하여 인천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으나 반공법 위반자라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리어카 행상을 했다. 너무 힘들어 배를 타려고 했지만 선원증을 발급받지 못해 타지 못하였다. 감시하는 형사들이 집으로 자주 찾아와 경찰들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⁴⁷⁾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박헌태의 동생 박화심은 “오빠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후 집안이 어려워 다시 배를 타려고 했으나 오빠가 돌아오기 두세 달 전에 백운만 사건이 있어서 백운만과 접촉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간 일이 있어 아무도 북한에 갔다온 오빠를 태워주지 않았고”,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역시 배를 태워주지 않아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탔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간첩의 집안과 결혼을 한다고 시댁에서 반대가 심하였고, 그 사실을 오빠가 알게 되어 오빠도 마음고생이 심했다”⁴⁸⁾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정몽치의 며느리 김종례는 “먹고살기가 힘들어 시숙부(정몽치의 동생)가 배를 타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거절당하였다. 시아버지는 수사를 받으면서 당한 고문 등 후유증으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마음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또한 남편은 아버지가 몸져 누워버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원양어선을 타려고 기관사 자격증을 획득했으나, 시아버지가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여 받아주지 않았다”⁴⁹⁾고 진술하였다.

마을 주민 김영산은 “정몽치는 쓰러져 죽게 생겨 배를 타지 못했다. 배를 타려고 해도 정읍에서 반공법 위반자로 처벌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태워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아들 정태환이 배를 탔고 정몽치의 부인이 바다에 나가 일을 해서 근근이 생활을 하는 등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반공법 위반자여

47) 이종섭 진술조서, 「조사기록」, 259~261쪽.

48) 박화심 진술조서, 「조사기록」, 162~164쪽.

49) 김종례 진술조서, 「조사기록」, 138~140쪽.

서 자식들도 어디 취직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다. 정몽치 아들도 기관사 자격증을 따서 큰 배를 타려고 했는데 신원조회에 걸려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29. 조사).

마을 주민 장춘섭은 “아무도 강대광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다. 북한에 다녀왔다는 것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30. 조사)

마을 주민 강대남은 “강대광이 북한에 갔다온 후에는 사람들이 강대광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다. 배를 타려고 해도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06. 11. 30. 조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영호 선원들은 범죄 혐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반공법 위반자로 낙인찍혀 마을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배척·기피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든 일상생활을 감시·조사당하는 바람에 배를 타거나 다른 곳에 제대로 취업할 수도 없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사법당국의 처벌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였다.

VI. 결 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태영호 선원들이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 북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어로작업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4개월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귀환 후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동안, 부안경찰서에서 30여 일 동안 불법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으며, 부안경찰

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로 구타 등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한 상해와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후에는 마을 주민들의 기피와 승선거부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을 불법연행하여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은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로서 문명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읍지청은 기소한 지 11일 후 태영호가 월선, 탈출한 것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음을 증명하는 해군본부의 회신문을 접수하였다. 위 회신문은 “월선하여 북괴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무죄증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였다. 당시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무죄를 증명하는 위 회신문을 받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취소를 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정읍지청은 위 회신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은 1968. 11. 어부들의 납북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환 납북어부들을 무조건 입건한 당시 수사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공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사례이다.

이 사건은 수사경찰관들이 나포되어 고생을 하고 귀환한 사회적 약자인 선원들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여 조작하고 그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이 기소를 하고 월선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하지 않은 채 공소를 진행시킨 결과 발생하게 된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2. 권고

위와 같은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국가기관과 불법행위자들에게 있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권유린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본법 제4장에 의거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결정사안】

1967. 3. 22.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이 관문점을 통해 귀순한 후 중정 판단관으로서 대(對)국민 반공강연 활동 등을 하던 중, 1969. 1. 27. 처조카 배경옥과 함께 여권을 위조하여 홍콩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로 향하다 1. 31. 사이공 공항 기내에서 중정 직원에게 체포, 한국으로 압송되어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귀순(僞裝歸順)하여 국가기밀(機密)을 탐지하고, 암호문을 발송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탈출하였다는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5. 10.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7. 2. 사형이 집행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중정이 1969. 1. 31. 사이공에서 이수근을 체포한 후 중정에 압송, 영장 없이 구금한 11일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중정은 이수근의 중요한 진술이 담겨 있는 편지를 압수한 후 기록에 편철(編綴)하지 않고, 또한 자진(自進)귀순 및 출국동기 등에 관한 초기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제외하였다.
3. 이수근 등은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고 변호인 접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간 고립된 구금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접견이나 조력을 받거나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하였고, 모든 증거

가 동의되었고 지극히 형식적인 반대신문과 변론만이 있었으며, 고립상태에서 중정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고 그 허위자백 부분조차 일관성이 없으며, 이것이 법정에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4. 종범(從犯)에 불과한 공범들이 항소(抗訴)를 하여 다투는 마당에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의사를 밝혔음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였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5. 중정 직원들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고, 중정에서는 위장귀순 여부를 신문(訊問)하고 판단관회의를 거쳐 자진귀순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수근에게 간첩에게 필수적인 암호명, 난수표(亂數表) 등도 없었고, 북한으로 보내려고 모스크바 교회로 발송하였다는 비밀편지는 난수표에 의해 암호화된 것도 아니고 국가기밀을 담고 있지도 않았으며, 운전기사, 감찰실 직원들에 의한 동향감시로 독자적인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가기밀 탐지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출국시 제3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영한사전·한영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홍콩 도착 후 직접 마카오 또는 구룡반도를 경유(經由)하여 중국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행선지가 홍콩에서 월남을 경유하면서까지 제3국인 캄보디아로 향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이수근이 자진귀순 하였으며, 중립국에 가서 살려고 했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고, 달리 이수근이 간첩으로서 위장귀순하였고, 국가기밀을 탐지, 누설하였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6. 이 사건은 중정이 전략신문 결과 위장귀순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수근을 판단관으로 채용하여 국민승공 계몽사업에 활용하였으나, 이수근이 중정

의 지나친 감시 및 재북(在北) 가족의 안위(安危)에 대한 염려 등으로 한국을 출국하자, 중정이 당혹한 나머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하여 귀순자의 생명권이 박탈된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7.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자백(自白)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22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신청인】 배경옥

【결정일】 2006. 12. 1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신청요지

1967. 3. 22.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은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후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판단관으로서 대국민 반공강연 활동 등을 하였다. 이수근은 1969. 1. 27. 배경옥(신청인, 이수근의 처조카)과 함께 오제영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홍콩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로 향하다 1. 31. 사이공 공항 기내에서 중정직원에게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이수근은 같은 해 5. 10.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 두 달 후인 7. 2. 사형이 집행되었고, 배경옥은 간첩방조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년형으로 감형되어 1989. 12. 22. 출소하였다.

2.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면, 이수근은 ① 1967. 3. 22. 북한 노동당 남조선국장 이효순의 지령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잠입한 후, ② 국내에서 수집·탐지한 국가기밀을 1968. 5. 5.경 배경옥을 통하여 암호문 형식으로 홍콩에서 북한으로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누설하고, ③ 1969. 1. 27.경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④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군사목적 및 일반목적 수행을 위해 각 군 본부 부대현황 및 산업시설 등의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였다는 것이고,¹⁾

배경옥은 ① 암호문을 홍콩으로 반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수근의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방조하고, ② 북한과 접선하기 위한 국외탈출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이수근과 회합하고, ③ 이수근과 공모합동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④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이수근으로부터 여권발급 수수비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²⁾

배경옥은 위 사건이 중정에 의해 간첩사건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5. 12.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
- 1) 이수근은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국가보안법 제1조 반국가단체구성), 북한을 찬양·동조·이롭게 하였다는 점(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 오제영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탈출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 1,800불을 환전한 후 소정기일내 외환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점 등의 범죄사실들은 이수근의 위장귀순 및 간첩행위 여부의 규명이라는 본 조사의 목적상 쟁점이 아니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2) 배경옥이 국외탈출을 위해 여권을 위조하고, 북한의 선전방송을 청취하여 북한의 허위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반공법 제4조제1항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이 점은 쟁점이 아니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II. 의혹사항

1. 지령에 따른 잠입인지 여부

이수근이 1967. 3. 22. 북한 노동당 남조선국장 이효순의 지령에 따라 관문점을 통하여 잠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월간조선, 신동아, 조선일보, MBC 등 각종 언론보도는 사건발생 당시 근무한 중정 직원들의 증언을 근거로 이수근이 위장귀순한 것이 아니며, 이수근이 한국을 탈출하자 중정 수사과정에서 위장귀순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국가기밀 누설 여부

이수근이 국내에서 수집·탐지한 국가기밀을 1968. 5. 5.경 배경옥을 통하여 암호문 형식으로 홍콩에서 북한으로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제3국 경유의 우편을 이용한 발송방법의 의외성이나 그 내용의 조작성, 사전교육이나 난수표의 부존재 등으로 볼 때 실제 간첩의 암호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하였는지 여부

이수근이 1969. 1. 27.경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중정의 지나친 감시와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중립국에 가서 남북한을 비판하는 책을 쓰기 위해 출국한 것이라는 것이다.

4. 국가기밀 탐지 여부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군사목적 및 일반목적 수행을 위해 각 군 본부 부대현황 및 산업시설 등의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수근이 귀순 후 중정의 주관으로 전국의 군부대 및 산업체 등을 방문하면서 반공강연 활동을 하였을 뿐 당시 이수근의 모든 일상적 생활과 대외 활동이 중정의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밀 탐지·수집 행위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는 진실규명 대상으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인권침해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 체포, 감금, 고문,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동법 제2조제2항 단서에 의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의결로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이수근의 생명권이 박탈되었다는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어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진실규명 범위에 속하고, 이수근 등이 불법감금된 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은 기본법상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여야 할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수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전조사를 거쳐 2006. 4. 25.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 검찰청 보유 자료 : 12권 5,526쪽
수사 및 공판기록을 입수하여 수사과정, 이수근 등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 국가기록원 보유 자료 : 12건 1,312쪽
재소자신분카드, 각 심급별 판결문, 형집행지휘서, 동태사항, 시찰표, 접견표, 병력표 등에 의해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 국가정보원 보유 자료 : 6건 531쪽
중정의 이수근에 대한 관리체계, 감시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 방송국 보유 및 언론보도 자료

문화방송(MBC) 보유 자료인 1건 28쪽, 음성녹음CD 1개, 한국방송공사(KBS) 보유자료인 다큐멘터리 극장 녹화테이프 1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월간조선, 신동아 보도내용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남북한의 태도, 의혹사항, 증언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 일반 출판물

『JSA-판문점』, 『대공30년사』, 『현대북한의 이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시대적 배경 등을 파악하였다.

2. 참고인 진술청취

○ 다음 참고인들의 진술청취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다.

배경옥(신청인), 이대용(前 주월공사 겸 중정 월남책임자), 윤하경(前 중정 감찰실 수사관), 안남규(이수근의 수기 『장막을 헤치고』 출판업자), 이병정(前 중정 제5국 수사과장), 조갑제(前 월간조선 대표이사)

○ 진술청취를 하지 못한 참고인들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홍필용 대공수사국장(변호사), 전OO 국장, 박OO 단장은 사망,

OOO 감찰실장, 박자훈 심리조정관, 이수근의 운전기사 정낙춘은 미국 이민으로 연락 불능,

수사관 유OO은 투병 중,

1997. 4. 귀순한 전 북한 로동당 비서 황OO 및 김OO은 면담 거절 등의 사유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다.

V. 조사결과

1. 시대적 배경

북한 사회는 전쟁 직후 1953년경 일차적으로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남로당계열을 제거하고, 1956년경 연안독립동맹계열과 소련계열의 숙청으로 대표되는 두 차례의 중요한 권력투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고, 이때 상당수의 당 고위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숙청되면서 유일사상 체제가 확립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숭배가 전면화되면서 박금철, 허석선 등 조국광복회 관련 인사들과 소련 유학파인 김도만, 고혁 등 사상 문화담당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이어 상무위원 겸 비서인 대남공작 총책 이효순 등에 대한 분야별 비판이 진행되었고, 이들은 곧 김일성의 유일지도성을 해체시키고, 지방주의를 조장하였으며, 또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훼손시켰다는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숙청되었다.

이수근이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무렵, 남한에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967. 5. 대통령 선거 한 달 뒤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선거 직후인 6. 12.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데모가 시작되었다.

중정에서는 1967. 7. 8.부터 3차에 걸쳐 윤이상, 이용로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예술인이 포함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이듬해인 1968. 1. 21. 새벽 북한의 무장 게릴라부대가 청와대 부근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틀 뒤 美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정찰중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당국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감돌았다. 또한, 같은 해 9.에는 통일혁명당 및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 발표되고, 같은 해 11.에는 울산·삼척 지역에 무장부대가 침투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가던 시기였다.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의 고위급 인사인 이수근이 판문점을 통해 남한에 '귀순'한 사건은 북한측과 사상,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대립과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게 체제우위를 나타낼 호재였다. 그러나 1969. 1. 27. 이수근이 제3국으로 탈출하자마자 호재가 악재로 돌변하였다.

중정이 이수근을 체포한 지 13일 뒤인 1969. 2. 13. 탈출사실을 발표하자 언론의 보도는 이수근의 위장귀순과 배신에 대한 규탄으로 모아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를 찾아 귀순하였으나 한국에도 자유가 없어 탈출하였다는 점은 일체 지적되지 않고 한국을 배신한 위장간첩이라는 점과 중정의 해외 활약상만 부각되면서 위기가 선전의 호기로 반전되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출국과 체포

1967. 3. 22.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여 한국에 정착하였던 이수근은 1969. 1. 27. 17:00 배경옥(당시 29세)³⁾과 함께 오제영 명의의 위조여권(배경옥은 배경선 명의의 여권 소지)으로 행선지를 태국으로 하여 김포발 홍콩행 CPA기에 탑승하여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이수근 등은 도쿄, 타이페이를 경유하여 1969. 1. 28. 03:00경 홍콩에 도착, 험프리 호텔에서 2일간 머물다가, 캄보디아로 가기로 변경하고, 프놈펜행 CPA기를 타려고 다음날인 1. 29. 오후 홍콩 공항에 나타났다.

한국영사관 직원들이 공항에서 이들을 체포하려고 함에 서로 격투가 벌어지

3) 배경옥은 월남에 취업했다가 1968. 7.에 귀국한 후 이수근을 만나게 되었다. 배경옥은 이수근의 본처 김순배의 조카가 된다(김순배는 배경옥의 모 김이배의 막내 여동생으로 1948. 월 북하여 1953. 1.경 북한에서 이수근과 결혼).

자 홍콩경찰이 이들을 연행하였고, 영사관 직원들은 외교관 특권에 의해 즉시 석방되고 이수근과 배경옥은 억류되었다.

이수근은 홍콩당국에 정치적 망명과 캄보디아행을 주장하였고 홍콩경찰은 1. 31. 아침 홍콩을 출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CPA기 편으로 이수근 등을 출국시켰다.

이수근 등이 1. 31. 오전 경유지인 월남 탄손누트 공항에 도착하여 기내에서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중 월남당국의 협조하에 중정 월남책임자인 주월 한국대사관 이대용 공사가 대사관 직원과 함께 기내에 들어가 이들을 체포, 대사관에서 보호조치 하다가 1. 31. 밤늦게 C-54 한국공군기 편으로 김포를 거쳐 2. 1. 한국으로 압송하였다.

나. 중정의 수사과정

당시 중정은 이수근 등이 위조여권으로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수근이 중정 감시체제에서 사라지자, 감찰실에서 1. 28. 이강월(이수근의 처, 당시 36세), 이근옥(이수근과 8촌, 당시 62세)을 상대로 이수근의 행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강월은 이수근이 1. 27. 09:30경 출타후 귀가치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 29. 이수근이 한국을 탈출한 것을 인지한 후부터 5국에서는 이수근의 『장막을 헤치고』 출판업자 안남규, 이신성(이수근의 8촌누나), 조광국(이신성의 남편)을 조사하였고, 감찰실에 보관중인 이수근 차량에 설치되었던 녹음테이프 4개를 압수하고, 이수근의 주거에서 서울시가 지도, 수필 원고, 인명록, 중요인물 경력 등 4종을 이강월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다.

이수근이 2. 1. 22:00경 중정에 압송된 후, 5국 수사과 사무실에서 수첩 2권 등 소지물 23종을 압수하였고, 2. 2. 배경옥 및 정낙춘(이수근의 운전기사), 2. 3. 이수근의 제1회 진술서(그 전에 이와 별도로 제1, 2회 진술서를 받았으나 수사

기록에 편철하지 않음)를 각각 받는 등 조사진행 후 같은 해 2. 1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배경옥에 대하여 2. 12. 구속영장 집행, 이수근에 대하여 2. 14.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각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고, 배경옥에 대하여 3. 3.까지, 이수근에 대하여는 3. 5.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중정은 1969. 2. 13. 사건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수근은 1967. 2. 중순께 북한노동당 대남사업 총국장 이효순의 소환을 받고 동인의 안내로 김일성을 면담, 동 석상에서 김일성으로부터 '조국을 위하여 부하된 사명을 다하라'는 격려를 받은 후 비밀 아지트에서 이효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1967. 3. 22. 판문점을 통하여 위장귀순하였으나, 한국국민의 철두철미한 반공사상으로 공작기반 구축이 난관에 부딪치고 더욱이 당국의 감시가 심한데다가 무의식중의 언동이 갖가지 의문점을 남기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 내에서의 임무수행을 포기하고 재북 본처의 이질인 배경옥을 포섭하여 대동, 월북할 목적하에 캄보디아로 탈출을 기도하였는 바, 이수근은 탈출 후 행동계획으로서 배경옥에게 보고서를 휴대시켜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경유, 북한에 전달, 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장차 북한에 복귀하려 하였는데 이수근의 보고서 요지는 ① 긴박한 사정에 의하여 공작지를 이탈한 것을 보고한다, ② 당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 ③ 당에서 허락하면 제3국(캄보디아)에서 대남 우회공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등이라는 것이었다.

즉, 위장귀순을 하였다가 난관에 부딪치자 입북목적으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후에 공소장에 포함된 암호문이나 국가기밀 탐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위 이수근의 보고서라는 부분은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정 발표 후 언론은 '간첩사명 띠고 위장귀순'4), '음흉한 수법 북괴스파이'5),

4) 「동아일보」, 1969. 2. 13.자

5) 「경향신문」, 1969. 2. 13.자

‘이수근은 위장간첩’⁶⁾, ‘그럴 수가 이수근 위장행각’⁷⁾ 등으로 위장간첩으로 단정하여 대서특필하면서 극형에 처하라는 시민들의 분노를 싣고 있다. 간첩소식을 들은 이수근의 처 이강월이 실신하였다는 등의 소식도 전하고 있다.⁸⁾

다. 검찰의 수사과정

중정은 수사를 계속한 후 3. 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송치받기 전인 2. 27. 이례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이수근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3. 3.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구속기간을 3. 22.까지 연장), 3. 22. 서울지방법원에 기소(검사 최대현)하였다.

검찰은 3. 22. 이수근, 배경옥 외에 반공법상 탈출방조 혐의로 김OO(당시 22세, 이수근의 생질), 배인향(당시 22세, 배경옥의 동생)을 기소하고, 3. 31 여권위조, 미화매입 등 혐의로 3명을 추가 기소하였다.

라. 법원의 재판과정

이수근과 배경옥 외에 여권위조를 도와준 피고인까지 모두 7명이 재판을 받았다. 공판은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1969. 4. 10.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배석 정상학, 진성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1차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이수근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다.

4. 24. 제2차 공판에서는 배경옥 등 기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 변호인의 형식적 신문만이 있었다.

5. 2. 제3차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모두 동의할 하였고, 검찰의 구형공판에 대한 변론내용은 변호인이 피고인 등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였다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6) 「조선일보」, 1969. 2. 14.자

7) 「한국일보」, 1969. 2. 14.자

8) 「한국일보」, 1969. 2. 14.자

재판부는 5. 10. 이수근, 배경옥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수근은 항소를 포기하여 사형이 확정되었다.

배경옥, 김OO 등 4명은 항소하였고, 10. 17. 항소심(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배석 이택돈, 이완희 판사)에서 배경옥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배경옥, 김OO 등 3명은 상고하였고, 같은 해 12. 23. 대법원(대법원판사 주재황,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수근은 배경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 전인 7. 2.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배경옥은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다 20년형으로 감형되어 1989. 12. 22. 출소하였다.

마. 수사과정 등의 절차적 위법성

1) 불법감금 여부

중정이 1969. 1. 31. 사이공에서 이수근을 체포한 후 중정에 압송, 영장 없이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지 11일 만인 2. 1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영장없이 구금한 11일은 각 불법구금에 해당한다.⁹⁾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관들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이고 불법감금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제422조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고문·가혹행위 여부

배경옥은 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과정에서 의자에 앉혀놓고 잠 안재우기, 야

9)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용 전화기에 의한 전기고문,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였고, 물고문, 몽둥이 구타, 반복 질문에 의한 암기화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이 암호문을 조작하였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¹⁰⁾

탈출방조범으로 처벌받은 김OO도 “정보부에서 20일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물고문은 당하지 않았지만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했다. 갱 영화에서 보면 여러 명이 뺨 둘러서서 한 사람을 축구공 차듯이 이리저리 돌려가며 치는데 꼭 그런 구타였다.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는데 검찰로 송치돼 구치소로 넘어와서는 변호사를 한 번도 면담한 적이 없고, 검사신문을 구치소에서 꼭 한 번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¹¹⁾

최초 진술서 등이 은폐되었고, 작성을 마친 진술서가 이어서 작성되었으며, 변호인 접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¹²⁾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었고, 자백과 부인의 상반된 진술이 되풀이된 점 등에 비추어, 수사과정에서 구타, 강요 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3) 증거은폐 여부

이수근은 1. 27. 출국 직전 김형욱 중정부장, 위 정낙춘, 이신성에게 각 1통씩 3통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중정은 출국 다음날인 28일 봉투에 보내는 사람은 안모로 적혀 있고 이신성에게 보내면서 남편 조광국의 사무실로 배달된 1통을 압수하였다. 조광국은 2. 3. 중정 제2회 진술서에서 “편지를 개봉하여 읽은 사무원 이철규로부터 그 편지 내용이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모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국이 바뀌면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수근’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중정에서 압수를 하면서 ‘일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중정은 압수한 편지를 압수목록에 기

10) 2006. 5. 8. 진술청취

11) 조갑제,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 「월간조선」, 1990년 3월호

12) 배경옥은 변호인이 한 차례 와서 이름만 묻고 갔다고 진술하였음

재하지 않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다.

법원에 제출된 공식 수사기록에 중정 작성의 제1회 진술서가 편철되어 있는 바, 작성항목이 위장귀순의 경위, 위장귀순 후 활동상황, 탈출동기에 대하여 기재된 후 1969. 2. 3. 이수근이라 기재하고 무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부터 월남 후 나의 심정, 탈출동기, 탈출경위, 탈출준비, 홍콩 도착 후 활동상황, 중립국으로 망명을 희망한 이유, 망명 후 한국에 대한 폭로방안, 홍콩에서 아사히(朝日)신문에 투고할 원고의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하여 기재한 후 다시 1969. 2. 3. 이수근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이 찍혀 있다.

국가정보원에 보존된 수사기록에 없는 이수근의 제3회 진술서는 위 제1회 진술서 중간 날짜와 서명 무인을 한 부분까지의 기재내용이 동일하고, 작성일자 1969. 2. 4.자가 2. 2.로 고쳐졌다.

위 제1회 진술서의 전반부는 수사기록에 없는 제3회 진술서와 동일하므로 수사기록에 없는 제1, 2회 진술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에 제2회 진술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고, 제1회 진술서는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 이 제1회 진술서에 의하면 작성항목이 귀순동기, 숙청당하게 된 직접적 동기에 대하여 끝장 용지 말미까지 기재되다가, 다음 장이 없고, 날짜, 서명 및 무인도 없다. 그 내용의 서두에서는 월남귀순하였다고 밝히면서, 귀순동기에 대하여 1966. 1.1.~1967. 2.경 숙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숙청당하게 된 직접적 동기에 대하여는 보도기사를 이유로 비판을 받고 과거경력 폭로로 인해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숙청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자진귀순임을 밝히고 있다.

중정이 이수근의 중요한 진술이 담겨 있는 편지를 압수한 후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또한 귀순 및 출국동기 등에 관한 초기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제외하였다.

4) 허위진술 여부

이 사건 수사 및 판결은 이수근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 이수근, 배경옥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질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자백은 그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과 자백의 동기,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수사기록상 자백과 상반되는 진술이 계속되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자백과 상반되는 진술이 계속될 경우에는 법원과 변호인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¹³⁾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일관성 없는 의심스러운 자백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 질문과 변론만 있었고, 중대한 사건임에도 졸속으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수사과정에서는 숙청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였다는 초기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제외되었고, 위장귀순이었다는 진술서로 대체되었다.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었고,¹⁴⁾ 변호인 접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간 고립된 구금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¹⁵⁾ 재판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접견이나 조력을 받거나 방어권이 행사되지 못하였다. 모든 증거가 동의되었고 지극히 형식적인 반대신문과 변론만이 있었다. 고립상태에서 중정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고 그 허위자백 부분 조차 일관성이 없으며, 이것이 법정에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1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참조

14) 법원은 1969. 3. 25. 접견금지 결정을 하였고, 김OO에 대하여는 11. 11. 배경옥에 대하여는 11. 24. 각 접견허가 결정을 하였다.

15) 이수근의 국선변호인은 사임하여 다시 박OO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변론과정에서 위장귀순을 전제로 형식적인 신문만을 하였는데, 이수근을 구치소에서 접견하지 않았다(위 월간조선 1989년 3월호).

5) 항소포기 문제

이수근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기회를 주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변했고,¹⁶⁾ 공판정에서 재생의 길을 열어주면 보다 공격적으로 보다 열성적으로 반공전선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¹⁷⁾ 이수근은 1심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¹⁸⁾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이었던 고중렬은 구치소 2층에 중정 사무실이 있었고, 이수근은 맨 끝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수감방 앞에 중정 직원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¹⁹⁾

재판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3심제를 채택하여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범들이 항소한 경우 공범들의 1심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공범들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종범에 불과한 공범들이 항소를 하여 다투는 마당에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였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3. 지령에 따른 위장귀순 여부

가.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이수근이 북한 노동당 남조선국장 이효순의 지령에 따라

16) 1969. 4. 24. 제2회 공판기일

17) 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녹취록. 재판기록에는 없는 내용

18) 「경향신문」, 1969. 5. 10. ; 「동아일보」, 1969. 5. 10.자

19) 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1967. 3. 22. 제242차 정전회담이 열리고 있는 판문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여 반공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²⁰⁾

여기서 귀순 당시 판문점의 상황, 그 이후 남북한의 태도, 중정에서의 판단, 이수근의 진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귀순현장 상황

이수근은 1967. 3. 22. 17:23경 판문점에서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밴코프트 준장차에 편승하여 북한을 탈출했다. 북한 경비병들이 차가 출발하려는 것을 저지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자동차는 쏠살같이 남쪽으로 질주했다. 북한 경비병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경비초소에서 차단기를 내리고 자동차를 가로막았으나 차단기를 부수고 그대로 내달려 남한에 도착했다. 북한 초병들이 40여 발을 난사하였으나 차체에는 맞지 않았다.²¹⁾

20) 당시 반공법 제6조(탈출, 잠입) ③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전항의 예에 의한다.

21) 「조선일보」, 1967. 3. 23.자. “22일 오후 5시 23분 제242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는 뜨거운 분위기 아래 막을 내리려 했다. 언제나 회의의 마지막 장면을 형식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국어 통역이 진행되었고, 양측 수석대표들은 자리를 뜨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이수근 씨가 1시간 전인 4시 30분쯤 UNC(United Nation Command : 유엔군 사령부) 전사편찬담당관 조씨에게 은근히 접근, 자유대한으로 탈출할 뜻을 전했다. 조씨는 이 사실을 즉각 치코렐라 소장에게 보고, 치코렐라 소장은 이씨의 탈출을 도와주기로 결심, 밴코프트 준장과 공군 이연수 준장이 타는 세단차의 문을 열어놓고 이씨를 태우도록 연락했다. 이씨는 북괴 경비병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회의장 뒷문을 빠져나와 자동차 대기소에서 대표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USASG104호 밴코프트장군 승용차로 갔다. 운전사 맥매리 상병은 차 뒷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뒤이어 미군공동안전관할부대장 톰슨 중령이 누군지 확인하자 망명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톰슨 중령은 그대로 발차를 명령했다, “차가 떠나가려는 순간 북괴경비병이 소리를 지르며 톰슨 중령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이를 뿌리친 채 차는 쏠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악을 쓰는 북괴병들의 소리가 들렸다. 3백m쯤의 내리막길을 달리자 북괴경비병은 미리 차단기를 내려놓고 막고 있었다. 그러나 차는 아랑곳 없이 달리면서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앞 유리가 깨져 버렸다. 그런대로 차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당황한 수명의 북괴경비병들은 차가 자유의 집 언덕을 넘어설 때 뒤쪽을 향해 40여 발의 권총을 쏘아댔다. 그러나 한 발도 차체에 맞지 않았다.”

다. 이수근의 태도

이수근은 1967. 3. 24. 국제방송을 통해 월남동기에 대해 “지난 2월 8일 북하군 창설기념일 때 김일성을 따라 이 모임을 취재했다. 이 기사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강조하는 부분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당 간부의 꾸지람을 들었고 그 후부터 당은 충성심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가 끝나면 숙청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탈출할 것을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²²⁾

이수근은 3. 27. 대남파괴공작의 기본방침은 한국에 비밀공작원들을 대량 파견하여 비밀조직을 형성하고 그 대업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방법으로 역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노동당 남조선국의 대남공작 상황을 폭로하였고,²³⁾ 4. 1. 내외기자회견에서 북한에는 사색의 자유마저 없고, 탈출이 스스로 택한 자유의

22) 「조선일보」, 1967. 3. 26.자. “지난 2월 8일 북하군 창설기념일 때 김일성을 따라 이 모임을 취재했다. 김일성이 북괴육군에 연금되었다는 홍위대 벽보에 반박하기 위해 김일성 지지단결대회가 군부 주최로 열렸던 것이다. 그는 이 기사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강조하는 부분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당 간부의 꾸지람을 들었고 그 후부터 당은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 때 외국귀빈 70여 명을 접대하는 책임을 맡게 했으나 이 행사가 끝나면 숙청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지난 21일 오후 그는 당선전부로부터 일조협회 이사장 하다나까를 판문점에 안내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는 이 때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탈출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23) 「조선일보」, 1967. 3. 28.자. “북괴의 대남파괴공작의 기본방침은 한국에 비밀공작원들을 대량 파견하여 비밀 조직을 형성하고 그 대업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방법으로 저들의 역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노동자 농민의 강압적 노동에 의해 창조된 재부를 물 쓰듯 하며 남한에 파견할 공작원 적임자를 선발, 훈련하는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남조선국」을 설치했다. 그 안에는 남한에 보낼 정치공작원을 선발, 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연락부」가 있고 남한 동포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의정권당국을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사상을 각종 출판물과 라디오를 통하여 주입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문화부에 「남조선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그들의 파괴활동의 주동방침은 오늘날 한국 사회 정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사전파괴 음모이다. 선거를 계기로 한국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조장시키기 위해 현 집권 세력을 백방으로 중상하며 국민의 지지를 약화시키자는 것,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약체정권을 세우게 하고 그 틈에 침투공작을 강화하자는 것이 소위 북괴의 대남공작이 지금 노리는 초점이다.”

길이였다고 밝히고, 북한에 두고 온 세 자녀와 처가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세계 자유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²⁴⁾

라. 북한의 태도

탈출 다음날인 1967. 3. 23. 북한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제 333차 비서장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은 이수근을 남한에서 강제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다.²⁵⁾ 한편 유엔측 비서장 조지 F. 찰튼 대령은 이수근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출하였음을 정식으로 통보하였다.²⁶⁾

북한은 1967. 3. 25. 및 26. 사이에 3회에 걸쳐 평양방송을 통해 논설, 이수근의 형, 처와 자녀들의 육성으로 강제납치를 주장하며 이수근에게 북한에서 혜택받은 것을 잊지 말고 북한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용감히 싸우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²⁷⁾

24) 「조선일보」, 1967. 4. 2.자. “판문점에서 자유를 찾은 지 11만인 1일 오전 9시 30분 전 북괴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씨는 서울신문회관에서 내외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실정을 폭로했다. 그는 북한에는 「사색의 자유」마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번 탈출은 「내 자신이 택한 자유에의 길」이었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수근씨는 「가슴 아픈 얘기」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자식들과 아버지, 처와 남편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에 두고 온 일곱 살 열 살 열네 살의 철부지 자식과 병으로 앓고 있는 아내 김순자씨를 「나와 함께 서울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전 세계의 선량한 아버지들」과 유엔 국제적십자사 및 지상의 자유민들은 인도주의에 입각 「나의 피맺힌 이 호소를 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25) 「로동신문」, 1967. 3. 24.자. “미국 측은 3월 22일 군사정전 위원회 제242차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자기 수석위원 치코렐라의 차를 회의장 남쪽 입구에 발동을 걸어 대기시켜 놓고는 그 옆을 지나가던 우리측 기자 리수근을 수다한 엠피들을 동원하여 불의에 강제로 자동차에 끌어넣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우리측 경무인원들은 기자를 구출하려고 승용차에 접근하였으나 수다한 미국측 엠피들은 우리측 경무인원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행을 감행하였다. 이 틈을 타서 우리 기자를 납치한 미국측 승용차는 회의장을 전속력으로 떠나 우리측 경무원이 내린 차단봉을 파괴하고 남쪽으로 도주하였다. 한주경 대좌는 우리측 기자를 납치하려다가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그의 입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악랄한 비방중상을 감행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한주경 대좌는 강제납치하여간 우리측 기자를 즉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6) 「조선일보」, 1967. 3. 24.자

마. 한국의 반응과 중정의 판단

한국 언론은 이수근이 판문점에서 자유를 찾아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도하고, 1967. 4. 10. 서울시민환영대회를 여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탈출 직후 소식을 전해들은 친지 등은 이수근을 만나보기를 원했고,²⁸⁾ 이수근은 3. 25. 친자형인 김형섭 등 5명의 친척과 만나기도 했다.²⁹⁾

국가정보원의 회신(2006. 7. 11.자)에 의하면 이수근에 대한 귀순 당시의 전략신문³⁰⁾ 자료는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귀순 직후 중앙정보부 작성 문건명 불상의 III급 비밀문서의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³¹⁾, 전략신문시 이수근은 귀순동기에 대해 “나는 남한의 라디오 신문을 체계적으로 보아 왔다. 그래서 남한의 경제향상과 정국안정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이 넘어온 동기의 전부는 아니다. 사상이념의 차이가 중요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정 심리조정관 박자훈이 이수근에 대한 동향 감시중 수집한 자료 중에는 자진귀순을 의미하는 이수근의 발언내용이 있다.³²⁾

귀순 당시 수사국장이었던 홍필용(변호사)은 “1년 동안 관찰하고 관계관회의를 거쳐 위장귀순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고 밝혔다.³³⁾ 중정은 이례적으로 이수근을 1967. 8. 1.부터 7국 1급 판단관으로 대우하여 국민승공 계몽사업에

27) 수사보고 및 평양방송 녹취록, 「수사기록」, 904~919쪽

28) 「한국일보」, 1967. 3. 24.자

29) 「조선일보」, 1967. 3. 26.자

30) 정보기관에서 귀순시 간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북한의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신문

31) 「수사기록 제3455쪽」, “이선생님이 넘어온 동기 중 한국의 대북 심리전 영향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남한의 라디오 신문을 체계적으로 보아 왔다. 그래서 남한의 경제향상과 정국 안정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이 넘어온 동기의 전부는 아니다. 사상 이념의 차이가 중요하였다, 즉 중공 다 무너져 가고 와해되고 있으며 ‘후루시초프’가 나가”(이하 내용은 편철되어 있지 않음)라고 답변하고 있다.

32) 「수사기록 제927쪽」, “아무리 정보부가 나를 감시한다 해도 김일성이 나를 포섭하자면 할 수 있다, 이북이 나오면 나를 포섭할꺼야, 이북에 있을 때 김일성에게 잘했으니까.”

33) 위 「월간조선」, 1989. 3.

활용하였고,³⁴⁾ 이수근에게 군부대 및 산업체를 견학시켰으며,³⁵⁾ 정착금을 지급하고 우석대 조교수 이강월과 결혼하도록 주선하였으며, 『장막을 헤치고』라는 수기를 집필하도록 허용³⁶⁾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바. 중정 직원 등의 진술

위원회 조사에서 중정 월남책임자였던 이대용은 “김형욱 중정부장으로부터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에 대해 보안유지를 부탁받은 바 있다”,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정보부 안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³⁷⁾

감찰실 수사관이었던 윤하경은 “반공강연시 김일성을 비난하지 않아 의심스러워 내사를 착수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³⁸⁾

중정 5국 대공수사과장이었던 이병정은 이수근의 귀순경위에 관해 “이북에서 김일성한테 신용을 잃고 더이상 중앙통신 부사장 자리도 위태롭고 신변이 위태로워서 기회를 봐서 탈출했다”, “우리가 잡아와서 역(逆)조사를 하니까 위장탈출이 됐다, 처음에는 위장귀순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잠입으로 변경시켰다, 간첩이면 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수근은 아무런 부호명이 없고 북한에서 이수근에게 내려온 무전도 없었다, 당시 시중에 이수근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고 화장실에서 무전을 한다는 루머가 돌아 직접 가택수색과 처 이강월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³⁹⁾

34) 「확인서」, 「수사기록 제3552쪽」

35) 중정은 후에 이수근을 기소하면서 견학시 군사 및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였다.

36) 배포되지 못하고 발간 즉시 회수되었음

37) 2006. 6. 30. 진술청취, 위 「월간조선」, 1989. 3.

38) 2006. 9. 7. 진술청취

39) 2006. 9. 20. 진술청취

이수근의 『장막을 헤치고』 출판업자였던 안남규는 “이수근이 사설을 잘 못 쓰는 바람에 고생했고, 그 일로 숙청을 받게 되어 판문점을 통해 넘어 왔다”고 진술하였다.⁴⁰⁾

사. 이수근과 배경옥의 진술

이수근은 사이공에서 체포되어 송치된 직후 중정에서 “북한 노동당 남조선 국장 이효순의 지령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위장귀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⁴¹⁾을 비롯하여 이후 중정과 검찰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⁴²⁾

중정에서 “2·8절 보도의 과오문제로 중앙당 당위원장과 구일선(부사장 중 1명)이 비판하여 결국 나는 숙청을 피할 수 없이 되었고 어디에다가 상소할 데가 없이 되었으니 부득이 들고 뛰는 길을 판문점으로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판문점 출입기자 선정 경위에 대해서 “나를 숙청하는 것을 지도하는 부서는 중앙당 선전부이다. 선전부의 수뇌급에서는 숙청을 보류하고 있는데 비밀사업을 하는 문화부에서는 이수근이 병이 들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미 작성돼 있는 명단에 따라 판문점에 나가 줄 것을 간청하다시피해 왔던 것이다. 나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정하고 판문점으로 나오게 되었다”,⁴³⁾ “당을 배반하고 나와서 김일성과 공산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 최악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사상으로 살 것이다”라고 자진귀순이라고 진술하였다.⁴⁴⁾

또 법정에서 “저는 원래 한국이 아주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가지고 남북이 맞

40) 2006. 9. 18. 면담조사

41) 1969. 2. 3. 중정에서 작성한 「제1회 진술서」

42) 1969. 2. 5. 중정 제1회 피의자신문, 2. 8. 중정 제2회 피의자신문, 2. 13. 중정 제12회 진술, 2. 2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3. 3.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4.10. 제1회 공판, 4. 24. 제2회 공판

43) 1969. 2. 7. 중정에서 작성한 「제6회 진술서」

44) 1969. 2. 4. 중정에서 작성한 「제2회 진술서」

서 있는 이러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노선을 제창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3국 중립국으로 망명할 것을 평양에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망명할 수가 없었다. 막을 가능성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판문점을 통해서 우선 한국으로 온 것이다”라고 자발적으로 귀순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⁵⁾

배경옥은 수사과정에서 “이북에서 숙청될 것 같아 미리 넘어왔다”,⁴⁶⁾ “이북에서 넘어온 것은 큰 잘못이기 때문에 이모와 아이들이 다 죽지 않았으면 어디 끌려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⁴⁷⁾

위원회 조사에서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다. 공소내용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이수근이 중립국에서 책을 쓰는 것이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여권을 위조한 것이다. 여권을 위조한 행위가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⁸⁾

아. 처형 후 북한의 태도

위원회 면담조사에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는 이수근이 체포된 후 북한의 태도에 관하여, “이수근 처형 직후 ‘변절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내용으로 노동당에서 비밀강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1988. 4. 귀순한 노동당 산하 대양무역회사 전 사장 김OO에게서 확인한 일이 있고, 1997. 4.경 황OO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귀순한 김OO에게서도 위 김OO의 증언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⁴⁹⁾

45) 1969. 5. 2. 제3회 공판 「최후진술」, MBC가 소장하고 있는 음성 자료를 녹취한 것으로 공판기록에는 진술내용이 없다.

46) 1969. 2. 2. 중정에서 작성한 「제1회 진술서」

47) 「1969. 3. 10. 검찰 진술서」 3811~3824쪽, 「1969. 3. 15. 검찰 진술서 수사기록」 3845~3851쪽

48) 2006. 5. 8. 및 2006. 6. 13. 진술청취

49) 2006. 10. 31. 면담조사

자. 소결

이수근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장귀순이라고 자백을 하였으나, 숙청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을 탈출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되풀이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수근의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일관성이 없다.

중정 직원들은 이수근이 자진귀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수근의 귀순 직후 북한측이 평양방송을 통해 이수근이 납치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북한을 배반하지 말고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고, 이수근 사형 집행 직후 북한 노동당에서 이수근이 배신자라는 비밀 사상교양이 있었으며, 중정이 이수근을 조사한 후 자진귀순으로 판단하였고, 군부대 전학을 시키고, 반공강연에 동원하였으며, 정착금을 지급하고, 결혼을 허용한 사실 등은 이수근이 자진귀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고, 달리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4.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이수근이 신분이 폭로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신변안전책으로 홍콩 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과 재접선하여 새로운 지령을 받기로 하고 그 전에 한국에서 접선을 기도하고자 배경옥의 집에서 1968. 5. 3. 배경옥에게 암호문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배은망덕하고 고향을 떠난 불효자식을 용서해주십시오,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을 구해놓았으니 인편을 보내주시오, 지난 정월달에 그곳에서 여기에 보낸 선물의 답례로 무엇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마시오, 나에게 인편을 보낼 때에는 전쟁 때 죽은 금순이 외삼촌의 이름

을 대면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하여 수신인을 “당중앙 위원회 5호택 앞”으로 기재하여,

동 암호문을 성경책 표지철 후면에 삽입하여 배경옥에게 교부하고, 배경옥이 1968. 5. 5. 23:00 CPA 비행기편으로 홍콩에 도착 즉시 이를 모스크바로 발송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⁵⁰⁾

여기서 암호문의 실체가 있었는지, 그것을 암호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암호문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는지,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나. 암호문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

이수근은 중정의 조사에서 이미 발송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 ‘쪽지편지’ 또는 ‘비밀편지’ 발송을 인정하였고, 그 편지 내용을 적은 메모를 작성하였다.⁵¹⁾ 암호문의 실제 여부와 그 내용은 물증이 없고,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배경옥은 위원회 조사에서 “암호문은 실재가 없다. 중정에서 반복질문 및 고문에 의해 천주교회에 발송한 것인 양 조작된 것이지만 항소이유서에는 후환이 두려워 발송하려고 했지만 발송치 않고 없애버렸다고 하였다”고 암호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⁵²⁾

다. 암호문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통상적인 암호문의 경우, 지령 수·발신 체계는 난수표(亂數表) 등으로 이중삼중의 보안체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암호문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암호문 작성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 여부, 전달수단 여부는 암호문을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50) 국가보안법 제3조(일반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1) 1969. 4. 4. 중 제38호, 「수사기록」, 3535쪽

52) 2006. 6. 13. 진술청취

1) 암호문의 형식

암호문은 난수표에 의해 타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야 한다. 암호문은 난수표를 전제하는 것임에도 수사기록상 난수표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암호문의 내용도 체포 후 중정 수사과정에서 받은 이수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 내용도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2) 암호문 수·발신 방법 여부

이수근은 “보고방법은 사전에 합의 내지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구상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택했다”, “교육받은 사실도 없고, 본인이 고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⁵³⁾

이수근은 “편지가 정확히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마음속에 석연치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북에 연락할 다른 방도나 길이 없어 배경옥이 사이공에서 다시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⁵⁴⁾ “소련 외무성, 소련 주재 북괴대사관으로 보낼 경우 내용물에 수신인을 5호택으로 기재하였으니 북한으로 전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⁵⁵⁾ “어떻게 접선이 될지도 모르고 접선방법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⁵⁶⁾

이수근은 암호문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작성한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였다. 또 이수근은 암호문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수근은 “편지가 북괴의 수중에 들어가면 이러한 정도의 말은 다 새겨보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⁵⁷⁾

53) 1969. 2. 9. 「중정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공판기일」

54) 1969. 2. 13. 「중정 제12회 진술서」

55) 1969. 3. 5.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56) 1969. 4. 10. 「제1회 공판기일」

57) 「중정 제12회 진술서」

3) 북한에 전달되었는지 여부

이수근은 “배경옥이 8. 20. 월남에서 귀국한 후 홍콩 구룡호텔에서 중국인을 시켜 소련 중앙천주교회 앞으로 우송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성경책이 한글로 되어 있어 북한대사관으로 전달될 것으로 알고 보냈다고 말했다. 그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달된 예가 없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⁵⁸⁾ “편지받을 사람의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⁵⁹⁾

라. 국가기밀 사항 포함 여부

1) 비밀편지의 의미

비밀편지의 내용 중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에 대하여, 이수근은 “자기의 변절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⁶⁰⁾ 배경옥은 “자기가 이북에서 남한에 온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⁶¹⁾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사업을 하겠다”에 대하여, 이수근은 “변절은 했지만 이제부터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으며,⁶²⁾ 배경옥은 “북괴에서 대한민국에 온 것을 뉘우치고 북괴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북괴에서 잘못하고 온 사람이 그냥 편지를 해서야 누가 가족을 돌봐주겠느냐, 그래서 북괴에서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⁶³⁾

“내가 약을 구해 났으니 인편을 보내 달라”에 대해서는, 이수근은 “정보자료

58) 1969. 4. 10. 「제1회 공판기일」

59) 1969. 4. 24. 「제2회 공판기일」

60) 1969. 2. 3. 「중정 제1회 진술서」

61) 1969. 3. 10. 「검찰 진술서」

62) 1969. 2. 3. 「중정 제1회 진술서」

63) 「배경옥 항소이유서」

를 입수할 수 있다”, “선을 대달라”라고 진술하였고,⁶⁴⁾

또 “지난 정월달에 그곳에서 보낸 선물의 답례로 무엇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에 대해, 이수근은 “1. 21. 무장공비 남침에 대한 보복조치가 있을 것을 경계하고 방어하라”⁶⁵⁾는 의미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기밀내용 포함 여부

위 암호문의 내용 중 이수근이 “자기의 변절을 뉘우치고 있다”, “변절은 했지만 이제부터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겠다”, “정보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선을 대달라”는 등의 내용은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1·21 무장공비 침투에 대한 남한의 보복조치가 있을 것을 경계하고 대비하라는 내용을 들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국가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수근의 판단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밀편지를 보낸 동기에 대해 이수근은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⁶⁶⁾

마. 소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수근이 배경옥을 시켜서 홍콩에서 모스크바 천주교회로 위 비밀편지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암호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이수근이 중정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이나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위에서 본 이유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다.

설령 암호문의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암호문은 난수표에 의해 암호화되지 못한 것으로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전달수단도 없었으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북한에 전달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64) 1969. 2. 3. 「중정 제1회 진술서」

65) 1969. 2. 3. 중정 제1회 진술서

66) 1969. 5. 2. 제3회 공판기일, 「최후 변론」

내용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수근이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5.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하였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이수근이 북한으로부터 즉시 공작원이 남과 접선되지 않자 비행기로 탈출하기로 하고, 1969. 1. 27. 김포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출국수속을 필한 다음 CPA 항공기에 탑승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여 반공법 제6조제4항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⁶⁷⁾

세계인권선언은 출국의 자유와 국적이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⁶⁸⁾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당시에는 출국에 관하여 유효한 여권과 입국사증에 의해 출국심사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었다.⁶⁹⁾ 국적이탈과 출국의 자유는 귀순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출국이나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만을 들어 적국을 위한 목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반공법 제6조제4항 소정의 탈출죄의 의미에 있어서 동조제1항이 단순탈출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 소정의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제3조 소정의 일반목적수행죄의 경우 지령이 있어야 하며, 잠입

67) 반공법 제6조 (탈출, 잠입) ③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63.10.8>)

68) 세계인권선언 제13조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②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69) 출입국관리법 제3조 (국민의 출국) ① 유효한 여권과 향선국 또는 경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선원을 제외한다)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하고자 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죄의 경우 입국전 지령과 입국시 지령수행 의사가 충족되어야 함에 비추어 탈출죄는 반국가단체와 의사연락 하에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⁷⁰⁾

여기서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수근의 진술

이수근은 검찰에서 “남한의 환대에 따라 충성을 해야겠다는 각오와 공산주의자로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근거없이 김일성을 비난하면서까지 배신할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 비난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분노출 우려감이 충돌하여 고민했다”고 진술하였고,⁷¹⁾

법정에서 “북한 지령을 어기고 한국을 탈출했기 때문에 직접 입북할 수는 없고 배경옥을 통해 수집한 제반 정보를 제보케 하면 다시 신임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행한 내용은 전부 허위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지령이 하달될 것을 믿고 지시에 의하여 제3국에서 공작을 하려는 계획 하에 배경옥을 입북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⁷²⁾

다른 한편으로 이수근은 검찰에서 “1968. 12. 24. 검찰실장을 인사차 방문하자 동인이 이중간첩으로 본다고 하여 결정적으로 탈출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⁷³⁾

중정 및 검찰에서 “1968. 8. 배경옥에게 한국이 싫고 중립국으로 가서 책이나

70) 「대법원 1959.5.18. 4292형상34」,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대법원 1973.6.26. 선고 73도548 판결」 참조, 사전에 의사연락이 없을 경우 제3국에서 편면적으로 지령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단도 없고, 전달될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며, 반국가단체의 지령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일방적 의사만으로 출국한 것을 들어 탈출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71) 1969. 3. 4.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72) 1969. 4. 10. 「제1회 공판기일」

73) 1969. 2. 2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마음놓고 쓰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⁷⁴⁾ “근거없이 김일성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양심상 가책을 느꼈고, 내가 받은 임무를 버리고 이북에 도로 갈 수만 있다면 공산당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이나 만나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다”⁷⁵⁾

법정에서 “작년(1968.) 1.부터 계획하였는데 1967. 12. 크리스마스 때부터 본인에 대한 과거가 발각될 염려가 있고, 본인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3국으로 도피하려고 생각한 것이지 이북에 갈려고 한 것은 아니다”⁷⁶⁾

“제가 국가와 민족들을 배반하고 한국을 탈출하게 되는 행동도 주요하게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북한의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장단점에 관해 시사논평을 하면서 새로운 통일노선을 제창하면 저는 한국에서 앞으로 연립정부 같은 게 수립되게 될 때 선각자로서 추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제3국에서 가족을 그리 데려다가 살 수 있다고 환상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⁷⁷⁾

다. 배경옥의 진술

배경옥은 법정에서 이수근의 탈출이유에 관해 “이수근이 ‘북한서 숙청이 되게 되어서 미리 넘어 왔다. 이곳에서는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미국이나 중립국 같은 곳에 가서 글을 쓰고 책을 내서 잡지에 연재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선편 같은 것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남북한 정치정세를 잘 알고 있으니 중립국에 가서 중립적 입장에서 글을 쓰고 더욱이 이북을 두둔하면 이북에서 인정하고 데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도착 후 프놈펜으로 가기로 변경하였다. 홍콩에서 아시히신문사

74) 1969. 2. 4. 「중정 제2회 진술서」

75) 1969. 2. 13. 「중정 제12회 진술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76) 1969. 4. 10. 「제1회 공판기일」

77) 1969. 5. 3. 3차 공판기일, 「최후진술」

에 보내는 원고를 작성하였다. 캄보디아에 가면 이수근이 써 준 편지를 갖고 이북에 갔다 오기로 했다”⁷⁸⁾고 진술하였고,

위원회 조사에서 “이수근이 ‘중립국에서 책을 쓰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⁷⁹⁾

라. 중정 직원 등의 진술

위원회 조사에서 위 이대용은 “이수근이 ‘북쪽이 싫어 내려 왔는데 남쪽에서도 자유가 없다. 감찰실장이 나를 일일이 감시하고 수시로 불러서 북쪽과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면서 때리고, 내 발을 향해 권총을 쏘 위협을 했다, ‘남쪽이 북쪽보다야 백번 낫다.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북한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탈출했는데 남쪽도 틀렸다. 자유도 없고, 독재이고 해서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 가서 살려고 했다. 남쪽 북쪽을 다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쓰면 한 40만에서 1백만 달러는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감찰실장이 이수근을 달아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수근은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다가 스위스 같은 유럽의 중립국으로 가서 살려고 했다고 하였다. 사전류는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⁸⁰⁾,

위 홍필용은 “감찰실장의 무리한 감시와 이수근의 성격적 결함이 합쳐져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지 간첩은 아니다, 이수근의 성격이 자신을 죽인 것이다, 그는 어떤 사회에서 살든지간에 불평불만을 많이 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증언했다.⁸¹⁾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집행 담당검사 김병하는 “이수근이 사형집행 전 ‘북쪽과 남쪽 체제를 다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립국에 가서 통일방안에

78) 1969. 2. 2. 「중정 제1회 진술서」 수사기록 1835~1840쪽

79) 2006. 5. 8. 진술청취

80) 위 「월간조선」, 1989. 3.

81) 위 「월간조선」, 1989. 3.

대한 글을 쓰려고 하였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⁸²⁾.

마. 소 결

이수근은 제3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감찰실장의 감시 때문에 자유가 없어 제3국에 가서 살려고 했으며, 가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이수근 등의 자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일관성이 없다.

중정 직원들은 이수근이 중립국에서 책을 쓰면서 살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만약 이수근이 간첩이었다면 해외생활에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영한사전·한영사전 등을 소지할 이유가 없었으며, 홍콩 도착 후 마카오 또는 구룡반도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서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할 수도 있었고, 홍콩에서 월남을 경유하면서까지 캄보디아로 갈 필요가 없었고, 북한과 수·발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였으며,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캄보디아로 가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려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북한을 탈출한 자가 다시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 등은 이수근이 중립국에서 책을 쓰면서 살려고 출국했다는 점에 부합하고, 달리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6. 군사 및 국가기밀 탐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이수근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해 1967. 9. 해군본부 견학 부대현황 탐지, 동년 10. 제1야전군사령부 견학 사령부 편제 탐지, 동년 11. 육

82) 위 「월간조선」, 1989. 3.

군본부 정훈감실 견학 상황 탐지하고, 동년 11. 공군기술교육단 견학 비행기 부분별 분해실태 탐지, 1968. 2. 국방대학원 견학 동 학원실태 탐지, 동년 3. 및 1969. 1. 공군본부 견학 현황 탐지, 1968. 4. 육군대학 견학 수송용 군함 탑승하여 그 실태 탐지, 1969. 1. 22. 제50사단 견학 동 부내 내용을 탐지하고(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2항 위반),⁸³⁾

1967. 4. 강원도 소재 한전 춘천발전소, 울산공업단지,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비료공장과 대한석유공사 정유공장 답사, 동년 10. 전주 신탄진연초제조창, 군산고무공장, 합판공장 답사, 1968. 12. 대성목재 인천공장, 한국판유리 인천공장을 답사하여 각 공장 산업시설 등 탐지, 국내 신문, 잡지, 기타 출간자료 등을 수집하여 한국의 차관현황, 한국경제의 외국의존 상황 등을 분석한 내용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외 탈출시까지 국가기밀을 수집 또는 탐지하였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 제3조제1호 위반).⁸⁴⁾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기타 의사의 연락 하에 군사상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해 국가기밀을 수집, 탐지 또는 누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런 지령없이 북한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행위는 형법 제98조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 예비 또는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예비에 해당할 수 있다.⁸⁵⁾

83) 국가보안법 제2조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형법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84) 국가보안법 제3조 (일반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수근의 진술

이수근이 중정에 송치된 직후 2. 1. 출국시 소지하고 있던 수첩 2권이 압수되었는 바, 중정은 2. 10. 국가기밀탐지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수근은 중정에서 수첩의 내용에 대해 흑색수첩은 1968. 1.부터 11.까지 국내에서 야기된 주요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사건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청색수첩은 1968. 1.부터 12.까지 야기된 주요 국제정세를 수록한 것이며, 북한으로 탈출한 후 동 자료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정책비난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⁸⁶⁾

자료를 수집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병과의 대화, 일본 시사통신, 국내신문, 시중여론이다”, “군부대를 돌아보는 기회에 암암리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내 신문에서 취한 것이나 본인이 제3국으로 가거나 북한에 가지고 가면 한국에 대한 비난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었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위하여 적어둔 것도 많다”, 수집 목적에 대해 “한국을 빠져 나가서 북괴에 연락이 닿거나 어떤 선이 나에게 닿을 때에는 그 자료를 북괴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⁸⁷⁾

그러나 이수근은 중정에서 “군부대 방문시 강연 외에 브리핑이나 시설물 견학 사실조차 없었다”, “공공시설물 견학은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정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국가기밀 탐지행위를 부인하였고,⁸⁸⁾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제가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러

85) 「대법원 1959. 5. 18. 4292형상34」 참조

86) 1969. 2. 10. 「중정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378~1457쪽.

87) 1969. 2. 12. 「제9회 진술서」, 수사기록 1479~1485쪽

88) 1969. 2. 12. 「제10회 진술서」, 수사기록 1486~1489쪽

저러한 공장, 이러저러한 문화부분 어디어디를 댕겼다, 그것만은 접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그곳을 댕겨 온 것은 환영대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 당국의 요구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 갔던 것이고, 간 차제에 그것을 견학시켜 주니까 견학을 했던 것이다. 물론, 제가 북한과 내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뭘 봤는가 물어보면 봤던 것을 얘기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것은 얘기할 수 있다. 그걸 또 얘기해 줘야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갈 적에 북괴에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하기 위해 간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라고 국가기밀 탐지행위를 강하게 부인하였다.⁸⁹⁾

다. 중정의 이수근 관리실태

국가정보원은 이수근의 관리실태에 대한 동향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의해 중정측의 단계별 관리실태를 보면 제1기(1967. 3. 22~5. 3.)는 전국적인 환영시기였고, 제2기(1967. 5. 3~9. 15.)는 5국에 인계되어 한남동 소재 안가에서 전략신문을 하였고, 제3기(1967. 9. 15~1968. 3. 15.)에는 전략신문 후 이문동에 정착하는 단계를 거쳤다.⁹⁰⁾

중정은 제7국 주관 하에 이수근의 반공강연 등 대외활동 관리와 동시에 동향을 감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감찰실에서도 사생활 및 접촉인물 신원파악 등 동향을 감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고,⁹¹⁾ 이수근의 운전기사로부터 북한 찬양 발언 등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였으며,⁹²⁾ 특별히 북한찬양 사실이 없으나 중정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해 수차에 걸쳐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지만,⁹³⁾ 중정은 출국 전까지는 간첩행위로 불만한 특이동향을 발견치 못했다.⁹⁴⁾

89) 1969. 5. 3. 3차 공판기일, 「최후 변론」

90) 1969. 2. 7. 조규채 진술서(수사기록 929~933쪽)

91) 「수사기록」 제340쪽, 제924쪽, 929쪽

92) 1968. 9. 23.자 및 10. 2.자 보고, 「수사기록」 제340쪽

93) 조규채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929쪽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위 윤하경은 “이수근이 각종 강연시 김일성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수상하다는 중정의 내부적 판단에 따라 1968. 4.경부터 내사에 착수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수근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발언내용을 직접 녹음하는 방법으로 동향을 감시한 것을 비롯하여, 이수근을 접촉한 20여 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면담절차를 거쳤다”, “동향감시를 하였으나 특이동향은 발견치 못하였고, 이수근의 동향은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다는 내용의 첩보 형식으로 일일보고를 하였으며, 위 인물 파일을 비롯한 첩보보고가 제5국에 수사자료로 인계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⁹⁵⁾

라. 소결

이수근은 북한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부인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이수근의 자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일관성이 없다.

이수근의 진술서에 의하면 수첩에 국내에서 야기된 주요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사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첩에 북한의 지령이나 북한에 제공할 목적으로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⁹⁶⁾ 수첩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탐지’하였다거나 또는 ‘북한에 제공할 목적으로 탐지’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⁹⁷⁾

이수근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대외활동이 중정의 통제와 감시를 받았음에도 중정에서는 이수근이 출국하여 체포될 때까지 기밀탐지 활동에 대해 인지하

94) 2006. 9. 20. 진술청취

95) 2006. 9. 7. 진술청취

96) 압수된 수첩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

97)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 참조, 학설은 이 소수의견이 통설이다. 뇌물죄와 관련된 수첩은 그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만, 설령 수첩에 국가기밀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취득 경위 및 목적이나 정보제공 여부 등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뇌물관련 수첩과는 다르다.

지 못했으며, 1967. 3. 22. 이수근은 귀순 직후부터 같은 해 9. 초경까지는 전국적인 환영대회 참석 및 5국의 전략신문 등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없었고, 1967. 8. 1. 중정 7국 소속 판단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7국 주관 하에 대국민 반공강연 활동에 동원되었으며, 측근인 운전기사, 감찰실 직원들에 의한 동향감시로 독자적인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군부대 및 산업체 등을 방문한 것도 중정 7국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중정의 판단관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일정한 주거지에서 결혼생활을 하였고, 운전기사가 감시를 하였다는 사실 등은 이수근이 국가기밀을 탐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고,

달리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 또는 북한에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7. 배경옥에 대한 부분

판결에 의하면 신청인 배경옥이 ① 암호문을 홍콩으로 반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수근의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방조하고, ② 북괴와 접선하기 위한 국외 탈출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이수근과 회합하고, ③ 이수근과 공모합동하여 북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④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이수근으로부터 여권발급 수수비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배경옥에 대한 위 범죄사실들은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 암호문을 발송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점,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탈출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 만큼 배경옥에 대한 위 범죄사실들도 인정될 수 없다.

V. 결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이수근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귀순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암호문을 발송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간첩으로 인정한 수사 및 판결은 이수근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 없는 일부 자백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수근의 자백은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고 변호인 접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간 고립된 구금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거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타나 강요 등으로 인하여 자백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중정 직원들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고, 중정에서는 위장귀순 여부를 신문하고 판단관회의를 거쳐 자진귀순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수근에게 간첩에게 필수적인 암호명, 난수표 등도 없었고, 북한으로 보내려고 모스크바 교회로 발송하였다는 비밀편지는 난수표에 의해 암호화된 것도 아니고 국가기밀을 담고 있지도 않았으며, 운전기사, 감찰실 직원들에 의한 동향감시로 독자적인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가기밀 탐지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출국시 제3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영한사전·한영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홍콩 도착 후 직접 마카오 또는 구룡반도를 경유하여 중국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행선지가 홍콩에서 월남을 경유하면서까지 제3국인 캄보디아로 향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이수근이 자진귀순 하였으며, 중립국에 가서 살려고 했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고, 달리 이수근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중정은 이수근, 배경옥에 대하여 영장발부 없이 11일간 불법구금한 채 조사

를 하였으며, 최초 진술서 등을 수사기록에서 제외시켰고, 검찰은 일부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일부 자백에 의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위 불법구금은 형사소송법 제420 조제7호, 제422조 규정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중범에 불과한 공범들조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그 실체를 다투고 있는 마당에 극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항소의사를 밝히고 나서 항소를 포기하였고, 공범들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여 생명을 박탈한 점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중정이 전락신문 결과 위장귀순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수근을 판단관으로 채용하여 국민승공 계몽사업에 활용하였으나, 이수근이 중정의 지나친 감시 및 재북 가족의 안위에 대한 염려 등으로 한국을 출국하자, 중정이 당혹한 나머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하여 귀순자의 생명권이 박탈된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진실이 규명이 되었음을 결정한다.

2. 권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⁸⁾

98) 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결정사안】

이준호와 그의 모(母) 배병희가 1985.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1972년 간첩을 방조하였으며, 이준호가 1974년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 등을 탐지하고, 1981년 예비군 훈련장의 기밀을 탐지하였다는 혐의로 이준호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배병희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전향(轉餉)한 공작원의 막연한 제보(提報)만을 근거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관여 하에 참고인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허위(虛僞) 사실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수사기록에 구금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欺罔)하여 사건을 허위조작(造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피해자들이 1985. 1. 11.경 서울시경 대공분실(對共分室)에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았다. 위 불법감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피해자들은 고립된 장소에서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 기망 등에 의해 자백을 하였고, 이것이 검찰에까지 이어져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4. 1972. 3. 간첩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준호, 배병희의, 1974년 및 1981년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준호의 각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補強證據)가 없다.
5.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하였다.
6. 이 사건은 북한에 월북 가족을 두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고, 자백을 기재한 검찰조서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당한 전형(典刑)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평가된다.
7.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3507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사건

【신청인】 이준호, 배병희

【결정일】 2006. 12. 1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신청요지

이준호·배병희(이준호의 어머니)는 1985. 1. 11.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39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간첩방조, 간첩, 금품수수 및 회합, 군사기밀 탐지 혐의가 조작되어 기소되었고, 1985.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준호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배병희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85. 12. 18.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6. 3. 25.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판결요지

이준호는 1972. 3. 중순경, 6·25 때 월북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숙부 이한수

로부터 지령을 받고, 뒷산 쪽으로 내보내줌으로써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배병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한수 등을 뒷산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안전하게 입북하도록 함으로써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이준호는 ① 위 일시, 장소에서 이한수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1974. 4.경 해병대대본부의 위치, 시설 등을 탐지하고, ② 1974. 8.경 이한수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위 해병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을 수수하고)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생산장비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③ 1981. 4. 초순경 2일간 예비군 훈련 때 그 훈련장의 위치, 시설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것이다.

신청인 이준호는 2006. 5. 17.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의혹사항

1. 불법감금 여부

이준호, 배병희는 1985. 1. 11.경 강제연행된 후, 1985.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9일 동안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 불법구금되어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진술 여부

이준호는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각목 등을 이

용한 구타와 손과 발을 이용한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피해를 입었으며, 고문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하였다는 것이다.

3.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 여부

이준호와 배병희는 간첩방조 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허위조작된 것이며, 이준호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하지도 않았으므로 간첩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허위조작된 것이라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범위 중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중대한 인권침해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허위조작사건 등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본법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들이 장기간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여 허위 조작된 의혹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법 제2조제1항제7호가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피해자 이준호·배병희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전조사를 거쳐 2006. 9. 5.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 조사

이 사건 자료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검찰청 보유자료 : 7건, 1,316쪽

수사기록, 1심·항소심·상고심 및 재심 공판기록 등을 입수하였고, 수사 기록을 통해 사건의 인지, 검거경위, 검거일자, 수사내용, 사건개요 등을

파악하였고, 재판기록을 통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파악하였다

○ 타 기관 보존자료 : 6건, 92쪽

국가기록원,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심의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육군, 국가정보원, 용인대학교에서 자료를 입수 분석하였고, '정보사범신병조정' 문서를 통해 검거일시, 범죄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기타 일반자료 : 3건, 22쪽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노동일보 기사를 입수하였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사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2. 진술 청취

피해자 및 참고인, 당시 수사관 등의 진술청취를 통해 사건의 배경, 수사경위, 전반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하였다. 참고인 명단, 조사일자 등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V. 조사결과

1. 사건진행 경과

가. 피해자 이준호의 가정 환경

이준호의 조부 이봉준, 조모 김애지는 장남 이한국, 차남 이한수, 삼남 이한순 세 아들을 두고, 장남 이한국은 배병희와 결혼하여 아들 이준호와 딸 이주영을 두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강화도에서 인민학교 교사 활동을 하다가

1950. 9. 28. 서울이 국군에 탈환되었을 때 그의 동생 이한수와 함께 월북하였다.

이준호는 강화도 양도면 건평리에서 조부 이봉준, 조모 김애지, 모 배병희, 숙부 이한순, 숙모 이명금, 매 이주영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1969. 3.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 1973. 2. 동 대학을 졸업한 뒤, 1973. 10. 5. 방위병에 소집되어 이듬해 1974. 5. 17.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이준호를 비롯한 가족은 1974년 겨울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준호는 이후 전자제품상 등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5. 1. 11.경 이 사건으로 연행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다.¹⁾

나. 수사 착수

1) 전 공작원 홍OO의 제보

1985. 2.에 작성된 ‘서울시경의 검거보고서’에 의하면,²⁾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은 前 대남공작원 홍OO³⁾로부터 북한에 있을 때 “공작원 박모로부터 1972년 강화도 집에 내려가 가족과 접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첩보 및 안모 지도원과 공작원 운반을 담당하는 운전수로부터 “이한수가 1974년에 2차 남파되어 가족토대공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후 대공분실 수사팀은 경기도 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위 홍OO에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가족구성이 가장 유사한 대상 수십 명을 색출하여 집중 수사를 실시,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542에 거주하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이준호의 숙부 이한수를 남파공작원으로 지목한 다음, 홍OO에게 이한수

1) 서울시경 수사기록 중 ‘의견서(1985. 2.)’에 기재된 이준호 가족의 이력사항

2) ‘경찰수사기록’ 중 72쪽(1985. 2. 작성)

3) 홍OO는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1980. 5. 16. 남파되었다가, 같은 달 23.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전향하여 1982. 8. 2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 초등학교 사진을 제시하여 사진 속 인물이 북한에 있을 때 만난 박모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그의 친척인 이준호, 배병희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홍OO는 2006. 9. 27.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재북 당시 박모의 본명은 알지 못하였고, 남한의 수사기관에서 박모가 이한수임을 알려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박모의 출신지 역시 경기도일 것이라고 추정만 하였을 뿐 정확한 지역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 역시 남한의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어 강화도라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가족들과의 접촉상황에 대해서 “1972년 당시 가족들은 박모의 출현에 매우 놀라는 눈치였으며, 특히 아버지는 박모의 공작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것과 조카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박모가 갈증을 느껴 형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였으나 함께 갔던 성명불상 조장이 박모의 가족을 믿지 못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공작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조카 이준호에게 학비에 사용하라며 공작금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974년 박모가 재남파되어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안모 지도원과 운전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득문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안모 지도원과 가깝게 지내기는 하였으나 이한수의 재남파 공작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자신이 제보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수사관들이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가져와 초안대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하며, 이준호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역시 일정하게 수사가 진행된 뒤 본인에게 경찰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내용을 적은 종이를 가져와 그 내용을 진술서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여 그대로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작대상 가족이 저항하는 경우 다시 가족토대공작을 전개를 하는지 여부를 묻자, “그 경우 통상 재공작을 전개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작은 보통 포기한다”고 진술하였다.

2) 담당 수사관의 진술

김OO는 “1982년경 전 남파간첩 홍OO로부터 입수된 제보로 시작되어 약 3년간 수사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첩보입수 때부터 주무 수사도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

조OO는 “이준호에 대한 수사 착수는 전 남파간첩 홍OO의 첩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위 김OO가 일정하게 수사가 진행된 후 홍OO에게 몇 가지 사건 내용의 요점을 적어주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⁵⁾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OO은 “이준호·배병희에 대한 수사는 홍OO의 첩보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후 몇 가지 사건내용을 진술하도록 홍OO와 상의하였을 것”⁶⁾이라고 진술하였다.

3) 소 결

이 사건은 서울시경에서 전 대남공작원이었던 홍OO가 북한에서 박모 공작원이 남파되어 경기지역의 가족을 만난 사실을 들었다고 제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경찰은 일정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홍OO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 사실을 적은 종이를 가져와 그 내용을 진술서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초의 막연한 제보를 바탕으로

4) 2006. 10. 27. 진술청취

5) 2006. 10. 23. 진술청취

6) 2006. 10. 24. 진술청취

수사과정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조작하여,

이한수가 1972년 잠깐 동안 가족을 만나고 간 사실을 '간첩방조'로 조작하고, 1974년의 간첩행위는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수사과정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1985. 1. 11.경 이준호, 배병희를 연행하여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2. 17.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 19.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달여 조사를 한 다음 3. 26. 서울지방법원에 기소(검사 고영주)를 하였다.

라. 재판 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부장판사 안문태, 판사 이동영, 권순일)은 1985. 4. 23. 첫 재판을 시작으로 모두 5회 재판을 거쳐 7. 23. 이준호에게 징역 10년, 배병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부장판사 이원배, 판사 곽동효, 박장우)은 1985. 12. 18. 이준호에게 징역 7년 배병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대법원(대법원 판사 김형시,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은 1986. 3. 25.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준호, 배병희는 복역을 마치고 1992. 4. 30. 및 1988. 10. 31. 각각 만기출소하였다.

2. 불법감금 여부

가. 수사 기록

서울시경 검거보고서에 의하면 1985. 2. 17. 11:00 이준호, 배병희, 김애지, 이

명금을 인천의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준호와 배병희에 대하여는 1985. 2. 17. 구속영장을 청구, 2. 19.에 발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⁷⁾

서울시경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보낸 신병처리조정문서에 의하면 서울시경 대공과 대공분실에서 이준호, 배병희를 검거한 일자는 1985. 2. 10.이며, 이들을 검거한 장소는 각각 피의자들의 주거지로 기재하고 있고,⁸⁾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 2. 18.자 정보사범 신병처리조정문서에서 서울시경의 의견대로 신병처리하도록 통지하고 있다.⁹⁾

나. 피해자 진술

이준호는 1985.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985. 1. 10. 밤 10시에 연행되어 1985.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배병희는 “이준호보다 약간 먼저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구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준호는 1985. 9. 23. 작성한 항소이유서에서 “경찰에서의 48일간 감금 취조로부터 억압과 고문 등 고통스러움에 의한 본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하였고,¹⁰⁾

1986. 2. 18. 작성한 상고이유서에서 “1985. 1. 11.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48일간 감금시켜 가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준호는 “1985. 1. 11. 대우자동차 중부사무소에서 근무 중 집에서 어머니가

7) 「수사기록」 제73쪽 (서울시경 1985. 2. 작성)

8) 1985. 2. 13.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대공02661-1676 정보사범신병처리조정』 제하 문건

9) 1985. 2. 18. 『대공703-147, 정보사범 신병처리 조정』 제하 문건

10)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기록 306쪽

11)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기록 상고이유서

연행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집으로 간 후, 서울역 역전 파출소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처 김기숙, 매형 백남해, 매 이주형과 같이 서울역 파출소로 가자, 차에 태워져 연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¹²⁾

다.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처인 김기숙은 “1985. 1. 11. 집에 같이 있다가 배병희가 연행되어, 남편인 이준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준호가 집에 왔을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같이 서울역 파출소로 갔으며, 그 당시의 상황을 가계부에 기록하여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숙부 이한순과 숙모 이명금이 연행되었던 사실 역시 가계부에 기재하여 연행일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¹³⁾

이준호의 숙모 이명금은 1985. 5. 17. 1심 공판정에서 자신도 1985. 1. 14.부터 1. 28.까지 수사기관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14일간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¹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편 이한순과 함께 1985. 1.경 3명의 수사관에 의해 영장도 없이 가택수사와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응하였으며, 이 당시 구금된 일수는 14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¹⁵⁾

이준호의 숙부 이한순은 “이준호와 배병희가 연행되고 며칠 뒤인 1985. 1. 14.경 인천 자택에서 수사관 3명에 의해 처와 함께 영장 없이 연행되어 각기 다른 방에서 약 2주일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¹⁶⁾

라. 수사관 진술

김OO는 서울시경 대공과 대공분실이 1985. 2. 13.에 작성하여 국가안전기획

12) 2006. 6. 3. 진술청취

13) 2006. 7. 21. 및 2006. 10. 4. 진술청취

14)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공판’ (1985. 5. 14. 85고합284)

15) 2006. 7. 21. 진술청취

16) 2006. 7. 28. 진술청취

부로 보낸 ‘정보사범발생 및 검거통보’에서 이준호 가족의 검거일자와 검찰송치 기록 중 의견서에 기록된 검거보고서의 검거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에 대해, “그렇게 기재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준호 연행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1985. 1. 11.경 이준호, 배병희 등을 연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¹⁷⁾

조OO는 “이준호를 연행하였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이준호가 수십 일간 옥인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었던 점은 기억하고 있다. 이준호 연행경위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은 서울역 파출소로 출두한 이준호를 연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장제시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¹⁸⁾

서무담당 김OO은 ‘신병처리조정의견서’와 송치 의견서에 기록된 이준호의 검거일자가 각각 ‘2. 10.’과 ‘2. 17.’로 상이하게 기재된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진술하였고, 직접 이준호를 연행한 사실은 없으나 “이준호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약 한 달 정도 조사받았고, 이준호 등을 연행할 당시 영장 등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¹⁹⁾

심OO은 “배병희를 연행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상당기간 옥인동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었다. 당시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와 장기간 불법구금하는 것은 수사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⁰⁾

마. 소 결

수사기록에 기재된 이준호, 배병희, 이명금, 이한순의 서울시경 진술서 말미에 기록된 날짜는 원래 ‘1’월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2’월로 고쳐진 흔적이 있다.

17) 2006. 10. 27. 진술청취

18) 2006. 10. 23. 진술청취

19) 2006. 10. 24. 진술청취

20) 2006. 10. 26. 진술청취

서울시경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보낸 신병처리조정문서에는 이준호, 배병희, 김애지, 이명금의 검거일이 1985. 2. 10.로 기재된 반면, 서울시경의 검거보고서는 1985. 2. 17.로 기재되어 있는 바, 검거 당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위 수사관들이 모두 검거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며, 장기간 불법 구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준호·배병희는 1985. 1. 11.경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준호의 처 김기숙, 이준호의 숙부 이한순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

따라서 이준호, 배병희가 1985. 1. 11.경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적어도 위 신병처리조정문서에 의하면 이준호, 배병희를 검거한 일자는 1985. 2. 10.이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2. 19.까지 9일간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

위 불법감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불법감금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가혹행위 및 허위진술 강요 여부

가. 피해자 진술

이준호는 1985. 4. 23.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자백한 이유에 대해, 고문당한 일이 있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할 것이냐, 시킨대로 하면 내보내준다'고 해서 진술한 것이며,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에 가서 부인하여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며, 이미 '검찰보

다 상급 기관인 안기부에서 결재가 난 일이니 여기서와 다르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고 말해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¹⁾

1985. 10. 30.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정에서, 39일간 수사기관에서 구금되어 조사받는 동안 구타를 당하였고, 발로 밟히고, 손으로 옆구리를 맞기도 하는 등 물리적 압력과, 자백을 해야 어머니와 나갈 수 있다고 회유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물리적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수사관이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자백하여야 공소가 취소되고 어머니와 함께 나갈 수 있으며 수사관들과 함께 공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준호는 “경찰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과 발 등으로 매일 구타하였고,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틀’을 가져오라는 등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쳐서 넘어지면 뒤에서 다른 수사관이 목이나 허리, 등을 짓밟고, 잠을 안 재우고 의자에서 자게 하고, 강한 서치라이트 같은 것을 약 3일간 비추었다”, “74년 2차 접촉사실을 조작할 때에는 잠을 전혀 자지 못하게 한 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정신이 몽롱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²⁾

이준호 수용자신분장의 1985. 4. 11. 및 4. 22.자 접견기록에는 수사과정에서 강제로 쓰인 불빛의 후유장애인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배병희는 1985. 4. 23. 1심 공판시 경찰과 검찰에서 행하지 않은 범행사실을 진술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보내준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1985. 12. 18. 서울고등법원 공판에서도 ‘검사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한 것은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1)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1회 공판조서’ 104쪽

22) 2006. 6. 30. 진술청취

나. 참고인 진술

위 이한순은 “수사 첫날 벽에 물구나무서기를 시작으로,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실에 있던 수사관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수시로 당했으며, 수사 기간 내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강한 불빛을 얼굴에 자주 비추어 눈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6·25 당시 월북한 형 이한수를 만나기 위해 입북한 사실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조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물구나무세우기, 불빛을 비춰 잠 안재우기, 구타, 물고문 등을 당했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말미의 작성 날짜 ‘2. 18.’의 글씨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닌 수사관의 글씨체”라고 진술하였다.²³⁾

위 이명금은 1985. 5. 14. 1심 공판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처음에는 사실대로 작성하였지만 수사관이 이준호는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써라 해서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진술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관 진술

조OO는 이준호를 수사할 당시 큰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준호 연행과정에서 구타한 사실, 수사실에서 약 이틀간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하였던 사실 등은 시인하였고²⁴⁾

또한, 자신이 직접 참고인 진술서를 받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으나, 참고인들 중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참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진

23) 2006. 7. 28. 진술청취

24) 2006. 10. 23. 진술청취

술하였다.²⁵⁾

김OO는 이준호·배병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진술서에 관한 한 본인이 관여한 바 없어 진술서 작성 및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김주연(건평리 해안초소 근무자)과 윤경수(해병대 대대본부 집체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처럼 참고인 진술서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러한 진술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이준호를 수사할 당시 불법연행,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준호나 이한순에 대한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하며 공소보류 조건제시 등의 기망(欺罔)행위 등도 역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²⁶⁾

라. 소 결

당시 수사관들은 연행과정에서의 구타와 수사중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에 대해 시인하였다. 이준호의 접견기록 중 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당시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참고인들에게까지 경찰의 허위진술 강요와 협박이 있었음을 볼 때, 이준호, 배병희에게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강요와 기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준호에게 구타, 잠 안재우기, 강한 불빛을 비추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고립된 장소에 장기간 불법감금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호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하여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협박하고, 공소취소로 어머니와 함께 석방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25) 「조OO 진술조서」 6쪽 (2006.10.23.)

26) 「김OO 진술조서」 12쪽(2006.10.27.)

배병희에게는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강요와 기망을 하여 검찰에 가서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1972년의 간첩방조 여부

가.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이준호는 1972. 3. 중순경 6·25 때 월북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숙부 이한수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교양을 받고 이에 동조하여, 대학생 군사 훈련실태, 해안경비상황, 양도면 지서현황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재학중이던 서라벌대학의 군사교육단 편제, 건평리 선창가 상황 등에 대해 알려주고,

또한, 주변 군부대, 해안경비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북괴 지역으로의 탈출을 도와줄 목적으로 다음날 01:00경 위 이한수 일행을 뒷산 쪽으로 내보내 줌으로써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던 이한수 일행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²⁷⁾

배병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한수와 성명불상 동행인을 만나 4월이 위 대한 김일성 수령의 환갑인데 우리집에서도 무언가 뜻깊고 간단한 것으로 선물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늦주발 1벌과 빈 정종병에 붉은 팔을 가득 채워 이한수에게 제공하고, 이준호와 함께 집 주위를 살펴본 후 이한수 등을 뒷산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안전하게 입북하도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27) 국가보안법 제2조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형법 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자들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

즉, 이준호, 배병희가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던 이한수 일행의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로는 아무런 물증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 또는 전문(傳聞)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 “1972. 3. 중순 22:30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집 안방에 6·25 때 월북하였던 이OO와 성명불상자가 찾아와 조부 이봉준, 조모 김애지, 모 배병희, 숙모 이명금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이OO 일행은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 이준호와 가족들은 이OO 일행이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 말에 동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OO가 서라벌대학교의 군사훈련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교련훈련 내용과 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건평리 해안가 경비 상황²⁸⁾과 양도면 지서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가족들은 이OO 일행이 선물로 전달한 개성홍삼과 인삼주, 돈 10만 원을 수수하고, 김일성 환갑기념 선물을 요구하는 이OO 일행에게 조모가 다락 위의 낫주발과 팔을 전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들이 집에서 나갈 때 조부 이봉준이 망을 봐주라는 말에 배병희와 같이 01:00경 망을 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²⁹⁾

그러나 이준호는 1심 공판정(1회 1985. 4. 23.)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

28) 이준호는 해안경비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동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음. 「수사기록」 939쪽

29)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934~943쪽 (1985. 2. 27.)

용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1972. 3. 중순 22:30경 강화도 건평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월북했던 이OO 외 성명불상자 1명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북한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대학생 군사훈련실태, 해안경비상황, 양도면 지서현황 등에 관해 이OO 일행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OO로부터 주위에 여러 사람을 많이 사귀고 친목계를 모아 가까이 지내라는 말과 주변의 군부대나 해안경비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이OO 일행이 집밖을 나갈 때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망을 봐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OO 일행에게 팔을 준 이유는 이OO가 어렸을 때 팔죽 먹는 생각이 난다고 말하여 조모가 꺼내다준 것이며, 이OO 일행이 집에 머문 시간은 40~5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준호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도 1심 법정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배병희의 진술

배병희는 검찰에서 “이OO를 만나게 된 경위는 1972. 3. 중순 저녁 동서 이명금이 잠을 깨우면서 이OO가 왔다고 말을 해서 안방에 있던 이OO 외 1명을 보았다”³⁰⁾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이OO 일행은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이준호에게 대학교 교련훈련내용, 건평리 해안가 경비초소의 위치, 병력 수, 양도지서의 위치, 경찰관 수 등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이준호가 알려주었다”, “이OO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삼과 인삼주 그리고 돈 1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가족들이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이OO가 집에 왔다간 기념으로 무엇을 좀 달라고 하여 신청인 배병희가 다락방에 있던 낫주발 한 벌과 대병에 든 팔을 찾아 시어머니

30) 서울중앙지검 「배병희 피의자신문조서」 949쪽(1985. 3. 2.)

김애지에게 주자 김애지가 보자기에 써서 이OO에게 주었다”, “이OO 일행이 집을 나갈 때 시아버지 이봉준이 망을 봐주라고 지시하므로 이준호와 함께 망을 봐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³¹⁾

그러나 1심 공판정(1회 1985. 4. 23.)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972. 3. 중순 22:30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신청인의 집에서 신청인과 조모, 조부, 아들 이준호, 동서 이명금과 함께 이OO 외 성명불상자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이나 김일성 환갑을 위해 뭔가 뜻깊은 것을 선물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또한, “이OO에게 괄과 늦주발을 보자기에 써서 준 사실 역시 없으며, 시어머니 김애지가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시아버지 이봉준이 이OO의 복귀를 돕기 위해 자신에게 망을 봐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자신 또한 망을 봐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배병희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 “1972년 이OO 일행을 접촉할 당시 이OO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아버지께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신고치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숙모이자 배병희의 동서인 이명금은 검찰에서³²⁾ “1972. 3. 중순 22:30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집 안방에 6·25 때 월북하였던 이OO와 성명불상자가 찾아와 시아버지 이봉준, 시어머니 김애지, 동서 배병희, 조카 이준호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이OO가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이때 이OO는 조카 이준호와 건평리 해안초

31) 서울중앙지검 「배병희 피의자신문조서 2회」 963~967쪽 (1985. 3. 8.)

32) 서울중앙지검 「피의자신문조서」 973~978쪽 (1985. 3. 13.)

소의 위치와 경비상황과 양도지서의 위치 등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OO가 김일성 수령한테 바칠 선물을 요구하자 시어머니의 제의로 동서 배병희가 다락에서 낫주발과 팔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주자 보자기에 써서 이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이OO 일행이 복귀할 때 배병희와 이준호가 망을 봐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명금은 1심 공판정(1985. 5. 14)에서 “1972. 3. 초 23:00경 이OO의 성명불상자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 이준호가 이OO 일행에게 건평리 해안 초소의 위치, 경비상황, 양도지서의 위치 등에 관해 대화한 사실 등은 없었으며, 이OO 일행이 방을 나갈 때 망을 보거나 배웅을 해준 사실 역시 없으며, 오히려 가족들은 이OO에게 자수를 권하였다”고 부인하였고,

“이OO에게 팔과 낫주발을 전해준 것은 시어머니 김애지였으며, 또한 시어머니 김애지가 이명금에게 물을 떠다주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OO와 동행한 사람이 문 앞에서 가족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눈치만 살폈다”고 진술하였다.

위 김애지는 1심 공판정(2회 1985. 2. 18)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좀 틀리다”며, “1972. 3. 일자불상 22:30경 아들 이OO가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집에 찾아와 남편 이봉준, 며느리 배병희, 이명금, 손자 이준호와 함께 만나 자신이 이OO에게 낫주발에 팔을 담아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준호는 속옷만 입고 자려고 하다가 이OO 등이 신을 신은 채 뛰어 들어와 놀라 이불로 감싸안고 있었고, 배병희 등도 모두 당황하고 있어서 배웅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OO로부터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이준호가 이OO에게 대학의 군사훈련 상황과 기타 군사적인 대화

를 나는 사실 또한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OO에게 늦그릇에 팔을 담아준 이유는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였고, 이OO는 약 30~40분 만에 돌아갔으며, 이때 망을 보아주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강봉규는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서라벌예술초급대학에서 교련을 담당했는데 교련편제, 장비, 교육대상, 교육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제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위 내용은 당시 위 대학에서 교련을 받는 학생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1971년 당시 이준호는 중대장직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마. 참고인 전문(傳聞)진술

이준호의 삼촌이자 간첩 이OO의 친동생인 이한순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83년경 이OO를 만났던 상황에 대해 “1972. 3.경 자정 자고 있던 아내 이명금을 동서 배병희가 깨워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 부, 모, 조카 이준호가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낯모르는 남자(45세 가량)는 문 옆에 서 있고, 이OO는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술, 인삼 큰 것 4뿌리, 1,000원짜리 한 뭉치를 내놓으며 ‘이거 김일성 수령님이 특별히 주시는 건데 준호 학비와 아버님 약값에 보태쓰라’고 준 사실 있으며, ‘4월이면 김일성 수령님의 회갑인데 우리집에서도 무엇인가 부피가 작은 것으로 선물 하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어머니와 상의하여 광술불을 켜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정종병에 들은 붉은 팔과 아버님 회갑 때 들어온 늦주발을 가지고 내려와서 팔을 늦주발에 담아 보자기에 싸서 주었던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배병희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한순은 1심 공판정(2회, 1985. 5. 14.)에서 “1983. 6. 초순 형수 배병희로부터 1972. 3.경 월북했던 형 이OO가 강화도 집에 내려왔었다는 사실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OO가 돌아갈 때 배웅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으며, 이OO에게 팔을 건네주었다는 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나서 배병희에게 들었다”고 부인하였다.

이준호의 친누나이자 배병희의 딸인 이주영은 서울시경 진술조서(1985. 2. 18)에서 “1973. 6.경 조부 이봉준의 제사로 강화도의 친정집에 갔을 때 조모 김애지로부터 이OO가 1972. 음력 2월 초순 밤에 처남된다는 사람과 왔다갔는데, 이북에서 아버지 이한국은 학교선생을 하며 잘 살고 있으며, 인삼 4뿌리와 돈을 내놓으며 인삼은 할아버지 잡수라 하고, 돈은 할아버지 약값과 동생 준호 학비에 보태쓰라고 내놓았으며 어머니에게 여기 왔다는 표시로 무엇인가 한 가지 달라고 하여 할아버지 환갑 때 선물로 들어온 낫주발 한 벌에 팔을 담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김애지에게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주영은 1심 공판정(2회 1985. 5. 14.)에서 “1973. 6. 중순경 친정할아버지 이봉준 사망 후 1년 탈상제사 때 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 김애지로부터 6·25 당시 의용군에 입대하여 월북한 작은아버지 이OO가 1972. 음력 2월 초순 쯤생이 모는 날 처남되는 사람과 같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으나, 그 사실을 어머니나 동생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이준호의 처남이자 이주영의 남편인 백남해는 서울시경 진술조서(1985. 2. 18)에서 “1982. 11. 초순 저녁 10시쯤 인천시 주안동 시온아파트 201호 작은방에서 처 이주영이 있는 자리에서 장모 배병희로부터 처삼촌 이OO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1972. 음력 2월 초순경 자정쯤 이OO 외 1명의 남자가 강화도 집에 나타나 얼마간의 돈뭉치와 홍삼을 내놓았으며, 김일성 회갑기념으로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며 붉은 팔을 깨지지 않는 그릇에 담아 달라고 하여 낫주발에 팔을 담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배병희에게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백남해는 1심 공판정(2회, 1985. 5. 14)에서 “1982. 11. 초순 저녁 10시쯤 인천시 주안동 시온아파트 201호 작은방에서 처 이주영이 있는 자리에서 장모 배병희로부터 이OO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1972. 2. 초순경 이OO가 강화 집에 다녀갔다고 하며 팔을 준 이야기와 인삼을 받은 이야

기를 하였고, 돈은 이OO가 잠바 호주머니에 도로 넣어갔다고 하였으며, 김일성 수령 회갑기념으로 팔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으며, 장모의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처에게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처가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서 안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부인하였다.

홍OO는 “박모는 이모(조장)와 함께 2인 1조로 남파되어 가족(부모, 형수, 조카 등)을 만났으나, 아버지는 자신을 매우 반가워하지 않았으며, 조카는 이불 속에 있었고, 특히 박모가 목이 말라 물을 떠달라고 형수에게 요청하였으나 함께 동행한 조장이 가족들을 제지하는 바람에 물을 떠오지 못하는 등 방안의 분위기는 매우 경직된 분위기였으며,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북한으로 복귀한 뒤에도 박모는 조장과 불화가 있음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아버지와 가족 등이 박모의 출현을 반가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면 공작원 입장에서 다시 공작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 언급하고, 또한 1차 남파 시 형수가 물을 떠오려고 하였으나 동행한 조장이 이를 제지할 정도로 서로 경계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면 가족이 복귀하는 공작원들을 위해 망을 보도록 허락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³³⁾

바. 소결

이준호는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1심 공판정에서 번복하고, 자신은 이OO 외 1명이 찾아와 잠깐 동안 만난 사실은 있으나, 북한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대학생 군사훈련 실태, 해안경비 상황, 양도면 지서 현황 등에 관해 이야기해준 적이 없으며, 이OO 일행이 집 밖으로 나갈 때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망을 봐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배병희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을 1심 법정에서 번복하고 이OO 외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이나 김일성 환갑을

33) 2006. 9. 27. 진술청취

위해 뭔가 뜻깊은 것을 선물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아버지 이봉준이 이OO의 복귀를 돕기 위해 자신에게 망을 봐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자신 또한 망을 봐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이명금은 검찰에서 이준호, 배병희의 간첩방조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였으나, 1심 공판정에서 이OO 외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을 들었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준호가 이OO 일행에게 건평리 해안초소의 위치, 경비상황, 양도지서의 위치 등에 관해 말한 사실도 없고, 이OO 일행이 방을 나갈 때 망을 보거나 배웅을 해준 사실 역시 없으며, 오히려 가족들은 이OO에게 자수를 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한순, 백남해는 배병희로부터, 이주영은 김애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1심 공판정에서 이를 부인하였으며, 그 내용도 결국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 홍OO의 증언 또한 행위주체, 그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며, 강봉규의 증언은 이준호가 서라벌예술초급 대학에서 교련 편제 등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목격자 김애지는 1심 공판정에서 이OO에게 늦주발에 팔을 담아준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이준호와 이OO가 대학의 군사훈련 상황과 기타 군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또한 없고, 자신이 이OO에게 늦그릇에 팔을 담아준 이유는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였고, 이OO는 약 30~40분 만에 돌아갔으며, 이때 망을 봐주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간첩을 숨겨주거나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밀 탐지라는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있어야만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OO가 찾아와서 30~40분간 만나고 바로 보내기 위해 늦그릇에 팔을 담아주어 바로 돌아간 사실만으로 김애지의 간첩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³⁴⁾

따라서, 1972년 이준호, 배병희의 간첩방조 행위에 대한 증거는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 외에 없다. 그러나 이준호, 배병희는 경찰에서 고립된 장소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이 이준호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고, 공소취소로 어머니와 함께 석방될 수 있다고 기망을 하였고, 배병희에게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강요와 기망을 하여 검찰에서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준호, 배병희의 간첩방조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5. 1974년 및 1981년의 간첩행위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이준호는 ① 1974. 4. 중순경 양도면 사무소 방위병으로 근무중 해병대 대대 훈련장에서 1일간 집체교육을 받게 되자 이를 기회로 위 이OO의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해병대 대대본부의 위치가 강화군 해송면과 인접한 하점면 부군리 고려산 북쪽 기슭이며, 동 본부 시설은 군막사 7개 가량, 병기창고 1개, 헬리콥터장 1개소 등이고, 훈련내용은 칼빈소총을 가지고 제식훈련, 총검술, 정신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② 1974. 8. 하순경 다시 납파되어 온 위 이OO 외 1명과 만나 이OO로부터 남조선 인민들도 힘을 합쳐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등의 교양을 받고 조선노동당 입당권유를 받고 승낙하여 '한강518'이라는 당증번호를 부여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간 탐지 수집한 해병대대 시설 등을 보고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때가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34) 「대법원 1979.10.10. 선고 75도1003 판결」, 「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661 판결」 참조

군사시설, 군수공장을 자세히 알아뒀다가 다음에 보고하라는 새로운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한화 5만원을 받고,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천시 소재 대우중공업 훈련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은 인천시 만석동 해안에 위치, 공장규모는 10만평 가량, 동 공장에서 디젤엔진, 지게차, 중장비를 생산, 군납도 하고 있다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고(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

③ 1981. 4. 초순경부터 2일간 인천시 주안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동 훈련장의 위치, 시설과 훈련용 무기와 훈련내용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였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형법 제98조제1항).³⁵⁾

그러나 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이준호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다.

나. 1974년 4월 해병대대의 기밀탐지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1985. 2. 27.)에서 “1974. 4. 중순경 강화군 하점면 소재 해병대대 훈련장에서 1일간 집체교육을 받으며, 해병대 대대본부의 위치, 해병대 본부의 시설이 막사, 병기창고, 헬리콥터 등이라는 사실과 훈련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35)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1회 1985. 4. 23.)과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1974. 4. 중순경 강화도 하점면 소재 해병대대의 시설 및 교육내용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에 대해 당시 1일간 집체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눈여겨볼 수 없었다”며 부인하였다.

2) 참고인 진술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병무담당 직원 윤문석은 서울시경에서의 진술(1985. 2. 18.)과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73. 10.~1974. 5. 동안 이준호를 병무담당 보조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바, 이준호의 근무내용은 징병검사대상자 관리, 징소집대상자자원 관리 등으로 병무전반 보조업무였으며, 양도면의 예비군 인원은 약 300명~400명 가량이었고, 방위소집자는 약 60여명 가량으로 기억하고, 예비군 중대본부와 예비군 무기고는 양도지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고, 현 중대본부는 3년 전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준호의 초등학교 동문이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친구 김주연은 경찰에서 1973. 5.부터 1974. 6.까지 강화군 양도면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74. 4. 강화군 하점면에 소재한 해병부대에서 집체교육 훈련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619-622 정)는 경찰관이 진술을 받아쓰고 자신은 서명·무인만 한 것이라는 것이며, 1973. 5.~1974. 6.까지 양도지서 및 건평 해양초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한 바, 당시 건평리 방위소집 근무자로 이준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1974. 4. 일자미상 고려산 북쪽 기슭에 있는 해병부대에서 방위소집근무자 집체교육 훈련을 받았고, 매월 1회씩 1일 8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그 후 5월에도 교육을 받고 6월에 제대하였으나 이준호와 함께 집체교육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김주연은 또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수사관이 직접 작성하였고 본인은 단지 마지막에 서명, 날인만 하였다. 수사관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디로 보낸다느니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두렵고 겁이 났던 상황이라 본인이 작성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빨리 진술을 끝내고 수사관들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진술서의 내용 중 해병부대에서 교육받은 사실 등은 당시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인데 진술서에 수사관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³⁶⁾

당시 해병대대에서 집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윤경수는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75. 5. 10.~1976. 6. 10.까지 강화군에서 방위소집근무를 한 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맞으나 경찰관이 받아쓰고 자신은 서명·날인만 했으며, 자신이 해병대대본부에서 받은 집체교육 내용, 대대본부 및 시설교육에 대한 진술은 사실이나, 이준호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남궁겸은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에서 진술한 양도면 일대 해안초소의 현황 및 해안선 경계근무에 관한 진술(수사기록 601-602정)은 모두 사실이며, 양도면 지역 건평리, 하일리, 능내리 등에 각 1개소의 해안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양도면 예비군 등 지역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일반주민들은 방위병들이 매 초소에 3~5명이 1개조가 되어 2시간씩 교대근무하는 것을 잘 모르나 예비군과 방위병들은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위 윤문석은 이준호가 병무담당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김주연은 이준호와 함께 해병부대에서 집체교육 훈련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윤경수는 이준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36) 2006. 7. 25. 진술청취

진술하였고, 남궁겸은 해안초소 현황 및 해안선 경계근무에 대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 바, 위 네 사람들의 진술은 1972. 3.경 집에서 이OO를 만나서 받은 지령에 따라 1974. 4.경 해병대대 본부의 위치, 시설 등을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입증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이OO가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이준호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이 유일하고, 아무런 보강증거도 없다. 이준호가 이OO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이준호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1974. 4.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1974년 8월 반국가단체 구성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³⁷⁾ “1974. 8. 하순 23:00경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신청인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1972년에 접촉했던 이OO 일행이 재차 찾아와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하고, 신청인은 이들의 권유로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가진 뒤 ‘한강518호’의 당증번호를 부여받고, 김일성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 “강화군 하점면에 위치한 해병대 본부의 시설, 훈련내용과 양도면 내 예비군병력, 방위병 병력, 예비군중대본부 위치, 예비군 무기고 위치 등을 이OO 일행에게 알려주었다”,

“이OO 일행으로부터 주변의 친구들을 조직할 것과 군사시설, 군수공장 등의 시설을 탐지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들로부터 한화 50,000원을 수수하고 이들이 집을 나갈 때 망을 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7)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953~957쪽 (1985. 2. 27.)

그러나 이준호는 1심 공판정(1985. 4. 23.)에서 “1974. 8. 하순 23:00경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OO 외 1명과 만났다는 사실조차 없으며, 이들로부터 교양을 받거나 노동당 입당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작금을 수수하거나 주변의 친구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였다. 이준호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도 1심 법정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조모 김애지는 1심 공판정(2회 1985. 2. 18.)에서 “이준호로부터 이OO가 1974. 8. 하순 밤 11시경에 다녀갔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1972. 음력 5. 8. 남편 이봉준이 사망한 뒤로 병을 얻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몸이 점점 병약해져서 화장실 출입도 겨우 할 정도였으며, 1974. 1. 자신의 손녀 이주영이 혼인을 할 때도 병으로 거동을 못하여 참석치 못하고 집에 있었으며, 1974. 8. 하순경 역시 집 밖에 나간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위 김애지의 진술은 전혀 입증자료가 되지 않는다. 이준호가 1974. 8.경 이OO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위 해병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이준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도 없다. 이준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이OO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위 해병대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1979년 10월 대우중공업 탐지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 “1979. 10. 초순경 인천시 만석동 소재 대우중공업 연수원에서 최창섭 등과 함께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으며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무장경비원 수 등을 알게 되었고, 구내식당에서 대우중공업 인천공장 사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성명불상 사원으로부터 이 대우공장에서 디젤엔진, 지게차, 굴착기 등을 생산하며 군납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³⁸⁾

그러나 이준호는 1심 공판정(1985. 4. 23.)에서 “1979. 10. 초순경 인천시 만석동 소재 대우중공업 연수원에서 최창섭 등과 함께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으며 알게 되었다는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무장경비원 수, 생산물품 종류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대충 들은 바는 있으나, 정확한 회사의 실정은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이준호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4.)에서도 1심 공판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이준호는 1979. 10. 당시 대우자동차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훈련센터를 벗어나지 못하여 대우중공업의 안쪽은 전혀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신입사원 훈련중 개인행동을 하여 안쪽의 대우중공업을 가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진술하였다.³⁹⁾

2)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대우자동차 입사동료 최창섭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79. 10. 17.부터 10. 22.까지 대우자동차 판매신입사원 교육을 인천시 동구 만석동 소재 대우중공업(주)에서 이준호(당 36세) 등 약 100명 가량이 교육을 받

38) 「수사기록」 958~959쪽

39) 2006. 6. 30. 진술청취

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서에서 진술서(수사기록 650-651 정)를 작성하고 무인하였으나 그 내용이 일부 틀린다고 진술한 바, 당시 경찰서에서 1979. 10. 17.부터 10. 22.까지 대우자동차 판매신입사원 교육을 이준호와 대우중공업(주)에서 교육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 이준호를 몰랐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최창섭은 당시 진술서 작성경위에 대해 “인천 회사로 찾아온 수사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적는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당시 작성된 진술서 내용은 대부분 수사관의 강요에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대우중공업이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대우중공업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작성할 때 수사관들에게 진술내용 자체를 부인하며 작성할 것을 거부하였으나,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실제로 알지 못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⁰⁾

당시 대우중공업(주) 연수원 과장이었던 김영복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79. 10. 17.~10. 22.까지 5박 6일간 대우자동차 판매신입교육부에 교육장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도 1979. 10. 17~ 10. 22.까지 5박 6일간 대우자동차 판매신입사원 교육을 대우중공업(주) 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연수원에서는 교육장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대우중공업(주) 비상계획부 계획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이민화는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79. 10. 17~10. 22.까지 5일간 대우중공업 사내에서 목격한 사항을 진술한 바, 생산장비, 회사시설, 경비현황 및 구내식당은 대우중공

40) 2006. 7. 27. 진술청취

업 인천공장 사원들과 교육장 연수생들이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에서 진술한 대우중공업의 군납상황 및 경비현황, 구내식당 사용에 대한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3) 소결

위 최창섭은 당시 이준호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위 김영복은 대우자동차 판매신입교육부에 교육장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민화는 대우중공업 구내식당은 인천공장 사원들과 교육장 연수생들이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 진술들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지 않는다.

이준호가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생산장비, 군납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이준호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 이준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1979년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마. 1981년 4월 예비군 훈련장 탐지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 1981. 4. 초순경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예비군 중대로부터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주안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기본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장의 위치와 규모, 훈련시설로는 막사 2동, 강당 1동, 무기고 1동, 사격장, 연병장, 수류탄 투척 훈련장, 철조망 통과 훈련장 등이 있고 훈련용 무기의 종류, 훈련내용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심 공판정(1985. 4. 23.)에서 이준호는 검찰에서 진술한 예비군 훈련장 수집사실에 대해 예비군 교육을 받으러 가서 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예비군 중대장(1979. 11.~1983. 1. 31.)이었던 유광일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81. 4. 초순경 주안2동 예비군 소집훈련을 시킨 적이 있으며, 당시 예비군 훈련교육 내용, 훈련장 위치, 훈련장 시설 등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위 경찰에서 진술한 예비군 훈련교육 내용, 훈련장 위치, 훈련장 시설 등은 모두 사실이나, 이준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위 유광일은 이준호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므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준호가 1981. 4. 초순경 2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훈련장의 위치, 시설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이준호의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밖에 없다. 보강증거도 없다. 이준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1981년 예비군 훈련장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VI. 결 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이준호, 배병희가 1972. 3. 간첩을 방조하였으며, 이준호가 1974. 4.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1974. 8.경 이OO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위 해병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 수수를 하였으며, 1981. 4. 예비군 훈련장의 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이준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밖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이준호, 배병희가 경찰에서 고립된 장소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자백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이 이준호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고, 공소취소로 어머니와 함께 석방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배병희에게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강요와 기망을 하여 검찰에서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서,

절차적으로 이준호, 배병희가 1985. 1. 11.경 서울시경 대공분실에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는 등

무고한 국민이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로 허위조작되어 처벌받은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며, 위 불법감금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애초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경에서 공작원이었던 홍OO가 북한에서 박모 공작원이 남파되어 경기지역의 가족을 만난 사실을 들었다고 제보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공작원 이OO가 잠깐 동안 가족을 만나고 간 사실을 빌미로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로 허위 조작한 사건으로서,

전향한 공작원의 막연한 제보만을 근거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관여하에 참고인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수사기록에 구금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 등으로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방기하고 기소하였고, 법원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하였고,

그 불법수사와 위법한 재판으로 인해 수년간 징역을 살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당한 전형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진실규명이 되었음을 결정한다.

2. 권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표 1> (생략)

<별표 2> (생략)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결정사안】

김진수가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가 3년간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기마대에서 교육을 받고 전령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1924~25년 사이 모스크바 '약소민족 해방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하얼빈·운남·북경 등지에서 활발한 항일활동을 하였으며 1929년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뒤 국내에서 독립자금지원 활동 등을 하면서 생애를 항일독립운동에 바쳤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김진수가 중국으로 간 시점(1922년 10월)은 이미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가 폐교된 1920년 8월 후이므로 양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김진수의 별명인 김철(金鐵)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인 김철(金鐵)은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판단된다.
3. 일제 정보자료에 의하면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가진 김진수(金鎭水)는 1926년경 상해 프랑스조계 해송양행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구체적 항일행적은 밝힐 수 없었다.
4. 김진수가 1928년경 독립운동가 정주해가 경영하는 여관에 체류(滯留)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외 추가 자료나 그와 관련된 항일운동 행적을 찾지 못했다.

【전 문】

【사 건】 가-85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신청인】 김동수

【결정일】 2006. 12. 5.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김진수(金鎭水, 1896. 5. 9.~1946. 3. 31.)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규명을 요구하는 김동수(김진수의 손자)의 신청사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접수 및 처리

- 2005년 12월 6일 전북 전주시청에 접수
- 2005년 12월 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
- 2005년 12월 8일 민족독립조사국 조사6팀에 배당
- 2006년 4월 25일 제7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
- 2006년 4월 26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발송

2. 신청내용

신청인(김동수)은 조부 김진수가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가 3년간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기마대에서 교육을 받고 전령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1924~25년 사이 모스크바 '약소민족해방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하얼빈·운남·북경 등지에서 활발한 항일활동을 하였으며 1929년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뒤 국내에서 독립자금지원 활동 등을 하면서 생애를 항일독립운동에 바쳤음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통한 김진수의 명예회복을 요구해 왔다.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의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하나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신흥무관학교를 나와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행적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이 정한 바와 같이 명예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Ⅲ. 진실규명의 과제 및 쟁점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여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진수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수료 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수료했다는 것은 반일 무장독립운동의 최전방에서 독립군으로 복무한 항일투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9년 5월 조직된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신흥강습소에 뿌리를 둔 무관학교로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3,500여명(현재 306명의 명단 발굴)의 독립군을 배출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의 서로군정서·한족회와 유기적 연관을 갖고 있는 기관이었고,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은 청산리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19년 11월 결성된 의열단의 단원 13명 가운데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¹⁾

둘째, 『용의조선인명부(1934년)』, 『요시찰 인물카드 제557호』에 김진수의 별명이 김철(金鍊)²⁾·김철(金鐵)로 되어 있고 주소는 모스크바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카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김진수의 별명이 김철(金鐵)이었고 상해에서 활동³⁾을 했다면 김진수가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던 김철(金鐵)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는 1919년 말 개교한 이래 43명(1회 1920년 5월 8일 19명, 2회 1920년 12월 24일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⁴⁾ 1920년 11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으로 동교 학도대 중대장을 겸임했던 김철은 1920년 12월 24일 동교 제2회 졸업식 때 동교 역사를 보고했고⁵⁾

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0~25쪽

2) 김철(金鍊)의 철(鍊)은 철(鐵)의 고자(古字)이다.

3) 朝鮮總督府警務局, 「上海南京廣東地方不逞鮮人ノ近狀」, 1926.3 : 京城地方法院, 『情報』, 1928

4) 李延馥,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國家報勳處, 1999, 19쪽

그 후에는 한족회 간부,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하였으며, 1925년 정의부 중앙집행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룡현(海龍顯)에서 일본경찰에게 살해되었다.⁶⁾

셋째, 김진수가 1928년 8월경 하얼빈 정주해의 집으로 이주한 이유와 그와 관련된 항일운동 행적을 규명하는 것이다.

『용의조선인명부(1934년)』 중에 “1928년 8월경 하얼빈 도외14도의 정주해 집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김진수가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시기·지역·노선·접촉주요인물 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김진수가 정주해의 집에 이주했다는 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주해(1892. 2. 25.~1942. 12. 12.)는 1919년 3월 충북 괴산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이청천(李靑天)부대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26년부터 1930년 5월 초까지는 하얼빈에서 동성호(東星號)라는 여관을 경영하며 독립운동가의 숙식과 연락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0년 5월 1일 주(駐)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는 등 하얼빈지역에서 항일활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넷째, 조선총독부경무국이 만든 『용의조선인명부(1934년)』와 ‘요시찰인물 제 557호’에 김진수가 기재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용의조선인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비밀기록물로 반일조선인의 탄압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⁸⁾ 여기에 김진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공산당, 1922년 10월 영어연구를 명목으로 중국 광둥성으로 도항, 1928년 8월경 하얼빈 도외14도의 정주해 집으로 이전, 인물평외모 공산주의, 사상과격⁹⁾”

5) 「鉞任及辭令」 『獨立新聞』, 1921.1.21 ; 「陸軍武官學校 第二回卒業式」 『獨立新聞』, 1921. 1. 1.

6) 元秉常의 수기,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35쪽 ;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1956, 437쪽

7)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獨立有功者功勳錄』 第4卷, 國家報勳處, 1987, 893쪽

8) 朴成鎭, 「朝鮮總督府 秘密記錄 管理의 植民地의 特徵」 『韓日民族問題研究』 10,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43~82쪽

『용의조선인명부』는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를 검거할 목적으로 만든 명부로서 여기 기재된 사람은 독립운동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명부에 김진수 이름이 기재된 까닭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사실이 규명된다면 이는 곧 김진수 사건 진실규명의 큰 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시찰인물 제557호’에 대하여, 그 자료의 작성 기관·시기·성격 등이 밝혀지면 김진수의 항일행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IV. 조사의 방법 및 경과

1. 조사의 방법과 내용

김진수 사건의 조사는 민족독립조사국 조사6팀 담당조사관의 책임 하에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문헌자료 발굴 및 자료 소장기관 검색,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병행하였다.

1) 선행연구 검토

김진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지역 항일운동연구 논저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 『한국사논저목록』,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2) 관련 문헌자료 발굴과 자료소장 기관 검색

문헌자료는 국내의 경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

9)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47쪽

관, 국가보훈처,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각 대학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으며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국외지역은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흑룡강대학 한국사회문화연구소, 요녕대학 한국연구중심, 대련시도서관 노신로분관(魯迅路分館), 길림성당안관, 흑룡강성당안관, 요녕성당안관, 장춘도서관 등의 경우 국내기관에서 수집·소장하고 있는 목록을 1차적으로 검색하고, 중국에서 발행한 자료목록집을 검색하였으며 인터넷 검색도 병행하였다.

그 외 정기간행물로는 『독립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삼천리』 등을 검색하였다.

3) 전문가 자문

항일독립운동사 분야의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국가보훈처, 고구려연구재단,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주용(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일제하 중국 만주는 항일운동의 중심지였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이름만 알려졌거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포괄적 조사가 필요하다.
- 김진수 사건은 신청내용으로 볼 때 이름은 알려졌지만 구체적 항일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며 중국 쪽의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 자료조사는 1차로 중국의 당안관, 도서관, 대학 등에 소장된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한 국내의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

처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2차로 중국에서 펴낸 소장목록 도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검색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당안관은 물론 도서관 등의 소장 자료도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공식적 자료 수집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변은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중앙조사과장)

- 김진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 동안 조사하여 펴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엮음, 창작과비평사, 1996) 작업과정에서 발굴된 인물인데, 이 사전에는 수록되지 못했고,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수록 예정 인물정보 : 노령·만주지역 C급 편』(미간행본)에 수록되어 있다.
- 당시 김진수를 발견한 자료¹⁰⁾에서 그 행적의 일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활동상은 파악하지 못했다.
- 독립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비밀리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독립운동가는 가명, 별명, 변명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조사와 기간이 필요하다.
- 중국지역 자료는 비공식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고 많은 비용이 든다.
- 중국지역 자료는 목록(세부 목차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만으로 수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3)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만주는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인적·물적)이자 국내진공작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고, 신홍무관학교는 서간도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10)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47쪽

- 신흥무관학교 출신자 중 밝혀진 인물은 10%정도에 불과해 자료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일본의 방위청과 중국의 당안관이 1차 자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 관계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당안관의 공식적 자료조사는 불가능하고, 일본의 방위청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많다.
- 1920년대는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이 양대 축으로 정립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김진수의 경우는 사회주의계열의 항일운동으로 판단되고 만주지역 독립운동사 전공자(한국은 장세윤·신주백 등, 중국은 박창욱·김춘선·김성호 등)의 자문을 받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현주(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연구관)

- 국가보훈처에서 처리한 김진수 사건¹¹⁾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내역과 같고 추가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 김진수의 반일경향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독립운동 행적이 발굴되지 않아 미포상으로 결정되었다.
- 일제시대 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면 항일행적이 뚜렷해도 국가보훈처의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

(5) 장세윤(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김진수는 이름만 알려지고 항일운동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명으로 보이고 그의 행적규명은 많은 시간과 자료발굴이 요청된다.
- 조선총독부경무국에서 만든 명부¹²⁾는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를 추적·

11) 1998년 1월 국가보훈처에 보훈심사를 신청했고 2000년 '활동입증자료 미비'로 미포상되었다.

12)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검거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항일운동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명부에 기재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는 아직도 그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많다.

- 김진수 개인의 행적뿐 아니라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잊혀졌거나 이름만 남아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밝혀 복원하는 것도 진실 화해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6) 김우중(흑룡강성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고문)

- 김진수는 잘 모르지만 정주해가 하얼빈에서 경영하는 여관 동성호는 도외태고(道外太古) 14도(道)에 있었고, 1930년 5월 1일 주(駐)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 사건으로 정주해·허형식 등이 체포되었다.
- 현재 김진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당안관 자료 조사는 불가능하다.
- 김진수의 명부에 노국공산당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련공산당과 직접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소련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신청인 진술조사

신청인 김동수와 김철하(김진수의 넷째 아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³⁾

- 김진수가 중국에 간 시기는 김철하(1920년 11월 12일생인데 호적에는 1921년 6월 20일로 되었다고 함)의 돌 사진에 김진수가 있고, 돌 이후 중국으로 갔다고 들은 것으로 볼 때 1921년 말경 이후 중국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 학교는 평양 오산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앨범 등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

13) 「참고인 진술조사」(2006. 5. 25.)

- 고, 태인주민들은 모스크바대학을 나와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고 있다.
- 교우관계는 동향 친구인 송문상이 오산중학교 동문이고, 부안의 벽산 김철수와는 모스크바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으며, 광주 국기열(동아일보 지사장)과 화가 허백련, 그리고 독립군 여단장 및 반민특위 부위원장 고평등과 교우했다.
 - 이시영의 집에서 기거하며 신흥무관학교를 다녔는데 기마부대라고 들었고, 신흥무관학교 기마대에서 3년 있다가 1924~25년에 모스크바로 가서 ‘약소민족해방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았다.
 - 하얼빈 공원에서 일본 밀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고, 재산은 천석지기 정도를 소유했고, 남녀 8~9명의 일꾼을 두었다.
 - 첨부 자료인 ‘요시찰 인물 제557호’는 8·15 뒤 건준 치안대장할 때 태인주재소에서 입수했고, 조선총독부경무국 자료는 광명보훈처¹⁴⁾에서 연락이 와서 입수했다. 자료상의 별명은 예전에도 들었지만 정주해는 처음 듣는다.
 - 1929년 이후 국내 활동은 군산에 친구가 있어 왕래했고, 금산사 옆 문화금광을 경영했고, 1945년 8월 16일 김진수의 집에서 건준 태인지부를 조직하였다고 들었다. 김진수는 건준 태인지부 위원장이었다.

5) 참고인 진술조사

김진수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촌로와 김진수의 넷째 며느리, 김진수의 친척 전 정읍문화원장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광명보훈처는 없는 곳이고 자료를 전달한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 장호상(1921년생) · 송극상(1924년생) 면담조사¹⁵⁾

- 김진수의 학력에 대해서는 태인보통학교, 평양오산학교, 하얼빈소재 군부 관계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으며, 국외 지역 체류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에 갔다는 말은 들었으나 일본에 체류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만주로 간 이유는 일제가 요시찰인물로 감시하였기 때문이었고, 김철하가 출생한 이후에 갔다.
- 백석지기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던 김진수는 운하(雲河)광산을 경영하였고, 군산에서 미두(쌀경매) 사업 등을 했으며, 태인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 광산은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1930년 이후 김진수의 운하광산 경영은 좀 의문이 든다.
- 건준 조직은 알고 있지만 김진수가 위원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며, 김철하가 치안대 활동은 했지만 치안대장은 아니었고, 태인리 만세운동 참여 여부는 잘 모르겠다. 중국에 가기 전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은 이유는 모르지만 만주로 가서 군사학교를 다녔고 소련에서도 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들었다.
- 독립운동을 했다고 들었지만 내용은 모르며, 지역유지로 존경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지역사회 공헌은 없었다.

(2) 신석원(1926년생, 김진수의 넷째 며느리) 면담조사¹⁶⁾

- 김진수의 중국 활동에 대해서는 기마대에서 전령을 하였다고 들었고, 북경대학에도 가봤다는 말과 운남에서의 이야기도 들었다. 생활정도는 시집왔을 때 작은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했는데 경제상황은 좋지 않았다.
- 조선총독부경무국 자료 입수는 서울의 사학자가 태인면사무소로 보냈고,

15) 「참고인 진술조사」 (2006. 5. 26.)

16) 「참고인 진술조사」 (2006. 6. 15.)

태인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입수하였다.

- '요시찰인물 제557호' 자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남편 김철하가 카드를 보여 주었다.
- 귀국한 시기는 잘 모르겠고, 귀국했을 때는 병에 걸려 있었다.

(3) 김인하(1916년생, 김진수의 친척) 면담조사¹⁷⁾

- 국가보훈처에서의 미포상 사유는 수감기록이 없고, 좌익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19년 소련에서 유학했고,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김정곤이 유학 자금을 대주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소련에 다녀와서 요시찰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1929년 이후 국내에서 면협의회 선거에 참가하여 당선되었고, 광산업도 하였으며, 건준 태인지부 위원장을 했다, 김철하가 치안대장을 한 사실은 없다.
- 재산정도는 천석지기로 지역유지 집안이었다.
- 독립운동 행적에 대해서는 소련에 갔을 때의 이야기만 들었고, 그 외 행적은 잘 모르겠다.

(4) 최현식(전 정읍문화원장) 면담조사¹⁸⁾

- 『정읍항일운동사』¹⁹⁾를 쓸 때 김진수라는 인물은 알았지만 특별한 자료가 없어 기록하지는 않았고, 김진수가 서울 오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는 기록²⁰⁾은 장봉선 선생이 당시 4년간 모든 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사람을 면담하여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17) 「참고인 진술조사」(2006. 6. 16.)

18) 「참고인 진술조사」(2006. 6. 15.)

19) 崔玄植, 『井邑抗日運動史』, 井邑文化院, 1994

20) 張奉善 編, 『井邑郡誌』, 光洞 履露齋, 1936, 348쪽

- 면협의회위원, 광산경영, 정읍자동차주식회사 감사여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지라고 볼 수 있으나,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귀국하여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

6) 중국하얼빈 현장조사

1928년 8월 경 김진수가 체류했던 하얼빈 도외14도의 정주해가 경영하는 여관 동성호 자리를 답사(2006년 8월 30일)했는데 현재 주소는 도외태고(道外太古)이고 동성호는 찾지 못하였고,²¹⁾ 1930년 5월 1일 주(駐)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사건 때 동성호에서 정주해가 체포된 사실은 확인되나 김진수가 이와 관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조사의 경과

김진수 사건의 조사 진행경과를 시간 및 일정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별	조 사 내 용
2006. 2.28	국가보훈처에 김진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였다.
3.21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김진수 사건은 1998년 1월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되었으나 2000년 '활동입증자료 미비'로 미포상 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3.21	류연산(연변인민출판사 부총편집)·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과의 면담에서 잊혀져간 독립운동사 발굴, 만선일보·협화회 회보 등의 자료에 대한 발굴 및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3.24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기념준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중국지역 연구자 황민호·김형목 등을 면담하여 자료수집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3.30	국사편찬위원회 구선희(편사연구관)·조명희(편사연구사)를 면담하였다.

21) 「사건현장 조사보고서」(공무외국여행 결과보고서), 5쪽

- 4.7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정관희(공훈심사과)·김성민(공훈심사과)과 민족독립조사국의 업무관련 협의를 하였다.
- 4.1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변은진(중앙조사과장)·김일수(지역조사과장)·구수미(중앙조사과 전문위원) 등을 면담하여 중국지역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자문을 얻었다.
- 4.28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김주용(연구원)·홍선표(책임연구원)를 만나 현재 국내 기관들의 중국지역 자료수집 상황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 5.3 정읍경찰서·정읍시청에 김진수 사건과 관련 자료소장 여부와 출장관련 조사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 5.11 국회도서관에서 신흥무관학교 관련 일제 정보문서인 『국경지방시찰복명서』를 복사하였다.
- 5.23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과 자료수집과 관련한 강연(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을 들었다.
- 5.25 제1차 현지조사에서 김철하(김진수의 자)·김동수(김진수의 손자) 등 ~ 2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을 청취하였고, 장호상(전 농협조합장)·5.27 송극인(전 태인면장) 등 2명에 대하여는 참고인 면담을 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기관(정읍시청, 태인면사무소, 정읍경찰서, 정읍문화원)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 5.30 정읍시청에 정읍시지(誌) 등의 송부를 의뢰하고, 경찰청에 ‘요시찰인물 제557호’ 원본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6.5 경찰청에서 김진수 관련자료 ‘요시찰인물 제557호’ 원본은 물론 그런 성격의 자료 자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 6.13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에 김진수 학적 관련 사항을 확인·통보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LG상남언론재단에 해방공간 4대신문 영인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6.14 제2차 현지조사에서 신석원(김진수의 며느리)·김민하(김철하의 사촌)·최현식(전 정읍문화원장) 등 2인에 대한 참고인 면담조사를 6.16 청취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 6.21 태인초등학교에 김진수의 학적부를 발급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6.22 국가기록원이 러시아에서 수집·소장하고 있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6.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가서 김진수가 경영하였던 운화광산 관련 자료를 복사하였다.
- 6.28 대전 국가기록원에서 김진수 관련 자료조사 및 면담(이광수·이민자·송상원)을 하였다.
- 6.29 국가보훈처에서 김진수의 미포상 사유 관련 자료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조규태·김성민·이현주)을 면담하였다.
- 7.3 만주지역 당안관 자료 및 김진수 사건과 관련하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장세윤을 면담하였다.
- 7.12 김진수 사건 관련 만주지역 항일운동에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하여 흑룡강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고문 김우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 7.20 홍범렬(흑룡강신문 한국지사장)을 면담하였다.
- 8.1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구수미(전문위원)·류승주(해외조사과)·구성철(조사관) 등 3인을 면담하였다.
- 8.29 김진수 등 조사와 홍보 관련 국외공무여행을 실시하였다.
- 9.6
- 9.14 국가보훈처에서 중국지역 자료 및 혁명열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 9.2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소장된 중국 자료 수집과 검색을 하였다.

V. 조사결과

1. 학력과 ‘신흥무관학교’ 경력

- 1911년 6월 30일 설립된 태인공립보통학교(현 태인초등학교)를 1913년 3월 25일 제1회로 졸업했다. 학적부에는 김진수(金鎭水)의 한자 중 수자가 수(洙)로 되어 있고, 생년월일은 1896년 8월 6일로 기재되어 있다(태인초등학교 발송 학적부 사본).
- 서울 오성(五星)학교를 1914년 입학하여 1916년 졸업했다.²²⁾
- “중국, 러시아 각지에 유학하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귀향한 씨(김진수-인용자)는 선천적으로 성격이 호의과단(豪毅果斷)하여 매사에 실행력이 풍부하며, 단호김철(斷乎金鐵)을 파열할 의지를 소유한 인물이다”, 김정곤(金禎坤)은 “태흥리에 거주하는 36세의 청년유지이다. 천성이 순후하고 이해심이 풍부하여 그 당질 진수(鎭水)씨는 노국 유학 당시에 7, 8백원의 학자를 자진 보급하였으므로 본인은 물론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였다.”²³⁾

오성학교(1910. 10.~1918. 4.)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장도빈(張道斌)·유근(柳瑾)·최창식(崔昌植) 등의 교사에 의해 반일 민족교육을 실시하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는데, 김진수가 오성학교를 졸업(1916년 3월)한 것으로 보아 이 학교에서 항일의식을 체득하고 중국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진수가 중국으로 간 시점(1922년 10월)은 이미 신흥무관학교가 폐교된 상태이

22) 오성학교 학적부에는 김진수의 주소가 전북 태인군으로 되어 있다. 1910년 10월 1일 설립된 오성학교는 1918년 4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고 그 뒤 오성강습소(1921. 4. 1.~1922. 3. 1.)로 계승되었다. 현재는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이어졌다(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광신중·고등학교, 『광신백년사』, 광신100년사편찬위원회, 2005). ; 『井邑郡誌』(張奉善編, 光洞 履露齋, 1936, 348쪽)에는 김진수가 경성 오성(五成)중학을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3) 張奉善 編, 『井邑郡誌』, 光洞 履露齋, 1936, 348쪽.

므로 김진수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다른 중국내의 무관학교를 나왔을 가능성도 고려해 황포군관학교·운남강무학교 등의 졸업생 명부²⁴⁾와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²⁵⁾ 등의 명부도 확인했으나 김진수의 이름은 찾지 못했다.

2. 김진수와 상해 임정 육군무관학교 교관 김철(金鐵)과의 동일인 여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인 김철(金鐵)은 1911년 만주 유하현(柳河縣)으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고 서간도 한족회·서로군정서 등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1925년 정의부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국 해룡현(海龍顯)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살해당했다.²⁶⁾ 김진수는 1911~1913년 태인 공립보통학교를 다녔고 1922년 10월 중국으로²⁷⁾ 가기 때문에 김진수가 별명으로 쓴 김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교관인 김철과는 동명이인으로 판명된다.

24)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 曾其清·曾俊偉, 「雲南陸軍講武學校華僑學生概況」 『廣東文史資料』 23, 1979 ; 朝鮮總督府警務局, 「軍官學校事件ノ真相」, 1934. 12.(韓洪九 李在華 편, 『韓民族運動解放運動史資料叢書』 3, 京沅文化社, 1988)

25) 당시 러시아에는 동방노력자공산주의대학, 서방소수민족공산주의대학, 손일선대학, 레닌주의학교, 스페치로프공산주의대학, 앵겔스마르크스경제대학, 쿠루프스카야공산주의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있었고, 이 가운데 동방노력자공산주의대학은 동방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극동거주 러시아인,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혁명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우동수, 「조선공산당재건운동과 코민테른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졸업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575~623쪽). 이하의 자료는 PГАСПИ(러시아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논문자료인데 한글로 번역하여 제목을 붙였다. 「신입학생일람표 : 1924년 접수 김호반 등 45명」 1~2쪽, 「김영식 등 27인 신상 일람표」 1쪽, ф.532 оп.1 д.425 ; 「모스크바 공산대학 조선인 그룹의 역사」 1~7쪽 ф.532 оп.1 д.421 ; 「학생 신상일람표(50인)」 1~2쪽, 「학생 신상일람표(14인)」 1쪽, ф.532 оп.1 д.423.

26)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1956, 437쪽

27)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に於ける容疑朝鮮人名簿』, 1934, 47쪽. 김진수의 넷째 아들 둘(1921년 11월 12일) 사진에 김진수도 있다.

3. 김진수와 정주해의 관계

정주해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군정서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1926년 하얼빈 도외태고에서 동성호라는 여관을 경영하며 독립군의 숙식과 연락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0년 주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된 것은 확인되지만, 김진수가 1928년경 정주해의 여관에 체류했으나 그 외 추가 자료나 그와 관련된 항일운동 행적을 찾지 못했다.

4. “요시찰 인물 제557호” 원본 확인

신청인이 해방직후 전북 “정읍경찰서 태인주재소에서 입수한 항일사상자”라고 써 첨부한 ‘제557호’의 원본은 경찰청, 정읍경찰서, 태인지구대, 국가기록원 등에 조회했지만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자료의 작성 기관·시기·성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중국 상해의 행적

- 조선총독부경무국이 1928년에 펴낸 자료에는 김진수의 1926년경 주소가 상해 프랑스 조계(法界) 주가교(朱家橋) 실안리(室安里) 해송양행(海松洋行), 생년월일이 1892년 5월 9일생, 본적이 전라북도 정읍군, 별명은 철(鋏), 성행은 음험하고, 배일사상 불온언동을 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²⁸⁾
- 한진교(韓鎭敎, 1887. 1. 16.~1973. 12. 12.)는 상해에서 해송양행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내는 한편 신한청년당·대한민국임시의정원·한국국민당 등의 독립운동단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²⁹⁾

28) 朝鮮總督府警務局, 「上海南京廣東地方不逞鮮人ノ近狀」, 1926.3 : 京城地方法院, 『情報』, 1928.

29)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獨立有功者功勳錄』 第5卷, 國家報勳處, 1987, 818~820쪽.

위의 자료에 의하면 배일사상을 가진 김진수는 1926년경 상해 프랑스조계 해송양행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 항일행적은 밝힐 수 없었다.

6. 국내 행적

- 1929년 6월 23일 김진수는 일제 정읍경찰서에 체포되어 17일간 취조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는데 체포 이유와 석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 태인읍내 김진수(金鎭洙, 34)씨는 구개년 동안 해외에 류하다가 지난 이십삼일 고향인 태인에 도라왔었는데 정읍경찰서에서 돌연 검속하였다더라.”³⁰⁾

“전북 정읍군 태인면 태흥리 김진수씨는 십년 전 봄에 공부를 목적으로 중국에 건너 갔든바 지난 이십삼일에 돌아오자 태인경찰은 즉시 검거하였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들은 바에 의하면 러시아도 수년 동안 잇섯슴으로 00당과 어떠한 연락이 있지 안는가 하여 그러함인 듯하다더라.”³¹⁾

“태인읍내 김진수씨는 십년 전에 집을 떠나 중국 안남 러시아 등지로 돌아다니다가 지난달 이십삼일에 돌아오자 즉시 정읍경찰에 검거되어 이래 십칠일동안 매일 취조를 받았으나 하등의 증거가 업서 일전에 석방되었는데 경찰의감시가 엄중하다더라.”³²⁾

- 김진수는 1927년 12월 설립된 정읍자동차주식회사(전북 정읍군 정주읍 연지리 343-8 소재) 감사직에 있었다.³³⁾
- 김진수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소재의 운화(雲華)광산을 경영하였다. 이 광산은 광종이 금은, 기준년도 1943년, 등록번호 9129, 광업권 등록년도 1932년, 최종광업권자 김진수(전북 정읍군 태인면 태인면 태흥리

30) 「金鎭洙氏拘禁」 『중외일보』, 1929. 6. 27.

31) 「金鎭水氏檢束」 『동아일보』, 1929. 6. 29.

32) 「金鎭水氏釋放」 『동아일보』, 1929. 7. 15.

33) 帝國興信所釜山支所 編, 『朝鮮實業要錄』, 1935, 133쪽

281) 외 1인으로 되어 있다.³⁴⁾

- 김진수는 1935년 일제의 '지방자치'라는 명목아래 실시된 태인면 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현(現)에 면(태인면 - 인용자)협의회원의 임에 있다.”³⁵⁾

1929년 이후 김진수는 유희금광 경영·정읍자동차주식회사 감사 등의 경제 활동에 치중했고, 1935년에는 태인면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일반적인 항일운동 노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VI. 결론

조사개시 이후 전문가, 신청인, 참고인 등의 자문과 면담 그리고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배일사상을 가진 김진수가 1926년 상해에서 독립운동가 한진교가 경영하던 해송양행이라는 가게를 주소로 하고 있었던 점, 1928년 8월 경 하얼빈에서 독립운동가 정주해가 경영하며 독립운동가의 연락처 역할을 하던 동성호라는 여관으로 간 점,

1929년 6월 23일 정읍경찰서에 체포되어 17일 간 일제경찰에 취조를 받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점 등은 확인되지만, 김진수가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밝혀지지 않아 김진수의 독립운동 행적을 규명할 수 없었다. 이에 김진수의 진실규명 신청사건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정한다.

34) 한국동력자원연구소, 『整備 金鑛山要覽』, 1982, 359쪽

35) 張奉善 編, 『井邑郡誌』, 光洞 履露齋, 1936, 348쪽 : 「當選된 面協議員」 『동아일보』, 1935. 5. 26.

□ 참고문헌

- 고영, 『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 백암, 2002
- 강대민, 『여성조선의용군 박차정의사』, 고구려, 2004
- 강희남 외, 『중국 동북 3성을 가다』, 모시는사람들, 2003
- 고구려연구재단,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자료 편람집』, 2005
- 高泳辰, 「西間島 獨立軍基地 建設運動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사회과 역사교육분야 석사학위논문, 1990
- 국가보훈처, 『間島事件關係書類(Ⅱ)-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9), 日本篇』, 2004. 4
- 국가보훈처, 『間島事件關係書類-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8) 日本篇⑧-』 I, 2003. 12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1, 2』, 2002
-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20)-중국편 5:北間島지역獨立軍團名簿-』, 1966
-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국립공문서관·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외교자료관 외-』, 2002. 12
-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9-中國東北地域篇 I-』, 2003
-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5-中國地域獨立運動 裁判記錄 III-IV-』, 2001
-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5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소장 한국관계사료목록 1875~1945-』, 2003. 12
- 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學會,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03
- 국회도서관 편, 『韓國民族運動史料 제2집中國篇:日本外務省·陸海軍省文書』, 1976
- 김강령, 「新興武官學校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 金錫營, 『祖國光復의 大人 大韓民國 臨時政府 主席 石吾 李東寧 一代記』, 진명文化社, 1995
- 김성신, 「新興武官學校에 관한 研究」,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金勝一, 『中國東北:韓國獨立運動史上的新發現』, 上海人民出版社, 1996
- 金英卿, 「石吾 李東寧 研究」,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4
-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전사들』, 혜안, 2002
-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 唐修佳·吉林省通化市政協文史委員會, 『朝鮮獨立軍在中國東北活動史略』, 遼寧民族出版社, 1993
- 대한민국임시정부옛청사관리처, 『중국언론 신보에 그려진 한국근현대사』, 역사공간, 200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0-독립군전투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동위원회, 1976
- 류연산, 『만주 아리랑』, 돌베개, 2003
- 류연산,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 보고서-』, 아이필드, 2004
- 朴鍾淳譯,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2002
- 박환, 「滿洲地域의 新興武官學校」 『사학연구』 40, 한국사학회, 1989
-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 박환, 『항일독립운동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1
- 復旦大 韓國研究中心資料室, 『20世紀韓國獨立運動 論著目錄-中國篇-』, 국가보훈처, 2002
- 사준미, 『중국상해지구 한인항일독립운동사』, 고구려, 1999
-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 창, 2005

- 서중석, 「후기 新興武官學校」 『歷史學報』 169, 歷史學會, 2001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 석원화, 『중국공산당과 한국독립운동 관계기사연구』, 고구려, 1997
- 石源華, 『中國共產黨援助朝鮮獨立運動紀事1921-194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5
- 소재영 편, 『間島流浪 40년 中國 시베리아紀行文 23選』, 朝鮮日報社, 1989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 신주백, 『중국지역 민족운동사-1920~30년대-』, 선인, 2005
- 안천, 『신흥무관학교: 정통 독립군·원초적 사관학교』, 교육과학사, 1996
- 王檜林·朱漢國, 『中國報刊辭典1815-1949』, 書海出版社, 1992
- 윤병석, 『해외동포의 원류-한인고려인 조선족의 민족운동-』, 집문당, 2005
- 윤충남, 『하바드 연경도서관 한국귀중본 해제-제2권-』, 경인문화사, 2005
-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5
- 이정규 외, 『우당이회형약전』, 을유문화사, 1985
- 李炫熙, 「新興武官學校 研究」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 李鴻文, 『30年代朝鮮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6
- 임채정,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동아일보사, 2005
- 장세운,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 張存武·胡春惠·趙中孚, 『近代中韓關係史料彙編1860-1945 1冊』, 國史館刊印, 1998
- 조규태 외,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 보훈연수원, 1995
-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抗日戰爭時期國民黨軍機密作戰日記上中下』, 中國檔案出版社, 1995
- 崔蓮·金順子, 『中國朝鮮學:韓國學研究文獻目錄1949-1990』,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5
- 최우길, 『중국 조선족 연구』, 신문대출판부, 2005
- 최장근, 『간도영토의 운명-일본제국주의와 중국 중화주의의 틈새에서-』, 백산자료원, 2005
-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中國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집문당, 1997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韓國抗日民族運動과 中國』, 국학자료원, 2001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편,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中國集-尹炳奭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한상도,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 한상수, 『독립운동유적지 문건록』, 문음사, 1998
- 韓中交流研究中心 編, 『中國에서의 抗日獨立運動』, 고구려, 2000
- 황민호,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8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결정사안】

영동군 황간장터에서도 대규모 3.1독립 만세운동이 있었고 군중 앞에서 만세를 주창하던 김예태를 일본헌병이 옷을 벗긴 뒤 포승(捕繩)한 채 잡아갔다고 하는데, 이런 김예태의 황간장터 만세운동 주도사실을 밝혀 달라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김예태가 황간(黃澗)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철만의 증언이 있었으나 신청인, 참고인, 전문연구자, 향토사학자 및 황간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추가 증언 및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2. 문헌자료(文獻資料)의 분석을 통해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과 김예태가 참여했을 개연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황간장터 만세운동 여부와 이 만세운동을 김예태가 주도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다만 『시대일보』 등 1925~26년도 신문기사에 김예태와 그 형제들이 황간 청년회 간부로 등장하는데다, 김예태는 ‘일본 순사폭행죄’로, 그의 형 김의태는 일본인 폭행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과 1920~30년대에 걸쳐 황간 및 영동지역의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을 주도한 추교경·최판홍·손순홍과 함께 활동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예태와 그 형제들이 황간지역의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은 인정된다.

【전 문】

【사 건】 가-25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신청인】 김초미

【결정일】 2006. 12. 5.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접수 및 처리

- 사건접수 : 2005. 12. 5.
- 조사개시결정일 : 2006. 4. 25.

2. 신청내용

이 사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장터에서도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었고, 군복 차림을 한 김예태가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주창하였으며, 일본 헌병이 김예태를 붙잡아 옷옷을 벗긴 뒤 포승한 채 잡아갔다고 하는 사건으로, 신청인 김초미가 아버지의 3·1운동을 규명하여 독립유공자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1. 조사의 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1919년 3·1운동 당시 김예태가 충북 영동군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여부를 규명하여, 사실일 경우 기본법 제4장(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이 정한 바와 같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조사의 목적

예비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김예태가 황간청년회 간부를 역임한 사실이 『시대일보』 등 당시 신문기사에 등장하고, 그의 형제들도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황간면, 나아가 영동군 전체의 3·1운동을 총체적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그동안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황간면, 나아가 영동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및 청년운동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앙 중심 또는 지도부 위주로 연구·서술되어, 각 지역에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묻히거나 중요한 사실이 간과된 경우가 많았는데, 황간면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복원하여 균형 있게 조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Ⅲ. 진실규명 과제 및 쟁점

1. 황간장터 만세운동 존재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과연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영동의 학산면, 양산면, 그리고 황간면과 바로 인접해 있는 매곡면, 추풍령면 등에서는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만세운동이 연이어 전개되었다. 또한 황간면에서는 추풍령에서 이어지는 경부선 연선을 따라 이웃 매곡면, 황금면(현 추풍령면)에서와 같이 황간역 앞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황간장터의 만세운동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다.

2. 김예태의 주도적 참여 여부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면 과연 김예태는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까 하는 점이다. 김예태가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 역시 이 칠만의 증언 외에는 입증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¹⁾ 다만 김예태의 조카 김명

1) 지역 특히 면단위의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데 가장 큰 관건은 현장기억(증언)과 문헌자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가이다.

애(김지태의 딸) 등의 진술에 의하면, 김예태는 지역 씨름대회에서 우승하여 황소를 탈 정도로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으며, 김예태의 아버지가 참봉을 지냈고 광산을 관리하고 일꾼을 둘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예태의 집안은 황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예태의 형인 김의태가 1918년 9월 일본인 나카야마(中山喜之助)를 폭행하여 징역 6월형에 처해진다.²⁾ 이와 같은 점이 김예태가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했음을 입증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3·1운동이 발발하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황간청년회 활동

3·1운동 이후 김예태의 청년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당시 신문 및 각종 문헌자료에 의하면 김예태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1925~26년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사실을 알 수 있고,³⁾ 1926년 판결문(형공 259호)에 김예태와 황간청년회 간부 추교경·진소봉이 함께 순사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IV. 조사 방법 및 경과

1. 조사 방법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김예태가 이 만세운동에 주도적

-
- 2) 「판결 1918년 형공 제483·484호」, 공주지방법원, 김응규·김홍식·김의태에 대한 판결문 및 해제 참조.
 - 3) 『조선일보』(1925. 3. 27.) 황간청년회 창립총회에서 김예태의 형 김의태, 동생 김지태가 간부로 선출되고 있고, 『동아일보』(1925. 4. 15.)에서도 청년회 야학교사로 활동하던 김지태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언 및 자료 확보를 위해,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신청인, 참고인, 전문가 면담, 실지조사 등을 통해 김예태의 황간장터 만세운동, 더 나아가 영동지역의 청년운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가 소장된 기관에 관련 사실을 검색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각 대학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검색과 조사관의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국회도서관, 국립공문서관, 방위청 등의 자료를 검색·조사하였다. 문헌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목록은 참고 문헌으로 정리해 두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 및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광복 60주년 기념 독립운동사대계 충청지방3.1운동사 필자인 김진호, 영동지역 농민운동을 연구한 바 있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강호출에게 자문을 구했다. 신청인 김초미의 진술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참고인 진술조사는 김예태의 조카 김명애(김지태의 딸)와 영동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추교경·손순홍·최관홍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향토사학자 김기현·안병찬·김동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으며, 황간 실지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 조사 경과

각 신문 및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참고인 진술조사, 전문가 면담, 그리고 황간 실지조사 등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주요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⁴⁾

4)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사건조사 일지 참조.

- '06. 4. 25. 황간장터만세운동에 관한 자료 수집
 - 문헌자료, 신문, 잡지기사 등을 통해 규명대상자 김예태(金禮泰)를 비롯 영동과 황간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
- '06. 5. 4. 신청인 김초미(金初美) 면담 조사
- '06. 5. 8. 황간장터 만세운동 관련 제1차 실지조사
 - 김예태의 조카 김영옥, 영동군지 집필위원 안동대 등 면담.
 - 김예태의 만세운동을 증언한 이칠만을 통해 당시 상황과 기사 내용의 확인 및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고령(96세)으로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람(김영옥)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
- '06. 5. 15. 1926년 형공(刑控) 제259호⁵⁾ 분석
 - 김예태, 진소봉(陳小奉), 추교경(秋敎慶)에 대한 판결문
- '06. 5. 22. 후손들 소재 파악
 - 김의태의 아들 김영원, 김용태의 아들 김영호와 통화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음
- '06. 5. 23. 『철도연선요람』, 『충북요람』 등을 통해 영동지역 및 황간 지역의물류흐름, 인구 등 조사
- '06. 5. 25. 소요관계 서류나 독립운동 기록 등을 통한 황간 지역 만세운동 파악
- '06. 5. 25. 김진호(광복60주년기념 독립운동사대계 충청지방3.1운동사 필자)·강호출(영동지역농민운동연구, 국가기록원) 자문
- '06. 5. 29. 김예태의 조카 김명애(김지태의 딸) 자택 방문 조사

5) <별첨 2> 김예태 판결문 참조

- 아버지 김지태가 야학에서 가르칠 때 같이 따라다녔다고 하며, 김예태가 덩치가 크고 인물이 좋았으며 관내 씨름대회에서 황소를 타기도 했다고 함
- 황간에서의 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함
- '06. 6. 1. 신청인 김초미 면담 조사
- '06. 6. 12. 손순홍, 추교경, 최판홍의 후손들 면담
- '06. 7. 12 ~ 7. 14. 2차 황간실지조사
 - 향토사학자, 황간지역 고령자 면담 등

V. 조사결과

1. 황간장터 만세운동 존재 여부

충북의 3·1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영동군과 음성군의 시위를 들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격렬하게 전개되었다.⁶⁾ 영동군의 3·1운동 상황을 <그림 1> 과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영동군에서는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도합 16회의 만세운동이 연이어 전개되었으며, 황간면에 인접한 추풍령에서는 4차례, 매곡면에서는 3차례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영동지역의 3·1운동은 3월 25일 학산면에서 영동~무주간 도로공사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었으며, 이웃 양산면 사람들이 합세하였다. 그 다음으로 3월 29~30일 영동면에서 발생하였고, 이어 3월 31일 추풍령 정거장, 황금면, 4월 1일 황간역 앞산⁸⁾, 4월 2일 매곡면 순으로 만세운동이 전

6)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편, 1995, 『3·1운동』 94쪽

7) 이 표는 『독립운동사』 91~96쪽, 『영동군지』 147~155쪽 및 각종 소요관계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개되었다.

그리고 4월 3일 서산리 장터, 양강면 경찰 주재소 습격, 4월 4일 영동장터로 이어지는 등, 영동지역 역시 다수군중이 모이는 장터·역전 등에서의 만세운동이 눈에 띄고, 경찰주재소를 습격한다거나 면사무소 앞에서 계획적으로 봉기하는 점 등이 당시 전개된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흐름과 같다.

<그림 1> 영동지역 3·1운동 발생지역과 순서



8) 4월 1일 황간면 황간역 앞산에서 횃불을 들고 수백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이때 예배당에서도 종소리를 신호로 예수교인들이 집결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고 한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하)』, 고려서림, 94쪽).

<표 1> 영동지역 3·1운동 발생지역과 내용

일시	지역	내용
3.25, 3.28	학산면	영동~무주간 도로공사 강제노역 및 뽕나무 묘목 강제배부 등에 반발하여 만세운동 전개(영동군 최초)
3.29	학산면	서산경찰주재소 습격
3.30	학산면 서산리	영동~무주 간 도로공사 노역자들이 양산면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 전개. 200여명의 군중이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물 파괴, 해산
3.29, 3.30	영동면	200여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 경찰폭행 하사 이하 10명 동원하여 해산
3.31	추풍령	추풍령 정거장에서 만세운동
	추풍령	수백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정거장에서 만세운동
4.1	황간면	황간역 앞산에서 수백명의 군중이 횃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전개. 교인들도 예배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만세운동에 참가
4.2	매곡면	만세운동
4.3	학산면 서산리	서산리 장터 만세운동. 300여 명의 군중이 순사주재소 및 면사무소를 습격. 하사 이하 5명 동원하여 진압. 사상자 10명
	매곡면	노천리에서 군중 100여명 만세운동
	양강면	괴목리 경찰주재소 앞에서 만세운동. 2천여 명이 만세운동, 체포검속 8명
	영동면	2천여 명의 군중이 순사주재소를 습격
4.4	매곡면	군중 800여명 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
	영동면	영동장터
4.5	추풍령	추풍령 헌병분견소 창고 방화로 전소
4.6	추풍령	300여명 추풍령 분견소 진입. 대전에서 하사 이하 10명을 파견하여 주모자 4명 체포

이상에서와 같이 진실규명 과제인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여러 정황상 황간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위의 <그림 1>과 <표 1>에서 보았듯이 4월 1일 황간역 앞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사실과 “4월 2일 상오 11시경 매곡면의 밤나무 양묘장 작업을 이용하여 면민 약 100여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일으켜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면장과 면직원을 설득하여 독립만세를 선창케 하였다. 또 이날은 이웃면 황간읍의 장날이었는데, 5시경 시위행렬은 황간으로 향하였으나 황간장터는 적에 의해 철시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기록⁹⁾에 의하면, 황간장터에서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강제로 해산당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동군에서 황간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인 지위도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철도연선요람』¹⁰⁾에 의하면, 황간의 경제상황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금강 상류 초강(草江)이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으나 경지가 극히 빈약하여 농산물로서는 쌀·보리 각 7천여석, 콩류 4천석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목탄 1만2천관(貫), 흑연 약 6천톤이 최대 발송화물이며, 쌀·흑연은 부산에 한해서 발송되었다. 도착화물은 조, 콩, 술지게미, 소금과 잡곡(粟·豆·稻)이 주된 것이며, 총수량의 약 8할을 점하고 매월 2, 7일에서는 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되었다. 인구는 일본인 48호 139명, 조선인 1,625호 8,364명¹¹⁾이며, 교육기관과 학생 수는 소학교 60명, 보통학교 385명이고, 그 외 금융조합, 우편소, 여관 등이 있었다.

이처럼 황간면은 금융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등, 물류의 흐름이나 인구·학생 수 등의 상황으로 봐서 이웃 추풍령 보다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흑

9) 『독립운동사』 94쪽

10) 『조선철도연선요람』 169~178쪽

11) 황간에 비해 추풍령의 인구는 일본인 30호 101명, 조선인 995호 5,399명으로 적다.

연 운반 차량을 둘러싸고 일본인과 마찰이 벌어지는 김의태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물을 중심으로 한 물류의 흐름이 많았다. 경북 상주에서 열차를 이용할 경우나 흑연 등 광물을 운송할 때 황간역을 이용하였다고 하므로 황간이 상주·김천 등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이웃 추풍령이나 매곡면 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²⁾ 즉 황간면은 물류의 중심지로 사람과 물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만세운동이 전개되기 좋은 장소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황간장터의 만세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만세운동과 관련된 각종 재판기록에도 학산면, 양강면, 매곡면 사람들의 기록은 보이나 황간면 사람들의 기록은 없다.

2. 김예태의 주도적 참여 여부

1) 신청인 김초미 진술조사(2차례)¹³⁾

제1차 면담조사 결과, 신청인 김초미는 아버지 김예태가 일본에서 낳은 딸로 20세 무렵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이후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았다고 하며, 김예태가 일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다. 다만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다, 김예태가 의병활동을 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의문점이 많았다.

그리고 제2차 면담조사 결과, 김예태가 벌였다는 황간장터에서의 만세운동과 이후의 항일독립운동, 도일(渡日) 경위와 북한에서의 활동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일용노동을 하고, 북한에서는 배급받은 물품

12) 『조선철도연선요람』은 1927년 기록이어서 1919년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면세를 비교해 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또한 1925년 통계자료에 보면 이들 지역인구는 황간면 8,646명, 황금면 5,654명, 영동면 12,280명으로 나와 있다.

13) 제1차 면담조사(2006.5.4), 제2차 면담조사(2006.6.1) 제1차, 2차 김초미 진술조서 참조

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등 특기할 만한 진술이 없었으며,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만세운동과 도일 전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2) 참고인 진술조사

참고인 진술조사는 인척인 김명애¹⁴⁾와 일제시기 영동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추교경·손순홍·최관홍의 후손들과 그 외 영동지역사에 대해 밝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고인 김명애는 아버지 김지태가 야학에서 가르칠 때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였으나, 황간장터에서의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예태에 대해서는 체격이 건장하고 인물이 좋았으며, 지역 씨름대회에서 우승하여 황소를 타기도 했으며, 집안이 덕대(광산 관리)를 해서인지 꽤 부유했다고 진술하였다. 김명애는 황간의 김영옥보다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아버지 김지태가 해방 전(1944년) 사망했고, 19세 때 황간을 떠난 이유 등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가 없었다.

또한 황간의 만세운동에 대해 듣기 위해 영동군 지역사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정은용과 전화로 통화했으나, 황간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¹⁵⁾.

나아가 일제시기 영동지역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던 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먼저, 손순홍¹⁶⁾의 아들 손경호는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보지 못했고 들은 기억도 없으며, 김예태와 그 외 당시의 기록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¹⁷⁾. 추교경¹⁸⁾의 아들 추정길은 3·1운동에

14) 김예태의 동생인 김지태의 딸. 참고인 면담조사(2006. 5. 29.)

15) 참고인 전화통화(2006. 6. 2.)

16) 1926년 황간청년회 가입하여 사회운동 전개. 1995년 건국훈장에족장 추서

17) 참고인 전화통화(2006. 6. 12.)

대해들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19) 최관홍20)의 후손은 일가족이 모두 월북하여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3) 황간 실지조사

(1) 제1차 황간 실지조사 결과21)

황간역 부근에서 신청인 김초미의 사촌오빠이자 김예태의 조카 김영옥과 전 면장 출신 유동열, 『영동군지』 편찬위원 안병찬 등에게 만세운동에 관한 증언을 청취한 결과, 황간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증언할 만한 사람도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옥은 동향출신인 이칠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만 알고 있을 뿐, 김예태가 헌병에 끌려간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가령 체포되어 금방 풀려났는지 옥살이를 했는지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등에 대한 진술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영동신문』 1994년 8월 22일자 김예태의 만세운동에 관한 기사내용 확인을 위해 영동신문사를 방문하여 편집장 박장근과 면담한 결과, 신문의 기사는 오로지 이칠만의 증언에 의해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김예태의 만세운동을 증언한 이칠만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고령으로 인하여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면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8) <표 2>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의 항일독립운동과 『시대일보』 (1926. 1. 12.), 김예태의 판결문 등 참조

19) 참고인 전화통화(2006. 6. 22.)

20) <표 2>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 사회운동 상황과 『시대일보』 (1926. 1. 12.), 『조선일보』 (1925. 3. 27.) 등 참조

21) 제1차 황간 실지조사(2006. 5. 8.). 실지조사 보고서 참조

(2) 제2차 황간 실지조사 결과²²⁾

실지조사를 통해 1920년 이전 출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관한 것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²³⁾

향토사학자 김기현(영동군지 집필위원), 김동대(영동군지 집필위원), 안병찬(전 예총 지부장, 영동군지 집필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해 황간지역의 만세운동의 경우 자료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자료발굴도 어려운 상황이며, 영동군지에 실린 내용 등도 구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향토사학자와의 면담에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특히 신흥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좌익사상 및 그 활동이 심했던 곳으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도 소실되었다고 했다.

이런 의견은 향토사학자 뿐만 아니라, 제1차·제2차 황간 실지조사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즉 여러 사건들을 겪고 피해를 입게 되자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고, 그러는 사이 점차 사실 자체도 잊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지조사에서는 김예태의 출신 학교(현 황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이후 행적을 조사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을 찾을 수 없었고, 면사무소, 영동경찰서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게다가 3.1운동관련 전문가 김진호, 강호출 등의 자문결과도 마찬가지였다.

22) 제2차 황간 실지조사(2006. 7. 12.~14.). 실지조사 보고서 참조.

김희관(당 87세), 이병두(당 86세), 고흥용(당 85세) 외 85세 이상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23) 영동지역의 3·1운동이나 청년활동 자체는 그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어 강호출의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와 같은 논문도 장준의 판결문(형공 제125, 269호)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자체가 빈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김예태가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철만의 구체적인 증언과²⁴⁾ 신청인, 참고인, 전문가, 향토사학자 및 황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령자들과의 면담·조사, 김예태의 인물됨과 집안내력, 황간면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황간장터에도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여기에 김예태가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언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황간청년회 활동

1) 김예태와 그 형제들의 활동사항²⁵⁾

24) 이철만(당 96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장터에 군중들이 많았는데 젊은이들이 장터를 돌며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한다”고 외치며 상인과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 후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헌병들이 말을 타거나 도보로 나타나 군중들을 해산시켰으며 김예태를 붙잡아 포승한 채 잡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영동신문』 1994.8.22)

25) 청년운동관련 주요기사

① 『조선일보』 1925.3.27 “황간청년창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유지(有志)청년 10여명의 발기로 지난 24일 오후 1시에 황간 구(舊)군청공가에서 황간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 다수의 회원이 정각 전부터 모여 차경곤(車敬坤)씨 사회, 同氏의 열렬한 취지 설명과 의미가 심원한 홍순갑(洪順甲)씨의 내빈축사가 있는 후에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6시에 폐회. 피선의원은 회장 차경곤(車敬坤), 부회장 한성동(韓聖東), 총무 최관흥(崔判興), 서무부 진소봉(陳小奉) 김의태(金義泰), 재무부 박기홍(朴基洪) 안수금(安洙今), 교양부 박정근(朴貞根), 체육부 김명환(金明煥) 백운호(白雲浩), 연예(演藝)부 정성(鄭成) 김지태(金智泰)

② 『동아일보』 1925. 4. 15. “황간에 노동야학 당지 청년회사업으로”

충북 영동군 황간청년회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노동야학을 개시하는데 제1부 제2부로 나누어 각부에 20명씩 약40명을 모집하는 중인데, 제1부는 보통학교 1~2학년 정도로 제2부는 3~4년 정도로 정하여 교수는 차경곤(車敬坤), 김지태(金智泰) 양씨가 강사로 결정

③ 『시대일보』 1926. 1. 12. “황간청년총회”

황간임시총회에서는 한층 업무를 혁신하기 위하여 9일 오후 8시부터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결정한 후 종래까지 회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제로 개정하였는데 신임위원은 좌기(左記)와 같다. 위원 총무부 최진(崔鎭), 사무부 김예태(金禮泰), 교양부 장하익(張夏翊) 차경곤(車敬坤), 재무부 추교경(秋敎慶) (※최진은 최관흥(崔判興)의 다른 이름)

④ 『동아일보』 1930. 2. 17. “陳某 聲討禁止 시골불리라고”

충북 영동청년동맹 황간지부(永同靑年同盟 黃澗支部)에서 얼마 전에 그곳 진모(陳某)가

김예태의 만세운동에 관한 문헌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시대일보』 1926년 1월 12일자 기사에 의하면 김예태가 황간청년회의 간부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⁶⁾이보다 앞서 1925년 청년회 간부에 김예태의 형인 김의태(金義泰)와 동생 김지태(金智泰)가 보이고 있고, 그 중 김지태는 노동야학의 강사로 활동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김예태와 그 형제들은 만세운동에도 참여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그 후 황간청년회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형제와 후일 농민조합, 적우동맹, 적우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추교경·최관홍, 그리고 진소봉 등과 같이 활동한 사실로 보아 황간지역의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김예태의 가계도



동지부를 들어 공공연히 모욕과 중상적 언동을 행하였다하여 사회적으로 철저히 징계 하겠다는 의미로 십삼일 지부회관에서 성토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함은 기묘한 바 어니와 지부에서는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하고 지난 십일에 당지 주재소로 집회계출을 하얏든 바 주재소에서는 상부의 명령이 시기가 시기라하여 집회를 일체 금지하라 하얏스니 도저히 허락할 수 업다는 리유로 성토 강연회를 금지하얏는데 이에 대하여 지부에서는 다시 그 대책을 강구하리라 한다.

26) 『시대일보』 1926. 1. 12.

2) 김예태의 판결문

1926년 형공 제259호 김예태·추교경·진소봉에 대한 판결문은 순사를 폭행한 죄로 징역 6월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며, 1926년 황간청년회의 간부로 있던 추교경과 김예태의 관련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이 항일독립운동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순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볼 때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진술내용 중 “피고 김예태는 판시한 위안회가 있던 밤, 형이 오노(小野) 조수 때문에 연회장에서 끌려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17일 피고 추교경 등과 함께 황간역으로 가서 역장실에서 오노(小野) 조수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도 폭언을 퍼부은 적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볼 때, 김예태가 추교경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진소봉은 황간청년회의 창립멤버이며,²⁷⁾ 『동아일보』 1930년 2월 17일자에 보이는 진모 씨가 진소봉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교경은 영동보통학교 졸업 후 1925년 황간청년회에 가입하여, 야학교 교사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청년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1926년 1월 12일자 『시대일보』에 의하면 김예태와 같이 황간청년회의 간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26년 7월(재판당시)은 황간청년회의 창립초기로 김예태 및 김예태의 형제들이 청년회 간부로 활동하던 시기였고, 또한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순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김예태는 적극적이고 열기왕성한 인물로 당시 청년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였다고 볼 수 있다.

27) 『조선일보』 1925. 3. 27.

3) 도일(渡日)까지의 과정

- 1926년 1월 12일 황간청년회 간부(시대일보)
 - 1926년 7월 24일 형공(刑控) 제259호(징역 6월)
 - 1926년 11월 15일 첫째 김영발(金榮發) 출생 : 황간면 신흥리
 - 1927년 10월 5일 둘째 김영채(金榮彩, 일명 영일)출생 : 황간면 신흥리
 - 둘째 출생 신고일 1938년 2월 15일
- ↑
(공백기간)
↓
- 1935년 10월 2일 셋째 김영차(金榮次) 출생
 -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宮城縣 仙台市). 일본인 부인
 - 1937년 4월 14일 넷째 김영길(金榮吉) 출생
 -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宮城縣 仙台市). 인지 신고일 1938년 5월 13일
 - 1940년 7월 26일 다섯째 김초강(金初江) 출생
 -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福島縣 福島市). 일본인 부인
 - 1941년 4월 17일 여섯째 김초미(金初美) 출생
 -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福島縣 福島市).

위의 판결문에 의하면 김예태의 판결일이 1926년 7월 24일로, 징역 6월이면 최소한 1927년 1월 출소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영동의 상황은 1926년 10월에 영동의 5개 청년단체(영동·황간·용화·양강청년회와 영동노동청년회)가 합쳐 영동청년연맹이 조직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1927년 8월 영동청년회 사건이 발생하여 장준·김태수·손순홍·최판홍 등이 치안유지법 위반, 공산당 조직이라고 검거·투옥되었고, 같은 해 9월 3일 충북영동청년회와 '7월회'의 집행위원 장준 외 12명이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3·1운동 이후 영동지역 청년활동은, 계몽적 성격의 단체로 출발했던 황간청

년회가 1924년 7월, '7월회' 조직 이후 사상단체로 변하기 시작, 1926년 영동청년연맹조직,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에 황간청년회 참가 (대표 최진), 1927년 8월 영동청년회 사건, 1929년 영동농민조합 조직, 1931년 적우동맹 조직 등 사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김예태는 출소한 후 이런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년회 활동을 그만두었거나, 출소 후 경찰의 감시망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태가 황간을 떠나 일본으로 간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여겨진다.

4) 3·1운동 이후 영동지역 사회운동 상황

다음 <표 2>는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의 사회운동 상황을 『시대일보』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외일보』 등 신문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한 것이다. 김예태와 그의 형제들이 황간청년회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발견된다.

<표 2>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 사회운동 상황

연 월 일	활동내용
1920. 8. 또는 1920. 9.	영동청년회 조직
1924. 7.	<장준> 회에 자본가· 부르주아계 회원이 증가한다고, 영동청년회 탈퇴, 칠월회 조직(장준이 김두수와 함께 경성에서 전조선청년당대회,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참가 한 후, 영동에 돌아와 조직, 사상문제연구가 주요활동)
1925. 3. 24. ~1925. 4. 9.	<황간청년회 창립총회> 차경곤(회장) 최판홍(총무) 김의태(서무부) 김지태(연예부) 등등
1925. 4. 15.	황간청년회 노동야학 강사가 차경곤, 김지태로 결정
1926. 1. 12.	<황간임시총회> 종래까지 회원제로 하던 것을 위원회로 개정위원으로 총무부 최진, 사무부 김예태, 교양부 장하익, 차경곤, 재무부 추교경

연 월 일	활동내용
1926. 10.	<p>영동청련(靑聯)창립 우천으로 연기 <영동청년연맹 조직> 영동·황간·용화·양강청년회, 영동노동청년회 가입 장준·김태수(영동)·손순홍·최판홍(황간) 등</p>
1927. 8. ~9. 3.	<p><영동청년회 사건> 치안유지법위반,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이유 장준(영동청년회, 칠월회 집행위원)외 6인 검거 장준(張竣), 김극수(金極洙), 최판홍(崔判興), 김태수(金台洙), 장철(張喆), 추교경(秋敎慶), 이관직(李官植) ※ 영동청년치안유지법위반 공판 예심종결서 내용 “피고 등이 충청북도 영동, 황간, 양강청년회 등에 가입하여 표면에는 순 건하나 이면에는 항상 불순한 언동을 해 관청을 반역하며”(후략)</p>
1929. 2. 14. ~1931. (추정년도)	<p><영동청년연맹이 영동청년동맹으로 명칭 및 조직변경> 기존 각 지역 청년연맹은 영동청년동맹의 지부형태로 전환(황간지부) 정기대회, 집행위원회 개최 등 활동. 회의 때 불온 연설하면, 임석경관이 자주 잡아감(이의수, 이의찬)</p>
1929. 4. 26. ~1930. 9.	<p><영동농민조합 조직(영동청년회의 개조해 조직한 단체. 판결문에 의함)> 정기대회, 집행위원회, 강연회 개최 등 활동. 소비조합 조직 1930.5 영동농민조합 황간지부 조직 1931.7 황간지부원 : 김순화, 박개천, 박기철, 방영준, 김완수, 박환영 등</p>
1930. 10. ~1932. 5. 10.	<p><영동농민조합에서 영동소비조합 조직> 창립 당시 집행부의장 장준 선전문·삐라 살포, 높은 매상과 이익. 하지만 적우회사건과 조합 내 부 정사건으로 해체 ※ 적우회사건 당시 공주에서 재판받을 때 신간회에서 변호사를 파견하 여 무료 변호해 줌</p>
1930. 1. 3.	<p><영동사회운동자 신년간담회> 신간회영동지회 설치하자는 회의-장준, 김태수, 김극수 등 1930. 2. 21. 신간회영동지회 설립집회 경찰이 저지</p>

연 월 일	활동내용
	1931. 2. 20. 신간회 청년동맹 해소가결
1931. 1. 15.	<적우동맹 조직 : 공산주의운동 전개가 목적> 김태수(책임비서) 김용찬(정치경제부) 손순홍(선전조직부) 김용각(청년학생부) 이상용(노동농민부) 등등
1932. 2. 17. ~1934. 7. 20.	<영동농민조합사건> 농민조합 조직하여 표면적으론 합법적 운동처럼 하고, 내면으로는 아동부녀자에게까지 공산주의 선전했다는 혐의로 검거 관련인물 : 장준, 최관홍, 추교경, 손순홍, 김태수, 김두수, 김용찬, 이의수, 민공호, 최용근, 민원식

이상에서 제시한 3·1운동 이후 황간 및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925년 3월 문화적 신사회를 표방하며 황간청년회를 조직, 그 후 1926년 10월 영동의 5개 단체가 영동청년연맹으로 통합되고, 1929년 2월에는 영동청년연맹이 영동청년동맹으로 바뀌어 기존의 각 지역 청년연맹은 영동청년동맹의 지부형태가 된다.

황간청년회의 최관홍·추교경이 1927년 12월 영동청년회 사건으로 장준 등과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검거되는 것을 볼 때 황간청년회의 운동은 영동청년회 등의 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한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후 영동지역의 운동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29년 4월 영동농민조합이 설립되고, 1931년 1월 공산주의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적우동맹’이 조직되었고, 1932년 2월 아동 부녀자에게까지 공산주의 선전을 했다는 혐의로 장준·최관홍·추교경 등이 검거되는 ‘영동농민조합 사건’이 발생하는데, 계몽단체로 출발했던 황간청년회도 이런 과정에서 사상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VI. 결론

황간장터에서 김예태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철만의 증언이 있었으나 신청인, 참고인, 전문가, 향토사학자 및 황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령자들과의 면담·조사 결과, 황간장터에서 주목할 만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추가증언을 확보할 수 없었다.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황간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을 가능성과 김예태가 참여했을 개연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황간장터의 만세운동 여부와 이 만세운동에 김예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시대일보』 등 1925~6년도 신문 기사를 통해 김예태와 그의 형제들이 황간청년회 간부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예태는 ‘일본 순사폭행죄’로, 그의 형 김의태는 ‘일본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과 1920~30년대 황간 및 영동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추교경·최관홍·손순홍과 함께 활동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예태와 그 형제들이 황간지역의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은 인정된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시대일보』 『영동신문』

단행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제3권: 삼일운동사(하))』, 고려서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독립운동사자료집13: 3·1운동의 전국상황』,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독립운동사자료집6 : 삼일운동사자료집』, 독립기념관

판결문 : 3·1운동관련

판결 1920년 공 제67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이견양)
판결 1920년 공 제176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전만표)
판결 1920년 공 제308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김재득)
판결 1919년 공 제572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이기영)
판결 1919년 형공 제294호(매곡면 만세운동관련 임봉춘 외 7명)
판결 1919년 형상 제33호(매곡면 만세운동관련 임봉춘 외 7인)
판결 1919년 형공 제49호(양강면 만세운동관련 박중옥, 김용문)
판결 1919년 형공 제491호(학산면 만세운동관련 양봉식)

판결문 : 청년운동 등 3·1운동 이후

판결 1928년 형공 제125호(청년회 활동 관련 장준 외 5인)
판결 1933년 형공 제269호(청년회, 농민운동 관련 장준 외 10인)
국사편찬위원회편, 1991-200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편, 1991-200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 국사편찬위원회

논저

애국동지원호회, 1956,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차기벽, 1979, 「식민지독립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비교론적 고찰」, 『현상과 인식』 3권1호
김진봉, 1982, 『3·1운동』, 민족문화협회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박경식, 1987, 『조선3·1독립운동』, 고려서림
김진봉, 1987, 「호서지방3·1운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
운동사연구소

황부연, 1987, 「충북지방의 3·1운동」, 『충북사학』 제1집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편, 1995, 『3·1운동』, 민문고
 강호출, 1991,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정은, 1991, 「3·1운동의 지방확산과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임경희, 1992, 「3·1운동전개에 나타난 농민의 역할」, 충북대석사학위논문
 이창진, 1999, 「3·1운동의 지역별 주도세력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 박사학위논문
 김학훈, 1999, 「영동군 정기시장의 기능특성과 공간구조」, 대한지리학회지 제34권 5호
 박결순, 2000, 「충북지방 독립운동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김진봉, 2000, 「호서지방3·1운동의 성격」 『3·1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이병현, 2002, 『3·1운동비사』, 개벽사
 김진호, 2002, 「충남지방3·1운동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3, 『충북향토문화연구』, 上, 下』
 충북학연구소, 2003, 『충북100년 신문기사집성: 1911~1919』
 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영동군지』, 「제7장 3절 영동의 3.1운동」
 박결순, 2005, 「일제하 충북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충북학 제7집
 이정은, 2006, 「3.1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 해외문헌

「조선소요사건개람표」, 조선헌병대사령부,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1919.3.1~3.31
 「조선소요사건개람표」, 조선헌병대사령부,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1919.4.1~4.10
 龜岡榮吉 著, 1927, 『조선철도연선요람』, 朝鮮拓植資料調査會
 충청북도 편, 1934, 『忠淸北道要覽』
 佐々木春隆, 1985, 『韓國獨立運動の研究』, 國書刊行會
 市川正明編, 1989, 『三・一獨立運動3』, 조선독립운동별권, 고려서림

<별첨 1> 사건조사 일지

연월일	조 사 내 용
'06. 4. 25.	<p><황간장터만세운동에 관한 자료 수집></p> <p>문서, 신문, 잡지기사 등을 통해 규명대상자 김예태(金禮泰)를 비롯 영동과 황간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검토(국내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중앙도서관 등. 국외의 경우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국회도서관, 국립공문서관, 방위청 등의 자료를 검색·조사)</p>
'06. 5. 4.	<p>신청인 김초미(金初美)가 남편 오수룡(吳壽龍)과 함께 본 위원회 방문</p>
'06. 5. 8.	<p><황간장터 만세운동 관련 제1차 실지조사></p> <p>황간역 부근 다방에서 신청인 김초미의 사촌오빠 김영옥과 면담. 전 면장 출신 유동렬 및 영동군지 편찬위원 안병찬 동석. 황간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전해들어왔다고 하나,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증언할 만한 사람들도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함.</p> <p>김영옥도 김예태가 헌병에 끌려간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함. 가령 체포되어 금방 풀려났는지 옥살이를 했는지, 언제 일본에 건너갔는지 등에 대한 진술도 전혀 확보할 수 없었음(김영옥은 연좌제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초가 많았던 듯 그에 대한 얘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함).</p> <p>영동군의 매곡면, 학산면 등의 만세운동으로 검거된 자들의 법원 판결문 등은 보이나 유독 황간면의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공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나 공주지법의 기록이 전부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 제시</p> <p>현재와는 달리 당시는 황간이 인근지역에서 가장 커서 만세운동도 황간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함.</p> <p>이 지역이 좌익성향이 강하고 전란 속에 많은 자료들을 없애버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함.</p> <p>1920년대 한글학회 사건 등이 청장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함. 1994년8월22일자 『영동신문』에 김예태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으므로 기사 내용 확인과 취재기사를 통해 자료를 좀 더 얻기 위해 신문사 방문.</p> <p>편집장 박장근을 통해, 신문의 기사가 오로지 이철만 옹의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영동신문』 편집장 박장근, 당시 취재기자 박</p>

금융).

김예태의 만세운동을 증언한 이철만 옹을 통해 당시 상황과 기사 내용의 확인 및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고령(96세)으로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람(김영옥)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

'06. 5. 9. 『영동신문』 편집장 박장근과 통화. 추가적인 기록 유무를 확인했으나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시대일보』(1926. 1. 12.) 황간청년회 관련 기사에 김예태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황간청년회 및 더 나아가 영동지역의 청년회나 농민운동 등에 대해 조사.

7형제의 이름 : 형태(亨泰), 윤태(允泰), 용태(容泰), 인태(仁泰), 의태(義泰), 예태(禮泰), 지태(智泰)

현재 지태 외에는 기록을 찾지 못한 상태이나 김예태 형제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제강점기 영동, 황간 지역 신문기록 및 문서류 검토

'06. 5. 15. 일제 강점기 영동 및 황간 지역 전체적인 상황 파악 (『영동군지』) 1925년 영동군 읍면별 인구 상황, 시장 현황, 경찰 등 <1926년 형공(刑控) 제259호>

김예태, 진소봉(陳小奉), 추교경(秋敎慶)에 대한 판결문(진소봉에 대한 다른 기록은 찾지 못함). 1926년 황간청년회의 간부로 있던 추교경과 김예태의 관련을 추정할 수 있음. 김예태가 다나카(田中)순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처해짐. 김예태의 형 김형태(金亨泰) 등장

'06. 5. 16. 김영옥으로부터 전화. 추교경의 판결문에 김예태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확인됨. 숙부에 해당하는 김지태(金智泰)가 이리전문학교를 나와 야학 등에서 활동했다고 함

'06. 5. 17. <국가기록원 김예태 기록 확인>
형공(刑控) 제259호 외에는 김예태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

'06. 5. 18. 영동의 장터 확인, 영동의 만세운동경로 파악

'06. 5. 19. 『조선일보』(1925. 3. 27.) 황간청년창립 총회기사에 김예태의 형과 동생으로 추정되는 김의태(金義泰), 김지태(金智泰) 등장. 그리고 진소봉, 최관홍(일명 최진) 등도 있으므로 김예태 형제들이 황간청년회에서 주

	도적인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임
'06. 5. 22.	황간의 김영옥과 통화. 후손들 소재 파악, 김의태의 아들 김영원, 김용태의 아들 김영호와 통화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음
'06. 5. 23.	1900년대 초 『철도연선요람』, 『충북요람』 등을 통해 영동지역 및 황간 지역의 물류흐름, 인구 등 조사
'06. 5. 24.	경부선 면해 있는 지역 조사, 추풍령과 가까운 김천이나 학산면과 가까운 무주 지역 등 조사
'06. 5. 25.	소요관계 서류나 독립운동 기록 등을 통한 황간 지역 만세운동 파악
'06. 5. 25.	<전문가 자문> 김진호(광복60주년기념 독립운동사대계 충청지방3·1운동사 집필위원)·강호출(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국가기록원)
'06. 5. 29.	<김예태의 조카 김명애(김지태의 딸) 자택 방문> 아버지 김지태가 야학에서 가르칠 때 같이 따라다녔다고 함. 황간에서의 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함. 김예태에 대해서 기억하기로는 덩치가 크고 인물이 좋았으며 관내 씨름대회에서 황소를 타기도 했다고 함. 황간의 김영옥보다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아버지 김지태가 해방 전(41년)사망했고 19세 때 황간을 떠난 것 등 결정적인 증언은 들을 수 없었음
'06. 6. 1.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통화> 김의태에 관한 판결기록이 있음을 확인. 2회 신청인 진술 조사(위원회에서 김초미 부부)
'06. 6. 2.	황간의 만세운동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해 영동의 정은용과 전화통화했으나 황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
'06. 6. 5.	황간지역 만세운동 종합정리
'06. 6. 12.	김예태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청년회활동을 했던 손순홍의 아들 손경호와 통화했으나 3·1운동과 관련한 얘기도 듣지 못했고 자료도 없다고 함

'06. 6. 22.	<김예태와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던 추교경과 최관홍의 후손 추적> 최관홍은 일가족 모두 월북, 후손 추적 불가. 추교경의 아들 추정길과 통화, 3·1운동에 대해 들은 바는 있으나 자료는 전무한상태. 당시 사진이나 기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06. 6. 26.	황간지역 고령자들을 통해 증언을 듣고자 명단 파악 협조를 황간면에 요청
'06. 6. 27.	지역사에 밝은 향토사학자 물색(영동문화원)
'06. 6. 28.	각 마을의 이장과 통화, 그리고 고령자 중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들 파악
'06. 7. 12. (7. 12.~7. 14.)	<2차 황간실지조사> 황간초등학교, 황간면사무소, 황간장터, 황간장터 부근의 마산리, 남성리 일대 고령자 면담
'06. 7. 13.	회평리, 광평리, 금계리 일대 고령자 면담 영동경찰서, 영동정보과학고등학교(구 영동농림학교) 향토사학자 전화
'06. 7. 14.	향토사학자 면담(안병찬, 김기현) 김기현은 갑작스런 부고로 인해 전화로 자문 영동문화원
'06. 7. 18.	출장보고서 작성 및 보고
'06. 8.~	황간장터 만세운동 보고서 작성

〈별첨 2〉 김예태 판결문

大正15년(1926) 刑控 제259호

判決(판결)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農 김예태 27년

同道 同郡 同面 마산리

음식점업 진소봉 26년

同道 同郡 同面 신흥리

農 추교경 21년

김예태, 진소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추교경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大正15년 6월 4일 공주지방법원대전지청에서 언도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控訴) 신청이 있어 당원(當院)은 조선총독부검사 카사이(笠井 健太郎)의 관여 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판결 함.

主文(주문)

피고 김예태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진소봉, 추교경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두 사람에게 내린 3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理由(이유)

본 범죄 사실은 원판결소재(原判決所載)와 동일하므로 여기에 인용한다.

증거를 고려하건대 제1의 사실에 의거 당 법정에서 피고 김예태는, 판시한 일시장소에 간 것은 틀림없지만 다나카(田中榮) 순사에 대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또 피고 진소봉은 판시한 일시장소에 갔더니 피고 김예태가 다나카 순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지만 자기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 다나카에 대한 심문조사 중, 자기는 주임 우에다(上田)부장의 명령으로 판시한 위안회장(慰安會場)의 단속을 위해 갔는데 피고 김예태가 음주로 큰 소리를 치며 폭행하므로 주의를 주었더니 자기의 멱살을 잡고 또 피고 진소봉도 뒤쪽에서 와서 판시한 대로 상해를 입히니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증인 오카모토(岡本宋一)에 대한 청취서 중 판시한 일시장소에서 피고 김예태가 다나카 순사에게 폭행하고 피고 진소봉도 이에 가담하여 폭행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지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및 의사 하라(原)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해 이를 인정했다.

제2의 사실에 의거 당 법정에서 피고 김예태는 판시한 위안회가 있던 밤, 형이 오노(小野) 조수 때문에 연회장에서 끌려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 날 17일 피고 추교경 등과 함께 황간역으로 가서 역장실에서 오노 조수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도 폭언을 퍼부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피고 추교경은 자기는 5월 16일 밤, 내선인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혼자 황간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 김예태와 만나 피고의 형 김형태(金亨泰)가 끌려 나간 것에 대해 물었는데 다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타할 만한 기세를 보인 적은 없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증인 하세가와(長谷川健治)의 제1同 청취서(聽取書) 가운데 1926년 5월 17일 오전 9시 40분 경, 자기는 역 사무소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 김예태, 추교경 외 2,3명이 와서 오노 조

수에게 전날 밤 역 구내의 연극장에서 김예태의 형을 왜 차 위에서 끌어내렸는지를 따지자 자기는 아니라고 했으나 모두 커다란 곤봉을 들고 협박조로 말했다는 내용을 공술 기재했다.

同 증인 오노에 대한 청취서 중 판시한 위안회 다음날 피고 등이 역 사무실에 와서 자기한테 전날 밤 왜 김예태의 형을 차 위에서 끌어내렸느냐며 곤봉을 들고 대답에 따라서는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또 사법경찰관 정수복(鄭壽福)에 대한 심문조서 중, 자기는 올 5월 17일 피고 두 사람과 함께 황간역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 때 직경 1치(寸) 정도 되는 막대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공술 기재함에 따라 피고 등은 판시한 하세가와 및 오노 등에 대해 공무를 방해한 것을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보건대 피고 김예태의 소행 중, 상해(傷害)는 형법 제204조에,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것은 同法 제95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일소위수법(一所爲數法) 및 연속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同法 제54조 제1항 前段제55조 제10조에 의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하는 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진소봉의 소행 중, 상해에 관한 점은 형법 제204조에, 공무집행방해는 同法 제95조에 해당하는 바, 위는 일소위수법(一所爲數法)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同法 제54조 제1항 前段제10조에 따라 무거운 상해죄에 해당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추교경의 소행은 同法제95조 제54조 제1항 前段에 해당하는 바 하세가와 역장에 대한 소행에 따라 소정형(所定刑)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진소봉, 추교경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둘 다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해 主文대로 판결한다. 피고인의 공소는 모두 이유 있다.

大正15년(1926)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형사부

제 4 장

기록분석 보고서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

1. 목적과 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제3조제2항제4호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긴급조치위반 사건의 판결 1,412건을 분석하여 긴급조치의 적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아래에서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권의 내용과 그 발동 배경을 살펴보고, 수집한 판결에 대하여 심급별 및 유형별 통계, 개별사건별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실었다.

2. 유신헌제와 긴급조치

1) 유신헌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5·16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를 내세우며 경제규모의 확대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1960년대 경제성장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계급의 문제가 ‘전태일 분신’으로 상징적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산업화 과정의 긴장과 갈등이 경제위기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위기로 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권은 유신헌제로의 이행을 도모하게 된다¹⁾.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불만의 누적과 함께 학생들의 정권 비판이 강력하게 전

1)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비평』(1995. 가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5. 8. 89쪽.

개되고 있었고, 사법파동(1971. 7. 28.), 광주대단지 사건(1971. 8. 10.) 등 각계각층의 저항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1971. 5. 25.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에 못 미치는 의석²⁾을 얻음으로써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데모를 진압하기 위하여 1971. 10. 15. '위수령'을 발동하여 각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시키고, 무기한 휴교조치와 더불어 데모학생들에 대한 제적처분으로 위급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가중되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71. 12. 6. '안보위기³⁾를 내세우며 전국에 '국가비상사태선언'⁴⁾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곧이어 12. 27.에는 이 비상사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표함으로써 '비상사태'를 이유로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 10. 17. '특별선언문'⁵⁾을 통해 유신을 선포함으로써 유신개헌이 강요되었고, 유신선언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각종 정치

-
- 2) 민주공화당은 유효득표수의 48.8%를 득표하여 113석을 확보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은 44.4%를 얻음으로써 89석을 확보하였다(<http://www.assembly.go.kr/index.jsp>).
 - 3) 당시 안보상황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뚜렷한 북한의 침략증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9.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이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 중국, 일본의 관계정상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의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집권세력은 이 '위기'를 오히려 권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 4) 이 '비상사태선언'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가안전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담화 형식으로 발표되었고, 안보최우선 정책, 무책임한 안보논의 금지, 자유권 제한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김민배, 위의 논문, 92쪽).
 - 5) '대통령 특별선언'(1972. 10. 17.)의 내용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현행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집회를 금지하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야당 정치인들도 계엄당국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는 등 비상조치에 대한 일체의 반대토론이 봉쇄되었다.

10. 27. 대통령 박정희가 주재한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공고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 1972. 11. 21. 투표율 91.9%, 찬성률 91.5%로 유신헌법이 통과되자 그 사흘 뒤인 1972. 11. 24. 청와대는 '유신헌법 확정 통과에 따른 대통령 각하 유시'를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전파하였다.

대통령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하면서 유신헌법제정의 동기를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⁶⁾.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력의 강화, 국민의 총화가 필요한데 기존 헌법으로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기존 헌법질서를 뛰어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하고,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유신주도세력들은 분단상황에서 오는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총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유신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7. 6. 8.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자 3선개헌을 강행하고, 1971. 4. 27.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가까스로 대통령 3선에 성공하였으나, 뒤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재적 204석 중 과반을 겨우 넘는 113석을 차지하자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대통령 박정희는 경제건설과 자주국방,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자신이 최적임자라는 확신아래 장기집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10·17 특별선언에서 표명된 바였다⁷⁾.

6) 김승환, 「유신헌법 하에서의 헌법학이론」,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2002. 10. 한국공법학회, 46쪽.

7) 특별선언에서 박정희는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2)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형식적으로는 '남북대치라는 국가의 특수상황에 기초하여 국가적 위기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박정희의 장기집권 내지는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국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지위를 약화시킨 것,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폐지하여 이를 헌법위원회에 부여한 것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주권재민(제1조)을 명시하였으나,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별도의 국민대표 기관이 대통령 선거권(제39조제1항),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확정권(제41조제1항),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권(제40조제1항) 등 국민주권 사항에 속하는 핵심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는 유명무실해졌다⁹⁾. 대통령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제40조제2항), 국회해산권(제59조)과 함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제103조)을 보유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기본권보장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 역시 형해화시켰다.

모색할 것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통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강력한 장기집권 의도를 선언하였다(선언 내용은 김민배, 위의 글, 93쪽에서 인용).

- 8) 3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권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었다(제102조).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유신헌법이 선포되기 직전 두 차례에 걸쳐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판결을 선고하였다([대판 1970. 2. 24. 선고, 69다1069], [대판 1971. 6. 22. 선고, 70다1010]).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 선언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법원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고 사법부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 9)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했으나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고 대의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가운데,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유신헌법 확정 직후인 1972. 12. 23.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당선되었으며, 반대표는 단 1표도 없었다.

유신헌법 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욱 축소되었다. 즉 유신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더욱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3공화국 헌법 규정을 스스로 삭제하고¹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국가긴급권’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었다.

3) 긴급조치권의 특징

유신헌법은 국가긴급권으로서 계엄선포권(제54조)과 함께 긴급조치권(제53조)¹¹⁾을 규정하였다.

유신헌법의 국가긴급권은 ‘위기정부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위기는 전쟁, 내란, 폭동 발발 등과 같은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거나 파괴되는 고전적 상황과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현대적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현존의 위기극복만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조성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10) · 제3공화국 헌법 제32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유신헌법 제32조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헌법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상대권의 필요성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6조를 원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양자는 그 출발과 성격, 요건 등이 상이하다.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의 특징>

	헌법 제53조(긴급조치권)	비고
국민적 합의여부	형식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되었으나, 국가긴급권 도입의 전제가 된 유신헌법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	
발동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뿐만 아니라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도 발동 可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뿐만 아니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발동 可(사전적·예방적 조치) 위협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의적 영역(집행부 이외 어떠한 헌법기관의 사전적 통제나 의견수렴장치 無, 다만 사후적으로 국회에 통보) 	프랑스는 위협의 현실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후적·진압적 조치
통제	국회의 사전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	프랑스는 헌법위원회, 의회 및 법원에 의한 통제 가능
발동의 실제	9호에 달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반체제 세력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기능	프랑스에서는 1961. 알제리 사태해결을 위해 한차례 발동

특히, 긴급조치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는 명목에 불과하였는데, 헌법 규정상 긴급조치 발동에는 집행부 내부의 통제(국무회의의 사전적 심의[제66조]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일련의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전심의와 국무총리,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는 형식적, 의전적인 절차에 그쳤고, 국회의 사후적 통제과정도 유신헌법(유정회)과 민주공화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었다¹²⁾.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차에 걸친 긴급조치 중 긴급조치의 해제에 관한 제5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하면, 기본권 제한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제3호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논외로 치면, 나머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4호와 제7호는 일반적, 규범적 성격이 아니라 민청학련과 고려대 시위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처분적 성격을 담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리와 평등원칙에 반하고, 제1호 및 제9호도 국민의 헌법개정운동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위헌적 권한이었다.

긴급조치권의 구조에 있어서도, 그 적용 범위와 효과가 지극히 광범하고, 적용기간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에는 무려 4년 7개월이나 존속되었으며, 국회의 집회, 소집가능성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고 국회와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결국, 대통령 1인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 없이 발동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으며, 실제 긴급조치는 ‘공안시국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 발동되었다.

3. 발동과 그 배경

1974. 1. 8. 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2,159일간 소위 ‘긴조 시대’가 유지되었다.

1) 개헌청원운동과 긴급조치 제1호

1974. 1. 8. 긴급조치 제1호 발동의 계기는 1973. 12. 24. YMCA회관 2층 회의실에서 종교계, 학계, 언론계 대표 30여명(함석헌, 장준하, 천관우, 김동길, 계훈제, 백기완 등)을 중심으로 ‘개헌청원운동 전개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고 ‘개헌

12) 성낙인,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비교 연구」, 『공법연구』(제28집 제4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0. 6., 169쪽

청원운동 본부'를 설치하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기자회견서를 발표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12. 4.에는 장준하의 주도하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는 현행헌법은 그 개정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었다.

12. 26. 김종필 총리가 라디오, TV를 통한 연설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본질적 차원에서의 도전은 허용되는 자율의 한계이탈행위이며 그 선동자는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 발언을 하고, 12. 29.에는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 개헌운동중지를 강경하게 촉구하였다.¹³⁾ 그러나 서명운동이 2개월만인 1974. 1. 30만명을 넘길 만큼 국민적 호응을 얻어가고, 종교계에서도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 등을 통해 유신반대의 공감대를 넓혀가자 정권은 큰 정치적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1974. 1. 7. 이희승, 김광섭, 이호철, 백낙청 등 문학인들은 문인 및 지식인 61명의 개헌청원서명을 발표하였고¹⁴⁾, 다음 날인 1. 8. 전남대생 1,000명의 개헌요구 시위가 발생하자, 박정희 정권은 같은 날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여 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조치 제1호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위하여 같은 날 긴급조치 제2호를 발동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의 첫 위반자는 개헌서명을 주도한 장준하, 백기완이었는데,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터넷 사이트(<http://www.kdemocracy.or.kr/>)내 '민주주의' 내 '사건편찬'자료 중

14) 긴급조치 1호 선포 18일만인 2. 25. 서울지검 공안부는 문인과 지식인들이 포함된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이호철, 임헌영, 김우중, 장을병, 장병희 등을 구속하였다. 일본에서 활약하는 재일동포 복귀 공작원과 접선, 금품과 향응을 받고 포섭되었다는 것이었는데, 1972. 겨울, 국제펜클럽에서 주최한 일본문학 심포지엄에 참가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1심에서 정을병, 김우중, 임헌영이 석방되고 문인들의 개헌청원서명을 주도한 이호철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중앙일보」, 2003. 3. 25. 자).

1. 15.자로 구속된 두 사람은 1974. 2. 1.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1974. 8. 20. 대법원에서 15년형 확정, 1974. 4. 9. 장준하 형집행정지, 백병원으로 주거 제한)하고 뒤이어 김경락, 인명진 목사 등을 구속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대한 일체의 개헌논의를 위법으로 처벌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 기본권에 본질적 침해를 가함으로써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재판케 한 것은 사실상 계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긴급조치 위반자는 국가보위라는 체제차원에서 속결주의, 그리고 이른바 ‘정찰제’(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이 일치하는 것. 당시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이 일치한 데 대해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¹⁵⁾)에 의해 중벌을 받았다.

긴급조치 제1호가 발동된 지 6일 만인 1974. 1. 14. 박정희 정권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주민세를 1년간 면제 혹은 경감하고 버스요금 인상억제로 통행세를 감면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미곡수매 가격을 가마당 500원씩 인상하며, 영세민의 취업보장을 위해 100억원을 확보하여 노동집약적인 토목사업 등을 실시하며, 임금의 우선 변제제도를 신설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는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긴급조치 3호는 그 해 12. 31.자 긴급조치 제6호로 해제되면서 정권이 내세웠던 국민생활안정이나 영세민보호에 별 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2) 민청학련 사건과 긴급조치 제4호

1974. 4. 3.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을 탄압하기 위해 발동되었다.

1974. 4. 3.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전국민주청

15) 한승헌,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실록 민청학련 1 : 1974년 4월』,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학민사, 2004. 331쪽.

년학생총연맹'의 이름으로 유인물이 뿌려지고 같은 날 22:00 긴급조치 제4호가 발동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민청학련과 그에 관련되는 제 단체의 조직, 활동, 동조, 연락, 직·간접의 금품 및 장소제공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이유 없는 출석·수업·시험거부,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며, 문교부장관은 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퇴학, 정학, 결사에 대한 해산,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특별담화를 발표해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전개하는 적화통일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 불법활동 양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겠다”¹⁶⁾고 하고, 이 같은 특별담화를 통해 학생대모가 북한과 연계된 용공좌익활동임을 강조하였는데, 3주일 후인 4. 25.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및 그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 조직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민청학련 수사상황에서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재건위 조직과 조총련계 및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4. 3.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한 불순 반정부세력”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과 관련하여 학생을 포함한 1,204명을 조사하여 그 중 745명이 훈계방면하고 253명을 비상군법회의로 송치하였는데, 이 중 다시 75명을 석방하고 180명을 기소하였다.

7. 13.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이철, 유인태, 여정남, 김병곤, 나병식, 김지하, 이현배 등 7명에게는 사형, 유근일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에 앞서 7. 11.에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 중 서도원, 도예중 등 7명에게 사형, 김한덕 등 8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선

16) 위 특별담화문은 『북한』 (통권 제29호), 1974. 5. 북한연구소, 33쪽에서 인용

고되었다. 1974. 11. 말 집계로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자 169명이 처벌되었다¹⁷⁾.

3) 고려대 유신반대 시위와 긴급조치 제7호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각각 225일, 142일 만인 1974. 8. 23. 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되었다.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된 이후 반체제운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1974. 8. 김영삼이 신민당 당수로 당선되면서 재야가 야당정치권과 연결을 맺는 단계로 발전하여,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 활동이 광범위하게 연합전의 성격을 띠면서, 개별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 전 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긴급조치 제7호는 1975. 4. 8. 약 2,000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민우」, 「야생화」¹⁸⁾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긴급조치 제7호는 1975. 5. 13. 긴급조치 제8호로 해제)되어, 고려대학교를 휴교시키면서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

긴급조치 제7호가 선포된 지 35일이 지난 1975. 5. 13. 발동된 긴급조치 제9호는 1호부터 7호까지의 모든 조치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해 선포한 것으로서,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터넷 사이트(<http://www.kdemocracy.or.kr/>)내 '민주주의' 내 '사건' '전편찬' 자료 중

18) · 고대 NH회 사건('민우지' 사건) : 1973. 5. 24. 중앙정보부는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사무국장 김낙중을 간첩혐의로, 고대생 10명을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였는데, 혐의 내용은 1971. 위수령 발동 이후 NH(민족주의, 휴머니즘의 약자)회를 결성, 북한의 지령에 의해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민족통일의 횃불을 들자", "민우" 등을 다량 제작하여 고대 등지에 배포하였다는 것이었다. 관련자들은 1년부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고대 '검은 10월단(야생화)' 사건 : 1973. 6. 21. 중정은 고대의 학생씨클인 '한사회'가 1971. 10. 위수령 발동으로 해체되자 1972. 9. '검은 10월단'을 조직, 현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야생화'라는 불온 유인물을 교내에 배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79. 10·26 이후까지 지속되면서(1979. 12. 8. 해제될 때까지 약 4년 7개월간 존속) 유신말기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기존의 긴급조치들을 확대, 재편한 내용으로, 집회·시위는 물론, 신문·방송·문서 등의 표현물에 의한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 개정 및 폐기 주장, 청원·선전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조치에 의한 명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할 무렵 국내에서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반유신 움직임이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고, 국외적으로는 베트남의 사회주의화를 이용한 유신정권의 반공선전이 대대적으로 고조되고 있었다.

즉 국내적으로는 1975. 4. 11. 서울대 농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상진이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정권은 서울 농대를 사실상 폐쇄하고 각 대학에 휴교, 휴강조치를 내렸고, 4. 중순까지 25개 대학이 전면 휴강하고 주동자의 대량처벌과 구속이 잇따랐고,¹⁹⁾ 국외적으로는 1975. 4. 17. 프놈펜이 크메르 루즈에게 함락되고, 4. 30. 베트남이 북베트남의 주도하에 사회주의화되자, 전국적으로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안보선전을 벌이고 김일성의 오판 대비와 사회혼란배제, 공무원의 부조리 제거, 국민단합과 내부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은 ‘안보 위협’을 긴급조치 제9호 선포의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한반도 안보상황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확대, 과장해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최근 미국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다²⁰⁾.

19) 1975. 5. 22.(‘오돌돌 사건’) 서울대생 1,000여명은 ‘김상진 열사 장례식’을 거행한 후 긴급조치 9호 철폐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감행하게 되고 이 사건의 여파로 학생들이 대량 구속되고 서울대 총장, 치안본부장, 남부경찰서장은 사표를 썼다. ‘오돌돌 사건’을 계기로 서울대 내 운동세력은 초토화되었다(장세현, “긴급조치 9호세대의 독립선언 - 1995년, 우리는 징검다리 세대다”, 『사회평론 길』, 1995. 6. 130쪽).

20) 2006. 3. 30. 동백림사건, 1975. 주한미군 철수와 긴급조치 9호 등에 대한 미외교문서가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1975. 당시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 위협이 크지 않다고 봤으며 긴급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안보’가 유일한 체제 이데올로기가 되고 1975. 7.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및 교육관계법 개정법률(학도호국단 부활) 등 4대 전시입법을 포함한 21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방비를 확대하고, 민간인, 학생들을 군사체제로 재편하였는데, 사회안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복역 중이거나 출소한 반정부인사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4년 7개월여에 이르는 긴급조치 9호 시대를 거치면서 ‘긴급조치 9호’만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수는 ‘한국정치범동지회’에 따르면 1,387명에 달하고²¹⁾, 위원회가 입수한 판결문 1,41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긴급조치 9호위반 판결은 1,289건, 그 피해자 수만도 974명에 이르렀다.

4.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결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판결문 1,412건 중 1심 판결이 589건, 항소심 판결이 522건, 상고심이 252건이며, 1심 판결 중에서 긴급조치 1·4호 위반이 36건, 3호 위반이 9건이며, 긴급조치 9호 위반의 경우 554건, 인원은 974명에 달한다.

조치 9호는 ‘너무 강경(tough)한 조치’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미 국무성 하비브 차관은 1975. 5. 당시 함병춘 주미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민은 지식수준이 높은 민족이기 때문에 금번 조치가 앞으로 시행되는 데 문제 적지 않을 것. 조치내용이 너무 강경하다”고 했고, 미 국무성 오도노휴 과장도 ‘헌법개정에 관한 거론금지, 그 외 행정조치 규정이 미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반응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한 내용이 알려졌다(박철웅, 「미국 ‘긴급조치 9호는 너무 강경’ 외교문서 공개 ④」, 국정브리핑 사이트 <http://news.go.kr> 내 기사).

21) 조희연, 「민청세대·‘긴조세대’의 형성과 정치개혁 전망」, 『역사비평』 (1995. 가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5. 8., 109쪽.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70.부터 1979.까지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노동법, 긴급조치 등을 위반한 죄로 구속된 수가 총 2,704명(그 중 1,184명은 구류)에 이르며, 긴급조치 9호만해도 1,370명의 위반자와 1,050명의 구속자를 양산하였다고 한다(정태현, 「긴급조치 9호시기 학생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의의」, 『긴급조치 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학술토론회 토론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2005. 5. 13. 20쪽).

1심 판결 589건을 유형별로 보면 재야인사 관련 85건, 간첩행위 관련 2건, 학생운동 관련 187건, 발언 관련 252건, 국내재산 해외 도피 등 29건이다.

긴급조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 긴급조치위반 판결 1,412건에 대한 심급별 및 유형별 통계, 개별사건별 분석 결과는 <별표 1> 내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긴급조치의 내용

제목 (발동 일시)	내용
긴급조치 제1호 (1974. 1. 8. 17시)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행위 금지 ② 대한민국 헌법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 행위 금지 ③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금지 ④ 위 행위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연동금지 ⑤ 이 조치 위반자 및 비방자는 법관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15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음 ⑥ 이 조치 위반자 및 비방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
긴급조치 제2호 (1974. 1. 8. 17시)	긴급조치 제1호 위반자를 심판, 조사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의 설치, 관할, 직무, 구성에 관하여 규정
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위한대통령 긴급조치 1974. 1. 14.)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 사치성 소비억제, 버스요금억제로 통행세 감면, 농가소득증대 위해 미곡수매 가격 가마당 500원씩 인상, 영세민 취업보장위해 100억 확보, 노동집약적 토목사업 실시, 임금우선변제제도 신설,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여 74년도 예산, 세율 재조정, 관계세법 개정하도록 함(전 7장 35호 부칙으로 구성)
긴급조치 제4호 (1974. 4. 3. 22시)	① 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 조직, 가입 및 그 구성원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 밖의 활동 위해 장소·물건·금품 기타 편의제공,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 행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단체나 구성원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 출판·제작·소자·배포·전사·판매 행위 금지 ③ 위 행위 권유, 선동, 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④ 이 조치 선포전 위 행위를 한 자는 1974.4.8.까지 행위 내용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여야 함. 고지자는 처벌하지 아니함 ⑤ 학생의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 거부, 학교관계자 감독하의 수업·연구활동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도·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 금지(단, 의례적, 비정치적 행위는 예외) ⑥ 이 조치 금지 행위를 권유, 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 행위금지 ⑦ 문교부장관은 긴급조치 위반학생에 대한 퇴학·정학처분이나 학생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이 조치 위반자 소속 학교의 폐교 처분 할 수 있음 ⑧ 위 조항 위반자 및 이 조치 비방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5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음. 1, 3, 5, 6항 위반 경우에는 미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 ⑨ 이 조치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함 ⑩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 소추하지 않을 때에도 압수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 명할 수 있음 ⑪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요청 받은 때는 지원하여야 함
<p>긴급조치 제5호 (1974.8.28.10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해제 ② 해제당시 간조 제1호, 제4호 위반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 받은 자에게는 영향 미치지 않음
<p>긴급조치 제6호 (1974.12.31.0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조치 제3호 해제 ② 해제당시 3호 적용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 미치지 않음 ③ 해제당시 3호에 의해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해서는 종전 예에 의함

	④ 해제당시 3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과 재판관할에 관해서는 종전 예에 의함
긴급조치 제7호 (1975.4.8.17시)	① 1975. 4. 8. 17시 기하여 고려대에 휴교를 명함 ② 동교내에서 일체 집회, 시위금지 ③ 위 제1,2호 위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음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⑤ 이 조치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음 ⑥ 이 조치 위반자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함
긴급조치 제8호 (1975.5.13.15시)	긴급조치 제7호 해제
긴급조치 제9호 (국가안전과공공 질서의수호를위 한대통령긴급조 치 1975.5.13.15시)	① ◦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왜곡전파행위 금지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 개정,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는 행위 금지 ◦ 학교당국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 사전허가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금지 ◦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금지 ② 제1에 위반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자·전시하는 행위 금지 ③ 재산도피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 금지 ④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 허가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 금지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당시의 소속학교, 단체,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명령, 조치할 수 있음 ◦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 해임이나 제적 명령 ◦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조치 ◦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p>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않음(단,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처벌받음)</p> <p>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년이하 자격정지 병과함. 미수, 예비, 음모자도 같음</p> <p>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음</p> <p>⑨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죄를 범한 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은 동법 각조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 벌금 병과함</p> <p>⑩ 이 조치위반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함</p> <p>⑪ 이 조치 시행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함</p> <p>⑫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 위한 병력출동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원할 수 있음</p> <p>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p>
--	--

<별표 2> 긴급조치위반 심급별 판결 현황

		1,4호	3호	9호('75)	9호('76)	9호('77)	9호('78)	9호('79)	합계
사건수		36건	9건	126건	97건	103건	177건	41건	589건
판 결 수	1심	36	9	126	97	103	177	41	589
	2심	35	4	114	92	98	163	16	522
	3심	36	1	46	52	67	47	3	252
	기타 결정(파기환송, 형경정 등)	2	0	5	12	12	17	1	49
인 원 수		155명	11명	251명	176명	167명	312명	68명	1,140명

<별표 3> 긴급조치위반 유형별 판결 현황

유형	1,4호	3호	9호('75)	9호('76)	9호('77)	9호('78)	9호('79)	합계 (%)
반유신 재야, 야당 정치활동(재야정치인, 종교인, 교수, 기자 등 지식인)	12	9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6	14	16	31	6	85 (14.5)
간첩	0		1	0	1	0	0	2 (0.5)
학생운동(유신반대, 긴조 해제 주장 시위, 유인물 제작 등)	12		24	9	29	100	17	191 (32)
기타(음주대화 중, 수업 중 박정희 비판, 유신체제 비판발언)	12		81	70	56	45	18	282 (48)
국내재산 해외도피, 공무원범죄 등(긴조 9호 3, 4, 9항)	0		14	4	1	1	0	29 (5) *긴조3호(9건)포함
계	36건	9건	126건	97건	103건	177건	41건	589 (100)

<별표 4>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내용

※ 약어설명 : 징(징역) 자(자격정지) 집(집행유예) 벌(벌금) / 단(단기) 장(장기) / 비보군(비상보통군법회의) / 비고군(비상고등군법회의)

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1974. 1. 8. 제정), 대통령긴급조치제4호(1974. 4. 3. 제정) 위반사건(1심판결 선고일자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2. 1. 74비보군형공제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3. 2. 74비고군형항제1호] [대법 1974. 8. 20. 74도1123]	긴조 1호	장준하(출판업), 백기완(백범사상연구소 대표)	징자15→징자12(백기완)	전 신민당 국회의원으로 잡지 '사상계'를 출판(장준하), 신민당 국회의원 낙선, 3선개헌반대투쟁활동, 백범사상연구소 소장(백기완)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함석헌, 계훈제 등과 개헌청원운동에 대해 논의하면서 긴급조치를 비판함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2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2. 2. 74비보군형제2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2. 2. 74비고군형항제2호] [대법 1974. 7. 16. 74도1122]	긴조 1호	고영하, 이상철, 문병수, 김석경, 황규천, 서준규, 김 향(대학생)	아래	연세대 의대생들로서, 1. 22. 강의실에서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철회회의를 하자고 선언하고, 개헌청원서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1.8긴급조치를 철회하고 언론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 요지의 글을 낭독하고 투표로 실행행사를 결정(헌법반대, 반대 선동, 긴급조치 비방)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형량> 징10(고영하, 황규천), 징7(이상철, 문병수, 김석경), 징5(서준규, 김향)→징7(고영하, 황규천), 징5(이상철, 문병수, 김석경), 징3집5(서준규, 김향)							
3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2. 7. 74비보군형공제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3. 6. 74비고군형항제3]	긴조 1, 4호	김진홍, 이해학, 이규상(전도사), 인명진(목사), 박운수(전도사), 김경락(목사)	징자15(김진홍, 이해학, 이규상), 징자10(인명진, 박운수,	활빈교회, 성남 주민교회, 수도권 특수선교위원회, 영등포 도시산업선교연합회 등의 목사, 전도사로서, 긴급조치철회와 개헌청원서명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지학순, 김재준 목사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개헌논의 허용하라, 민주질서회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북하라는 현수막과 선언문을 작성하여 1. 17. 종로구 기독교회관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개헌청원서명록에 서명하고, 기자들에게 선언문을 배포함	이진우 대법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4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2. 74비보군형공제6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3. 30. 74비고군형향제5호] [대법 1974. 7. 16. 74도1244]	긴조 1호	이근후, 김영선, 김구상(대학생)	장10(이근후), 징7(김영선, 김구상)→징7(이근후), 징5(김영선, 김구상) 서울대 의대생들로,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쟁기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격문을 읽고 도서관에 모여 개헌청원서명운동 지지를 결의하고, 결의문을 작성하고 향후 시위를 주도할 것을 모의하고 결의문을 배포(헌법개정청원선동, 긴급조치 1호 비방)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5	74. 1. 9.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8. 74비보군형공제5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군형향제7호] [대법 1974. 7. 26. 74도1407]	긴조 1호	000 (무직)	징자12 →징자7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과 이야기도중, '신문을 보니 박정희가 일을 세번 터트렸는데 삼선개헌, 10·17조치, 이번엔 긴급조치...이것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현정권이 무너지기 위한 징조로 보인다. 개헌청원서명운동을 내버려두면 개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빼갈테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동네주민들에게 확성기를 통해 '현정부가 부정부패해서 공화당이 망하게 된다. 또한 박정근도 망한다. 군대가지마라, 군대가면 중동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시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6	73. 1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8. 74비보군형공제4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군형향제6]	긴조 1호	윤석규 (무직)	징자10 →징자7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대생들에게 학생대모를 선동하는 방법으로 '전국학생연합'이라는 가공단체명으로 '독재, 부패, 공산당, 왜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저항표"라는 전단을 만들어 서울대, 성균관대 구내에 살포케하고, '이것이 우리	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호 [대법 1974. 7. 16. 74도1409]			의 투쟁이유이다라는 제목 하에 '현정권연장을 위해 최근의 서해안 북괴도발은 김일성과 짜고 하는 행동'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40매 작성하여 서울시내 주요일간신문사, 학생단체, 정당들을 비롯, 김수환추기경, 법정스님, 환경직 목사 등에게 우송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긴급조치는 현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후발악이며 이 조치로 외국과는 고립될 것이다'라고 말함(긴급조치 비방, 유언비어 날조유포)	정태근, 박정근, 이진우 대법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7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15. 74비보군형공제7, 8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7. 74비고군형항제8호] [대법 1974. 11. 26. 74도 1393]	긴조 1호, 변호사법, 사기	정동훈, 유갑종, 김장희, 김성복, 권대복(민주통일당 간부)	징자15(정동훈, 김장희, 김성복), 징자12(유갑종, 권대복)→징자12(김장희, 김성복), 징자10(유갑종, 권대복)	1973. 1. 민주통일당의 창당으로 위 정당의 노동국장, 당무국장, 청년국장, 국제국장 등의 간부들로서, 73. 12. 14. 위 정당 최고위원 장준하 주동으로 개헌청원서 명운동 전개를 적극 지지하다, 74. 1. 15. 장준하가 긴조 1호위반으로 구속되자 그 석방대책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긴급조치 즉각철폐, 구속인사석방, 민주주의본질을 소생시킬 수 있는 대의기관 서둘러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조선, 신아, 중앙신문 등의 편집국장 등에게 우편발송함	비고군 비고군 대법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근, 이진우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8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15. 74비보군형공제9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군형항제9호] [대법 1974. 11. 12. 74도1408]	긴조 1호	000, 000(무직)	징3→징2(000)	교회전도사 등으로 활동하다 그만둔 자들로, 000은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민주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고 1·8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국민들은 할말도 못하고 병어리 행세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000는 대통령을 지칭하여 "이 농아들 머리 잘 쓴다, 개헌청원자가 날로 늘어가니까 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고 말함	비보군 비고군 대법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근, 박정근, 이진우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9	74. 1. 27.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15. 74비보군형공제10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군형항제10호] [[대법 1974. 7. 26. 74도1410]	긴조 1호	000 (무직)	징5	강원도 속초시 모다실에서 동석한 사람들과 물기문제와 사회정세 등을 이야기하다가, "정부가 물가조정한다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때려죽이고서는 자살하였다고 거짓발표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 이후락이를 영국으로 도망보냈다, 이 모든 것이 000와 000이가 시켜서 한 짓들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비보군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중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민문기,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10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28. 74비보군형공제1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29. 74비고군형항제11호] [대법 1974. 7. 26. 74도1495]	긴조 1호	김동완(전도사), 권호경(목사), 이미경, 차옥승(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원), 박상희, 김매자, 김용상, 박주환(대학생)	아래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회 전도사, 목사, 한국신학대, 이대생들로서, 김진홍 등 소장파 교역자들이 1.17. 헌법개정청원서명허용 시국선언기도회 개최로 긴조 위반으로 구속되자, 시국기도회 경위와 연행구속사실을 실은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서' 470매를 작성하여 전국 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아래
<p><형량> 징자15(김동완, 권호경), 징10(박상희), 징3(김용상, 박주환), 징3집5(차옥승, 김매자, 김용상)→징17자15(권호경), 징7(박상희)</p> <p><기타> 권호경은 [서울형사지법 1973. 9. 25. 73고합518] 내란예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 항소심에서 권호경은 군수사기관에서 모친 고문을 받았고 검사신문전에 수사기관원으로부터 '부인하면 다시 고문받을 것이다'라는 위협받았다고 하여 진술의 입의성을 다투었으나, 판단하지 않음</p>								
11	74. 4.	(인혁당재건위)[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1. 74비보군형공제35, 36호](민청학련)[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 74비보군형공제14, 17,	긴조 4호, 국보법,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인혁당재건위),	아래	아래	◎(인혁당재건위) 피고인들은 60년대 민민청, 민자통,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활동으로 인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특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71. 4. 인혁당과 같은 조직의 재건을 위해 경북지구조직, 서울지도부 결성을 모의하고 73. 10. 전국학생 데모조직결성을 위해 대구의 학생들을 파견합의하고, 74. 2. 3-4월 거사를 결의하고,	비보군 (74.7.11.)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비보군 (74.7.13.)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8, 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74 비고군형항제 14.15.16호] [대법 1975. 4. 8. 74도 3323] [서울고법 1989. 6. 30. 85노 608]	긴조 4호, 국보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 뇌물공여 (민청학련)			74. 4. 정부전복 중심체인 전국적 학생조직의 구성을 지령, 모의하고, 여정남이 민청학련 관련자임을 알고 도 불고지함 ◎(민청학련)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숭실대, 한양대 재학, 졸업생들로서, 73. 12 인혁당 재건위 지도위원 여정남이 이철과 정부전복중심체로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구성하기로 공모하고, 74. 3.4.에 전국적 규모의 학생데모를 벌이기로 모의하고, '반독재구국선언', '민중민족민주선언'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74. 4. 3. 전국적 공동연합시위를 하기로 함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p><피고인 성명 및 직업> 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전재권, 이태환,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유진곤(이상 인혁당재건위), 이 철, 유인태, 여정남,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 라병식, 서중석, 안양노, 이근성, 정윤광, 강구철, 구충서,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정길, 이 강, 윤한봉, 김영준, 송무호, 김수길, 김영일, 김효순, 유근일, 이현배, 정상복, 이직형, 안재웅, 라상기, 서경석, 이광일(이상 민청학련)</p> <p><형량> ①[인혁당재건위] 사형(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무기징역(전창일, 김종대,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전재권, 이태환, 유진곤), 징 20자15(황현승, 이창복,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민청학련] 사형(이 철, 유인태, 여정남, 김병곤, 라병식, 김영일, 이현배), 무기징역(정문화, 황인성, 서중석, 안양노, 이근성, 김효순, 유근일), 징20자15(정윤광, 강구철,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영준, 송무호, 정상복, 이직형, 라상기, 서경석, 이광일), 징자15(구충서, 김정길, 이강, 윤한봉, 김수길, 안재웅)</p> <p>②항소기각(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전창일,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이태환,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유진곤, 이 철, 유인태, 여정남, 정윤광, 윤한봉, 김수길, 정상복, 안재웅, 라상기, 서경석, 이광일), 무기징역(이현배), 징20자15(김종대, 정문화, 황인성, 나병식, 서중석, 이근성, 김효순, 유근일), 징자15(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전재권, 강구철,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영준, 송무호), 징자12(구충서, 이직형)</p> <p>③상고기각(서도원, 도예중,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전재권, 이태환,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유진곤, 이 철, 유인태, 여정남, 황인성, 서중석, 이근성, 정윤광,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효순, 유근일, 이현배, 정상복, 이직형), 파기환송(김영준, 송무호)</p> <p>④면소(김영준, 송무호) ※ 대법원이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였으나, 설치근거인 긴조 2호가 실효됨으로써 위 고등군법회의에 상응하는 국방부 고등군법회의가 85. 2. 14. 새로이 관할권을 갖게 된 서울고법에 이송하였으나, 판결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제기된 날로부터 15년 경과되었으므로 공소시효 완성되어 면소판결</p> <p>※(개요) 74. 4. 3. 정부는 긴조 4호를 발표하는 특별담화문에서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공산주의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전선'의 초기단계 지하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발표하고, 74. 4. 25.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조직이 있다고 발표함</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p>※(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서 인혁당 관계자들이 지목되었으며, 도예중, 서도원 등 8명이 75. 4. 9. 대법원 판결확정된지 18시간만에 사형집행당함. 사건 관련자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정당한 변론기회도 갖지 못하였음. 2차 인혁당 사건은 반유신투쟁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어 위기상황에서 국면전환의 계기로 작용됨</p> <p>※(민청학련) 1974. 긴조 1, 2호가 발동되는 억압적 상황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위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지도부들의 주도하에 전국 규모의 통일적 투쟁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결성하고자 시도. 1969.의 3선개헌 반대투쟁과 1971. 교련 반대투쟁을 이끌었던 선배그룹과 1973. 10. 서울대 문리대 시위를 주도하였던 후배그룹으로 구성되어 대학간, 지역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재야 인사와 종교계 인사와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이 사전에 당국에 누출되면서 지도부들이 수사기관에 추적, 검거되었고 결국 4. 3.로 예정되었던 공동연합시위는 일부 대학에서의 소규모 시위로 그치고 말았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중정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하였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함.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들을 전혀 참석시키지 않은 점,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억제하고 변호인 참여없이 증인신문을 마친 점, 재판을 비공개 또는 가족 1인의 방청만 허용한 점 등 수사, 재판절차가 위법하였음.</p>								
12	73. 12. 74. 1.-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5. 74비보균형공제1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74비고균형항제13호] [대법 1975. 5. 27. 74도3324]	긴조1, 4호, 내란선동,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하야가와 요시하루(대학강사), 다찌가와 마사끼(자유기고가)	징20자15	민청학련 간부 이철, 유인태 등과 만나 대정부 활동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구체적 실행방법을 교사하여 내란선동하고 거사 비용협조조로 돈 7, 500원을 건넨	비보군 유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군, 이진우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항소심에서 긴급조치 5호 2항 경과규정의 위헌성(헌법 53조 1항위반여부)을 다투었으나 배척
13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균형공제25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비고균형항제 25호] [대법 1975. 1. 28. 74도3507]	긴조 4호	이우회, 이상익, 심기화(대학생)	징10(이우회), 징7(이상익, 심기화) →징10(이우회, 이상익), 징3집5(심기화)	한양대학생들로서, 긴급조치철폐 항의로 시험거부를 하기로 하고 동조자를 규합하고 중간시험거부를 모의함	비보군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군, 이진우 대법 한환진,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14	74. 4. 26.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비보균형	긴조 1호	000 (무직,	징5	주점에서 음주하던 중, 주점벽에 게시된 민청학련 피의자로 수배된 이철, 강구철 등의 사진을 가리키며 "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항소심에서 검찰관 및 사법경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공제24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향제 24호] [대법 1975. 1. 28. 74도3486]	전 국민학교 교사)		정부는 정당한 데모를 하는 선량한 학생을 처참히 죽이고 있다, 이복의 김일성이는 적십자 회담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나 현정부가 장기집권으로 독재를 쓰면서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통일이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현정부는 미쏘일등 강대국에 무조건 아부하고 있다"고 말함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15	7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26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74고군형향제26호] [대법 1975. 7. 8. 74도3499]	진조 4호 전영천, 박 진 (대학생)	징7→징5	전남대생들로, 반정부적 불온전단사건으로 동 대학생 12명이 진조 4호로 구속 및 제적되자 이에 대한 구제 활동으로 수업거부할 것을 학생들에게 선동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홍순엽, 민문기, 임향준, 안병수	
16	74. 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35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향제 35호] [대법 1975. 3. 11. 74도3505]	진조1, 4호, 반공법, 명예훼손	000 (농업)	징자15→징자12	이웃주민에게 진조법령은 법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려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고, "여순반란 사건때 000가 부두목으로 가담했는데 운이 좋아서 대통령까지 되었지"라고 말함(국가원수 명예훼손)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17	74. 3.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향제3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진조 4호, 반공법	000 (외판원)	징자10→징자7→무죄 (반공법), 면소(진조)	외판원으로 전전하다, 삼각산 소재 동굴에서 백일기도를 하며 은거중인 자인바, 수차에 걸쳐 북한의 방송을 청취하고, 동굴앞에서 000 등에게 민청학련관련자 수배전단을 보이며 "학생들이 왜 나쁜 짓을 했겠느냐,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23. 74비고균형향제 33호] [대법 1975. 1. 28. 74도3488] [서울고법 1988. 5. 20. 85노611]				정부가 돼먹지 않았으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함(민청학련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민문기, 홍순엽, 임향준, 안병수 고법 최공용, 임승균, 손평엽		
<p><비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우리 정부시책 등에 불만을 품고 북한사회를 동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고, 복귀방송을 삼각산동굴에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복귀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건조 해제로 면소</p>								
18	74. 4. 9.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균형공제28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74비고균형향제 28호] [대법 1975. 3. 11. 74도3508]	건조 4호	성찬성 (학생)	징3→징3집5	전남대생으로 등 대학 국문과생들이 건조 4호 위반으로 검거되자 동료학생들과 대화중, "동 조치는 언론자유 및 자유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며, 경찰은 죄없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함	비보균 박희동, 신현수, 김태원, 박천식, 김영범 비고균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19	73. 2.-74. 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균형공제3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균형향제 31호] [대법 1975. 3. 11. 74도3493]	건조 4호, 반공법	000 (일간스포츠 편집부 차장)	징자15→징자12	이북방송을 수회 듣고,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원하고 있고 생활수준도 남한보다 월등하고 한국전쟁발 발은 미국이 중국본토를 수복할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포, 복귀 찬양고무), "국내에서 보도되지 않는 뉴스는 이북방송을 보면 신속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말함	비보균 박희동, 신현수, 김태원, 박천식, 김영범 비고균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1964. 경향신문 기자로 재직시, 필화사건으로 반공법 위반으로 서울지법에서 징1집2 선고 받음
20	74. 3.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균형공제22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균형향제	건조 1호	박석률, 임성균, 권오성, 박호용, 김 윤, 박준엽, 박세진, 안상용, 이종수,		서강대학생들로, 민청학련 총책 이철을 만나고, 서강대에서 3월말경 유신헌법, 긴급조치 철폐 주장하는 학생데모를 결의하고, 결의문, 선언문 600매를 제작하여 3. 28. 교내 라운지에서 학생 150여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하는 등 성토대회를 개최함	비보균 류병현, 강신태,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균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22회 [대법 1975. 7. 8. 74도3487]		임상우(대학생)			이진우		
						대법	홍순엽, 민문기, 임향준, 안병수	
<p><형량> 징10(박석률), 징8(임성균, 권오성), 징7(박효용, 김 윤, 박준엽, 안상용, 임상우), 징7단5(박세진, 이종수)→징7(박석률), 징5(임성균, 권오성, 박효용, 김 윤), 징3(박준엽), 징3집5(박세진, 안상용, 이종수)</p>								
21	74. 5. 17.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34회]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향제 34회] [대법 1975. 2. 10. 74도3506]	긴조 1호, 반공법	000 (양토업)	징자7→징자 3	버스에서 알게 된 고3여학생에게 "수출증대는 선량한 노동자의 피를 빨아 먹는 일이다, 수배학생을 숨겨준 여학생을 수사기관에서 끌고가 잔인하게 고문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면 돈으로 매수하고 있다, 유신헌법체제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 할 수 없으니 일본에 팔아넘기던가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날조, 북괴 찬양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비방)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22	74. 1.-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32회]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향제 32회] [대법 1975. 2. 10. 74도3489]	긴조 4호, 반공법	000 (조류사육업)	징자10	선술집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신헌법은 독재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김일성이 정치 잘못하는 것이 뭐냐, 잘한다더라"고 말하고(이북 찬양 고무 동조), "긴조 4호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23	73. 11.-74. 7.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2. 형공제 21, 50회]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향제 21회] [대법 1975. 8.	긴조1.4호, 내란선동, 특수공무방해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7징자15	1973. 11-12 원주교구로 찾아온 민청학련 간부 김영일과 전국적 학생연맹조직 통한 대정부투쟁을 찬양격려, 활동자금 지원조로 108만원교부,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성모병원으로 주거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외부인과 접견하고, 긴조4호 위반의 점에 대해 '양심선언'제하의 유인물에서 유신헌법철폐와 긴급조치의 폭력성 등	비보군	류병현, 강신태, 신정철, 송병철, 황중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김태균, 이진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 74도3494]				에 대해 작성하여 배포하고, 군법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간호공무원을 뿌리치고 병원밖으로 나와 신도 200여명과 함께 성모마리아상에 기도를 함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항소심에서 헌법 53조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헌법 근본규범에 반하여 무효, 건조 1, 4호 헌법 17, 18, 19조1항, 23조, 124조 규정위반, 건조 1호의 5, 제4호의 8은 대통령 긴급조치권의 내재적 한계이탈하여 무효, 건조 4호 4, 8항은 소급적 처벌규정. 11조 1항위배. 건조 5의 2항 헌법 9, 11조1항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24	74. 1.4.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 8. 12. 74비보군형공제20호] [비상고등군법회의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항제20호] [대법 1975. 4. 8. 74도 3495]	건조 1, 4호 내란선동	김동길 (연대교수), 김찬국 (연대 신과대학장)	징자15 (김동길), 징자10 (김찬국) →징자5 (김찬국)	김동길은 자택에 찾아온 김영준, 김학민 등 연대학생들과 대화중 1.8건급조치는 독재집권 영구히 하기 위한 수단이고, 새학기 데모계획을 듣고 격려하고(내란 선동), 김찬국은 위 학생들과 대화중 유신헌법의 불법성과 전국 각 대학의 데모계획을 듣고 격려하고 김영준이 민청학련 구성원이란 사실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함	비보군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동길, 김찬국, 개헌청원서명운동본부 발기인
25	74. 1.4.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 8. 12. 74비보군형공제46, 47, 49호] [비상고등군법회의의 1974. 9. 25. 74비고군형항제49호] [대법 1975. 4. 8. 74도 3504]	건조 1호, 내란음모	서창석, 최민화, 구창완, 윤관덕, 이원희, 정명기, 장영달, 이재웅, 신대균, 김경남, 권진관(대학생), 김형기(중학교사)	아래	한국기독학생총연맹 회원들로서 회합을 통해 반정부 투쟁활동방향을 논의하여 3, 4월의 대학생의 유신헌법 반대하는 봉기에 동조하기로 하고, 동연맹의 강연행사인 '신문고 12성', 간행물 뉴스지에 내용과 연설을 하기로 하고,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각 대학기독학생회 조직을 통해 활동하기로 하고, 민청학련 활동 동조사실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	비보군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형량> 서창석, 징자15(김형기), 징15(최민화, 윤관덕, 김경남), 징12(구창완), 징10(이원희, 정명기, 장영달, 이재웅, 신대균, 권진관) →징자12(김형기), 징12(최민화, 김경남, 윤관덕), 징10(구창완), 징7(이원희, 정명기, 장영달, 이재웅, 신대균)								
26	73. 11.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40호] [비상	건조 1, 4호, 내란음모	이해찬, 권 일, 서중수, 최권형, 박용훈, 정진태,	서울대학생들로서 이철, 황인성 등과 만나 긴급조치철폐, 유신헌법, 박정희 독재정권반대를 위한 대규모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전국적으로 각 대학을 연합하여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민청학련'사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 제40호 [대법 1975. 4. 8. 74도3490]	공무집행방해, 상해	백영서, 이동진, 유홍준(대학생)		시위를 조직하기로 하고 민청학련 명의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내란을 음모하고 민청학련 관여사실을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형량> 징15(이해찬), 징12(권 일, 서중수, 최권행, 박용훈, 정진태), 징10(백영서, 이동진, 유홍준)→징10(이해찬, 권 일, 서중수, 최권행, 박용훈, 정진태), 징7(백영서, 이동진, 유홍준)							
27	73. 10.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30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항제30호] [대법 1976. 4. 13. 74도 3500]	긴조 1.4호, 국보법, 내란음모, 반공법	이성재 (지압사, 전직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	무기징역	1967. 7.경부터 이수병과 연락하며 사상교양을 받고 1973. 10. 경 전창일, 이수병, 우홍선과 회합하여 혁신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인혁당같은 조직을 구성해 대정부투쟁 전개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동 조직 지도위원으로 도예중, 서도원을 추대하고, 학생데모지도해 전국학생연합체 구성, 일제히 봉기시키기 위해 학원조직계획을 세우고(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헌법 부정 반대, 긴조 1호비방), 이수병이 민청학련에 관여한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음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주재황, 이병호, 임향준, 라길조
28	74. 3. 16.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44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 비고군형항제44호] [대법 1975. 2. 25. 74도 3509]	긴조 1호, 4호	백운학 (대학생)	징12→징3집 5	홍익대생으로 종로구 소재 다방에서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 활동하고 있던 이철과 회합하여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1인이 영구 집권하려다 국민들이 개헌운동을 하게 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1.8인 급조치를 선포한 것이니 이는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악법이므로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긴급조치를 철회하라는 명분으로 서울의 각대학에서 일제히 데모를 선동하고, 홍익대를 담당하고, 고려대학생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조(유신헌법 폐지선동, 긴급조치비방)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29	73. 11.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54호] [비상	긴조 1, 4호, 국보법,	제정구(대학생), 황인범(중학교사), 강창일(대학생)	징15(제정구), 징자15(황인범), 징10(강창일)	서울대 재졸업생으로, 공소의 유인태, 서중석, 김효순 등과 회합, 반정부데모를 계속하고 신학기에는 전국적 규모로 전개하기 위한 전국적 학생조직을 형성하기로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비고군형항 제53호 [대법 1975. 7. 30. 74도3491]	내란예비음모		하고, 이철과 만나 조직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활빈교회 전도사 김진홍, 새문안교회 전도사 서경석 등과 전국적인 개헌운동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민청학련을 조직함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임항준,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30	74. 1. 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74비보군형공제6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 제29호] [대법 1975. 1. 28. 74도3497]	긴조 4호, 반공법	000 (명지화학공업사 회장)	징자10→징자5 페인트가공업사인 명지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기독교, 유교, 불교 등의 교리를 혼합한 천부교를 창립해 교주로 취임해 이복출신 효도회원 300여명을 포섭한 자로, 이복대남방송을 청취하고 본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서해어선 격침 납북사건은 남한보도와는 달리 간첩선으로 박정권이 유신헌법을 공포한 후 국민여론을 잡기위해 중앙정보부를 시켜 날조한 정치극이다"고 말하고(북괴 선전활동 동조), "요즘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긴조4호를 공포하였는데 마치 미친놈이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 같다" 고 말함(긴조 4호 비방)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항소심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심미약 인정하여 형 감경
31	74. 3. 2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74비보군형공제38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비고군형항 제38호] [대법 1975. 1. 28. 74도3498]	긴조 1호	박영석, 이기승, 신형철 (대학생)	징12→징10(박영석, 이기승), 징7(신형철) 성균관대생들로 학교근처 술집에서 회합하여, 공소외 김수길로부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학생데모에 동조할 것을 권유받고 임무를 분담하여 데모할 것을 모의하고, 김수길로부터 받은 '유신이란 해괴한 쿠데타와 1.8긴급조치 등 폭압정치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과 교회의 역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과 성균관대학교 반독재투쟁위원회 명의의 선언문 500매를 작성하여 교내 강의실 등지와 학생들에게 유포하고 데모강행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32	74. 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74비보군형공제57호] [비상	긴조 1, 4호	000 (가발공)	장7단5→장5단3 특수절도미수죄로 검찰조사 받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 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동 장소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던 000이 이복은 실업자가 없고 의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보군	비고군	
		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향 제17호] [대법 1975. 1. 28. 74도3511]			무교육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정부는 필요없는 긴급조치를 만들어 애매한 대학생 15명을 죽였다고 발언함	대법	이진우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33	74. 7. 9.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4. 74비보군형공제59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향제54호] [대법 1985. 1. 29. 74도 3501] [서울고법 1988. 3. 4. 85노503]	긴조 1, 4호, 법정모욕	강신욱 (변호사)	징자10 →무죄	민청학련 관련자 나병식, 김영일, 황인성, 나상기, 서경석, 이광일, 여정남 등의 변호를 수입하여 군법회의 법정에서 변론중 "이번 사건 변호를 하면서 법은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애국학생들을 국보법, 반공법, 긴조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행위이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저항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다"는 등의 변론을 하다 수차례 경고, 제지받음	비보군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유태홍,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회창, 유성환, 김형기	
						고법	최공용, 임승균, 손평업	
<p><비고>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다수의견:긴조2호 군법회의설치, 긴조5호2항에 의해 긴조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해 1, 4호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5공화국헌법 공포와 함께 구헌법 실효되었고, 5공헌법 51조, 구헌법 53조는 차이가 있어 그 계속효력 부인되므로 법령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해야 함)</p>								
34	74. 6.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4. 74비보군형공제6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향제 55호] [대법 1975. 7. 22. 74도3503]	긴조 4호, 반공법	장석구 (남북공예사 대표)	징자5	친구 이성재가 이수병, 우홍선, 전창일과 함께 인혁당 재건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을 결성해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중인 것을 알고도 은신을 부탁하자 6. 14.부터 6. 15.까지 은신을 도와줌(반국가단체구성원에게 편의 제공, 민청학련 활동에 간접 관여)	비보군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임항준, 홍순엽,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민문기, 안병수		
<p><비고> 인혁당 재건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긴급조치 1.4호 해제에 관한 긴조 2호에 의해 해제 당시 규정범죄를 범하여 재판계속중에 있거나 처벌받은 자에게는 해제효력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p>								
35	7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7. 74비보군형공제64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보군형항제56호] [대법 1975. 1. 28. 74도 3492]	긴조 1호	000(수사기관 정보원), 000(태평양산업 감사), 000(무직), 000(건축 매매업), 000(삼원공업 회장)	징자15(000, 000, 000), 징자12(000), 징자10(000)	전직 경찰로 중앙일보 사장 000의 개인정보원, 중정, 보안사, 경찰 등의 대공정보 제공원(000), 전직 국회의원(000), 중정 3국 3과장(000), 전 민주당 국회의원(000) 등으로 피고인들은 백운학역학연구소 등지에서 대화 중, "긴조로서 학원사태 수습되지 않는다, 1인독재하에 장기집권 위한 지나친 강경책이다, 현 정권 무너지며 함경도 출신 000이가 집권한다, 미국 대한정책은 변질되어 한국에서의 수입을 제한하고 달러 환율을 인상 시킨다"는 등의 발언함	비고군 비고군 대법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36	[대법 1977. 3. 22. 74도3510]	긴조 1, 4호, 내란선동	윤보선 (前 대통령)	징3집5	박형규 목사를 통해 민청학련에 55만원을 제공(폭력으로 정부전복하려는 단체에 자금지원한 내란선동)	대법	원심인 비상군법회의 첫 공판은 1974. 7. 16. 용산국방부 뒤에 있는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됨	
<p>※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1974. 8. 23. 제정, 대통령긴급조치 1호, 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제2항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긴급조치로서, 원심이 긴급조치 제5호의 시행당시 군법회의에 재판계속 중이던 본건을 긴급조치 제1, 4호로 다루어 심리하고 판결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p>								

2)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위반사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 73. 10. 1 -74. 1. 31.	[서울형사지법 1974. 5. 10. 74고단2355] [서울형사지법 1974. 9. 3. 74노3854] [대법 1975. 3. 25. 74도2917]	긴조 3호,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	000 (회사대표이사), 000(공장장)	벌금 500만원 (000), 벌금 30만원 (000)	[주]00물산대표이사과 공장장으로, 회사근로자 150명에게 지급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해고 시에도 임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회부의 인가없이 여자근로자들을 철야근무와 휴가근무를 시키고, 000은 대표이사로서 공장장 000에게 당좌수표발행을 제시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음.	지법	한경국
						지법	채명묵, 김 훈, 김연태
						대법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2 74. 2.	[전주지법 1974. 5. 23. 74고단205] [전주지법 1974. 9. 26. 74노528]	긴조 3호, 근로기준법	000(제조업)	벌금 7만원	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목각인형제조업자로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37명에 대한 74. 1.분 임금 177, 500원을 지불치 않음	지법	김길준
						지법	김용은, 최종태, 최훈장
3 74. 5.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4. 10. 15. 74고단429]	긴조 3호	000(광업)	선고유예	삼청광업소 소장으로 근로자 000를 징계해고하면서 30일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26, 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지법	김효종
4 74. 2.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4. 11. 1. 74고단205]	긴조 3호	000 (성냥제조업)	벌금 20만원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성냥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3세이상 16세미만 근로자 48명에게 매일 10시간씩 작업을 하게 하고, 여자근로자 159명에 대해 매일 10시간씩 작업하게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을 시킴	지법	김종수
5 74. 7. 10.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5. 2. 6. 74고단2041] [서울형사지법 1975. 5. 7. 75노1589]	긴조 3호	000(중소제조업체 대표)	벌금15만원 →선고유예	근로자 임금을 지정된 날짜에 지급치 않음	지원	한광세
						지법	서용은, 김평우, 윤여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6	72. 11. -74. 1.	[전주지법 1975. 3. 4. 74고단1095]	긴조 3호	000 (건설업)	벌금 1만원	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제방공사 하도급업자로서 72.부터 74.경까지 작업하던 박성만 외 2명에게 임금 315, 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지법	박영식	
7	74. 1.	[부산지법 1975. 7. 10. 75고단 3536]	긴조 3호	000 (현대조선중공업 대표이사)	벌금 100만원	울산시 현대조선중공업 대표이사로서 74. 1. 1.-9. 30. 사이에 선체생산2부소속 근로자 57명을 해고함에 있어 30일전 해고예고 해야함을 위반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도합 1, 784, 140원을 지급치 아니하고, 배관과에 근무하는 15, 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근무케하고, 월간 2일의 유급휴일을 실시치 아니하고, 회사대표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소정의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에 신고치 아니함	지법	하양명	
8	74. 8. 14.	[서울민형사지법 성북지원1975. 7. 24. 75고단1923]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9. 27. 75노5858]	긴조 3호	000(회사대표), 000(상무이사)	벌금 10만원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함.	지원 지법	남용희 이재후, 홍일표, 강기원	
9	74. 10.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6. 6. 24. 75고단383]	긴조 3호	0000 00 (상업)	벌금 10만원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한국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로자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절차없이 근로자를 전원해고시키고 해고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지법	김종철	

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5.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	75. 6.-9. [대전지법 1975. 7. 16. 75고합75]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1자2집2	충남대학생으로서, '홍익대에서 전국 정밀기계과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문교부 검열에 걸려 무산당했고, 지금 서울, 대전 등 대학가에서는 데모가 일고 있으며 학생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대통령 긴급조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산다는 내용의 서신을 애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당국 검열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지법 최병규, 정덕장, 박찬주
2	75. 6. [광주지법 1975. 7. 31. 75고합142] [광주고법 1975. 12. 10. 75노354] [대법 1976. 3. 9. 75도 3755]	긴조 9호	000 (학원강사)	징8자5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중, "박정희는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에 반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 국어책은 정부 선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언론의 자유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심의섭, 장세두, 유정주 고법 노병인, 정태규, 양영태 대법 라길조,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
3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8. 27. 75고합 370]	긴조 9호	000 (무직)	징26자2집4 →징1집2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외로 이주하려고 하던 중, 광주경찰서 정보과 순경에게 소유재산이 700만원에 불과하다고 허위진술해 신원조사서를 작성케하여 이주허가, 여권을 받고 도피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출국수속중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에게 적발됨	지법 박충순, 황상현, 강기원
4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8. 28. 75고합 401] [서울고법 1975. 12. 9. 75노 1397]	긴조 9호	김홍복 (농업)	징자1	4.19.부정선거규탄 데모에 참가하였다가 다리부상입은 경험있는 사람으로서, '긴조 9호는 독재로 가는 길이고 구속학생을 석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동아일보사 정문에서 수위에게 기자들에게 전해달라고 교부함	지법 권종근, 송기홍, 양상훈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	75. 1. [서울형사지법 1975. 8. 28. 75고합448]	긴조 9호, 사문조위조	000(무직), 000	징1집2(000), 징8월집2(000)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초청장 및 고용계약서를 받고 이주에 필요한 서류로 용접공 경력증명서가 필요	지법 권종근, 송기홍, 양상훈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서울고법 1977. 3. 30. 75노1407]	동행사	(문화공업사 사무원)	요하자 문화공업사에 재직한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6	75.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1975. 9. 5. 75고합192] [서울고법 1976. 3. 4. 75노1336]	긴조 9호, 민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000 외 7인 (선원)	장1.6자1~별20만원	일본왕래 화물선 선원들로서, 영리목적으로 밀항희망자 3명을 태워 일본에 도착해 상륙시켜 국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	지법 강현태, 노경래, 구도일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긴조 9호 4호 위반
7	75. 6.	[청주지법 충주지원 1975. 9. 10. 75고합35] [서울고법 1977. 9. 15. 75노1251]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집3	정부에서 시행하는 화전정리사업으로 경작하던 화전 1, 400평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박정희란 놈은 우리 화전민만 죽이려고 화전정리를 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박규석, 박준석, 이지호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8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9. 11. 75고합377] [서울고법 1975. 12. 4. 75노1386]	긴조 9호, 외국환관리법	000 (무직)	징자1→징자1집2	미국이민을 위해 자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미공군 헌병대 소속 공군하사에게 미화12, 000달러를 휴대케하여 동경행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다가 적발검거됨(외국통화집중의무위반, 국내재산 외국반출 미수)	지법 권종근, 송기홍, 양상훈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9	75. 7. 8.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5. 9. 18. 75고합47] [광주고법 1976. 2. 17. 75노408] [대법 1976. 5. 11. 76도876] [광주고법 1976. 9. 29. 76노295]	긴조 9호, 폭처법	000 (중화요리사)	징자10 →징자2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너희들이 무엇인데 나를 가자고 하느냐, 대통령한테 가서도 할 말이 있다. 누가 공화당표를 찍어 대통령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말함(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언동으로 사실왜곡 전파)	지법 공아도, 유효봉, 조건오 고법 김재주, 박종택, 김응열 대법 김용철,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상고심에서 '전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
10	75. 5.	[부산지법 1975. 9. 25. 75고합451]	긴조 9호, 밀항단속법	000(상업), 000(농업), 000,	징2집3(000 외 2인),	000, 000, 000 3인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부정 한 방법으로 일본으로 도피할 것을 기도하고 미리 정해진	지법 이원배, 손홍익, 김영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000(무직)	징1집2(000)	충무항 근처의 여관에 투숙하며 도피를 예비, 000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일본밀항 선편을 알선	
11	75. 6.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5. 9. 26. 75고합101] [서울고법 1976. 3. 16. 75노1441]	긴조 9호	000 (노동)	징8자5 →징자3	술자리에서, "000는 일본놈에게 7억불을 받고 독도를 팔아 먹었다, 관권을 이용해 학원을 사찰하고 언론기관을 탄압한다, 경찰은 000이한테 돈을 받아 먹었다"고 큰소리로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진우, 한광세, 박영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2	75. 5. 31.	[대구지법 1975. 10. 1. 75고합194]	긴조 9호, 외환관리법 위반	000(농업), 000(암달려상)	징1.6자2집3 (000), 징1집2(000)	이민간 자형으로부터 환화를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우송해 줄것을 부탁받아 금 150만원을 수령하여 환전하여 보관 중,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구소재 우체국에서 잡지사에 봉합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려다 서울국제우체국의 검열에서 적발,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미화 약 1,200불을 매각하여 환전상 업무를 행함.	지법 박봉규, 김길중, 이석우
13	75. 6.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5. 10. 21. 75고합95] [대구고법 1976. 1. 29. 76노788]	긴조 9호, 폭처법	000 (노동)	징자2	대화중, "박정희가 없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한다, 이승만 정권을 이어받아 군사혁명을 일으켜 이북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다"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전파)	지법 조무제, 김종철, 손홍익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4	75. 5. 23.	[서울형사지법 1975. 10. 31. 75고합438] [서울고법 1976. 2. 3. 75노1625]	긴조 9호	나현규 (대학생)	징자1→ 징자1집2	서울대생으로 5. 22. 학도호국단 창단반대시위를 한 동교생 20명의 제적사실을 알고 제적처분의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예비에 그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5	75. 7.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5. 11. 6. 75고합	긴조 9호	000 (행상)	징자1→ 징자1집2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박정희 정치는 X도 아니다"라고 반복하여 말함	지법 성병현, 여춘동, 오윤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1] [대구고법 1976. 4. 1. 75노888]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6	75. 5.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1. 11. 75고합59] [대구고법 1976. 3. 26. 75노861]	긴조 9호, 반공법	000 (행상)	징자1	술을 마시면서, "박정희 XXX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람을 골탕먹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화통일이 되면 그 후부터 정치도 잘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 백성이 잘살려면 정부가 뒤엎어져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하고 박정희 XXX는 죽일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함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7	75. 6.	[춘천지법 원주지원 1975. 11. 13. 75고합35] [서울고법 1976. 3. 25. 75노1561]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 징자1집2	주점에서 술마시던 중, "박정희가 10월달이면 왕창할텐데 뭘 그래"라고 말함(대한민국 정부가 붕괴될 것이라는 취지의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상목, 민수명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정상참작
18	75. 7.	[춘천지법 1975. 11. 14. 75고합54] [서울고법 1976. 4. 15. 76노37]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6 →징자1	사기죄로 춘천교도소 미결사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대화중에 "이복은 빚을 많이 지고 망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이복실정과 비슷하다, 000이도 옛날에 공산당이였다, 우리나라민 3천만은 2백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함	지법 최공웅, 윤정보, 정태세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19	75. 5. 20.	[서울민형사지법성북지원 1975. 11. 18. 75고합187] [서울고법 1976. 3. 4. 75노1564]	긴조 9호	김진수 (대학생)	징자1→ 징자1집2	한국신학대생으로, 교내에서 반정부시위 참가학생의 징계논의 위한 이사회에 압력가하고자 50여명의 학생들과 학생회를 개최함(학교장 사전허가 없는 학생집회)	지법 이병후, 윤규한, 노원욱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20	75. 7.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5. 11. 18. 75고합62] [서울고법 1976. 3. 23. 75노1628]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5→ 징자3집5	한국전쟁당시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버스안에서 "000는 고령막가인데 쌍놈이 대통령을 해먹는다, 000이도 김해감가로 쌍놈이다, 옛날 역적놈의 자손이 국무총리나 해먹는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억규, 김종식, 동상홍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중배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21	75. 7.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5. 11. 18. 75고합63] [서울고법 1976. 4. 15. 75노1627] [대법1976. 7. 13. 76도1460]	긴조 9호	000 (농지개발조합 임시직원)	징자3→ 징자2	택시를 타고가면서, "박정희 도당이 하는 정치가 잘하는 것이 뭐냐, 박정희도당과 청와대를 때려부셔야 한다, 경제과탄은 박정희에게 책임있다"고 발언	지법	김억규, 김종식, 동상홍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대법	양병호,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22	75. 6.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5. 11. 20. 75고합49] [대구고법 1976. 2. 27. 75노889] [대법 1976. 5. 25. 76도768]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	잡담중, "대통령이 나쁘다, 도둑놈이다, 새마을 사업을 서서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한다"고 말함	지법	한재영, 박준수, 임수태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라길조,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
23	75. 7.	[서울형사지법 1975. 11. 20. 75고합582] [서울고법 1976. 3. 16. 75노1684]	긴조 9호	000 (고물행사)	징1.6자2	양평군청 정문에서 하천부지 하자 절차를 문의하려고 군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75년도에는 잘살게 해 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살게 한 것이냐, 박정희가 백성들을 굶어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무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심훈중, 조용무, 이영호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24	75. 5.-6.	[서울민형사지법 의정부지원 1975. 11. 20. 75고합119] [서울고법 1976. 4. 15. 75노1659] [대법 1976. 7. 13. 76도1477]	긴조9호, 폭처법	000 (축산업)	징자3→ 징자1.6	피고인 형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자 동네사람들 앞에서 "박정희 XXX, 세금 다 착취해먹고도 철도 건널목에 간수 하나 두지 않아 사람죽게 했다"고 발언(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25	75. 6.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1. 24. 75고합54] [대구고법 1978. 5. 27. 75노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집2	대화중,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라, 북괴의 남침위협은 없다, 방위세금 2,000억을 국민에게 풀면 경제도탄에 빠지니 방위세를 낼 필요없다, 박정희가 똑똑한 학생을 데려다 죽을 고생을 시키고 정치를 혼란하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948]			게 만드니 나쁘다"고 말함	김현무			
26	75. 6.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1. 24. 75고합53] [대구고법 1976. 3. 25. 75노945]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집2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는 여객선 갑판위에서 큰 소리로 "박정희가 왜 월남전에 파병했다가 포기하는가, 월남전은 박정희가 망하게 했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하나, 김일성이 잘하나"라고 말함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27	75. 7. 5.	[청주지법 1975. 11. 26. 75고합77] [서울고법 1978. 2. 10. 76노26] [대법 1980. 1. 15. 78도661]	긴조 9호, 공무집행방해	000 (농업)	징자2집3 →면소	보리수납공판장에서 3등 판정을 받고 동네사람들과 술을 먹으면서 "정부가 농민을 위해 해 준 것이 무엇이나"고 발언(사실왜곡전파)	지법	변재승, 조병직, 임승균	싸움말리는 순경에게 큰소리침으로써 공무집행방해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28	75. 9.	[대전지법 1975. 11. 26. 75고합134] [서울고법 1976. 3. 30. 76노5]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	"자유당도 무너졌는데 공화당은 얼마나 갈 것이냐, 돈보파리를 싸다가 박정희를 주어서 살게 되었다, 국회의원도 다 내가 당선시켰다"고 고성으로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폐)	지법	안우만, 김권택, 유재선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29	75. 5.	[대전지법 강경지원 1975. 11. 27. 75고합28] [대전지법 1976. 9. 29. 76고합74] [서울고법 1977. 2. 2. 75노1588, 76노2028]	긴조 9호, 공원법, 산림법, 사문서위조 동행사	000(목사), 000(인쇄업)	징자1, 징자1집2→징자1	자신이 창설한 세계공회 본부 회당에서 "1975.은 회년의 해이고, 한국에 통일정부가 수립되고 김일성, 박정희가 물러나게 되고 새 시대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인쇄의뢰하여 배포함	지법	서철모, 차광웅, 채태범	
						지법	안우만, 성문용, 김성만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30	75. 9.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5. 11. 28. 75고합135] [서울고법 1976. 4. 20. 75노1645]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8→징자3	취중행패끝에 파출소로 연행되어 "윤보선 구속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조금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실업자들이 많고 이것은 박정희 XX의 XX때문이다, 내 손에 기관총이 있으면 전부 쏘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떠듬	지법	김달식, 권 성, 박영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지법	고법	
31	75. 8.	[서울형사지법 1975. 11. 29. 75고합712] [서울고법 1976. 6. 3. 76노276]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6	열차플랫폼에서 술기운에 큰소리로 "박대통령이 군인을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안 있으면 인민군이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싸 죽인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פו)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2	75. 8.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5. 12. 2. 75고합77] [서울고법 1976. 3. 4. 75노1701]	긴조 9호	000 (전기청부업)	징자7→ 징자1.6	술자리에서 대화중, "박정희 그 자식 육군소장이지 별거냐, 그 자식 생김새를 봐라, 족제비 낫짝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000도 000가 먹었다" 등의 말을 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억규, 김종식, 동상홍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3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12. 2. 75고합654] [서울고법 1976. 4. 2. 76노3] [대법 1976. 7. 13. 76도1371]	긴조 9호	아래	아래	심지연, 조성우, 이명준 등은 명동성당 사제관 신부 이기정 방에서 '7인 기획위원회'를 조직, 유신헌법철폐, 정권퇴진을 위해 활동하고자 유인물제작, 각 대학 데모상황 정보를 공유함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이일규,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p><피고인 성명 및 직업> 심지연(대학원생), 박홍석, 김용석, 한경남, 조성우, 강현웅, 박계동, 이정국, 이명복, 우영제, 송영길, 박진선(대학생), 이명준, 신경식, 강기중, 최열, 정민수, 여석동(이상 무직), 서상섭, 장성효(이상 연구소직원)</p> <p><형량> ① 징자10(심지연), 징자8(이명준, 김용석, 한경남), 징자7(박홍석, 신경식, 조성우), 징자6(최열), 단4장6자6(이명복), 징자4(강기중, 김현웅, 정민수), 징자3.6(여석동), 징자3(박계동, 박진선, 서상섭, 장성효), 징자2(우영제), 징자1.6(이정국, 송영길)</p> <p>② 징자2.6(정민수), 징자2집4(서상섭, 김현웅, 이명복), 징자1.6집3(여석동, 장성효)</p>								
34	75. 7.	[대전지법 1975. 12. 3. 75고합95] [서울고법 1976. 4. 22. 76노12]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1.6 →징자1	용산밭 목포행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박정희 도당, 때려 죽인다, 내가 김성주 동생이다, 내가 간첩인데, 찢러 죽이겠다" 고 하고 철도공안원에게 연행되자 다시 위 발언을 함	지법	안우만, 김권택, 유재선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5	75. 7. 30.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12. 8. 75고합]	긴조 9호, 공무집행방해	000 (노동)	징자2집3	6. 25당시 아버지가 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부역행위를 하다 서울수복과 함께 행방불명, 중학교 중퇴 후 일정직업없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74] [대구고법 1976. 4. 15. 76노13]			이 노동품팔이로 생활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퇴거 신고시 직권말소로 그 절차가 복잡해짐에 화가 나 강원도 소재 영덕군청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새끼들 우리 아버지 사상이 나뻐으며 나뻐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박정희 이 000"라고 고성을 지름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36	75. 9.	[서울형사지법 1975. 12. 12. 75고합725] [서울고법 1976. 4. 29. 76노118]	긴조 9호, 외국환 관리법	000 (해외이주산업), 000 (영문대서업), 000(상업), 000(종업원)	징자2→ 징자2집3	미국으로의 이민을 위해 미군과 위장 결혼허가서, 입국 사증 신청서 등으로 결혼증명을 받아 이주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긴조 9호 4항 위반
37	75. 6. 20.	[서울민형사지법 1975. 12. 18. 75고합138] [서울고법 1976. 4. 1. 76노88]	긴조 9호	000 (교회집사)	징자2→ 징자1집2	교회신도와 잡담 중, 6·25성회의 참석권유하면서 "6·25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박대통령에게 찾아가면 교인들을 가둘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8	75. 6. 16.	[서울형사지법 1975. 12. 23. 75고합698] [서울고법 1976. 5. 27. 76노295] [대법 1976. 8. 24. 76도1967]	긴조 9호	이민규 (무직, 전 민주당 총남도당 감찰위원장)	징자10→ 징자26	5.16군부세력 저격위한 계획 모의, 무기입수추진 중 검거되어 국보법 위반으로 5년형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 후, '국민의 격', '애국청년의 격' 등 격문형식으로 현정부에 대한 투쟁, 유신은 일본놈 독재모방하여 정치한다, 헌법개정하고 마음대로 혼자서 해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유인물 제작(유언비어 날조, 사실왜곡내용의 유인물 제작)하여 대전시내 일대, 정부종합청사, 덕수궁 등지에 배포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홍성엽, 양병호, 김윤행, 이일규	
39	75. 7.	[광주지법 순천지원 1975. 12. 24. 75고합101] [광주고법 1976. 4. 14. 76노47] [대법 1976. 6.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7	술에 취해 거리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000이는 김일성의 스파이다, 000는 나쁜 놈이며 총살시켜야 한다"고 외침	지법 강명호, 백수일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대법 양병호,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반공법 위반으로 징8월집1 확정(73. 5. 9.) 복역종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22. 76도34]						
40	75. 8. 25.	[춘천지법 1975. 12. 26. 75고합67]	긴조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2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군인의 대우만 잘해주고, 노동자는 잘 살수 없으니 현정치가 나쁘다. 어떻게 된 세상이나? 세상이 뒤집어져야 한다, 나는 빨갱이다. 몇 개월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러면 너희들 예비군소대장, 이장, 반장들은 다 때려죽인다, 대한민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함(북괴찬양,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최공웅, 윤정보, 정태세
41	75. 8.	[서울민형사지법 1975. 12. 27. 75고합302] [서울고법 1976. 4. 15. 76노309]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0월	대화중,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차관받은 부채를 전체국민에게 나누어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다, 000 묘소참배객은 공무원, 가족들을 동원시킨 것이다, 박대통령이 야당당수를 입건시키고 장기간 독재정치 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42	75. 6.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82] [서울고법 1978. 12. 7. 76노311]	긴조 9호	김기선, 백상태, 이석표, 안정배 (대학생)	징자10월(김기선), 징자1집2(백상태, 이석표, 안정배)→징8월자1집1(백상태, 안정배)	중앙대생들로, 정권비판적 내용의 글을 각자 써 전파할 목적으로 '왕정복고' 등 제하의 표현물을 제작함	지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43	75.5. 22.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79] [서울고법 1976. 6. 17. 76노334] [대법 1976. 12. 14. 76도3656]	긴조 9호	유태선, 라일주, 최명규, 홍순복, 정기택, 장원관, 구은우, 김경규, 정병문, 남광우(대학생)	아래	서울대학생들로서 학내에서 동료학생 500여명과 함께 서울농대생 김상진의 추도식을 거행하여 조시, 조사, 유신헌법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선언문' 등 낭독하며 집회하고 교외진출	지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형량> 징자10월(유태선, 정기택, 구은우), 징자1집2(라일주, 최명규, 홍순복, 장원관, 정병문), 징자8월집2(김경규), →무죄(라일주, 김경규)								
44	75. 6. 3.	[서울민사형사지법 영등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92]	긴조 9호	이부영 (전 동아일보 기자), 이신범(무직)	징자1(이부영), 징자8월 (이신범)	이부영은 1974. 3. 8. 동아일보 재직 중 노조지부결성에 관여한 바 있어 해임된 후, 해직기자등 120여명과 함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투위 섭외의 원으로 피선, 이신범은 이부영과 용산 중, 고교,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재학시절부터 반정부시위에 앞장 선 자 인바, 이부영은 동아일보사 앞 노상에서 미국인 목사로 부터 1975. 5. 19.자 미국연합장로교회 187차 총회의 대한 국결의안'이란 제하로 한국정부의 언론탄압, 종교자유박 탈, 긴조해제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교부받 아 이신범에게 전달 소지	지법 채명묵, 김기천, 조홍은 아래	
<기타> 1975. 8. 1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국가모독, 긴조 9호 위반으로 공소되어 공판계류중(이부영), 1972. 9. 11. 대법에서 내란예비음모죄로 징2선고, 1973. 11. 21. 만기출소(이신범)								
45	75. 5. 22.	[서울민형사지법 영등 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71, 363] [서울 고법 1976. 4. 26. 76노 304] [대법 1977. 5. 10. 76도1714]	긴조 9호	아래	아래	상호공모하여 고 김상진의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선언문, 조사, 조서를 준비하여 5. 22. 서울대 교내 식당, 강의실 등지에 배포하고, 도서관 계단에서 장례선언문 등을 낭독하여 집회를 하고 독재타도,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를 부르면서 정문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함	지법 채명묵, 김기천, 조홍은	오돌돌 사건', 항소심에서 법 정 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한 공소계기절차(2 개월간 구속된 채 기소) 및 재판비공개의 위법성 다투었 으나 배척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중배	
<피고인 성명 및 직업> 채광석, 이호웅, 박연호, 김도연, 천희상, 송병춘, 정은교, 박성규, 정성현, 김정환, 정해일, 연성수, 정광서, 이지현(대학생)								
<형량> ①징자4(김도연, 천희상, 송병춘), 징자3(김정환), 징자2.6(채광석, 이호웅, 박연호, 정해일), 징자2(박성규), 징자1.6(정성현), 징자1(정은교, 연성수, 이지현) ②징자2.6(김도연, 천희상), 징자2(채광석, 이호웅, 송병춘, 박성규, 김정환), 징자1.6(정해일), 징자1.6집3(정광서), 징자1집2(정은교, 연성수, 이지현)								
46	75. 5.	[부산지법 진주지원	긴조 9호	000	징자1→	야당활동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	지법 김두석, 이국주,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975. 12. 27. 75고합76] [대구고법 1976. 5. 4. 76노154]		(여관업)	징자1집2	로, 대화중 "민중회복운동에 사재 50만원을 들였으나 서장, 군수, 중정조정관이 민주회복국민회의 해체조건으로 돈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요인들이 부정축제한 재산을 헌납종용하고 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정극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47	75. 4.	[광주지법 1975. 12. 29. 75고합192]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2집3	한국사진기자단 보도사진연감부 전남분실장으로서, 천주교 사제, 신자들의 집회사진(제목:민주인권회복을 위한 기구), 한국신학대생들의 데모사진, 신민당 개헌추진본부현판식 장면 등 헌법 부정, 반대, 비방 등의 내용의 사진이 인쇄되어 긴조에 위반된 내용의 표현물을 판매, 소지함	지법 심의섭, 김은집, 오세빈
48	75. 6.	[서울민형사지법 수원지원 1975. 12. 29. 75고합103] [서울고법 1978. 12. 14. 76노990]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집3→징8월자1집2→징6월자1집1 (형경정청구)	대화중, "000이 여배우와 XX을 한다"고 말하고(사실왜곡 전파), "이복은 따발총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어 엠원으로는 못맞한다"등의 말을 함(북한찬양)	지법 조용완, 강현중, 김중권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49	75. 2.	[서울형사지법 1975. 12. 29. 75고합743] [서울고법 1977. 4. 8. 76노284]	긴조 9호, 공문서 위조동행사, 공인위조	000(요식업), 000 외 2인(회사원)	징자6월집1 (000), 징자10월집2 (000 외 2인)	해외이주를 위해 신원진술서란에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의 인장으로 위조된 소양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함.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50	75. 8. 10.	[대구지법 1975. 12. 30. 75고합 283]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3집5	식당에서 "10월 유신 X같다, X같은 유신헌법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지엠코리아 박과장도 유신헌법을 욕하다 정보부에 끌려갔다"고 말함(사실 왜곡 전파)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51	75. 7. 19.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2. 30. 75고합63] [대구고법 1976. 4. 1. 76노130]	긴조 9호	000 (어업)	징자1집2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로 일하는 자로 동지역 하숙집에서 주변인들에게 "헌정권은 독재다, 현공화당 정치체제의 고위층은 모두 부정축재자들이다" 등의 말을 함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52	75. 4.	[대전지법 1975. 12.	긴조 9호	000	징자1	대전교도소 복역중 재소자들과 대화하면서, "정부에서 착	지법 안우만, 김권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법	대법	
		30. 75고합136] [서울고법 1977. 2. 16. 76노382] [대법 1977. 7. 26. 77도 859]		(무직)		취해 국민들은 하루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다, 물가가 오르고 국민생활이 곤란한데 박대통령이 그만두고 새 영도자가 나와야 살기가 나올 것이다" 등의 말을 함(사실왜곡 전파)	유재선 고법 조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로 10년 선고 (71. 12.)받고 복역중
53	75. 7.	[대구지법 1975. 12. 30. 75고합266] [대구고법 1976. 5. 13. 76노110]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5→ 징자2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 동거녀 000과 TV시청 중, "현재 박정희와 김종필이 사회부조리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부조리한테 부하직원들에게 백날 부르짖어본들 말뼀이 설리있는가, 다 똑같다"고 말하고(사실왜곡), "전쟁이 나면 복귀는 해상을 통하여 부산으로 침투하고 땅굴을 통하여 대구로 쳐 들어와 인민군 정규군과 공군이 서울의 큰 건물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함(복귀의 남침 양상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중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54	75. 10.	[서울형사지법 1975. 12. 30. 75고합889] [서울고법 1976. 4. 27. 76노 235]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	동대문경찰서 경범죄의자 보호실에서 피의자들에게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 독재를 하고 죄없는 사람을 마구 잡아가뒤 못살게 한다,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똑같은 놈이다"고 소리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5	74. 9.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12. 31. 75고합606] [서울고법 1976. 5. 3. 76노 220, 305] [대법 1976. 8. 24. 76도 1695]	긴조 9호, 국보법, 국가모독, 반공법	이부영, 성유보(전 동아일보 기자), 정정봉 (학원강사)	징자8(이부영), 징자4(성유보, 정정봉)→징자2.6(이부영), 징자1.6 (정정봉), 징자1(성유보)	사회주의체제 건설위해 정부전복할 목적으로 '청우회'구성하기로 공모하고(반국가단체구성), 이기정 신부방에서 서울대 김상진 열사조사위원회 명의의 '반독재투쟁선언문' 제하 유인물을 입수소지하여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소속원에게 배포하고, 대화중, 모택동활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함(국외공산계열활동찬양, 북한찬양하여 이적행위함)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전병연, 최후섭, 김종화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아래
<비고> 항소심에서 이부영은 청우회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며 단체구성혐의를 부인하자, 구치소에서 기관원이 협박하였다고 주장, 사법경찰관 조사과정서 고문으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척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56	75. 7.	[대구지법 1976. 1. 7. 75고합277] [대구고법 1976. 5. 21. 76노158] [대법 1976. 8. 24. 76도1814]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4	폭처범위반으로 복역중 감방에서, "북한땅굴을 발견한 탐지기는 일본에서 만든 기계이고 북한이 총,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썩어빠진 우리나라는 도둑질만하고 총도 하나 못 만든다, 북한은 돈안들어도 철저하게 의무교육을 시킨다"고 말하고(북괴찬양), "000 그 독한 놈이 특사를 시켜줄 줄 아는가"라고 말함(사실왜곡)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57	75. 6. 25.	[춘천지법 1976. 1. 9. 75고합75]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1집2	술을 마시다 일행이 군대는 어디서 복무했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나는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한 것이 아님에도 미군에서 강제로 끌고가 반공포로로 석방되었는데, 석방 당시 나라에서 군경대우를 해주더니 지금은 전과 같은 대우가 없고 감시도 심하고 반공포로 중에는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월북한 사람도 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최공웅, 윤정보, 정태세
58	75. 8.	[춘천지법 1976. 1. 9. 75고합65] [서울고법 1976. 4. 27. 76노306]	긴조 9호, 반공법, 사기	000 (농업)	징자2	주점에서 술마시던 중, "한국은 조금만 있으면 난리가 나니 있을 곳이 못된다, 김일성이가 머리가 비상해 힘들다, 일본에 가면 북한에도 왕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등의 말을 함	지법	최공웅, 윤정보, 정태세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중배
59	75. 8. 26.	[전주지법1976. 1. 15. 75고합146] [광주고법 1976. 5. 21. 76노151판결] [대법 1976. 7. 27. 76도1768]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2	전직 국민학교 교사로서 인혁당 사건 공개재판, 정부의 부정부패만연, 관권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직불가능성에 관한 답변장 요구서'를 교육청에 우송해 배포함(현 정부 위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유포)	지법	김용은, 조건호, 최형기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대법	이일규,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이일규
60	75. 10.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6. 1. 16. 75고합71] [광주고법 1976.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3집5	마을 반공좌담회 개최장소에서 "박정희도 과거 공산당이었다"고 말하고 같은 부락 000 집 부근 노상에서 "인공이 들어오면 너의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함(북괴의 한	지법	이병호, 조중환, 최종태
							고법	김재주, 박종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5. 18. 76노126]			반도 적화통일 야욕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함)	김응열		
61	75. 8.	[청주지법 충주지원 1976. 1. 28. 75고합 60] [서울고법 1976. 5. 27. 76노377] [대법 1976. 8. 24. 76도1939]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7 →징자1	대화중, "김신조가 내려와 작전을 나갈때 따라나서는 소대원들이 없었다, 6.25때 군인이 이북 쳐올라갈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고(북한찬양), "유신헌법은 박정희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함(사실 왜곡전파)	지법	박규석, 신정치, 이치호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양병호, 홍순엽, 김운행, 이일규
62	75. 7. 5.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6. 1. 29. 75고합 60] [광주고법 1976. 5. 28. 76노113] [대법 1976. 7. 27. 76도1980]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3집5 →무죄	마을사람들과 대화 중, "공산주의 정치도 사람이 하나까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라"고 하고(북한 찬양고무), 박대통령이 무력으로 집권했다는 등의 발언(유언비어 날조유포)한 점에 대해 피고인 일관해서 부인하고, 마을 사람들의 법정 증언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항소, 상고심에서 무죄선고	지법	이병호, 조중환, 최중태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김영세
63	75. 6.	[서울형사지법 1976. 2. 2. 75고합 857]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2집3	동국대생으로, 대화중 "현재체가 가뵈야 얼마까지 가겠느냐, 떠도는 말에는 000가 간암인지 간경화로 얼마남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국제정세로 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정부에서 위기의식조장하고 있으나, 정권연장수단으로 국민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땅굴만하더라도 그렇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64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2. 2. 75고합 890] [서울고법 1979. 7. 16. 76노 677]	긴조 9호	000 (학원강사)	징자3집5	부기학원 강사로서, 수업중 "국회의원 김옥선이 유신체제 비판발언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더 해먹으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민방위,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조직 등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박영서, 유근완, 박학송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지법	고법	
65	75. 11.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6. 2. 13. 75고합173] [서울고법 1976. 7. 6. 76노 620] [대법 1076. 10. 12. 76도2803]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3→ 징자3집5	인하대생으로, 술먹고 싸움이 나 피출소로 연행되자 "박정희 정권은 10년 못가 쓰러진다, 앞으로는 호남인민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호남을 팔세한다" 등의 발언함(사실 왜곡전파)	지법	윤영철, 김중곤, 강완구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66	75. 6.	[서울형사지법 1976. 2. 16. 75고합 946] [서울고법 1976. 7. 29. 76노 662]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6 →징자1	잡당중, "000이 대통령 명령받고 000 전 고대총장을 거국 내각 총리로 교섭타가 거절당했는데 000가 사후에 알고 어떤 기관원을 시켜 술을 먹여 사망케 했다, 서울대 전 총장 000은 미움을 받아 모기관에서 주는 드링크를 마시고 병신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67	75. 8.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6. 2. 17. 75고합 65] [서울고법 1977. 7. 1. 76노589]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집2	신민당 국회의원 김인기 귀향보고에 참석했다 음주하여 귀가하던 중, "박정희는 XXX다, 쇠고기 반찬만 해쳐먹고 농민은 죽든말든 세금만 비싸게 올려놓고 못살겠다, 소 값은 떨어지게 하고 비료값은 올려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김중수, 강윤호, 민세홍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68	75. 11.	[부산지법 1976. 2. 19. 75고합1016] [대구고법 1977. 3. 3. 76노323]	긴조 9호	000 (한국감정원 감정역)	징자2집3→ 징자1집2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박정희는 도둑놈이다, 김종필이도 도둑놈이다, 000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몇 억원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 있으면 안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을 함	지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69	75. 9. 10.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6. 2. 20. 75고합 74] [광주고법 1976. 6. 16. 76노180]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3→ 징자3집5	14, 000평의 논소유자로 75.수도작벼멸구방제에 대한 정부 지시에 따라 벼멸구 방제작업을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논에 나라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장관이 한게 무엇이나, 박정희 XXX 잘한게 무엇이나, 박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함(사실 왜곡전파)	지법	유지원, 김대현, 최훈장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70	75. 10.	[대구지법 1976. 2.	긴조 9호,	000	징10월자1	통행금지시간에 거리에서 고성방가한다는 이유로 왜관과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5. 75고합339] [대구고법 1976. 6. 24. 76노327]	반공법	(노동)		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에서는 살기 싫다, 땅덩어리는 토끼새끼만한테, 대가리는 이북에 있고 꼬리만 이남에 있다, 박정희 XX 조그만한 XX, 세금만 거둬먹고 이놈의 XX 죽인다, 국민을 속여 대통령을 해먹으면서 남북통일도 못하고 지랄한다, 김일성이는 정치도 잘한다"고 발언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71	75. 9.	[전주지법 1976. 2. 26. 75고합163] [광주고법 1976. 6. 15. 76노229] [대법1976. 10. 12. 76도2067]	긴조 9호, 반공법	000 (어업)	징자2	1975. 3-10.경 본인의 집에서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이에 동조하는 문서를 제작하게 된 바, 동년 9. 발신인을 허위 주소와 가명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노예와 다름없다. 현정부는 반공정책이 아니라 중공정책을 하고 있다. 13년간의 장기집권은 썩은 정치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수신인을 청와대 박대통령각하라고 기재(정부시책과 국내사정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미남으로 청와대에 송달 배포하고, 동년 10. 위와 비슷한 내용을 작성하여 수신인 전주교구 김주교각하에게 발송(유언비어 날조)	지법 김용은, 조건오, 최형기 고법 김재주, 박종택, 김응열 대법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72	75. 9.	[부산지법 1976. 2. 26. 75고합895] [대구고법 1976. 6. 17. 76노344]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	술을 먹고 대화중, "이북에는 쌀 한되 35원하고 술한되 12, 000원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쌀한되 1, 000원까지 안할 줄 누가 알겠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북이 정치를 잘한다,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독재가 계속 될 것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함	지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73	75. 8.	[서울형사지법 1976. 2. 27. 75고합808]서울고법 1976. 6. 10. 76노695]	긴조 9호, 반공법	김철, 이영실, 김정길, 강광석(통일사회당 고문, 대변인 등	징자3(김철), 징자1.6집2(김정길, 강광석), 징자1.6(이영실)→징자2(김	통일사회당 간부로서, 반공법위반으로 기소, 공판계류중 이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000의 공소장내용 (8.15때 000이가 그년만 죽이지말고 두년놈을 다 죽여야 될 것인데, 박정희가 죽었다면 춤을 출 것이다, 000 개새끼, 김일성이보다 못한 놈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살기좋은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후섭, 김중화	반공법 위반은 무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간부)	찰), 징자1.6집3(김정길, 강광석), 징자1.6(이영실)	다 등을 3회 공판기일 직전 각 신문사, 방송에 발표하여 배포함				
74	75. 11.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2. 28. 75고합444, 76고합16] [서울고법 1976. 9. 2. 76노591, 1593, 1613]	긴조9호, 집시법, 병역법	박인배, 원혜영, 유진권, 조창환, 신현태, 노주현, 최인창, 김지환, 변용의, 김봉우 (대학생)	징자1.6, 징자1집3, 형면제 (김지환), 무죄(변용의) →징자1, 선고유예 (김지환)	상호공모하여 반정부시위를 하기로 하고,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제하 경희대 비상총학생회 유인물을 기초로 선언문 '경희학우여'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11.17.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예비에 그침	지법 이영구, 장석화, 김목민	고법 전병연, 최후섭, 김종화	
75	75. 5.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2. 28. 75고합371, 76고합9] [서울고법 1976. 8. 19. 76노649]	긴조 9호	유상덕, 유영표, 장만철, 황선진(대학생)	징자1.6(유상덕, 유영표), 징자1집3 (장만철, 황선진)	서울대생들로서, 5.22. 도서관 앞에서 고 김상진의 장례선언문, 조사, 조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여 집회를 하고 독재타도,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정문까지 시위함	지법 이영구, 장석화, 김목민	고법 전병연, 최후섭, 김종화	
76	75. 10.	[대구지법경주지원 1976. 3. 2. 75고합103] [대구고법 1976. 9. 2. 76노379] [대법 1976. 11. 23. 76도3110]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무죄	김영삼 총재 입건철회, 박정희의 장기집권, 정권의 부정부패 등의 내용의 서신을 작성해 청와대로 부치려다 우편검열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15세 때부터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방안에만 누워 지내는 등 정신분열에 의한 불면증, 대인공포증, 피해망상증 상태에 있으므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자신행위의 통제능력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무죄 선고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77	75. 11.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6. 3. 9. 75고합115]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3	동네를 걸어가면서 인근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박정희 정치는 독재정치다,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죽일 놈	지법 김억규, 김종식, 박찬주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서울고법 1976. 6. 22. 76노640] [대법 1976. 9. 14. 76도2272]			이다, 저 혼자 해 먹으려고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대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이일규
78	75. 10.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6. 3. 12. 75고합 188] [서울고법 1977. 11. 10. 76노 686]	긴조 9호	000 (고교 교사)	징자2집4 수업중, "11월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벽보에 휴가장 병은 즉시 원대복귀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윤영철, 김종곤, 강완구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79	75.6.	[서울형사지법 1976. 3. 22. 76고합 116]	긴조 9호	000 (부동산매매업)	징자2집3 공화당 성동지구당 홍보분과 부위원장으로 공화당 입당 권유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총통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없어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제도도 없어진다, 새마을 금고에 돈을 넣으면 3년내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 한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라고 발언함	지법	김윤경, 이상경, 라정욱
80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3. 22. 76고합 92] [서울고법 1976. 8. 19. 76노699]	긴조 9호	이형량, 정경임 (대학생)	징1.6자2→ 징자1집2 이대생들로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을 읽고 이 내용을 담은 유인물 200부를 제작하여 10.-11.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대, 서울대 도서관, 화장실 등지에 배포함	지법 고법	김윤경, 이상경, 라정욱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81	75. 11. 25.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6. 3. 26. 75고합 7] [광주고법 1976.7. 14. 76노 241]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1집2 전북고창군 무장시장내 모 음식점에서 곡가관계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정부에서 농민의 나라이 다 떨어지면 곡가금을 올려 농촌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몇 년 안가 농촌에는 독재정치가 될 것ियो"라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지법 고법	이병호, 조중환, 최종태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82	75. 6.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6. 3. 26. 75고합 79] [광주고법 1976.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 부락앞 노상에서 예비군 훈련에 대해 "늙은 놈들 데려다가 무엇하게, 테레비에 나오는 걸 보니 짬으로 덮어놓았는데 땅굴인지 알 수 없더라, 그것이 땅굴이나, 이북에서	지법 고법	이병호, 조중환, 최종태 노병인, 양영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7. 21. 76노219] [대법 1976. 9. 28. 76도2610]			조사하자고 하는데 왜 이남에서 조사를 못해"라고 말함 (사실애곡전과, 북괴의 한반도 적화통일야욕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함)	김선석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83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3. 29. 76고합21] [서울고법 1976. 10. 14. 76노845] [대법 1977. 1. 11. 76도3762]	긴조 9호	김윤식(무직,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계훈제(씨알의 소리사 편집위원)	징자3, 징자2 →징자1.6, 징자1	김윤식은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반대 위해 '한국의 민주회복을 위한 근본문제'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계훈제에게 전달하고 기독교회관 목요기도회에 참석해 유신헌법 철폐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입수소지함.	지법 김윤경, 이상경, 라정옥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84	75. 7.-11.	[서울지법성북지원 1976. 3. 30. 76고합16] [서울고법 1976. 7. 20. 76노846]	긴조9호, 외국환관리법, 횡령	000(공무원), 000(종업원), 000(양화제조업)	징자2집3(000), 징자1집2(000), 징자2(000)	보건소계장, 미8군종업원들로 미화불법반출에 공모하여 4, 600불을 넣을 구두뒤킵을 제작해주어 재산도피목적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함	지법 이병후, 윤규현, 노원욱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85	75. 8.	[서울형사지법 1976. 3. 31. 75고합837] [서울고법 1976. 7. 15. 76노829] [대법 1976. 10. 12. 76도2678]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3	취기에 이복 김일성은 "우리의 김일성 선생이다"라고 하고, "북한외교가 우월하여 김동조외무는 북한외교에 졌다, 야당당수를 가둬 넣는 것은 독재자다, 긴급조치가 뭐 말라 비틀어진 것이냐" 등의 발언함(긴조 비방,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
							고법 전병연, 정현식, 김중화
							대법 강안희,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86	75. 5.	[서울형사지법 1976. 4. 2. 75고합875] [서울고법 1976. 7. 29. 76노959] [대법 1976. 10. 12. 76도2781]	긴조 9호	000 (전 미8군사령부 토목기사)	징자2	주한 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이니 이 나라에서 제거해야한다"고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대법 민문기,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87	75. 10. 30.	[대구지법 1976. 4. 7. 75고합389] [대구고법 1976. 7. 29. 76노511] [대법1976. 10. 26. 76도2770]	긴조 9호, 반공법	0 0 (침술 및 한약행상)	징자4→징자2	<p>침술 및 생약 등 민간요법을 시행하면서 전국각지를 전전하는 자로, 환자들에게 치료시술하면서 "남북회담에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남에서 먼저 이북을 비방하여 남북회담이 중단되었다"고 말한 것을 비롯, "적십자회담도 이북에서는 계속하자고 하는데 이남에서 응하지 않는다. 또한 이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북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김일성은 판문점에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한 서신왕래도 제안했으나 이남에서 거절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북한 찬양, 현정부가 남북한회담의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하고 오히려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p>	<p>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경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p>	
88	75. 9.	[서울형사지법 1976. 4. 9. 75고합921] [서울고법 1976. 8. 19. 76노1020]	긴조 9호	조성두, 김태일, 김영인, 이정숙, 송영인(대학생)	아래	<p>서울대, 고대, 이대생들로 각 대학 서클 '아카데미'활동을 하면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을 입수하여 유인물로 제작하여 강의실 등지에 배포함</p>	<p>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정현식, 김종화</p>	
<형량> 징자2(조성두, 김태일, 송영인), 단8월장2자2(김영인, 이정숙)→징자1(김태일, 송영인), 징8월자1집2(김영인, 이정숙)								
89	75. 12.	[서울형사지법 1976. 4. 19. 76고합228] [서울고법 1976. 9. 6. 76노1076]	긴조 9호, 외국환관리법, 도주	000 (상업)	징자1.6→징자1.6집3	<p>미국을 왕래하며 사업을 하면서 미화 만불을 미국까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은닉소지하고 출국절차 밟던 중 발각됨</p>	<p>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p>	긴조 9호 3항 위반
90	75. 9.-10.	[서울형사지법 1976. 4. 21. 76고합20] [서울고법 1976. 8. 26. 76노1055] [대법 1977. 5. 24.]	긴조 9호	김덕룡(신민당 총재비서), 전용주(당원), 송휘림(상업)	아래	<p>김덕룡은 김영삼 총재 집으로 우송되어온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기관지 '민족시보'에 게재된 김지하 오행시의 사본을 소지하다 배포하고, 기타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 소지함.</p>	<p>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이영섭, 김윤행,</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76도3051]					김용철, 유태홍		
<형량> 징자1(전용주), 징10월자1(김덕룡), 징6월자1(송취림)→징10월자1집2(김덕룡), 징자1집2(전용주)								
91	75. 12.	[대구지법 1976. 4. 28. 75고합414] [대구고법 1976. 12. 29. 76노585]	긴조 9호	000 (공무원)	징자3집5	술을 마시며 TV를 보다, 박대통령의 유시광경이 방영되자 "박정희 XXX야, 이 XXX 그만해, 박정희 XXX 독재는 곧 꺼진다, 저 XX는 김일성과 같다, 새마을 사업은 누가 했는데 박정희 제가 잘난척하느냐, 전부 꼭두각시 장난이다"고 발언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92	75. 9. 29.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6. 4. 30. 75고합258] [서울고법 1979. 10. 31. 76노1151]	긴조 9호	000 (중국음식점 종업원)	징2자1집3	대통령사임, 유신헌법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대통령 수석보좌관 앞으로 우송(헌법부정·비방·폐지주장)	지법	변정수, 김경철, 김 훈
							고법	박천식, 정상하, 이창구
93	75. 11.	[춘천지법 1976. 5. 14. 75고합99, 76고합24] [서울고법 1976. 10. 14. 76노1124] [대법 1977. 1. 11. 76도3958]	긴조 9호, 반공법	000 (광업)	징자5 →징자2	이북출신으로 석회광산경영하는 사람으로, 술집에서 대화중, "전체학생과 우리회사에서는 유신헌법 철폐를 꼭 해야된다고 부르짖고 있다, 박정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유를 망친 독재자다, 김옥선을 왜 국회에서 몰아냈는가, 나도 이북에서 넘어왔지만 이북보다 살기가 나쁘다, 이북에서 쳐내려오면 세금도 안내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함	지법	최공용, 윤정보, 정태세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김용철,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94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5. 14. 75고합63] [서울고법 1976. 11. 4. 76노1235]	긴조 9호	장영달 (무직)	징자1.6 →징자1	국민대생 유길상 등을 만나 "10월중으로 국민대에서 학생데모를 하기로 하고 김지하 양심선언문을 유인물로 살포도록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교사하였으나 정보 사전누설로 미수에 그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95	75. 10. 18.	[서울형사지법 1976. 5. 14. 75고합1047] [서울고법 1976. 9. 14. 76노	긴조 9호, 국보법, 반공법, 간첩	000 외 1인 (대학생), 000 외 1인 (전도사)	아래	한신대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000은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교양을 받고 입북하여 노동당에 가입하고, 국내기밀을 수집하여 보고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기타 피고인들을 포섭해 미군기지 훈련사항, 구로공업단지	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395] [대법 1976. 12. 28. 76도3283]	간첩방조			노동조건 등을 보고	대법	강안희,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간첩단 사건 연이어 발생(1980. 1. 5. 형정정으로 000, 000 징자3.6)
<피고인 성명 및 직업> 사형(000), 무기(000), 징자10(000), 징자5(000)→징자10(000), 징자5(000), 징자2(000)→징자3.6(000, 000)								
96	75. 3.	[서울형사지법 1976. 5. 28. 76고합 355] [서울고법 1976. 10. 29. 76노 1399]	긴조 9호, 반공법	000 (모델)	징자1.6→징자1.6집3	대화중, "밤 12시 넘어 이복방송을 가끔 듣는데 거기에서 000과 000와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방송하더라"고 발설함 (유언비어 날조유포, 복귀 선전활동에 동조)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97	75. 8.	[서울형사지법 1976. 5. 28. 76고합 171] [서울고법 1976. 9. 30. 76노 1398]	긴조 9호, 공문서위조 동행사	남기원 (무직)	징자1→징자1집2	육군 3사관학교 자퇴자로서, 유신헌법 비판하는 '고 김상진군의 유서(양심선언)'를 소지, 내용중 일부를 복사하여 방 책상벽에 붙여둠(헌법 반대비방하는 표현물제작소지)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98	75. 6.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6. 5. 31. 75고합 67] [서울고법 1977. 7. 23. 76노1604]	긴조 9호, 폭처법	000 (농업)	징10월집2, 무죄(긴조) →벌금5만원	싸움과정에서 "이 개같은 인간들이 세상이 쑥대밭 될 날 이 멀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참(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점은 무죄)	지법 송기방, 김중권, 전봉진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99	75. 10. 22.	[서울형사지법 1976. 6. 4. 76고합 240] [서울고법 1976. 10. 8. 76노 1397]	긴조 9호	권오성, 김 윤 (농민학교 교사)	징자3, 징자1.6→징자 2, 징자1	서강대 가을 축제행사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를 비판하고 학생들의 궤기를 촉구하는 '제3호 자유서강'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교 내 건물 등에 192부를 배포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서강대 재학중 유신반대시위로 긴조1호 위반, 징역 5년 선고(1975. 7. 8.) 받고 형집행정지출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지법	고법	
100	75. 12.	[광주지법 장흥지원 1976. 6. 15. 76고합 22] [광주고법 1976. 12. 1. 76노357]	긴조 9호, 폭처법	000 (상업)	징1.6자2→징1.6자2집3	피고인의 형이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자 고소인과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우리 형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전부 나오라, 법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박정희는 망한다"고 소리침	지법	최규봉, 박상선, 오세빈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101	75. 7. -76. 1.	[대구지법 1976. 6. 16. 76고합67] [대구고법 1976. 11. 18. 76노795]	긴조 9호, 반공법	000 (운전사)	징1.6자2→징1.6자2집4→징자1집3(형경정)	경북칠곡 미군캠프 수송부 운전사로 동료 운전사들과 잡담 중, "김일성어도 좋은 사람이다, 정치 잘한다, 이북에서는 세금도 없고 거지도 없으며 공부도 그냥 시켜준다, 정부는 지금 외국에 빛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가"라고 말하고(북괴 찬양), "000가 주둥아리를 잘못놀려 미국원조가 끊어지고 불란서 핵원료 제공계약도 취소되었다"고 말함(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국가안위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중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02	75. 12.	[서울형사지법 1976. 7. 5. 76고합 454] [서울고법 1976. 10. 26. 76노 1447]	긴조 9호	000 (연대 경영대학원생)	징자1	기술취업이민의 관계서류수속을 부탁받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행사하게 하여 해외이주 허가받기 위해 예비	지법	김윤경, 이상원, 이상경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03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7. 6. 76고합 334] [서울고법 1976. 10. 19. 76노 1659]	긴조 9호	정선자 (대학생)	징자2.6 →징자1	이대생으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을 받아 소지하고 선언문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200부를 제작하여 이대, 서울대, 연대 교내에 배포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04	75. 8.-9.	[서울형사지법 1976. 7. 7. 76고합 216] [서울고법 1976. 12. 10. 76노 1815] [대법 1977.	긴조 9호	000 (회사 대표이사)	징자5 →징자3	같은 교회 신도들과 대화중, "78.에서 81.사이에 기존 정치, 종교 체제 완전 붕괴물락하고 새 질서가 이루어져 자신의 측근자가 대통령이 된다, 자신이 하나님이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전상식, 제차룡, 황우여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김영세, 한환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 8. 77도51]					안병수, 김용철		
105	75. 11.	[서울형사지법 1976. 7. 7. 76고합 156] [서울고법 1976. 11. 1. 76노 1767] [대법 1977. 3. 15. 77도241]	긴조 9호, 국보법, 반공법, 간첩, 간첩방조, 범인은닉	000 외 13인 (대학생)	아래	000은 재일교포로 서울의대 재학중인자, 나머지도 서울의대 재학, 제작자들로서, 동인은 일본에서 고교선배이며 조선유학생동맹 맹원인 000에게 북한발전상,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한 학습, 교양을 받고, 1970. 모국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대남간첩으로 포섭되어 남한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기밀을 수집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1972. 서울의대에 입학하여 동료학생인 000, 000 등에게 접근하고 수시로 일본에 국내학원동향등에 대해 보고문을 보내고, 입북하여 평양에서 북한노동당에 입당하고, 공작금 등을 지급받고 서울로 돌아와, 같은 과 000, 000 등에게 접근하고 김대중사건진상규명,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동맹휴업을 선동하고, 서울의대 학생씨클인 '사회의학연구회'의 지부설립 논의에 참여하고, 서울대 4학년 000이 주도하는 데모에 참가하고 대정부투쟁지침을 주는 등으로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는 등으로 1974. 12까지 활동하고, 000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회의학연구회에 회원으로 000과 접촉하여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은 자와 수회 회합하여 데모계획 등을 알려줘 간첩하고, 유신헌법철폐를 위한 시위를 함.	지법 전상석, 제차룡, 황우여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아래 1. 아래 2. [대법 1977. 8. 77도54](000 재심청구기각에 대한 즉시항고)기각
<p><형량> ①사형(000), 징자15(000), 징자10(000), 징자3집5(000 외 2인), 징자2집4(000 외 1인), 징자1집3(000 외 3인), 징자1(000), 징8월(000) ②징자8(000), 징자5(000), 징자2집4(000), 선고유예(000 외 3인) ③징자3.6(000, 형경정), 징자1.6집3(000, 형경정)</p> <p><비고> 1. 000는 긴조 1호위반으로 징7확정복역중 75. 2. 15. 형집행정지로 석방, 000은 긴조 4호위반으로 징20선고복역중 75. 2. 15. 형집행정지결정으로 가석방. 항소심에서 000은 수사기관의 고문, 협박하에서 진술하였음을 항변하고, 간첩활동 등을 부인하였으나 배척당함. 000의 불고지죄 무죄 2. [서울고법 1977. 8. 12. 77소3](000 재심청구)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기간 중 일본 북해도지방을 여행하였다는 증인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 민청학련 사건이후 학생운동탄압과정에서 서울대 의예과에 재학중인 재일동포 유학생 000을 간첩으로, 의예과 동료인 000, 000 등 사회의학연구회 회원들을 간첩활동</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p>을 한 혐의로 국보법,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사건.</p> <p>※ 사회과학연구회는 1970. 9. 서울대 문리대 의예과내 씨클로 71. 9. 서울대 문리대 교련반대 시위주도, 72. 9. 본과의 의예과 지부를 두고 회원을 확대하여 73. 10. 구속 학생석방을 위한 본과생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74. 4. 3. 250여명의 학생들과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을 낭독하여 교내시위를 하고, 75. 3. 동대문구 독방교회 주변 빈민촌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등 유신반대와 빈민의료활동 사회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음</p> <p>※ 000은 각종 자술서가 고문, 협박에 의해 강요되었고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 000, 000 포섭하여 간첩활동한 사실, 반정부학생테모 지시사실 등을 부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p> <p>※ 공동피고인 중 000가 000과 그 모임의 불온성을 학교에 신고함으로써 학생들의 반유신활동이 파악되고 민청학련 사건이후 긴조 및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사건이 확대</p> <p>※ 같은 시기(75. 10.-11.) 부산대, 한신대 등에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이 연이어 발표됨</p>								
106	75. 8.	[서울형사지법 1976. 7. 9. 76고합437] [서울고법 1976. 11. 4. 76노1658] [대법 1977. 2. 8. 76도4157]	긴조 9호, 혼인빙자간음, 사기, 반공법	000 (무직)	정7자5→정5자2→정4자1(형경정청구)	대화중, "000가 군복무시 간첩혐의로 구속된 사실 있는데 대통령이 된 후 서류를 소각했다, 000의 개인재산이 330억원이다, 북한에 비해 육해공군이 모두 약하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는 장기집권위한 수단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07	75. 8.	[서울형사지법성동지원 1976. 7. 20. 76고합407] [서울고법 1976. 12. 31. 76노1743] [대법 1977. 4. 26. 77도338]	긴조 9호	000 (농장경영)	징자2→징자1.6	대화 중 "현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윤경, 이상원, 이상경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108	75. 8.	[춘천지법 1976. 7. 23. 76고합32] [서울고법 1976. 11. 18. 76노1744]	긴조 9호	000 (숙박업)	징자1→징6월자1집1	대화중, "난리가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정감록에는 충청도가 피난곳이라고 되어 있으니 미리가서 땅을 사두는 게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함(허위사실날조유포)	지법	최공웅, 윤정보, 정태세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109	75. 10.	[서울지법 수원지원	긴조 9호	000	정2.6자2집4	대화중, "000 장군이 1군사령관 거치지 않고 육군 참모총	지법	송기방, 김중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6. 7. 26. 76고합49] [서울고법 1978. 3. 10. 76노1825] [대법 1978. 6. 27. 78도904]		(전도사)		장이 된 것은 월남사령관으로 있을 때 국군을 베트남으로 가장하여 미군부대를 습격, 핵무기를 탈취해 국내로 들여온 공로로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서울고층아파트를 철거하고 대공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지하도를 건설해 남침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전봉진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110	75	[서울형사지법 1976. 7. 28. 76고합166] [서울고법 1976. 11. 25. 76노1801] [대법 1978. 1. 10. 78도4414]	긴조 9호, 반공법	000 외 2인 (회사원)	징자3(000), 징자2집3(000), 징자1.6집3(000)→징자2집3(000), 징자1집3(000, 000)→징자1.6집3(000)	서울대 재학생, 한국대학생선교회내 경제복지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사회주의 이론을 배우려고 하던 서울의대생 000에게 레닌의 제국주의론, 레닌과 러시아혁명을 교재로 교양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000에게 철학교정 1권을 교부(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향준, 라길조	
111	75. 4-6.	[육군보통군법회의 1976. 7. 29. 76보군형공제356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 1. 28. 76고군형항제 922호] [대법 1977. 6. 28. 77도1067]	긴조9호, 반공법	000, 000, 000(군인)	징자10→징자2	계명대 학생모임인 '유토피아'의 선후배들로, 회합하여 '우리는 국가보다 민족이 먼저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극좌우로 대립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중도역할을 할 '홍정청년회'를 조직하여 유인물을 제작, 복사하여 배포(북괴의 적화통일 선전활동에 동조)	보군 권찬식, 허홍중, 정수조 고군 김영범, 유길수, 이술진, 김건홍, 어인수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우, 김용권	
112	75.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8. 2. 76고합67] [서울고법 1976. 12. 2. 76노1813] [대법 1977.	긴조 9호, 국보법, 방화음모, 범인은닉, 반공법	000 외 1인 (대학생), 000 (대학강사)	징자3집5(000), 징자2집4(000), 징자1집2(000)→선고유예(000)	서울대 제적생으로, 맑스, 엥겔스 저작(도이취 농민전쟁, 혁명과 반혁명 등)을 탐독보관, 고무하는 내용의 서적을 취득보관하고(국외공산계열 활동 찬양), 서울의대 미등록 학생모임 '사회과학연구소'수양회에 참석해 "반정부학생운동으로 민주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김지하의 '양심선	지법 이영구, 김목민, 김인수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사회과학연구회' 일원인 000의 국보법 위반을 고지할 의무지울 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6. 7. 77도644]				언 유인물을 복사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고, 000은 긴조 9호 위반으로 수배중인 000을 숨겨주고, 000는 양심선언 1부를 소지하다 배포하고, 긴조 9호 위반자 000, 000를 숨겨줌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13	75. 12.	[서울형사지법 1976. 9. 23. 76고합399] [서울고법 1981. 2. 19. 76노2101] [대법 1982. 3. 23. 81도 1450] [서울고법 1982. 9. 10. 82노 1037] [대법 1983. 4. 12. 83도63]	긴조 9호, 국내재산도 피방지법,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 특가법 등	000 외 1인 (회사 대표이사), 000(전 대표이사), 00상사, 00중공업주식회사	아래	일본에 아연 등을 수출하면서 선적시 수출신용장상 개설량을 초과선적하고 검수서를 조작, 상당량을 선박수송도중 자연감모된 것처럼 감량처리하여 그 차액 대금을 국내 00상사로 송금하지 않고 미국으로 보내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세금을 포탈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황도연, 김영일, 김중곤 대법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고법 김영진, 김원제, 이근웅 대법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형량> 000(징6자1벌8억5천), 000(징3자1), 000(벌500만), 000상사(벌12억), 00중공업(벌500만)→000(징3벌4억), 000(징1.6집3벌6억)→000(징2집3), 00상사(벌3억)							
114	75. 5. 2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11. 8. 76고합224] [서울고법 1980. 1. 9. 76노 2329]	긴조 9호	채만수 (무직)	징자1집3 →면소	서울대 채광석, 유영표, 김근태, 이호웅 등과 함께 김상진 추도식을 강행키고 하고 75. 5. 22. 교내에서 500여명의 학생과 함께 장례선언문과 조시, 조사를 낭독하고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외치며 정문밖으로 진출을 기도함(학교장 허락없는 금지된 시위)	지법 이영구, 조홍은, 민형기 고법 박천식, 정상화, 이상구
115	75.	[대구지법 1976. 11. 30. 75고합265] [대구고법 1977. 3. 31. 77노19] [대법 1977. 7. 12. 77도1360]	긴조 9호, 국보법, 반공법, 밀향단속법, 마약법	000(상호신용금 고직원), 000(학원강사), 000(양장점)	징자5, 징자3, 무죄(000), 국보법, 반공법, 마약법(무죄) →징자2(000)	일본에 밀항해 체류중 조총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국가 기밀탐지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고, 대화중 "김대중 사건은 중정에서 조작한 사건이며 관련자인 1등서기관은 중정요원이다, 유정회 국회의원은 독재의 들러리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조수봉, 배중수, 송창영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p><비고> 국보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등 위반전력. 항소심에서 000은 정신적 위축상태에서 증언하였으며, 000는 구속영장없이 22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배척. 그러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무죄</p>								
116	75. 8.	[서울형사지법 1977. 2. 16. 76고합 832] [서울고법 1977. 6. 21. 77노 424] [대법1977. 9. 28. 77도2238]	긴조 9호, 특가법, 알성녀물수수, 사기 등	000 (전 국회의원)	징10자5 벌금92, 870만원→징7 자5벌금7, 000만원 →징5추징금2, 100만원(형경 정청구)	지법	전상석, 유지담, 조용무	형경정청구 (1980. 1. 31.)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117	75. 8. 30.	[서울지법 영등포지 원 1977. 4. 29. 76 고합343] [서울고법 1978. 3. 10. 77노 942] [대법 1978. 5. 23. 78도919]	긴조 9호	김영준 (회사원)	징자3집5 →징자1집2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민청학련사건 으로 징15자15 선고 구속집행 정지출소(1975. 2. 15.)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이일규,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118	74. 7-12.	[서울형사지법 1977. 5. 19. 77고합 256] [서울고법1977. 9. 14. 77노1055] [대법 1978. 1. 17. 77도 3408]	긴조 9호	000 외 2인 (공무원)	징2.6벌250만 원(000), 징3벌2850만 원(000), 징3벌500만원 집4(000) →징2.6	지법	안우만, 김동권, 양삼승	긴조 9호 제9 항 위반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119	75. 5-11.	[서울지법성동지원 1977. 5. 20. 77고합 19] [서울고법1977. 9. 1. 77노924] [대	긴조 9호	000, 000 (예루살렘교 교주)	징자1→ 징자1집2	지법	이병후, 박재윤, 안성희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법 1977. 11. 12. 77도2918]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120	75. 9.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7. 8. 77고합26] [서울고법 197710. 12. 77노1244] [대법 1978. 1. 31. 77도3476]	긴조 9호	신동수 (무직)	징자1.6	1970. 교련반대시위 등으로 서울대학제적자로서, 학원자유화, 유신헌법폐지, 구석자 석방 등을 주장하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하는 등 시위예비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강안희, 민윤기, 이일규, 정태원
121	75.	[국방부 고등군법회의 1977. 7. 25. 77고군형항제2호] [대법 1977. 12. 13. 77도2793]	긴조 9호, 특가법, 뇌물수수	000 외 3인 (공무원)	징1.6(000), 징2(000), 징2.6별450만원(000), 선고유예(000)	국방부 조달본부 몰자국 근무자들로서, 군납업체선정 등 조달업무와 관련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함	고군 김교덕, 박경순, 이탁규, 김정술, 전기철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122	75. 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9. 16. 77고합88] [서울고법 1977. 12. 28. 77노1518]	긴조 9호, 사기	000 (회사수위)	징자1.6 →징자1	대화중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보다 개인당 빛이 더 많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하여 잘사는 놈은 더 잘살고 죽는 놈은 노동자만 죽는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렇게 못살지 않는데 병신같은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한다, 박정희는 미국놈의 종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북에서 곧 쳐내려온다" 등의 발언을 함(허위사실날조유포)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123	75. 7.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8. 1. 10. 77고합45] [광주고법 1978. 5. 31. 78노48]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2	술집에서 음주중,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도 아닌데 주민등록법과 민방위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움짱달짝 못하게 한다, 이것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박규석, 최형기, 유정주 고법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124	75. 9.	[서울형사지법 1978. 3. 15. 75고합1067] [서울고법	긴조 9호, 공갈	고하운 (신문사 사장)	징8월집2, 무죄(공갈방조, 긴조)	주간지 전광산업신보 발간자로서, 동신문 1975.9.29.자에 한전이 청평양수 수력발전소 건설용 기자재를 일본 마루베니상사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용준, 조용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대법	지법	
		1981. 3. 11. 78노 1206] [대법 1981. 8. 20. 81도1137]			→면소(긴조) 사 제품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했다는 내용의 왜곡보 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	대법	양희열 정태균,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125	75. 6.	[춘천지법 1978. 6. 29. 78고합17] [서 울고법 1978. 10. 18. 78노935]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 징자1 대화중, "김일성이가 영웅이고 정치를 잘한다, 이번 6.25 를 잘 넘겨야지, 전후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전방에서는 민간인들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함(유언비 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이태훈, 장준철, 박태훈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126	75. 5. 26.	[서울 형 사 지 법 1980. 1. 14. 75고합 654]	긴조 9호	민병권, 윤서영 (대학생)	면소 한국외국어대생으로, 학교 앞 주점에서 동료학생 정민수 와 회합, 현정부 비판의 유인물을 받아 동교생 1인씩을 포섭하여 각각 배포할 것과 시위에 가담할 것에 동조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긴조 9호 해제 로 면소

4)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6.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지법	고법	
1	72-76.	[서울형사지법 1976. 2. 24. 75고합 173] [서울고법 1976. 6. 10. 76노 565] [대법 1976. 9. 28. 76도2073]	긴조 9호, 반공법	000(의사), 000(인쇄업), 000 외 2인(이상 회사원), 000 외 1인(상업), 000 외 1인(회원업)	징자7~징자2→징자5~징자2→징자4(박남업, 형경정)	피고인들(50대 초반)은 이복출신으로 6.25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간첩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000의 병원(자혜의원)에서 수사로 한국의 정치상황, 대북관계, 정권비판과 긴급조치 해제 등에 대해 대화합(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이일규,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2	76. 1. 4.	[전주지법 1976. 3. 11. 76고합13] [광주고법 1976. 9. 15. 76노311] [대법 1978. 4. 25. 76도 3361]	긴조 9호	000 (묘목판매업)	징자1.6집3 →무죄	자신의 집에서 73. 11.경 돈 500, 000원을 빌려주었던 조카부부에게 서신을 작성함에 있어, '이 시간에도 나는 정부로부터 말살을 당하고 있으니 죽지 못하여 살고 있다, 현정권은 정권유지에 집착하여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온 집안이 단합하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들의 각오를 몇 가지 열거한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여 조카에게 발송(유언비어를 날조, 사실 왜곡 표현물 배포)	지법	김용은, 조건오, 최형기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3	76. 1.	[서울형사지법 1976. 4. 12. 76고합 152] [서울고법 1976. 10. 7. 76노 927] [대법 1976. 12. 28. 76도3637]	긴조 9호	김창열 (무직)	징1.6자2 →징자1	75. 1-4. 동아일보 격려광고란중 유신헌법철폐요구하는 내용, 개헌주장 등 440매 광고물을 복사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동아일보 격려광고 모음'제하에 인쇄제본을 의뢰	지법	김윤경, 이상경, 라정욱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민문기,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	76. 2. 13.	[전주지법 군산지원1976. 4. 16. 76고합17] [광주고법1976. 9. 1. 76노291]	긴조 9호	000 (목공)	징지3집4	군산시내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본어로 술을 달라고 하자, 옆테이블 사람들이 좋은 우리말을 두고 왜 일본말을 쓰냐고 하자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박정희새끼는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함(국가원수 모독, 사실 왜곡전과)	지법 유지원, 김대현, 최훈장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5	76. 1.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6. 5. 14. 76고합38] [서울고법 1976. 10. 14. 76노1219]	긴조 9호	000 (제분업)	징지3 →징지1	대화중, "000은 000와 별장에서 재미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000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필리핀 마르코스는 군정으로 독재를 한다, 000과 같은 놈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 왜곡전과)	지법 윤영철, 김중곤, 강원구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6	76. 2.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6. 5. 14. 76고합30] [서울고법 1978. 3. 24. 76노1175] [대법 1978. 6. 13. 78도 1037]	긴조 9호	000 (목사)	징지3집5	교회부흥회에서 신도들에게 "000는 000이 죽인 것이 아니고 평소 불교를 신봉하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쥐 죽게 한 것이다, 국립묘지에는 남자나 군인들만이 안장되는 곳인데 000 여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이 많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과)	지법 윤영철, 김중곤, 강원구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7	76. 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6. 5. 14. 76고합9] [광주고법1976. 10. 27. 76노323]	긴조 9호 폭처법	000 (어물행사)	징지5→징지3	폭행사건으로 군산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대기중 순경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곧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죽어도 좋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유지원, 김대현, 최훈장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8	76. 2. 9.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6. 5. 17. 76고합34] [서울고법1976. 10. 8. 76노	긴조 9호, 반공법	000 (중학교사)	징지2	수업중, "정부가 방위성금 150억원 중 75억은 팬텀기 구입하고 나머지는 조총련계 제일동포를 매수해 모국방문케 하는데 썼다, 가구당 500원씩 적십자 회비를 내는데 일부는 어디에 쓰는지 모	지법 송기방, 김중권, 전봉진	
						고법 김상원, 정래웅, 홍기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544] [대법 1976. 12. 28. 76도3549]			르니 널 필요없다"고 말하고(사실왜곡전파, 유언 비이탈조유포), "이북의 경제성장률과 전력이 남한보다 높다"고 말함(복귀 활동 고무찬양)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9	76. 2.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6. 5. 20. 76고합18] [대구고법 1976. 9. 23. 76노659]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박정희 정치가 이승만 정치만 못하다, 산에 나무를 하게하나, 리아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게 하나, 우리같은 놈은 어디에 가서 벌어먹고 사느냐,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하니 우리 평생에는 대통령 선거 한번 못해 본다, 김일성을 왜 욕하느냐"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한재영, 박준수, 입수태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0	76. 2.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6. 5. 25. 76고합22] [대구고법 1977. 7. 27. 76노764]	긴조 9호, 폭처법	000 (농업)	징자1집2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서울시민 환영대회 장면을 TV로 시청하다 "저거는 전부 허위다"라고 발언함	지법 김완석, 김태준, 심명수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11	76. 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6. 5. 25. 76고합51] [서울고법 1976. 10. 8. 76노1183] [대법 1977. 1. 11. 76도3638] [서울고법 1977. 5. 6. 77노181] [대법 1977. 7. 26. 77도1754]	긴조 9호, 국가보안법	000 외 1인 (무직)	징자7, 징자2집3→징자3. 6(000)→징자2 무죄(국보)	해방이후 근로인민당 경북도당 조직부장직(000), 만주에서 독립운동(000)경력자들로서, 지연관계로 알던 000과 그의 처가 고정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증정 수사요원들에게 신고하여 무고하고, 대화중, "남한에 중공간첩으로 활약하는 중국, 한국사람이 있다, 그들은 중국대사관을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하고(000)(유언비어 날조유포), 000은 000에게 "내가 교도소 수감중일때 간첩 000을 만났는데 정부에서 동인을 처형 않고 백령도로 보내 월북시키려다 미군에게 발각되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병후, 윤규한, 노원옥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강안희,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12	76. 1. 4.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6. 5. 26. 76	긴조 9호, 사기	000 (무직)	징자4→징1(형경정)	대화중,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정부에서 하사한 자금출처는 방위성금이다, 박정권 타도하려면 중	지법 성병현, 여춘동, 오윤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합18] [대법 1976. 9. 28. 76도 1969]			교인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정결정(대구지법 상주지원 1979. 12. 28. 79초22)
13	76. 4.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1976. 6. 2. 76형공제393호] [육군 고등군법회의 1976. 10. 22. 76고군형제817호] [대법 1977. 2. 22. 76도 3905]	긴조 9호	000 (방위병)	정1자2→ 파기환송 대학재학중 방위소집되어 근무중, 선배에게 보낸 편지에 유신헌법 비판, 교과서에 박정희 개인미화하는 것을 비판함(사실왜곡전파)	보군 박동석, 심란섭 고군 전재석, 이홍진, 김진홍, 조규택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대법에서, 편지를 선배의 모친만 열람한 바,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4	75. 10. -76. 2.	[서울형사지법 1976. 6. 4. 76고합 364] [서울고법 1976. 11. 18. 76노 1446] [대법 1977. 2. 22. 76도4252]	긴조 9호	김명식, 김무길, 김정수, 김승중, 김정택 (예수회 수사등)	김명식은 유신체제 비판, 헌법 및 긴급조치 폐지, 월남파병, 새마을 운동 비판하는 '10장의 역사연구' 제하의 풍자시를 작성하여 유인물 180여부로 제작, 동료들에게 배포함(사실왜곡, 허위날조)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후섭, 김종화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10장의 역사연구 사건
15	76. 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6. 6. 8. 76고합7] [서울고법 1976. 12. 3. 76노 1273]	긴조 9호	000 (인쇄공)	장자2→장자1.6집 3 대화중, "인민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외침	지법 김억규, 김종식, 박찬주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6	76. 3. 24.	[서울지법 성북지	긴조 9호	전점석, 최갑성	장자1	지법	이병후, 윤규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원 1976. 6. 8. 76고합97] [서울고법 1976. 11. 2. 76노1257] [대법1977. 1. 25. 76도4166]		(대학생)		헌법절폐 내용으로 하는 '한신선언문' 200매를 배포함	노원욱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17	76. 1.	[대구지법 1976. 6. 9. 76고합54]	긴조 9호	000 (무직)	단6월장10월자1	대학재수중 술을 마시며, "박정희는 일당독재다, 조총련 제일동포가 모국을 방문했을 때 복귀에 속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정부가 조작한 말이다, 나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됐다 석방되었다"고 말함(북한이롭게 하는 유언비어날조, 사실왜곡전파)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18	76. 3. 13.	[전주지법 1976. 6. 10. 76고합54] [광주고법 1976. 10. 19. 76노360]	긴조 9호	고영조(학생), 하정택(농업)	징자1.6집3 (고영조), 징자1집2(하정택)	함석헌 외 11명의 종교인 및 구정치인 등이 3.1. 명동성당에서 선언한 '언론, 학원, 신앙의 자유를 묵살하는 유신체제의 비합법성, 한일협정의 부당성,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요구'의 취지가 담긴 민주구국선언을 복사하여 2회에 걸쳐 소지하고 다니며 전파	지법 김용은, 조건오, 최형기 고법 김재주, 박종택, 김응열
19	76. 2.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6. 6. 15. 76고합33] [대구고법 1976. 12. 13. 76노810] [대법 1977. 2. 22. 77도65]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2	대화중, "박도당은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실업자가 많은데 이북은 농어업을 하면 똑같이 나누어 살기 좋다, 유엔내부에는 공산주의가 우세해 이북은 지금이라도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전파, 북한 찬양)	지법 조무제, 유 언, 김종철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20	76. 3.	[대구지법 1976. 6. 16. 76고합121] [대구고법 1976. 9. 30. 76노812]	긴조 9호	000 (여행상)	징8월자1	길거리를 지나다, "박정희는 XXX다, 000은 빨갱이들만 모인 집단이다, 박정희 XXX는 강패들만 양성해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고함을 치고 목격한 순경이 지서에 연행하자 거기서도 계속해 같은 내용의 말을 함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1	76. 3.	[청주지법 충주지원 1976. 6. 16. 76고합17] [서울고법 1976. 11. 5. 76노1290] [대법 1977. 2. 22. 76고4056] [서울고법 1977. 6. 9. 77노309] [대법 1978. 2. 28. 77도?]	긴조 9호	고영근 (목사)	징7자5→ 징자2→ 징자1.6	실교중 "문선명이 수많은 기업을 두어 개인이익을 치부하는데 정부에서는 승공, 반공이니 하며 축사를 하며 협조하고 있다, 박정희가 국민을 기망하고 무능하다, 외채가 80억인데 빚덩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혁명공약을 지키지 않고 장기집권을 합리화한다, 유엔표결에 한국지표 줄어드는 것은 자유진영에서 고립당하는 걸 표시하는 것인데 누구때문에 고립되어 가겠느냐" 등의 발언을 함(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000가 법개정해 무덤을 4평으로 제한해놓고도 000 무덤은 1000평에 달해 500만의 사람을 동원해 참배케하고 있으니 개인승배다'라고 발언한 것만 인정)	지법 박규석, 신정치, 이치호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상고심(77. 2. 22.)에서, 발인내용은 신문, 각종 간행물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로 사실왜곡 인정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22	76. 1.	[부산지법 1976. 6. 17. 76고합245] [대구고법 1978. 2. 15. 76노825]	긴조 9호	김영일, 조태원, 이태성 (대학생)	징자2집3(김영일, 조태원), 징자1집2(이태성)	부산대, 동아대생들로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산중부교회 대학생회 간부들로 회지에 '우리 약한 힘을 한데 모아 아프다고 고함이라도 질러보자, 왜 때리느냐고 반행해보자, 우리 올바른 삶을 위해 아니 떼뻗한 죽음을 위해 이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자, 한국적이니 유신이니 따위는 말고...' 등의 내용을 실어 회원들에게 배포함	지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23	76. 3. 14.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6. 6. 18. 76고합60] [서울고법 1976. 10. 19. 76노1417]	긴조 9호	김금룡 (학생)	징자1→ 징자1집2	성남시 주민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해학 목사로부터 긴급조치 철폐, 의회정치 회복 내용 담은 '민주구국선언문' 100부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 받고 등사기로 이를 제작함(헌법비방·폐지·개정 주장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 제작)	지법 변정수, 김정철, 김훈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24	76. 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6. 28.]	긴조 9호, 반공법	000 (회사경비원),	징자1.6집3, 징자1집2	술에 취해, "이북으로 가야겠는데 갈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다, 이남은 10월이 되면 망한다, 박	지법 이영규, 김복민, 김인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76고합91] [서울고법 1976. 10. 22. 76노1520]		000(공원)		정희는 도당이고 김일성은 수령님이다, 월급 3만 원으로는 못살겠다, 돈을 벌기 위해 이북에 가야겠다" 등의 말을 함(김일성 고무찬양, 유언비어 유포)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25	76. 4.	[대전지법 1976. 6. 30. 76고합76] [서울고법 1976. 11. 4. 76노1466]	긴조 9호	000 (농업)	징6월자1	용산발 목포행 열차에서 술에 취해 '동무, 우리 인민' 등의 북한의 상투적 용어 사용하며 "유정회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유정회는 잡동사리다, 대통령 선거가 대의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성으로 외침(사실왜곡전파)	지법 안우만, 김권택, 성문용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26	75. 6. 76. 2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6. 7. 19. 76고합80] [서울고법 1976. 11. 18. 76노1778] [대법 1977. 2. 22. 76도4358]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 →징자1	연세대 신학과 복학생으로, 동료인 '민청학련' 관련자 서창석, 김학민, 김용준 등의 석방은 포드 대통령 내한시 박정희에게 압력가하여 석방요구했고, 박정희는 8월 이내로 정권을 내놓는다, 정일권 국회의장이 외국 순방한 것도 대통령 망명처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송기방, 김종권, 전봉진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27	76. 3.	[대구지법 1976. 7. 21. 76고합168] [대구고법 1976. 10. 7. 76노1029]	긴조 9호	000 (무직)	징8월자2→ 징8월자2집2	술집에서 큰소리로 "박대통령은 폭군 연산군과 로마의 네로황제와 같이 독재적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간선제로 하고 별별수단을 다 쓰고 있다, 고급공무원들이 골프장, 요정에 다니며 뿌리는 돈은 시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말함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우	
28	75. 3 -76. 2.	[서울형사지법 1976. 7. 28. 76고합468] [서울고법 1976. 12. 10. 76노1800] [대법 1977.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6	대화 중, "김일성이 정치를 잘해 이북은 살기 좋다, 소련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나라다,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반국가단체, 국외공산계열 활동찬양), "독재정치는 물러나야 한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총칼이 무서워 말을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 22. 77도94]				못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29	76. 2.	[대전지법 천안지 원 1976. 8. 18. 76 고합29] [서울고법 1976. 12. 7. 76노 1776]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4→ 징자2집4	주점에서 대화중, 상대방에게 "너는 공화당이지, 똑똑히 살다 죽으라, 유정희 국회의원 선출은 너 희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소리침(유언비어 유포)	지법 공이도, 양인평, 박채규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매	
30	76. 3. 1.	[서울형사지법 1976. 8. 28. 76고합 287] [서울고법 1976. 12. 29. 76노 1835] [대법 1977. 3. 22. 77도44]	긴조 9호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정일형, 이태영, 이우정, 이문영, 이해동, 안병무, 함석헌, 문동환, 서남동, 함세웅, 신현봉, 문정현, 장덕필, 김승훈, 윤반응	아래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1976. 3. 1. 명동성당 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폐지 등을 주장하 는 '민주국국선언문'을 발표함(사실 왜곡전파, 헌 법 왜곡 비방, 그 폐지를 주장선동)	지법 전상석, 재차룡, 황우여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민복기, 이영섭, 주재환,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3·1민주국국선언 사건'으로 700여 명의 친구교 신자 들 모인 가운데 선언문 낭독.
<p><형량> ①징자8(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징자5(정일형, 이태영, 함세웅, 이우정, 문동환, 신현봉, 이문영, 문정현, 윤반응), 징자4(서남동), 징자3(이해동, 안병무), 징자2(장덕필, 김승훈) ②징자5(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징자3(정일형, 이태영, 이우정, 이문영, 문동환, 함세웅, 신현봉, 문정현, 윤반응), 징자2.6(서남동), 징자2집3(이해동, 안병무, 김승훈), 징자1집2(장덕필)</p>								
31	76. 3. 18.	[광주지법 1976. 9. 1. 76고합100] [광 주고법 1977. 2. 17. 76노522]	긴조 9호	000, 000 (무직), (농업)	징자1, 징8월자1집2→징 자1집2(000)	000은 1975.부터 신민당기관지인 '민주전선' 보급 요원으로 광주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3.1사태와 김대중선생의 선거법위반 재판상황, 록 히드사건에 연루된 000, 000 문교부장관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불법행동 등 이런 사실을 알려면 민주전선을 사보십시오"라고 열변토로함	지법 이상범, 오성률, 강창웅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32	76. 3.	[대전지법 1976. 9.	긴조 9호	000	징자1.6	상가집에서 "박정희가 무엇인데 신부들을 구속하	지법 안우만, 김권택,	음주에 의한 심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6. 76고합77] [서울고법 1976. 11. 23. 76노1839]		(농업)	느냐, 저도 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된 주제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함	성문용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33	76. 3.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6. 9. 7. 76고합71] [서울고법 1977. 2. 2. 76노1919] [대법 1977. 4. 26. 77도655]	긴조 9호	00(목사), 000(무직)	징자8, 징자3집5 →징자5(입일)	민주회복국민회의 위원, 고문 경력자들로서, 대화중 "박정희는 장기집권하고 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5년안에 좌경 쿠데타 일어난다, 박정희는 원래 공산주의자다, 자주국방 자립경제운운은 정권연장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재야정당 자진해체건의서', 야당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사퇴권고서' 작성해 배포할 것을 준비하고, "박씨 주변 권력층은 외국에 수백만 달러를 이미 도피시켜놓았다, 이번 3.1명동사건으로 박정권은 생명을 단축한 축진제가 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윤영철, 김중곤, 강완구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34	76. 5. 6.	[청주지방법원 1976. 9. 15. 76고합56] [서울고법 1976. 12. 21. 76노1904] [대법 1977. 3. 8. 77도265]	긴조 9호, 반공법	000 (한전 직원)	징자2→ 징자1	동료들과 술마시는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로보트다, 박정희가 무슨 대통령이나, 이북이 살기가 더 좋다"고 하고, "선량한 국민을 이북에 간첩으로 보내어 죽게한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변재승, 임승균, 문윤길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35	76. 4. 18.	[광주지법 1976. 9. 16. 76고합101] [광주고법 1977. 5. 19. 76노925]	긴조 9호	김영종 (대학생)	징10월자1집2	전남대생으로 4.19기념행사를 학내에서 시행할 것을 마음먹고, '정의와 자유의 녀인 4.19정신은 부조리와 현실타협에 의하여 죽어버렸으며, 이제 더 이상은 4.19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는 하지 말고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항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작성, 학내에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학생들앞에서 낭독함	지법 임순철, 서석구, 신정식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36	76. 3.	[광주지법 1976. 9.	긴조 9호	윤한봉	징자2→	76.3.1명동사건의 '구국선언문'을 입수해 소지, 신	지법 심의섭, 황대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오세빈	
				징자1.6	광교회에서 낭독하고 "3.1사태를 정부전복이라고 구속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발언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으로 징자15선고 복역중, 75. 2. 15. 형집행정지 출소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운행, 유태홍	
37	76. 5.	[전주지법 1976. 9. 23. 76고합109] [광주고법 1977. 2. 24. 76노553] [대법 1977. 5. 24. 77도 988]	긴조 9호, 산림법	000 (농업)	징자1.6	지법 김용은, 최형기, 노재승	
					대화중, "대통령, 김종필 그 자식들이 무엇을 알아서 정권 잡았느냐, 대통령이 나에게 무릎 꿇고 빌러온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대법 김운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38	76. 6.	[부산지법 1976. 9. 23. 76고합591] [대구고법 1977. 1. 27. 76노1274]	긴조 9호, 주민등록법	000 (무직)	징자1	지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식당에서 그 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박정희는 때려죽여야 한다, 박정희가 멋대로 법을 조정하면서 혼자 잘 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함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39	76. 2.	[서울형사지법 1976. 9. 24. 76고합 479] [서울고법 1977. 2. 4. 76노 2029]	긴조 9호, 공문서위조	이하영(재수생), 최상호(학원강사)	단2장3지3, 징자2→단1장자1. 6, 징자1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국회를 씨름장으로, 공화당을 벼락당으로 표현한 '씨름장의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민청학련, 군사재판, 김지하사건 등이 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탄압의 결과 고문으로 날조된 것으로 표현하는 시문을 작성하여 인쇄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 배포하고 최상호는 이를 보관소지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40	76. 5.	[춘천지법 원주지원 1976. 9. 30. 76고합51] [서울고법 1977. 1. 20. 76노 1957]	긴조 9호	000 (광산노동)	징1→징자1	지법 윤상목, 민수명, 신명균	
					대화중, "000가 000을 죽이려고 했다, 중정요원이 000 집을 포위해 죽이려 했으나 먼저 알고 피했다, 성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된 것에 반대하는 데 모에 참여하고 서울시장 승용차를 내가 불질렀다" 등의 발언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41	76. 4.	[전주지법 1976. 10.	긴조 9호,	000 외 1인	징자1.6,	지법 김용은, 최형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7. 76고합113] [광주고법 1977. 3. 3. 76노555] [대법 1977. 7. 26. 77도 1117]	반공법, 공문서부정 사용	(학원강사)	징자1→징자1.6집3, 징자1집3	국원조없이 싸우게 되면 남한은 북한에게 진다, 북한에는 굶는 사람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로서 빈부차가 심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북한이 살기가 낫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에 간첩을 보내고 있고 돌아오면 이중간첩인줄 모르기에 비밀리에 감시한다"(000), "유신헌법하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이며, 유신헌법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000)등의 발언을 함	노재승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42	76. 3. 31.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6. 10. 11. 76고합40] [대구고법 1978. 2. 9. 76노 1280] [대법 1978. 5. 23. 78도549]	긴조 9호	000 (중학교 교사)	징8월자1	사회과 교사로서, 수업시간에 "유신헌법은 장기집권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제도로 간접선거 하는 것은 나쁜 제도이다, 헌법개정 반대학생들을 연행하여 고통준다"는 등의 발언을 함(헌법개정선동)	지법 김두석, 이국주, 정극수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유태홍,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43	76. 3.	[광주지법 장흥지원 1976. 10. 19. 76고합46, 72, 122] [광주고법 1977. 2. 24. 76노591] [대법 1977. 5. 24. 77도 958]	긴조 9호, 변호사법	김원식 (무직)	징자3	김대중의 경북지방조직 담당보좌역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75. 12. 경 대화중 "내년 봄에는 정권이 바뀐다"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포), 76. 3. 경 3.1.구국선언으로 구속된 김대중 사건의 부당성에 대한 편지를 작성, 지인들에게 우송	지법 최규봉, 박상선, 오세립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44	76. 7.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6. 10. 19. 76고합154] [대구고법 1978. 2. 9. 76노 1308]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집5	취기에 "박정희 장기집권으로 민주주의가 없다, 명동사건은 선량한 교인들인데 석방시키지 않고 공화당 간부들만 사육을 채우니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다, 복귀가 남집준비 하고 있다는 말을 역이용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이끌	지법 조무제, 유 언, 김종철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어가고 있다, 10월유신을 반대한다"고 말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대기중 "박정희는 여수순천 반란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줄 아느냐, 박정희는 빨갱이 정치와 같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함			
45	76. 6.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6. 10. 19. 76고합54] [서울고법 1977. 2. 4. 76노2081]	긴조 9호	000 (광업)	정자1	열차역에서 "대한민국은 10년내 망할 것이다", 열차안에서 "시국이 어수선하다, 일거일동 움직이는 것을 박정희가 감시한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종수, 민세홍, 오행남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했으나 배척
46	76. 6.	[서울형사지법 1976. 11. 4. 76고합764] [서울고법 1978. 3. 10. 76노2330]	긴조 9호	000 (통일연구협회 이사장)	정자1.6집3 →선고유예	협회사무실에서 토론중 "미국 대통령으로 카터가 당선되면 한국인권문제와 관련해 군원삭감등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 내년 3월 헌법개정, 국회해산하고 직선제로 국민의 신임을 묻게 될 것이고 새로운 국회의원수는 인구 10만명에 1명꼴로 300명이 될 것이다"라고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심훈중, 김창수, 양승태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47	76. 7. 22.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6. 11. 5. 76고합134]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정자3집5	만취하여 대화 중, "이북에 가서 김일성 만났는데 살기가 좋더라, 제2의 6·25가 나와 살게 된다, 2년 후면 박정권이 무너진다"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반국가단체 구성원 찬양고무)	지법 변정수, 김 훈, 신성철	법행시 심신장애 상태 주장하였으나, 배척
48	76. 1.	[서울형사지법 1976. 11. 5. 76고합875] [서울고법 1977. 3. 25. 76노2222] [대법 1977. 5. 24. 77도1245]	긴조 9호, 반공법	000 (병원사무장)	정자1.6 →정자1	대화중, "내 친구인 한승현 변호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정부에서 구속시켜 매장시키려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것이고 남한에서 정치 잘하려면 공산주의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을 합쳐서 정치해야 한다"고 말함(북한 노선 지지찬양)	지법 허정훈, 조용무, 김의열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49	76. 4.	[서울지법 영등포	긴조 9호,	000	무죄→	서문여고 사회교사로 수업시간중, "북한에 우리보	지법 이영구, 조홍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지원 1976. 11. 8. 76고합186] [서울고법 1980. 3. 27. 77노109] [대법 1980. 9. 30. 80도1179]	반공법	(고교교사)	면소(긴조)	다 1년먼저 지하철이 생겼다, 후진국일수록 일인정권이 오래간다, 우리나라 정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다"고 말한 것은 북괴고무찬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인집권도 자유당집권하에서 경험한 바 있는 역사적 사실이어서 그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거나 사실 왜곡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동해물과 운운도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며,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장기집권에서 오는 지루한 안정에 대해 자유국민이 가지는 염증감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무죄	민형기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김태현,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50	76. 7.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6. 11. 16. 76고합60] [서울고법 1977. 2. 24. 76노2200]	긴조 9호	000 (어업)	징자1	술을 마시면서 대화중,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이다, 국민 내는 세금은 박정희 혼자 다 쳐먹고 순전히 독재다"라고 큰소리로 말함	지법 김중수, 민세홍, 오행남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51	76. 3. 14.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76. 11. 18. 76고합130]	긴조 9호	000(무직)	징자1.6집3	통행금지위반으로 경찰서 보호중 "긴급조치발동해 국민을 못살게 한다"고 말함(긴급조치 비방)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52	76. 5.-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76. 11. 18. 76고합132] [서울고법 1977. 3. 11. 76노2302]	긴조 9호, 반공법	000 (양계업)	징자1.6→징자1 (반공법 무죄)	대화중, "전쟁 일어나 남한이건 북한이건 통일되면 좋겠다, 김일성이 정권 오래 잡고 있는 걸 보면 나긴 난 놈이다", 부모에게 "돈 안주면 양계장에 불지르고 이복가서 살겠다"고 말하고(북괴, 김일성 찬양고무동조), "이후라이 김대중을 납치했다, 지붕도색 강제로 시키는 건 독재다"라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사실왜곡전파)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53	76. 3. 1.	[서울지법 성동지	긴조 9호	이해학	징자3	성남시 주민교회 전도사로서, 문익환 목사로부터	지법 변정수, 김 훈,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6. 11. 12. 76고합164] [서울고법 1977. 2. 3. 76노 2158] [대법 1977. 4. 26. 77도590]		(전도사)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명동성당 사건'으로 반포된 민주구국선언문'을 받아 주민교회 주일학교 교사에게 지시해 선언문 100여부를 등사케 함(헌법 부정, 비방하고 개정, 폐지 선동하는 표현물 제작케 함)	신성철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반으로 대법원에 서 15년 선고 (1974. 8. 20.)
54	76. 7.	[서울형사지법 1976. 11. 26. 76고합915] [서울고법 1977. 3. 2. 77노5]	긴조 9호	000 (무직)	정자1 대화중, "000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빼들려 스위스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 중 100억불을 찾아 000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김창수, 김의열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55	76. 6.	[대구지법 1976. 12. 8. 76고합282] [대구고법 1977. 4. 7. 77노7] [대법 1977. 7. 26. 77도1368]	긴조 9호, 반공법	000(고교교사), 000, 000(대학생)	정자3,6, 정자1 →정자2(000), 정자1집2(000), 선고유예(000)	지법 조수봉, 배종수, 송창영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56	76. 7.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6. 12. 14. 76고합70] [서울고법 1980. 1. 9. 77노 125]	긴조 9호	000 (농업)	정자1.6집3 →면소 대화중, "카터가 당선되면 박정희 공화당 정부는 무너지고 끝장이다, 현정부는 장기집권 독재하기 때문에 자유당 이박사 때보다 더하고 어떤 면은 김일성보다 더하다, 정보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공화당 정권은 무너지질 때가 되었다"는 발언을 함	지법 김종수, 민세홍, 오행남 고법 박천식, 정상하, 이창구	긴조 해제로 면소
57	76. 6.	[서울형사지법 1976. 12. 21. 76고합672] [서울고법 1978. 3. 24. 77노	긴조 9호	이성규 (민주통일당 당원)	정자3집5 통일당 정책연구실장으로, 당수 양일동이 '사회안 전법'폐지, 3.1명동선언사건은 순수한 우국선언임에도 정부가 정부전복음모사건으로 과장시켜 여론을 자극시키고 있다, 국가안보를 구실로 긴급	지법 심훈중, 김창수, 양승태 고법 박우동, 안중혁, 김규복 대법 정태원, 민문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28] [대법 1978. 6. 27. 78도1023]			조치를 남발, 장기화하여 국민의 자유권 침해하므로 긴급조치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전날 가진 기자회견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200부를 제작하고, 미국 CBS방송국 특파원에게 교부하여 배포함	이일규, 강안희	
58	76. 8.	[광주지법 1976. 12. 23. 76고합197] [광주고법 1977. 4. 21. 77노48]	긴조 9호	000 (목사)	정자2집3	지법 고법	입순철, 서석구, 신정식 이성렬, 천경승, 김선석
59	76. 8. 21.	[부산지법 1976. 12. 28. 76고합835] [대구고법 1978. 3. 8. 77노105]	긴조 9호	000 (은행원)	정자2집4	지법 고법	김석수, 임원규, 김주성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60	76. 4.-8.	[광주지법 1976. 12. 30. 76고합177] [광주고법 1977. 4. 2. 77노46] [대법 1977. 7. 26. 77도 1433]	긴조 9호	조흥래, 임기준, 윤기석, 강신석 (목사)	정자6(조흥래, 임기준), 정자5(윤기석, 강신석)→정자4, 정자3	지법 고법 대법	심의섭, 황대연, 오세빈 이성렬, 장희목, 김선석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문을 낭독함			
61	76. 9.	[광주지법 순천지원 1977. 2. 4. 76고합150] [광주고법 1977. 4. 21. 77노76]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 징자1	술에 취해 "박정희를 죽여야지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켜 윤보선을 죽여버렸다"고 발언함	지법 이형년, 백수일, 김은집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62	76. 10.	[광주지법 1977. 2. 11. 76고합231] [광주고법 1977. 4. 21. 77노91]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집3	취중에 버스에서, "박정희가 차장들을 교육시켜 자리를 양보토록 해야 하는 데 그런것도 못한다,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높은 놈들만 잘 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거둬들인다" 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심의섭, 서석구, 정창환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63	75. 8. -76. 10.	[서울형사지법 1977. 2. 16. 76고합 963, 994] [서울고법 1977. 6. 1. 77노 420] [대법 1977. 9. 13. 77도2040]	긴조 9호	아래	아래	명동성당 미사에서 김지하 고문사실을 듣고 통일연구협회원들에게 "정권이 인혁당, 김지하를 공산주의자로 조작한 것이고, 민심수습책으로 포항에서 석유난다고 했다"고 말하고(사실왜곡전파), 대화 중, "000 내분을 여당이 자금지원으로 조작했다, 구치소 내에서 대화 중 '긴급조치 반대, 미대선에서 카터가 당선되면 한국정세에 변화온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전상석, 유지담, 조용무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p><피고인 성명 및 직업> 김재위(무직), 김자명(통일연구협회지도위원), 최상익, 이경식(통일당 중앙상무위원), 함윤식(상업), 권노갑, 전우성, 최덕길(무직)</p> <p><형량> 징자4(김자명, 이경식), 징자3(함윤식, 권노갑), 징자2(김재위, 최상익, 최덕길)→징자2.6(김자명, 이경식), 징자2(함윤식, 권노갑), 징자1.6(김재위, 최상익, 전우성, 최덕길)</p>								
64	76. 8.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7. 2. 23. 76고합61, 76고단678] [대구고법 1977. 6.	긴조 9호, 폭처법	000 외 1인 (농업)	징자2, 징1.6집3	폭행사건으로 상주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정권이 바뀌면 사면령이 있을 것이다, 8.15.저격 사건에 박대통령이 죽었다면 문세광이 살았을 것이다, 장관, 고관들은 도둑놈아닌 사람이 없다"고	지법 박헌기, 성기창, 광동효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긴조 1, 4호위반으로 징자15선고 복역중 75. 2. 17. 형집행정지 출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6. 77노226] [대법 1977. 9. 28. 77도 2172]			발언함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65	76.	[광주지법 1977. 2. 24. 76고합206] [광주고법 1977. 7. 2. 77노173] [대법 1977. 9. 28. 77도 2327]	긴조 9호, 반공법	000 외 1인 (무직)	징자2, 징자3→징자1.6, 징자2	지법 문영택, 황대연, 양태중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유태홍
66	76. 8.	[서울형사지법 1977. 3. 2. 76고합 902] [서울고법 1977. 6. 1. 77노 533]	긴조 9호, 반공법	000 (중학교사)	징자1→ 징자1집2	지법 한정진, 유지담, 조용무 고법 조 언, 고종석, 이철환
67	76. 7.	[전주지법 1977. 3. 4. 76고합144] [광주고법 1977. 7. 5. 77노141] [대법 1979. 4. 25. 77도	긴조 9호, 반공법	000 (부동산소개업)	징자1→ 징자1집2	지법 오병선, 노재승, 강길봉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727]			침범해서 발생한 것이다, 남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수가 이복과 같다, 김일성, 박정희가 무슨 공공이속이 있다"등의 발언을 함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운홍		
68	76. 12. 4	[서울형사지법 1977. 3. 16. 76고합 1123] [서울고법 1977. 6. 24. 77노 580]	긴조 9호	김숙원 (사원)	징자3→ 징자2	지법 고법 한정진, 유지담, 조용무 김상원, 이철환, 김규복		
69	76. 7.	[부산지법 1977. 3. 17. 76고합913] [대구고법 1977. 7. 16. 77노292] [대법 1977. 10. 31. 77도 2489]	긴조 9호, 반공법, 국가모독	000 (회사원)	징자7→ 징자3	지법 고법 대법 윤경현, 이신섭, 장운기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유태홍	망상형 정신분열 증으로 인한 사물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미약상태 인정	
70	76.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7. 3. 21. 76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7 →징자4	지법	이상범, 이치호, 전봉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고합88] [서울고법 1978. 6. 8. 77노 606] [대법 1978. 8. 22. 78도1626]			같이야 승복하지, 중정은 국내 최고악당 집결소며 박정희 전용 화장실이다, 중정에서 최종길 교수를 고문하여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자살로 발표했다, 긴급조치는 계엄정보다 더 강한 강압적 지배방식이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같이 수감되어 있던 긴조 9호위반 복역수에게 위 항소이유서를 돌려가며 읽게 하고 반정부적 발언을 사회에 걸쳐 함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71	76. 8.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3. 25. 77고합5] [서울고법 1977. 6. 22. 77노 616] [대법 1977. 9. 13. 77도2210]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3 →징자2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인, 고종석, 이철환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72	76. 9.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4. 1. 76고합245] [서울고법 1978. 3. 10. 77노 662]	긴조 9호	000 (건축업)	징자2집3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73	76. 9.	[부산지법 1977. 4. 18. 76고합1056] [대구고법 1977. 8. 31. 77노441] [대법 1977. 11. 22. 77도 2911]	긴조 9호, 반공법	000 (중학교사)	징자2	지법 오장희, 박장우, 장윤기 고법 이정우, 최종영, 양기준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철수해야만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함			
74	76. 11. -77. 2	[군수사보통군법회의 1977. 4. 28. 77보군형공제22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 7. 20. 고군형제301호] [대법 1977. 12. 27. 77도2945]	긴조 9호, 반공법	000(병장), 000(중사)	징자2, 징자1.6→징자2, 징자1.6집3	보군	황관영, 이인수, 신학근, 김종성, 전가한	
						고군	이석립, 하철용, 차진한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75	76. 9. 18.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7. 5. 11. 77고합51] [대구고법 1977. 9. 23. 77노498]	긴조 9호	000 (운수업)	징자1	지법	박재봉, 박경구, 손홍익	
						고법	이정우, 최종영, 양기준	
76	76. 12.	[부산지법 1977. 5. 12. 77고합98] [대구고법 1977. 11. 3. 77노512]	긴조 9호, 반공법, 상습절도	000 (무직)	징자5→징자2→징2.6자1.6 (형정정)	지법	윤경현, 이신섭, 장윤기	긴조 해제로 형경정 청구(대구고법 1979. 12. 19. 79초66)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77	74-76.	[서울형사지법 1977. 5. 19. 77고합256] [서울고법 1977. 9. 14. 77노1055] [대법 1978. 1. 17. 77도3402]	긴조 9호, 뇌물수수, 특가법, 뇌물공여	000 외 7인 (공무원), 000 외 2인 (회사대표이사)	징3벌금2, 850만~징2.6벌금2, 50만→징2.6벌2, 850만~징1.6집2→징2.6집3	지법	안우만, 김동건, 양삼승	긴조 9호의 9항 위반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서울고법 1980. 2. 8. 78노231] [대법 1980. 8. 12. 80도 841]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대법 김윤행, 양병호, 서윤홍
78	76. 9. 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77. 5. 26. 76고합21]	긴조 9호	000(목사), 000(전도사)	징자2집3	지법 홍성운, 정극수, 서재현
79	76. 3.	[대전지법 1977. 6. 9. 76고합53] [서울고법 1976. 11. 12. 76노1291] [대법 1977. 1. 25. 76도 4158]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6 →징자1	지법 안우만, 김권택, 유재선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80	76. 1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6. 10. 77고합1] [서울고법 1977. 10. 14. 77노 1114] [대법 1978. 1. 24. 77도3690]	긴조 9호	이범영, 박석운, 백계문(대학생)	징자4→ 징자2.6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김상원, 홍기배, 정귀호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81	76. 3.	[서울형사지법 1977. 6. 18. 77고합 56] [서울고법 1977. 10. 11. 77노 1135] [대법 1978. 1. 31. 77도3599]	긴조 9호	000 (대학공론사 대표)	징자1.6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82	76. 12.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7. 6. 27. 77고합29] [서울고법 1977. 12. 1. 77노1165] [대법 1978. 2. 14. 77도3983]	긴조 9호, 명예훼손	000 (사회복지사업)	징자2→징자1	대화중, "000은 권력잡자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아 이익을 남겨 340만평 목장등을 치부했고, 박정희 혁명동지인 000 등에게 외자도입특혜를 쥐쳐부를 했으며, 유신정부를 거꾸러뜨리려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유신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함	지법	이상범, 이치호, 전봉진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83	75. 1. -76. 10.	[서울형사지법 1977. 6. 29. 77고합192, 269] [서울고법 1980. 4. 24. 77노1304]	긴조 9호, 특가법, 뇌물수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000 외 2인(공무원), 000 외 3인(무직), 000	징4벌금27, 500만원 등 →징3벌금80만원, 추징230만원등	건설부 수자원국 공무원, 경찰서장 등으로 하천공사에 관한 공작물설치허가, 하청공사 허가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음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긴급조치 9호(특가법상 뇌물죄)위반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84	76. 7.	[서울형사지법 1977. 7. 12. 77고합317] [서울고법 1977. 10. 21. 77노1242] [대법 1978. 1. 18. 77도3671]	긴조 9호	000 (회사원)	징자1→징자1집2	대화중, "대통령선거에 혼자 나와 혼자 당선되는 게 무슨 선거냐, 000와 XX를 맺었다, 000은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돈을 많이 벌어 대통령 선거때 선거자금됐다"는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석선, 김창수, 라정옥	
							고법	김상원, 이익우, 김규복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85	76. 11. 29.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7. 7. 13. 77고합57] [서울고법 1977. 10. 6. 77노1195] [대법 1977. 12. 20. 77도3397]	긴조 9호, 반공법	000 (선장)	징자1→징자1집2	잡담 중 동료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 김대중 납치사건이 중앙정보부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유포), "우리나라도 80년대에는 이북과 전력이 같아진다"고 함(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지법	김훈경, 권성, 김호중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86	76. 3.	[대구지법 1977. 7. 20. 77고합69] [대구고법 1977. 12.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10→징자8→징자2.6(형경정)	대구정화여중 물상과목 담당교사로 재직 중, 수업시간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및 동조하고 정부고위관료들의 부패에 대해 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신선근, 이석우, 박효열	긴조 해제로 형경정청구([대구고법 1979. 12. 19. 79초
							고법	박돈식, 양기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3. 77노807] [대법 1978. 2. 28. 77도 4058]			포	조열래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87	76. 5.	[춘천지법 원주지원 1977. 8. 18. 77고합22] [서울고법 1977. 11. 10. 77노 1441] [대법 1978. 1. 10. 77도3730]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3 →징자1	지법 윤상목, 신명균, 김상철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88	76. 9.	[서울형사지법 1977. 8. 24. 77고합 204, 325] [서울고법 1977. 12. 14. 77노1736] [대법 1978. 3. 14. 78도 17]	긴조 9호, 사기, 변호사법	000 외 1인(무직), 000(국제개발협회이사장), 000(회사대표)	징4자2(김갑하), 징1.6(진홍춘), 징1집2(심인수, 김기환)→징자2(김갑하), 징1집2(김기환)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89	76. 11.-12.	[서울형사지법 1977. 8. 31. 77고합 222] [서울고법 1977. 12. 1. 77노 1517] [대법 1978. 3. 14. 77도3984]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6 →징자1→과기환 송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90	76. 6.	[서울형사지법 1977. 10. 26. 77고합77] [서울고법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 징자1.6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조 언, 이철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8. 3. 29. 77노 1823] [대법 1978. 6. 13. 78도1075]			과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진다, 박정희가 000들과 XX했다, 김일성을 핑계로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독재하기 위한 도구다, 언론탄압은 한국이 제일이다, 기사도 정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정해준다" 등의 말을 함	김학세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91	76. 3.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666] [서울고법 1978. 3. 8. 77노 1920] [대법 1978. 5. 23. 78도895]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 6→ 징자1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유태홍	
92	76. 11.	[서울형사지법 1977. 12. 23. 77고합737] [서울고법 1978. 3. 30. 78노 179]	긴조 9호	000 (이용업)	징자3집5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오석락, 김학세, 김성만	
93	76. 3. 24.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8. 3. 10. 78고합19] [서울고법 1978. 7. 28. 78노 452] [대법 1978. 10. 10. 78도2269]	긴조 9호	박남수 (천은교회 지도교사)	징자1	지법 이순우, 강홍주, 양동관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94	76. 1.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3. 20. 76고합161] [서울고법 1980. 10. 11. 78노	긴조 9호, 사문서위조 동행사, 협박	000 (무직)	징자4→ 정8월집2(사문서 위조 무죄, 긴조 면소)	지법 이상범, 김창수, 장세두 고법 황도연, 정용인, 김중곤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511]				날치기로 뺏다, 000을 죽이려고 했으나 못 죽이고 미국으로 추방시켰다" 등의 발언을 함		
95	76. 8. 26.	[서울형사지법 1978. 5. 2. 78고합19] [서울고법 1978. 10. 6. 78노742] [대법 1979. 12. 26. 78도2786] [서울고법 1984. 10. 12. 80노199]	긴조 9호, 횡령	000 (한국종교협회의 사무총장)	징자2→징자1→면소(긴조 9호), 무죄(횡령)	8. 26. 당시 사기죄로 구속중인 000이라는 사람의 처로부터 동인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광고를 동아일보에 의뢰해 줄 것을 부탁받고 광고료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받아 동아일보에 금 60만원을 제공하고 잔금 40만원을 동인의 처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 다시 12. 28. 동인의 처로부터 동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받아 금 70만원을 조선일보에 제공하고 3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성균관대 재단운영권 포기에 관한 중앙정보부와 문교부측의 부당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탄원서를 동아일보에 광고게재하여 배부케 함(사실왜곡내용의 표현물 제작배포)	지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고법 박우동, 정지형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고법 오병선, 김정남, 정성욱	
96	76. 7.	[서울형사지법 1978. 12. 27. 76고합985] [서울고법 1977. 5. 12. 77노179]	긴조 9호, 변호사법, 여권법,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뇌물공여, 수수	000(무허가이민 알선업), 000(영문대서업), 000, 00(무직)	징자3, 징1.6집3, 징1집2→징자2(000)	미국이민 희망자들로부터 수수착수금 등을 받고 신원확인서, 해외이주자카드 등을 작성해 해외이주허가를 받게 하고, 미군과 약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여권신청서를 작성해 여권을 발급 받게 하고(000), 출장하여 실제거주여부 등 신원 조사해야함에도 직접 조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록한 신원조사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함(000, 00)	지법 김윤경, 이상경, 라정욱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97	76.	[서울형사지법 1979. 1. 26. 78고합747] [서울고법 1979. 4. 12. 79노280]	긴조 9호	000 (운전수)	징자4→징자2	택시운전사로 승객과 대화중, "조그만 XXX XX가 자기 부인도 백발백중의 명사수를 시켜 죽였다, 그 놈은 김일성만도 못한 놈이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5)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7.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	77. 4.	[서울형사지법 1976. 2. 17. 75고합1039] [서울형사지법 1977. 7. 14. 77고합363] [서울고법 1977. 11. 3. 77노1246, 76노673]	긴조 9호	이혜경(주간시민기자), 고광순, 배경순(대학생)	징자1집2(배경순), 선고유예(고광순)/징자1(이혜경, 고광순)→징자1집3(고광순)	수도여사대, 이대생들로서, 75. 9. '2천 수도인의 함성' 제하의 유인물 150매를 작성하여 그 중 10매를 고광순에게 주어 이대에도 뿌려달라고 하고, 이대 강의실에서 동료학생에게 배포함(배경순, 고광순)/77.1.4.사이 이대생 홍미영 등에게 예비시간 끝나고 대강당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기로 하였으나 예비에 그침	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안우만, 김동건, 양승태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2	77. 1.	[춘천지법 1977. 5. 12. 77고합1] [서울고법 1977. 9. 7. 77노925]	긴조 9호	000 (버스 조수)	징자2→징자1	대화중, "미국케네디 의원과 김대중이 친해 31명동사건으로 구속된 인사가 미대통령 취임이후 풀려날 것이다, 현 정부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고 학도호국단, 유신헌법은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졌고, 새마을 반상회, 사랑방 좌담회는 내년 선거전략이며, 동아일보 광고해약사태는 언론단압정책이고, 신민당 전당대회 난투극은 공화당에서 자금을 댄 신민당 분열책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 유언비어 유포)	지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3	77. 2.	[춘천지법 1977. 5. 26. 77고합17] [서울고법 1977. 9. 7. 77노922]	긴조 9호	000 (언론인)	징자1.6→징자1집2	경향신문 강원도청 출입기자,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문선명의 사업체인 일화인삼차 사장을 구속한 것은 문선명이 미국 포드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낙선되고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문선명을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4	77. 2.	[춘천지법 1977. 5. 26. 77고합14] [서울고법 1977. 9. 7.	긴조 9호	000 (운전기사)	징자1.6→징자1.6집3	대화 중, "금년도 서해안섬에 간첩 60명이 침입하여 그중 1명이 자수하기 위해 예비군을 찾아가 자수하니 네가 무슨 간첩이나 하면서 농담으로 넘겼다, 예비군	지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77노1008]				이 무력하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5	77. 3. 14.	[부산지법 전주지 원 1977. 5. 30. 77 고합23] [대구고법 1978. 2. 9. 77노 550] [대법 1978. 5. 9. 78도565]	긴조 9호	000 (무직, 전직 초등학교 교장)	징자2집3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승만 때는 학생이 데모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한다, 박정희는 정권을 물려 줘야 한다, 미군철수도 박정희가 하게 한다"는 등의 발 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석명, 이규홍, 강문룡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유태홍
6	73-77. 4. 아래	긴조 9호, 외국환관 리법, 알선뇌물 공여, 특가법, 조세범처 벌법, 명예훼손 등	000 (대표이사), 000 (국회의원)	무기징역, 벌22억(000), 징7벌1억9천→ 징6벌4억5천, 징5→징5벌4억 5천(000)	대평연합상사 대표이사(000), 8, 9대 민주공화당 국회의 원(000)로서, 000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중개영업을 함께 하여 외국비료공급상들과의 중개수수료, 내정가격 이상의 비싼 값으로 농협수입가격을 정해 농협이 비싸 게 대금지출케 하고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을 국외로 이동은닉할 것을 기도하여 일본 비료회사와의 계약에 있어 중개수수료 등을 뉴욕소재 스미토모 아메리카 상 사에 예치하고, 000은 농협소요 비료계약을 위해 000에 게 청탁을 받고 농수산부 장관인 000을 소개하여 주고 뇌물을 받음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대법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희창 고법 이일영, 이호원, 윤형한 대법 윤영철,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사건번호> [서울형사지법 1977. 6. 10. 76고합1119, 77고합146, 77고합235, 77고합283] [서울고법 1981. 12. 18. 77노1239] [대법 1984. 4. 10. 82도766] [서울고법 1989. 6. 30. 84노1173] [대법 1990. 5. 11. 89도1597]							
7	77. 2.	[대구지법 1977. 6. 15. 77고합90] [대 구고법 1978. 2. 9. 77노692] [대법 1978. 4. 25. 78도 550]	긴조 9호	000 (기자)	징자3집5	일본 KCI통신사 부사장으로, 대화중, '정부요인, 재벌들 은 유사시 망명위해 유람선으로 위장된 피난용 요트를 대기시켜 놓고 있고, 000도 미국망명요청한 바 있다'는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신진근, 이석우, 박효열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유태홍
8	77. 3.	[춘천지법 강릉지	긴조 9호	000	징자2집3	잡화가게 안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금년들어 공	지법 김종수, 오행남,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원 1977. 6. 21. 77고합33]	(농지개발조합 임시직원)		군비행기 한대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윤정보		
9	77. 2.	[부산지법 1977. 6. 30. 77고합213] [대구고법 1979. 10. 20. 77노718] [대법 1978. 2. 14. 77도 3609]	긴조 9호, 공갈미수	000 (점원)	장2단1.6자2→ 단2장2.6자3	3.1명동성당사건으로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대중에게 익명으로 '75년 대통령 선거때 000가 모기업체로부터 2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편지를 보내고, 연대 등 각 대학 학생 회장들에게 대통령을 바꾸는 거사에 함께 참여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려다 우편검열로 수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침	지법 윤경현, 이신섭, 장윤기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10	77. 3.	[서울형사지법 1977. 7. 5. 77고합 350] [서울고법 1977. 10. 20. 77노 1283]	긴조 9호	000 (주부)	징자1.6	피고인의 남편이 000의 고소로 변호사법으로 구속되자, 000이 대통령모독하는 말을 한 것처럼 날조하여 이를 이용 고소취하를 받을 것을 결의하고 사람들이 듣는데서 박대통령이 000과 XX했다는 말을 000이 했다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이석선, 김창수, 라정옥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11	77. 1.	[서울형사지법 1977. 7. 8. 77고합 342] [서울고법 1977. 11. 2. 77노 1196] [대법 1978. 2. 14. 77도3728]	긴조 9호	000 (목사)	징자6 →징자3	대화중, "정부에서 비협조적 목사들을 위협하고 고문한다, 000 저격사건은 사실은 000가 정권연장위해 해치운 것이다, 000 사망도 위장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허정훈, 김승목, 김황식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12	77. 3. 5.	[서울형사지법 1977. 7. 13. 77고합245] [서울고법 1977. 10. 14. 77노 1279] [대법 1978. 1. 24. 77도576]	긴조 9호, 집시법	박광태 (상업)	징자2 →징자1	민주통일당 전남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앙당 정기총회에서 민주회복투쟁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 가두시위를 하기로 하고 당사건물 도로상에서 옥외시위를 하고, 건물 창가에 확성기를 이용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긴급조치 해제, 구속인사석방 등 구호를 외치고 박정희 정보정치와 폭력정치를 타도하자고 외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상원, 홍기배, 정귀호 대법 양병호,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3	77. 4.	[대전지법 천안지 원 1977. 7. 13. 77고합19] [서울고법 1977. 11. 11. 77노 1245] [대법 1978. 1. 24. 77도3810]	긴조 9호	000 (행상)	징자2→ 징자1.6	주점에서 음주중 식사차 들른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박정희는 죽어야 한다, 국가원수 좋아하네, 농민이 불쌍하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농민을 착취한다, 김대중이가 더 똑똑한데 힘을 못쓰게 한다, 박정희를 4. 28. 내가 죽인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공아도, 이순영, 박용상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14	77. 2.	[서울형사지법 1977. 7. 13. 77고합287] [서울고법 1977. 10. 6. 77노 1329]	긴조 9호	0 0 (텔런트)	징자1집2	국방부 제작의 '새마을 새물결'이라는 영화에 육군사병으로 출연하던 중, 잡담하다 "000이 영화배우와 모종의 썸쟁이 있다,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15	76. 10. -77. 2.	[서울형사지법 1977. 7. 13. 77고합254] [서울고법 1977. 10. 6. 77노1345] [대법 1977. 12. 27. 77도 3448]	긴조 9호	000(무직, 전직 CIC 정보관, 육군소위, 미 CIA 망원활동)	징자5	대화 중 "미국이 유신체제를 해체하고, 박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고, 000이 부동산 등을 축재, 000가 주한 미대사관에게 뇌물주고, 박동선 사건관련한 미인사가 150여명으로 수뢰자들 중에 포드, 키신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16	77. 4.	[서울형사지법 1977. 7. 14. 77고합356] [서울고법 1977. 11. 2. 77노 1247] [대법 1978. 2. 14. 77도3729]	긴조 9호	인태선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장)	징자3→ 징자2	77신앙 고백선언'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4. 24. 향린교회 연합여배서 사회를 주도하면서 구속인사 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3창을 하며 교회 앞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펼쳐 시위함	지법	안우만, 김동건, 양승태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7	77. 4.	[서울지법 인천지 원 1977. 7. 29. 77고합76] [서울고법 1977. 12. 2. 77노	긴조 9호, 변호사법, 횡령	000 (농업)	징자1→ 징자1집2	동리거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3명과 대화중, "사기 및 도박죄로 구속되어 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000를 김일성 첩으로 보내면 이복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해 구속되었다"고 말함.	지법	최병규, 김중곤, 이문재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368]							
18	77. 2.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7. 7. 30. 75 고단172, 77고합54] [서울고법 1977. 11. 9. 77노1367] [대법 1978. 1. 31. 77도3809]	긴조 9호, 공문서위 조동행사, 국가모독, 경범죄처 벌법	전대열 (통일당 선전국장)	징자2→ 징자1	민중통일당 당보 제작실무책임자로서 긴급조치를 비판 하는 양일동 대표최고위원의 송년사를 게재배포하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선언문의 내용을 내외신기자들에 게 배포하고(국가안전과 위신을 해함), 민주청년협의회 창립선언문 등 유인물을 보관함	지법 고법 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조 언, 고중석, 이철환 김용철, 이영섭, 김운행, 유태홍	
19	77. 4. 19.	[전주지법 1977. 8. 17. 77고합52] [광 주고법 1977. 11. 24. 77노379]	긴조 9호	최인규, 손인범, 최갑선(학생)	징자2(최인규), 징1-1.6자1(손 인범), 징1.6자1집3(최 갑선)→징1.6자 1집3(손인범)	기독교학생회원으로 활동 중인 전북대학생들로, 4.19.기념 일을 전후하여 시위를 결의하고 '고난동참투쟁선언'이 라는 제목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희생을 강 요하는 유신체제의 철폐와 구속학생과 교수의 석방, 언 론탄압중지, 학원자유보장' 등 내용의 원고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전주 시내 교회와 전북대 구내에 배포(사실왜 곡 표현물 배포)	지법 고법	오병선, 노재승, 강길봉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20	77. 2.	[광주지법 1977. 8. 18. 77고합66] [광 주고법 1977. 11. 10. 77노362]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3→ 징자1.6	대화 도중, "박정권은 언제 무너지겠느냐, 자신이 김대 중 선거참모였으며 부정선거로 김대중이 낙선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자신이 입을 열면 여러 사람 이 다칠 상황이었는데 정보부 김모국장이 찾아와 눈감 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말하고, 1972. 대통령선 거와 통일주체국민대회의 대의원제도 등에 관한 비판 발언	지법 고법	문영택, 김삼기, 양태종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21	76. 12. 18. -77. 5.	[서울형사지법 1977. 8. 19. 77고합270, 355] [서울고법 1977. 11. 30. 77노1488] [대 법 1978. 3. 14. 77도	긴조 9호	이재오(교사), 최동전(출판업), 정수일(농업)	징자3~징자2→ 징자1.6(이재오 , 최동전), 징자1(정수일)	극단 '상황'대표인 이재오는 본인이 연출한 단막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자행하다 카터 미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인 외교적 망신 받는 내용으로 묘 사하고(사실 왜곡전파), 서울시내에 뿌려진 긴급조치 해 제, 유신철폐 주장하는 유인물은 KCIA와 미CIA가 민주	지법 고법 대법	이석선, 김창수, 라정옥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민문기, 이일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4102]			화운동 방해목적으로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함(정부기관 개입 등의 유언비어 날조유포)	강안희, 정태원	
22	77. 1.	[육군보통군법회의 1977. 8.30.77보군형공제66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8.12.7 77고군형항제678호] [대법 1978.3.14.78도204]	긴조 9호	000 (하사관후보생)	징자1	군입대 전, '창작과 비평사에서 서적판매일을 하는 동안 반공법위반죄로 복역 중인 김지하가 쓴 '오적'을 대학생들로부터 부탁 받고, 부산대생으로부터 '오적'이 게재된 사상지를 빌려 받아 전자복사실에서 2부를 복사하여 입수한 후, 수차례에 걸쳐 숙독하여 동 시를 현 정부의 사회지도층에 비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언비어를 날조, 또한 동 시를 여러 차례 재복사하여 유포	보군 이규석
						고군 이인수, 김종성, 서인후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23	77. 4.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7. 8. 31. 77고합87] [서울고법 1977. 11. 4. 77노1489]	긴조 9호	0 0 (중학교사)	징자3	수업중, "박정권은 독재다, 기업주들이 노무자들을 혹사하고 자기 권리를 못 찾을때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후 대우개선을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비료값을 60%나 인상해서 농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다, 중정은 인간지옥이다, 땅굴을 발견해도 정치적 혼란을 안보면으로 돌리기 위해 안보용으로 늦게 발표한다" 등의 말을 함	지법 이상범, 이치호, 전봉진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24	74. 3. -77. 2.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9. 3. 77고합76] [서울고법 1978. 1. 19. 77노1487] [대법 1978. 4. 25. 78도317]	긴조 9호, 반공법, 병역법, 주민등록법	장기표	징자5→징자3 (민중의 소리 교부의 점은 무죄)→징자2.6	1974. 3. 민청학련 구성원 김병곤의 부탁으로 '민중의 소리'제하의 학생, 노동자, 농민의 곁기를 선동하는 내용의 275행 가사의 표현물을 작성하고(반국가단체 활동이롭게 함), 77. 2. 청계피복노조 민중덕에게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고(이적행위), '노동지침서', '기회주의적 민주반혁자를 폭로규탄한다'제하의 유인물을 제작(사실왜곡전파 표현물 제작)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25	77. 4. 7.	[청주지법 1977. 9. 6. 77고합68] [서울고법 1977. 12. 16.	긴조 9호	000 (대명중동구락부장)	징자2	사단법인 대명중동구락부장직에 있는 자인바, 윤보선 등이 주동이 되어 발표한 '민주구국헌장에 서명 후 '유신헌법철폐무장국민회의'라는 조직적 무장단체 구성	지법 유효봉, 임승균, 문윤길
						고법 박우동, 안중혁,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77노1546] [대법 1978. 2. 28. 78도 32]			을 논의, 발기문 10매를 작성 및 살포	대법 김규복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26	77. 4.	[광주지법 1977. 9. 19. 77고합62] [광주고법 1978. 2. 2. 77노432]	긴조 9호	조봉훈 (대학생)	징자1집2	지법 심의섭, 서석구, 정창환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27	77. 1.	[광주지법 1977. 9. 19. 77고합71] [광주고법 1977. 12. 22. 77노430] [대법 1978. 2. 28. 78도 21]	긴조 9호	00(약사), 000(전도사), 000(무직)	징자1(00, 000), 징자1집2(000)	지법 심의섭, 서석구, 정창환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28	77. 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7. 9. 21. 77고합28] [서울고법 1977. 12. 15. 77노 1565]	긴조 9호	000 (조선일보 보급소장)	징자3→ 징자2집3	지법 김억규, 황상현, 박찬주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29	77. 5.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7. 9. 26. 77고합61, 77고단360] [대구고법 1978. 1. 25. 77노951]	긴조 9호, 절도	000 (행상)	징자2	지법 윤석명, 박국홍, 강문중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30	77. 4. 20.	[서울형사지법 1977. 9. 28. 77고합 489] [서울고법	긴조 9호	성종대 (대학생)	징자1.6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오석락, 이익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977. 12. 15. 77노1623] [대법1978. 3. 14. 78도31]			배포)	정귀호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31	77. 3. 28.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9. 28. 77고합104, 134] [서울고법 1977. 12. 28. 77노1673] [대법 1978. 3. 14. 78도199]	긴조 9호	김천우, 박찬우, 양춘승(대학생)	징자3→ 징자1.6	서울대생들로, 학도호국단해체, 학원사찰 중지, 독도영유권문제, 미국, 일본에 공여한 뇌물사건으로 국제적 위신 추락회복위한 자주외교실행, 긴조해제, 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문' 800매를 제작하고 3. 28. 교내에서 학생들을 모이게 해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배포함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32	77. 3.	[춘천지법 1977. 9. 29. 77고합35] [서울고법 1977. 12. 30. 77노1622]	긴조 9호	000 (고교 교사)	징자1.6→ 징자1.6집3	고교 영어교사로 77. 3. 간디수상정권의 선거패배기사를 보고, 인도정권의 붕괴과정을 한국 정치체제에 비유하고 김영삼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어 신정을 해 주길 바라는 내용의 '신이여!' 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중학 동창인 김영삼 의원에게 우송함(헌법비방) 지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33	77. 4. 4.	[전교사보통군법회의 1977. 9. 29. 77형공제151호] [육군 고등군법회의 1978. 1. 18. 77고군형항제 710호] [대법 1978. 3. 28. 78도364]	긴조 9호, 군무이탈	000 (이병)	징자2	군인신분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YWCA 강당에서 유신헌법, 사회제도개혁, 언론집회탄압 중지 등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헌법개정 주장선동) 보군 박춘서, 정순일, 서용석 고군 정운호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34	77. 5. 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9. 30. 77고합114]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긴조 9호	박창수, 진 철, 임성현, 김광훈(대학생)	징자2→ 징자3(박창수)	한국신대학생들로서, 교내시위를 결의한 후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즉각해제, 현정권 하야를 내용으로 하는 '신앙고백선언서'를 작성하여 유인물을 제작하고 5. 11. 예배실에서 예배후 선언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외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2. 16. 77고합213] [서울고법 1978. 2. 24. 77노1737, 78노 96] [대법 1978. 6. 13. 78도747]			치려다 학장, 학생과장 등 교수들에게 유인물을 빼앗겨 미수에 그침	대법 임항준,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35	77. 3. 25.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7. 9. 30. 77 고합 82] [서울고 법 1978. 2. 28. 77 노1670 , 78노135] [대법1978. 5. 23. 78도813]	긴조 9호 오용식, 이영재, 김하범, 김현수, 정상시(대학생)	징자3(오용식, 이영재), 단2징3자3(김하범, 김현수), 징자2(정상시) →징자2.6~징자2	한국신학대생들로서, 오용식은 현정부비판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호국단명으로 발표할 것을 기도, 이영재, 김현수로 하여금 집회 시위를 교사하여 행동케하고, 정상시, 이영재, 김하범, 김현수는 공동하여 학내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여 집회 주도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강안희, 이영섭, 이일규, 정태원	
36	77. 3.	[서울형사지법 1977. 10. 7. 77고합585] [서울고법 1978. 2. 24. 77노 1671] [대법 1978. 5. 9. 78도718]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 징자2.6 대화중, "서울대는 데모를 막기위해 관악캠퍼스로 옮겼다, 박정희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김승묵, 김항식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37	77. 6. 27.	[서울지법 성동지 원 1977. 10. 7. 77 고합124] [서울고 법 1977. 12. 29. 77노1735] [대법 1978. 4. 25. 78도 139]	긴조 9호	000 (무직, 전직 육군소령, 원호처 원호과장)	징자1→ 징자1집2 술을 마시고 버스안에서 승객들에게 "자주국방은 말뿐이고 현사태는 6·25사변때와 다를 것이 없다,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모순이고 민주주의는 말뿐이다, 국민들을 말도 못하게 잡아간다"는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전파)	지법 박창대, 홍일표, 안성희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강안희, 이영섭, 정태원, 이일규	
38	77. 5. 10.	[대구지법 1977. 10. 12. 77고합187]	긴조 9호	000 (인장업)	징8월자1 청도읍에서 합승한 택시에서 동승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000의 죽음에 대해 "000는 자살하였다, 000은 내 6	지법 신진근, 이석우, 박효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대구고법 1978. 1. 26. 77노1009]			년 후배라서 잘 안다"라고 말함(사실 왜곡전파)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39	77. 4.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10. 12. 77고합119] [서울고법 1978. 2. 24. 77노1797] [대법 1978. 5. 9. 78도 717]	김조 9호	박종열 (무직)	징자2	박형규 목사의 아들로서, 문익환 목사의 처 박용길로부터 '민주구국헌장'을 교부받아 서울대 철학과 4년 김재명에게 교부하고,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민주회복을 위한 모임을 소개하고 학원의 언론자유를 소생시키자는 내용의 '격문'제하 유인물을 소지함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40	77. 4. 1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10. 12. 77고합109] [서울고법 1978. 2. 23. 77노1771] [대법 1978. 5. 9. 78도 746]	김조 9호	김재명, 오세범, 정의현(대학생)	징자3→징자2 (오세범, 정의현), 26(김재명)	서울대학생들로서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학도호국단해체, 유신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국보위법폐지, 대통령 직선제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월선언문', '민주구국헌장서문'을 제작하고,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함.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41	77. 3-4.	[서울형사지법 1977. 10. 15. 77고합379] [서울고법 1978. 1. 23. 77노 1796] [대법 1978. 4. 11. 78도484]	김조 9호	정명기(전도사), 김정택, 신철호, 임성우, 남호(신학대생)	징자2(김정택), 징자1.6 (정명기), 징자1(신철호, 임성우), 징자1집2(남호)→징자1.6~징자1집2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김조 무효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윤보선 외 9명 명의의 '민주구국헌장'을 읽고 소지하다 김정택에게 교부하고, 감리교 신학대 명의의 '시국에 대한 결의'를 초안작성해 교내에 배포할 것을 모의하였으나 사전발각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42	77. 5.	[청주지법 충주지원 1977. 10. 19. 77고합38, 77고단]	김조 9호, 사문서위 조동행사	000 (행상)	징자2	행상판매중, 동네부녀자들에게 비누를 사라고 하면서 "3년후면 이북 김일성이가 내려올텐데, 비누한장 팔아 주면 축원을 해주겠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임순철, 김평우, 이홍복
						고법 박우동, 안종혁,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33] [서울고법 1978. 2. 10. 77노 1734] [대법 1978. 5. 9. 78도588]				김규복 대법 이일규,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43	77. 5.	[부산지법 1977. 10. 20. 77고합476] [대구고법 1978. 2. 16. 77노1090] [대법 1978. 6. 13. 78도706]	긴조 9호, 상해,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분실 기재동행사, 밀항단속법	000 (무직)	징자5 (밀항단속법 무죄)	현행헌법 개정운동, 5.16반란 정치인 숙청작업 등의 내용으로 '민주봉사단의 소리'제하 문서를 작성하여 부산 시내 각 대학, 국회의원, 신문사 등에 발송하고 부산시 내 일원에 살포함	지법 윤경현, 이신섭, 진병춘 고법 박문식, 안용득, 조열래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44	77. 6.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690] [서울고법 1978. 2. 28. 77노 1932] [대법 1978. 5. 23. 78도814]	긴조 9호	000 (점술가)	징자4→ 징자2	집앞에서 여대생 3명의 손금을 봐주다가 "자연법칙에 따라 모든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맑스주의 국가인 소련, 동독같은 나라도 잘 살고 있다, 박대통령은 1인독재며 빈부차가 심하다"라고 말함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정태원,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반공법 위반 징 10일자1선고(74. 4. 6.)받고 만기 출소
45	77. 4.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10. 28. 77고합138] [서울고법 1978. 3. 2. 77노1825] [대법 1978. 5. 9. 78도 719]	긴조 9호	양동채 (대학생)	징자2→ 징자1.6	한신대생으로 구속목사, 학생의 석방위한 대학내 기도회를 개최하고자 유인물을 제작하려하였으나 신고에 의해 미수에 그침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오석락, 이철환, 김성만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46	77. 1-5.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521] [서울고법 1978. 3. 16. 77노1822] [대법 1978. 5. 23. 78도881]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4→징자1.6	싸움중 "김일성이 쳐내려 오면 세상이 뒤집히고 박정희도 죽는다"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포), 주점에서 "김일성은 똑똑하다, 박정희는 정치를 잘못하고 여기는 살기가 힘들다"고 말함(반국가단체 구성원 찬양고무)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오석락, 안종혁, 김성만
							대법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47	76. 77. 3.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670] [서울고법 1978. 2. 24. 77노1824]	긴조 9호, 반공법	000 (운명사주업)	징자2	대화중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북은 김일성이가 똑똑해 군사력은 이북이 우세하다, 박정희는 독재자다, 나는 현정부에 반대한다, 카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북의 정규군은 우리보다 우세하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48	77. 4.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465] [서울고법 1978. 3. 9. 77노1985] [대법 1978. 6. 13. 78도756]	긴조 9호, 간첩, 국보법, 반공법	000 외 3인 (대학생)	무기정역(000 외 1인), 징자6(000), 징자3집5(000)→징자3.6(000), 징자10(000)→징자3(000, 형경정), 징자9(000)	000 외 3인은 제일교포로 각각 부산대 대학원 화학과, 한양대 의예과, 서울대사회계열 재학생들로서, 000는 일본내 조총련계 학생단체 조선문화연구회에서 성명불상 지도원에게 포섭돼 사상교육을 받고,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 파악 등의 지령을 받고 사업보고문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간첩하고, 000 외 1인 등에게 접근하여 북한방송,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청취하도록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방송을 청취하고 사상학습을 함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오석락, 이철환, 김성만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p>※000의 경우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의(한민통) 간부 겸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알려진 000에게 포섭되어 국내 정세,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등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땅굴 견학, 싸움의 소리 등을 구입제공하고 서울대 시위 유인물 민주구국선언, 민족시보 등을 소지하고 북한방송을 청취함</p> <p>※ 한민통은 유신철폐투쟁에 적극적이던 일본 민단내 개혁파 인사들이 김대중과 73. 8. 결성하고 해외반독재투쟁을 전개한 조직으로 이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반국가단체로 판단되었으나, 000는 한민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p>								
49	77. 5.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517] [서울고법	긴조 9호	설 훈, 이민구, 황인국, 서익진, 김창우(대학생)	징자5~3→징자2.6~1.6	고대, 서울대생들로서 유신헌법철폐시위를 벌이고자 '구국선언문' 제하의 유인물 150매를 제작배포하고, '학원문제의 본질' 제하 유인물 200부를 제작하여 서울대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오석락, 안종혁,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8. 2. 23. 77노 1931] [대법 1978. 5. 9. 78도668]				교내에 배포함	대법 김성만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50	77. 3. 25. [부산지법 1977. 10. 31. 77고합461] [대구고법 1978. 3. 8. 77노1140]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징10월집2, 징8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 부산교도소내 복역하면서 판결확정 전 2차에 걸친 밀항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들은 재일조선인 총연맹측의 허위선전, 선동에 공감하고 자신의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측해 정부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밖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자 "저 소리는 이북에서 해방시키러 오는 전쟁의 소리다, 저 소리는 이북에서 나를 구조하러 오는 소리다"고 말하고(북괴를 찬양, 고무, 선전), 동 교도소내에서 '000여사'라는 책을 보면서 "000 저격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입국할 때 몇 돈의 금만 가지고 들어와도 적발이 되는데 어떻게 권총이 반입될 수 있냐, 정부에서 눈감아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민단보다는 조총련이 우세하다,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함(북괴활동에 동조함과 동시에 현정권을 비방하는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오장희, 박장우, 김영훈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51	75. 7. -77. 2. [전주지법 1977. 11. 5. 77고합63] [광주고법 1978. 3. 11. 77노504] [대법 1978. 6. 27. 78도 880]	긴조 9호, 반공법, 매장및묘지예관한 법률	000 (목사)	징10자7	기독교 장로회 선교자유 위원회 전북 위원장으로, 설교중 "월남 공산당 지도자 트랑방트라는 공산주의자지만 오로지 공만을 위해 일한 사람이고 월맹의 호지명도 사심없이 싸운 사람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박정희는 15년간 아무 한 일없이 안보를 구실삼아 국민을 탄압한다, 교역자와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선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불의한 것들에	지법 오병선, 노계승, 김기수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대법 김운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의해 투옥되었다, 현정부는 정치와 3권분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함		
52	77. 7.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7. 11. 15. 77고합78] [대구고법 1978. 2. 9. 77노1148] [대법 1978. 4. 25. 78도529]	긴조 9호, 절도	000 (무직)	징자4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상선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53	77. 5.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12. 3. 77고합127] [서울고법 1980. 10. 23. 78노97] [대법 1981. 7. 7. 80도2897]	긴조 9호, 반공법, 신용훼손	000 (무직)	징자2집3→ 징자1집2 (긴조 면소)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황도연, 정용인, 김중곤
						대법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54	77. 9.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7. 12. 9. 77고합65] [서울고법 1978. 3. 8. 78노3] [대법 1978. 5. 9. 78도785]	긴조 9호	000 (광부)	징자5→ 징자2	지법	김중수, 이유주, 오행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55	76. 9. -77. 1.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7. 12. 13. 77고합79] [대구고법 1978. 3. 16. 78노13] [대법 1978.	긴조 9호, 상해	000 (학원 이사장)	징자2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박문성, 조열래, 안용득
						대법	라길조, 주재황,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5. 23. 78도867]					양병호, 임항준	
56	77. 8. 27.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7. 12. 13. 77고합182] [서울 고법 1978. 3. 15. 78노148] [대법 1978. 5. 23. 78도 940]	긴조 9호	000 (행상)	징자2 일정직업 없는 자로서 버스 차내에서 "박정희가 나쁘 다, 박정희와 대결하여 죽이겠다, 0은 부인이 3명이다, 영화배우와 X을 000"고 외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이일규,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항소심에서 범 행당시 음주로 사물변별, 의사 결정 능력없는 상태였음을 항 변하였으나 배 척
57	77. 6.	[대구지법 경주지 원 1977. 12. 13. 77고합73] [대구고 법 1978. 3. 8. 78 노12] [대법 1978. 5. 23. 78도804]	긴조 9호	000 (서적 외판원)	징1.6자2 책판매를 권유하다, "박정희에게 고개 숙이기 싫어 책 장사 한다, 박정희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먼저 죽는 다, 000의 형이며, 000의 장인이 이북에서 한자리를 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안되고, 김대중씨 가 구속된 것은 박정희보다 똑똑하니까 잡아 넣었다" 고 발언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58	77. 8.	[서울형사지법 1977. 12. 23. 77고 합7102] [서울고법 1978. 6. 23. 78노 167] [대법 1978. 9. 12. 78도1882]	긴조 9호	000 (저술업)	징자2 5.16은 민주사회주의에 의한 합헌, 합법적인 혁신정당 을 인질외교의 제물로 했다, 보안처분은 일제식민지에 서도 이러한 가혹한 처분은 없었다고 하는 서면을 작 성해 인쇄소에 의뢰함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59	77. 8. 6.	[광주지법 1977. 12. 23. 77고합164] [광주고법 1978. 6. 1. 78노41]	긴조 9호, 반공법	000 (옛장수)	징자2 광산고물상영업소에서 종업원들과 사소한 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팔세받을 사람이 아니다, 박정권은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는 무너진다 , 김일성이는 내 형님이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심의섭, 리종훈, 한정덕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1977. 1. 25. 서 울고법에서 긴 조 9호로 징1선 고 후 1977. 4. 8. 출소
60	75. 12. -77. 5.	[서울형사지법 1977. 12. 26. 77고	긴조 9호, 국가모독	양성우 (시인)	징자3→ 징자2 전직 고교교사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주최 '구국금식기 도회'에서 체제비판하는 '겨울공화국'낭독건으로 파면당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긴조 해제로 인 한 검사의 형경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합586] [서울고법 1978. 6. 30. 78노 196] [대법 1978. 9. 26. 78도1992] [서울형사지법 1980. 2. 22. 80초79]			한 사람으로서, 75. 12경 유신체제비판을 주제로 장편시 '노예수첩'을 작성하여 77. 4.경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미 국인 교수 등에게 교부하고 일본 잡지 '세카이'에 번역 게재토록 하고, 77. 5.경 '우리는 열반이고 책을 던졌다' 는 시를 작성하여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하고 억압정치 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을 비판함(우리나라 국내외 정 세전반에 관해 사실왜곡, 긴조 9호위반)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61	77. 4. 21.	[전주지법 1977. 12. 30. 77고합140] [광주고법 1979. 12. 20. 78노60]	긴조 9호	김승한 (무직)	정1.6자1집3 →면소	지법 오병선, 노계승, 김기수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현택
62	77. 3.	[서울형사지법 1978. 1. 18. 77고 합657] [서울고법 1979. 8. 8. 78노 283] [서울형사지 법 1980. 3. 14. 80 초81]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6집3→ 징자1집2(형경 감)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63	77. 3.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8. 1. 20. 77고합265] [서울 고법 1978. 5. 4. 78노194] [대법 1978. 7. 25. 78도 1390]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64	77. 8.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8. 1. 20. 폭처법	긴조 9호, 폭처법	000 (회사원)	징자1→징자1 집3→정8월집2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77고합253] [서울고법 1978. 5. 17. 78노195] [대법 1978. 9. 5. 78도1583]		(형경정청구)	말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주점 주인의 안면부를 1회 가격, 둔부 수회 참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법 1980. 2. 26. 80초10)	
65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1. 25. 77고합899] [서울고법 1978. 6. 30. 78노267] [대법 1978. 9. 26. 78도1925]	긴조 9호	배기선 (대학생)	정자2	국민대 정치외교생으로 '유신정권은 비민주, 반민족 반역사의 독재정권이다, '우리의 침묵은 무엇을 배반하고 있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내에 배포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66	77. 12. 5.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8. 1. 27. 77고합201] [서울고법 1978. 5. 11. 78노268]	긴조 9호	000 (아동복 재단사)	정자1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중정 직원이라 사칭하면서 "올 12월내 전쟁이 난다, 000이 000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김대중의 눈을 가려 일본에서 데리고 왔는데 눈을 떠보니 집 앞이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 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영모, 유 헌, 정극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67	77. 10. 7.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 28. 77고합310] [서울고법 1978. 6. 3. 78노264] [대법 1978. 9. 26. 78도1638]	긴조 9호	홍윤기, 박홍열, 전경재, 최상일, 김용관, 박관석, 심상완, 강 천(대학생)	정자1.6~정자1 →정자1.6~정자1집2	서울대생들로서, 사회학과 주최의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4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나 행사가 연기되자 연 기이유를 밝히라고 하며 해산하지 않고 학도호국단 자율화, 학보 및 신문검열철폐, 징계학생 면책, 총장퇴임을 주장하고 결의문을 작성함(대학당국 허가받지 않고 집회)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68	77. 11.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 28. 77고합341, 346] [서울고법 1978. 5.	긴조 9호, 공무집행 방해, 상해,	김경택, 장기영, 문성훈, 연성만, 양기운, 신희백, 진재학, 여균동,	아래	서울대생들로서, 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대학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을 작성하여 11. 11. 교내 학생식당에서 구호를 외치고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선언문을 배포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긴조 해제로 면 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2. 78노292] [대법 1978. 9. 12. 78도 1526] [서울고법 1980. 1. 11. 78노 292]	채물손괴	이철국, 김부겸, 이창호(대학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형량> 징자3(김경택, 장기영, 문성훈, 연성만, 양기운), 징자1.6(신희백, 이철국, 김부겸, 이창호), 징1.6단1자1.6(진재학, 여균동)→징자1~징자1집2(진재학)→면소(신희백)							
69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2. 1. 77고합 877] [서울고법 1978. 6. 23. 78노 388] [대법 1978. 9. 26. 78도1884]	긴조 9호	김성만, 고광진 (대학생)	징자1, 징자10월→징1 0월자1(고광진)	고려대학생들로서 77. 11. 7. 반정부시위를 위한 유인물 작성(대학자율화, 박동선사건, 양심법석방, 유신헌법철폐, 민주헌정회복등)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움(당국의 사전허가없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시위 및 표현물에 의한 헌법폐지주장)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70	77. 4.	[광주지법 1978. 2. 2. 77고합186] [광주고법 1978. 6. 1. 78노96] [대법 1978. 9. 12. 78도 1630]	긴조 9호, 반공법	000 (조선대 강사)	징자3.6	국문과 강사로 강의중, "우리나라는 빈부차가 심한데, 북한은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살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식량원조해준다고 해도 국제여론, 체면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정신력이 강인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인권문제를 선두에 서서 인도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어 카터가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71	77. 1. 24.	[광주지법 1978. 2. 2. 77고합192] [광주고법 1978. 6. 22. 78노101] [대법 1978. 9. 12. 78도 1836]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면허한약종사)	징자2별20만	한약방종업원으로, 치료중 환자들에게 "박정희는 정치가 엉터리이고, 김일성은 독재정치를 하여도 박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정치를 한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정치를 할 사람은 김대중이나 야당세력이 해야 한다"는 발언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72	77. 10. 12.	[서울형사지법	긴조 9호	노영민, 김거성	징자5~징단2장	연세대생들로서 기독교학생반 국제사회부 활동을 하면	지법 허정훈, 이종욱,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978. 2. 3. 77고합 797 [서울고법 1978. 5. 31. 78노 387] [대법 1978. 9. 12. 78도1624]		(대학생) 3자3→징자2.6 ~단1장자1.6	서 형제교회에서 '구국선언서'를 작성하고, 위 선언서 500매를 연대에서 채플시간후에 강당출입문에서 뿌리고, 신과대 예배실에서 배포함	우의형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73	77. 10.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8. 2. 4. 77고합347] [서울 고법 1978. 6. 26. 78노293] [대법 1978. 9. 12. 78도 1878]	긴조 9호	반병률, 이증연, 김영현, 김태경, 김사인(대학생)	징자2~징8월자 1→징1.6자1~ 징8월자1집2	서울대생들로서, 수회에 걸쳐 헌법폐지, 긴조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제작예비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74	77. 8.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8. 2. 6. 77 고합67] [서울고법 1978. 5. 17. 78노 266] [대법 1978. 8. 22. 78도1571]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5→ 징자2.6	대화중, "대통령은 날도적놈이다, 매호당 190만원씩 빚 을 지워 놓았다, 22년이나 대통령을 했으면 똥지 내년 에도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 날도적 놈이다, 박정희 도 당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중수, 이유주, 오행남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75	77. 11.	[서울형사지법 1978. 2. 6. 77고합 882] [서울고법 1978. 6. 29. 78노 364]	긴조 9호	유재현 (대학생)	징3. 6자3 →징자2	서강대생으로, 11. 12. 학원자유, 유신철폐시위를 하다 동 대학생 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11. 14. 교내강의실에서 구속학우를 위해 묵념을 하자고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 교문을 향하면서 구호를 외침(학교장 사전 허가없이 학생 시위를 유도 감행 및 헌법폐지주장)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6	77. 12. 18.	[서울형사지법 1978. 2. 6. 78고합 21] [서울고법 1978. 6. 10. 78노	긴조 9호	기길동, 권태욱, 김명원(대학생)	징자5(기길동), 징1.6자1 (권태욱), 징자4(김명원)	서울대생들로, 기장청년 서울연합회명의로 '기독청년 민주화 투쟁선언' 제하의 선언서를 작성, 현수막을 제작하고 수도교회 예배실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유신 철폐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429] [대법 1978. 8. 22. 78도1637]			→징3.6자3~징2.6자2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77	77. 11.	[서울형사지법 1978. 2. 6. 77고합 886, 908] [서울고법 1978. 6. 29. 78노263]	긴조 9호	이순범, 이효율, 박태율 (대학생)	징자2→징자1.6~1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8	77. 11. 15.	[서울형사지법 1978. 2. 8. 77고합 887] [서울고법 1978. 6. 7. 78노 314] [대법 1978. 9. 12. 78도1774]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징자1.6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79	77. 10. 25.	[서울형사지법 1978. 2. 10. 77고합865] [서울고법 1978. 6. 19. 78노 389] [대법 1978. 9. 26. 78도1834]	긴조 9호, 특수공무 집행방해, 폭처법	000 외 6명	징자5(000 외 1인), 징자3(000), 징자2(000 외 1인), 징자1(000), 단1장1.6(000)→징3.6자3~징자1집2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80	77. 11. 24.	[광주지법 장흥지원 1978. 2. 16. 77고합115] [광주고법 1978. 7. 13. 78노118] [대법 1978.	긴조 9호	고영근 (목사)	징자6	지법 정태규, 오세빈, 신정식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김윤행, 이영섭,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9. 26. 78도2068]					김용철, 유태홍		
81	77. 11. 18.	[서울형사지법 1978. 2. 17. 77고합891] [서울고법 1978. 7. 7. 78노475] [대법 1978. 9. 26. 78도2071]	긴조 9호	임영준, 한승동, 장정수, 김용진(대학생)	징자4(임영준, 한승동, 장정수), 징자3(김용진) → 징자3(임영준, 한승동, 장정수)	서강대학생들로서 유신헌법철폐를 주장하는 '서강선언문'과 플래카드 1, 200매를 제작하여 교내에서 배포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사실왜곡전파, 헌법폐지선동)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82	77. 3. 16.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8. 2. 21. 77고합103] [대구고법 1978. 7. 27. 78노273] [대법 1978. 10. 10. 78도2182]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1	마을 길을 넓히기 위한 새마을 사업장에서 부녀회장, 동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일하는 것을 보고 "새마을 사업때문에 배고파 못 살겠다, 현정부가 없어지든지 한놈이 죽든지 해야지, 이북은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마을 사업때문에 못산다"고 말함(사실왜곡,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83	77. 11.	[대구지법 1978. 2. 28. 77고합477] [대구고법 1978. 5. 11. 78노266]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	술을 마시면서 대화중, 쌀막걸리 제조판매조치에 대해 "쌀술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선거만 끝나면 나오지 않는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물러나 있는 것은 내년 선거 때문이다, 박대통령이라고 부정이 없을리가 있나"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주성, 김인수, 손기식 고법 박돈식, 안용득, 조열래	
84	77. 11. 16.	[대구지법 1978. 2. 28. 77고합479] [대구고법 1979. 3. 31. 78노265]	긴조 9호	000 (채수리공)	징자1집2	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대화도중, "땅굴은 북한이 판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지법 이주성, 김인수, 손기식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85	77. 12.	[서울형사지법 1978. 3. 9. 78고합32] [서울고법 1978. 6. 14. 78노	긴조 9호	000 (교교 교사)	징자2→ 징자1.6	국사 담당 교사로, 수업중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충효사상교육은 1인독재를 위한 수단이다, 유신헌법 국민투표 개표할시 반대표 몇 트럭을 불살라버렸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471] [대법 1978. 9. 12. 78도1757]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86	77. 3.	[부산지법 1978. 3. 13. 77고합904] [대구고법 1978. 7. 20. 78노365] [대법 1978. 11. 14. 78도 2191] [대구고법 1979. 3. 8. 78노 957]	긴조 9호	000 (임업)	징자4→ 징자3→ 무죄	대화중, "000이가 미국가서 발언한 것은 진심이 아니고 중정 조종을 받고 꼭두각시짓을 한 것이다, 박정희는 부정부패가 엉망진창이며 국민 대다수가 불만이 많고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뒤집어진다, 윤보선, 김대중도 아무 죄도 없는데 징역을 살린다, 새마을 운동도 아무 것도 아니고 겉치레다, 신문도 자유보도를 못하게 하니 무법천지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춘
						고법 박돈식, 안용득, 조열래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철, 김용철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87	77. 6.	[서울형사지법 1978. 3. 24. 77고합916] [서울고법 1978. 7. 20. 78노 612] [대법 1978. 11. 28. 78도2203]	긴조 9호	000 (음반제조업)	징자26→ 징1.6자1집3	오아시스 레코드사 대표로서, 대화중 "울산땅은 000이가 다 먹고 마산은 000가 거의 다 먹었다, 박정권이 시정쇄신 운운하지만 형식에 불과하다, 박정권은 디테이 터쉽이다"라고 말함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88	77.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4. 7. 78고합21] [서울고법 1978. 7. 28. 78노561]	긴조 9호	000 (무직)	징10월자1→ 징10월자1집2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한신대학원, 서울대 재학생들과 대화중, "지난 10. 25. 연대 학생시위때 기동경찰관에 의해 학생이 사망했고 1명은 최루탄에 맞아 실명했다고 하더라"는 말을 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89	76. 77. 1.	[서울형사지법 1978. 4. 13. 77고합862] [서울고법 1978. 8. 30. 78노 805] [대법 1978. 11. 28. 78도2476]	긴조 9호, 공문서부정사용	000 (무직, 육군 중령 예편)	징자26→ 징자1(공문서 부정사용 무죄)	용인공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에게 "000가 대통령 XXX다, 71년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다, 총통이 되어 영구집권을 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90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5. 2. 78고합19] [서울고법 1978. 10. 6. 78노742] [대법1979. 12. 26. 78도2786] [서울고법 1984. 10. 12. 80노199]	긴조 9호, 횡령	000 (한국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징자2→ 징자1→ 무죄, 면소	000이 성관대의 재단운영권을 포기하는 과정에 문교부, 중앙정보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탄원서를 동아일보에 게재함(사실왜곡 표현물 제작배포)	지법	긴조 해제로 면소	
							고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대법		박우동, 정지형
							고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오병선, 김정남, 정성욱			
91	77. 11.	[서울형사지법 1978. 5. 17. 78고합162] [서울고법 1978. 10. 20. 78노786]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1.6→ 징자1.6집3	다방에서 대화중, "000이 과거 여수반란사건에 관련돼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는데 000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처형하지 못하도록 신원보장을 하여 구출되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92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5. 31. 78고합79] [서울고법 1978. 11. 17. 78노850]	긴조 9호	000 (회사원)	징자1.6→ 징자1.6집2	대화중, "000 대한통운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외화낭비, 외도한 것이 탄로나 총리가 가서 사죄를 하고 박대통령이 알고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93	77. 2-3.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8. 7. 14. 78고합63] [서울고법 1980. 1. 9. 78노1275]	긴조 9호	000 (무직, 전 학교 이사장)	징2자3 →면소	학교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당국에 진정, 노력중 "독재정권이 학교를 뺏어갔다, 총칼로 정권 뺏더니 학교까지 뺏어간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 왜곡전파)	집적	이영모, 정극수, 이원국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94	77. 8.	[서울형사지법 1978. 8. 25. 78고합237, 389] [서울고법 1978. 12. 7.	긴조 9호	김병곤 (상고사문제대책협의회 간사)	징자4→ 징자3	향린교회내 대학생부 세미나에서 박기평 등 20여명의 학생들에게 "박정희는 일제시대 만주 군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 토벌경력이 있다, 따라서 현정권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긴조1, 4호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1974. 4. 8.) 받고 형집행정
							고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78노1243] [대법 1979. 2. 27. 78도 3166]			조유포, 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 유신 헌법철폐, 독재정권타도, 노동삼권 보장 등의 구호를 수회외침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95	77. 9.	[서울형사지법 1978. 9. 12. 78고 합473] [서울고법 1978. 12. 21. 78노 1391]	긴조 9호	000 (주부)	징자2.6→ 징자1.6집3	대화중, "000이 영화배우 000네 집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함(허위사실 날조유포)	지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96	77. 4.	[서울형사지법 1978. 10. 2. 78고 합323] [서울고법 1979. 2. 14. 78노 1392] [대법 1979. 12. 26. 79도669]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징자1 집2 →면소	술을 먹고 대화중, "000가 박정희에게 본인의 은사로 미국 모대학 교수로 있는 홍모양과의 재혼을 권유하고 있어 곧 성사될 것"이라는 말을 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김형기, 강현중, 강완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97	77. 10. 25.	[서울형사지법 1978. 12. 7. 78고 합641] [서울고법 1979. 5. 23. 79노 76]	긴조 9호	김병돈 (대학원생)	징자1→ 징자1집3	연대 대학원생으로 '77연세 민주수호 결사투쟁선언' 제하 유인물을 학교 후문앞에 모인 100명 학생들에게 낭독하고 이대 교정을 거쳐 서강대 교정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진우, 정상학, 김학세
98	77. 11.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8. 12. 16. 78고합177] [서울고법 1979. 5. 4. 79노154] [대법	긴조 9호	배남효 (대학생)	징1.6자2 →징자1	서울대생으로, 동료학생들과 함께 언론탄압중지, 긴급조치 폐지, 학도호국단 해체, 윤천주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제작에 필요한 갱지 2, 000매를 운반하여 유인물 제작예비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김윤행, 민문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7. 24. 79도 1379]				한환진, 김용철		
99	77.-78.	[부산지법 1979. 3. 12. 78고합764] [대구고법 1979. 6. 21. 79노325] [대법 1979. 9. 11. 79도 1679]	긴조 9호, 집시법	조화순 (목사)	징자5→징자3 →징자1집2(형 경정청구)	목사로 재직중인 자로, 교회에서 '민주구국헌장'제하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시 받고 함석헌, 윤보선 등 종교인과 재야정치인들과 공동 작성자로 서명한 후, 비슷한 내용의 표현물을 각 4개 제작하고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시위를 주도하고 교회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문잡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독재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정부다"라고 말함(사실 왜곡 전파)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운홍	긴조 해제로 형 경정청구([대구고법 1979. 12. 19. 79초67])
100	77. 7	[대전지법 강경지원 1979. 12. 20. 77고합38]	긴조 9호	조용술 (목사)	면소	충남 부여 홍산교회 '나라와 선교자유를 위한 구국기도회'에 설교중 "새마을 운동은 북한에서 실시중인 천리마운동과 5개구 제도를 배워와 모방실시하는 것이고, 박정희는 정권연장을 위해 고집하지 말고 이제라도 긴급조치를 없애고 유신헌법도 없애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함	지법 예상해, 박재운, 이광열	
101	77. 7.	[광주지법 1980. 1. 8. 78고합184]	긴조 9호	고영근 (목사)	면소	긴조 위반으로 징자6 선고받고 광주교도소 복역중, 77. 7. 14. 보석출소한 후 독재정권의 3S정책 등 비판하는 내용의 '설교자료집'과 '옥중수기'를 배포, 판매함	지법 정태규, 곽준흠, 이재기	긴조 해제로 면소, 긴조 위반으로 두차례 징역형

6)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다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8.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 78. 1. 10.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8. 2. 24. 78고합12] [서울고법 1978. 6. 30. 78노338] [대법 1978. 9. 12. 78도1917]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3→ 징자1.6	택사에서 "대의원선거는 꼭두각시놀음이다, 헌법고쳐 유신헌법을 조작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파)	지법	이영모, 유현, 정극수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2 78. 1. 6.	[전주지법 1978. 3. 29. 78고합8] [광주고법 1979. 12. 20. 78노186]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집4 →면소	친구와 잡담중, "000사건때 000가 죽었어야 정권도 교체되고 00양도 시집갔을터인데, 아깝게 000여사만 죽었다. 간첩이 넘어와서 검거되어 신문지상에 보도할 때 정부가 과장보도하고 있다. 이리 폭발사고는 서울 대학생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 낸 사고이다. 차라리 히틀러같이 독재정치를 하던가 정권이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함	지법	오병선, 노재승, 김기수
						고법	윤관, 이태우, 임현택
3 78.	[서울형사지법 1978. 5. 12. 78고합136] [서울고법 1978. 9. 7. 78노816] [대법 1978. 11. 28. 78도2466]	긴조 9호, 사기, 공시문서 위조 동행사	000 외 2인 (무직)	징2(000), 징자1.6(000 외 1인)→징자1.6집3(000 외 1인)	77. 12. 대화중 "답보물이 있으면 면책자금 용자받을 수 있는데 그 자금중 30퍼센트가 공화당 선거자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함(통일주체대의원 선거 등에 대비해 정부 및 여당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정방출해 주고 이를 미끼로 비밀리에 선거자금 확보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유언비어유포)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4 78. 1.	[서울형사지법 1978. 5. 15. 78고합68] [광주지법 순천지원 1978. 8. 11. 78고합72] [광주고	긴조 9호	이민구 (대학생)	징자2, 징자1.6→면소	고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철폐,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수회 외침	지법	윤상목, 김명길, 현영두
						지법	김용은, 양태중, 정창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법	지법		
		법 1979. 12. 20. 78 노350, 79노341]				고법	윤관, 이태우, 임헌택		
5	78. 1.	[대구지법 경주지 원 1978. 5. 16. 78 고합11] [대구고법 1978. 8. 31. 78노 491]	긴조 9호	000 (회사감사)	징10월자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과 음주하다, "체제가 잘못되었다, 입도 마음대로 못 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산다, 유신체제하에서는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함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박돈식, 안용득, 조열래	
6	78. 1.	[대구지법 1978. 5. 24. 78고합62] [대 구고법 1979. 4. 30. 78노516] [대법 1979. 8. 21. 79도 1305]	긴조 9호	000 (공무원)	징자1집3	칠곡군청 계장으로 대화중, "현 정부도 독재하니까 경제부흥은 됐지만 정치면에서는 독재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박동선 사건으로 감정을 사가지고 단기 철수케 된 것이다, 유신헌법 제정 당시 국민 입을 막고 국민투표에 부쳐 실행된 것으로 부당하다, 명동사건은 미국압력때문에 구속인사를 석방시켰다, 언론자유가 없고 정치적 독재하므로 나는 유신 헌법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이주성, 김인수, 손기식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대법	한환진,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7	78. 1.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6. 7. 78고 합18]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 824]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2.6 →징자1	술집에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XXX, 혁명일으킬 때 무지하게 학살하였다. 박정희 나쁜 놈이다"라고 고성을 외침(유언비어 날조, 사실왜곡 전파)	지법	이상범, 김창수, 장세두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8	78. 3. 12.	[서울형사지법 1978. 6. 13. 78고합 234]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 989] [대법 1979. 2. 13. 78도3138]	긴조 9호	장재철(통일사 회당 노동평의회 이사), 최형호(민주 통일당 당원)	징자1.6, 징자1 →징자1집2	인천 답동성당 노동자를 위한 신구교 연합예배에 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고 고문하고 노동3권을 박탈하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비방하는 유인물 '노동자의 불꽃'을 교부받아 읽고 이를 복 사배포함.	지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상고심에서 '고문' 사실 주장했으나 배척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9	78. 1.	[대전지법 1978. 6.	긴조 9호,	정효순	징자2.6→	통일사회당 충남 대덕연기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충	지법	김학만, 이광열,	향소심에서 독재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6. 78고합15] [서울고법 1978. 9. 21. 78노903]	반공법	(상업)	징자1, 무죄(반공법)	남지구당 현판식에서 "이북의 김정권, 이남의 박정권 다 독재정권이므로 물러나야 한다, 현재 선거의 80퍼센트는 부정선거다"라고 발언함(사실왜곡전파)	김성만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10	76. 5. -78. 5.	[서울형사지법 1978. 7. 8. 78고합332] [서울고법 1978. 11. 14. 78노1053] [대법 1979. 2. 13. 78도3071]	긴조 9호, 공무상 비밀누설	000 (무직,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징자2.6→징자1.6→징1	전화대화중, 중정 2, 3국은 행정부처담당, 해외담당은 6, 7, 8국이 담당한다는 등 중정 직제 및 임무누설하고, 박정권이 미지상군철수, 3자회담, 박동선 사건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압력받고 있어 현 체제 유지 어렵다는 등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11	78. 4. 19.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8. 7. 14. 78고합84]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1158] [대법 1979. 2. 13. 78도3142]	긴조 9호	유허정 (정당원)	징자1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으로 당수 양일동의 100여명의 당원과 함께 4.19 기념탑에 참배하고 나오면서 통대선거반대, 대통령 직선제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노상에서 시가 행진을 함	지법 이순우, 강홍주, 양동관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12	77. 11. -78. 3.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7. 14. 78고합95] [서울고법 1978. 11. 13. 78노1043] [대법 1979. 2. 27. 78도	긴조 9호, 반공법	000 (공원)	징2.6자3→징자1.6	동료들과 대화중, "000이 영화배우 000와 XX, 미군 철수를 환영한다, 김대중이 조금만 더 일본에 있으면 미국으로 망명해 새정부를 세웠을 것이다, 이북에도 자유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함(허위사실유포, 북괴활동찬양)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3070]						
13	77. 12. 78. 5.	[춘천지법 1978. 7. 29. 78고합26. 32]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1082] [대법 1979. 2. 13. 78도3137]	긴조 9호	정성현(중교단체직원), 유남선(학원강사), 박명근(농업)	징자5(정성현, 유남선), 징자3(박명근)→징자2~1	카톨릭 농민회 간부로서, 농협문제, 학원가 반정부 시위 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톨릭 농민회의 소개' 제하 유인물을 배포하고, 봉천천주교회의 인권회복 구속자석방을 위한 특별미사에서 '카톨릭 농민회 간부 구속에 관한 경과'제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함	지법 이태훈, 장준철, 박태훈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14	78. 4.	[부산지법 1978. 7. 31. 78고합292, 372] [대구고법 1978. 12. 21. 78노797]	긴조 9호	이성동, 전중근, 서연자(대학생)	징자1, 징자1집2(서연자)→징8월자1(이성동, 전중근)	부산대생들로서 4.19.의 배경과 의의설명,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대학생들이 반독재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자율화 민주실천선언서'를 작성, 부산대생들 70여명의 주소를 입수해 우편으로 배포하고, 부산내 교내에 배포함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준 고법 박돈식, 조열래, 조무계	
15	78. 5.	[서울형사지법 1978. 8. 18. 78고합326] [서울고법 1978. 11. 30. 78노1309]	긴조 9호	한경희, 박인혜, 오현주, 최정순, 김안나(대학생)	징자2.6(한경희, 박인혜, 오현주), 징자3.6(최정순), 징자1.6(김안나)→징1.6자1(최정순), 징자1집2(오현주, 김안나), 징자1(박인혜)	이대생들로서, 학도호국단비판,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철폐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하여 대강당 채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배포함	지법 허정훈, 김승묵,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16	78. 5. 8.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8. 19. 78고합137] [서울고법 1978. 12. 20. 78노1194] [대법	긴조 9호	부윤경, 서동만(대학생)	징자2→징자1	서울대생으로, 유신헌법폐지와 긴급조치 해제, 학도호국단 해체,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학생민주선언' 400부를 작성하여 5. 8. 교내에서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민주선언을 낭독함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영섭, 김윤행,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1979. 3. 27. 79도 102]				김용철, 유태홍	
17	78. 7. 1	[광주지법 1978. 8. 23. 78고합150] [광주고법 1978. 12. 29. 78노367] [대법 1979. 3. 13. 79도 132]	김형중, 김용출, 양희승, 류재도(학생)	징자4(박형중), 징2, 3자3(김용출, 류재도), 징자3(양희승)→징자2(김용출)	조선대학생들로서 학내계단에 '유신독재타도'라 쓰고 '우리의 결의'라는 유인물에 긴급조치 비판글을 제작하고, 집회 및 시위를 목적으로 학원교육정상화를 위한 '민주학생선언문' 과 '조선대학교 당국에 보내는 글'이란 유인물 준비, 학생들을 상대로 위선언물을 낭독하여 집회 및 시위의 예비음모 주도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18	78. 6.	[광주지법 1978. 8. 23. 78고합151] [광주고법 1978. 12. 29. 78노371] [대법 1979. 3. 13. 79도 123]	노준현, 박현옥, 이영송, 안길정, 한동철, 이택, 박병기, 신일섭(대학생), 김경천(기독교 청년회 간사), 정호철(인쇄소 종업원)	징자5~징자2집3 →징자2집4(한동철, 이택)	전남대생들로서, 조선대 본관앞 계단에 붓으로 유신독재타도라고 쓰고(노준현), 동 대학 송기숙 교수석방을 위한 집회를 교내에서 하고,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과 '우리의 교육지표' 유인물을 제작하여 6. 20. 전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50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집회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19	78. 5. 16.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8. 8. 25. 78고합109] [서울고법 1978. 12. 29. 78노 1268] [대법 1979. 3. 27. 79도149]	김희택, 노창식 (대학생)	징자2	한신대 학생으로, 반정부시위할 것을 공모하여 '5.16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5. 16. 교내 예배실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농민, 노동운동탄압증지, 현정권퇴진, 박동선 사건 실체규명 등의 '우리의 결의'를 낭독	지법	이순우, 강홍주, 양동관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20	78. 5.-6.	[광주지법 1978. 8. 28. 78고합146] [광주고법 1978. 12. 29. 78노380] [대법	송기숙 (전남대 국문과 교수)	징자4	연세대 해직교수 성래운과 국민교육헌장과 현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작성해 전남대 교수 10여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AP, 합동 통신, 아사히 신문, 서울대, 이대 등에 배포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3. 27. 79도 155]				(사실왜곡표현물 제작배포)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판
21	78. 4.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8. 8. 28. 78고합59] [대구고법 1979. 2. 15. 78노 779]	긴조 9호	양춘승 (대학생)	징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선고받고 서울구치소 수감중, 4. 19. 재소자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침	지법 윤석명, 김성용, 박국홍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1978. 3. 14.)
22	78. 3.	[서울형사지법 1978. 8. 28. 78고합 221, 232] [서울고법 1981. 9. 11. 78노1326] [대법 1984. 2. 14. 81도 3202]	긴조 9호, 변호사법, 공갈, 특가법	000 (전 국회의원)	징자3벌1, 300만원→선고 유예, 면소(긴급조치 부분)	강원도 인제군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귀향보고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뽑고 국민은 자기 뜻대로 대통령을 직접선출하지 못한다, 유신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 긴조 9호로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는 등의 발언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대법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23	78. 3. 1.	[청주지법 1978. 9. 1. 78고합71] [서울고법 1978. 12. 11. 78노1279]	긴조 9호	고광진 (무직)	징자2	고려대생으로 1978. 2. 1. 서울형사지법에서 긴조위반으로 징자10월선고받고 항소하여 1978. 6. 23. 서울고법에서 항소기각되어 대법 재판 계속중 1978. 7. 7. 서울구치소에서 청구교도소로 이감된 자인바, 수감 중이던 구치소내에서 "박정권물러내고 민주주의 다시 찾자 , 유신헌법 철폐하고 양심범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24	78. 2. 23.	[서울지법 1978. 9. 1. 78고합244] [서울고법 1979. 1. 26. 78노1293] [대법 1979. 4. 24. 79도 366]	긴조 9호, 반공법	000 (대학생)	징자5→ 징자3→ 징자1(형경정)	경희대생으로 후배 000이 조직한 통일청년연구원 사무실에서 김일성 찬양발언과, 인혁당사건의 문제점, 박정희대통령의 친일경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동선과 전 서울시장 김형욱에 대한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 사실왜곡 전파)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유태홍,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	형집행 중 반공법 위반부분은 징자1로 감형(긴조해제로 형경정, 서울고법 1979. 12. 28. 79초107)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25	77. 12.-78. 3.	[서울형사지법 1978. 9. 6. 78고합218] [서울고법 1979. 1. 24. 78노1316] [서울형사지법 1980. 2. 22. 80초75]	긴조 9호, 사기	000 외 2인 (무직)	징자3(000), 징자2(00), 징1집2(000)→징1.6(00)	대화중, "000는 71. 선거때 중정을 시켜 50만표를 조작하여 당선되었다, 000은 00합섬, 00사 등에 국내재산 1, 000억원 상당을 축재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26	77. 6.-12. 78. 2.	[서울형사지법 1978. 9. 8. 78고합286] [서울고법 1978. 12. 7. 78노1285] [대법 1979. 2. 13. 78도3186]	긴조 9호	000 (상업은행 청원경찰)	징자3→ 징자2	대화중, "인혁당사건은 정부에서 조작한 것이다, 무기 등 중요부분을 외국에서 수입조립한 것인데도 국민에게 국산품이라고 허위선전한다, 장기집권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만들었다, 100억불 수출이라고 하지만 많은 외채갚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둔다, 언론기관을 탄압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함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27	78. 1. 28.	[청주지법 1978. 9. 12. 78고합75] [서울고법 1979. 4. 13. 78노1350]	긴조 9호	박관석 (학생)	징자2→ 징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계속 중 서울구치소 내에서 황명근, 정영환, 최영성, 구윤희 등과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고법	박우동, 정태우, 정지형
28	78. 5.	[청주지법 1978. 9. 12. 78고합73]	긴조 9호	오세범 (대학생)	징자2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내에서 유신헌법철폐, 민주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29	78. 6.	[청주지법 1978. 9. 12. 78고합71] [서울고법 1978. 12. 11. 78노1279]	긴조 9호	고광진 (대학생)	징자2	고려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0월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계류중인 자로, 서울구치소 수감 중 박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 다시 찾자, 유신헌법 철폐하고 양심수 석방하라는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30	78. 6.	[청주지법 1978. 9.	긴조 9호	양성우	징자2	시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 중 긴급조치 해	지법	남윤호, 김정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2. 78고합72] [서울고법 1980. 1. 10. 78노1348]		(시인)	→면소	제, 구속학생 및 민주인사 석방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이우근	정자3확정(78. 9. 26).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 해제로 면소
31	78. 3.	[광주지법 1978. 9. 13. 78고합78] [광주고법 1978. 1. 23. 78노405]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	신민당 광주시당 선전부장으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고등학생들을 불러세워 "독재자가 누구인줄 아느냐, 불란서에 가있는 000는 000가 XX XXX, 유능한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고 무능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간접선거로 대통령 뽑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박정희는 사람을 만여명이나 죽인 XXX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이병호, 장우근, 윤여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32	78. 3.	[광주지법 1978. 9. 15. 78고합94] [광주고법 1979. 1. 23. 78노387] [대법 1979. 27. 79도297]	긴조 9호	000 (국민학교 교사)	징자3	기독교 집사로 유신헌법철폐. 민주인사석방, 박정희 하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씨알의 소리'에 게재하기 위해 우편으로 송부하고 부활절 기념예배에서 낭독할 목적으로 위 기도문을 제작소지함	지법 심희섭, 리중훈, 한정덕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33	78. 8.	[육군보통군법회의 1978. 9. 29. 78보군형제249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8. 12. 11. 78고군형항제682호] [대법 1979. 3. 13. 79도11]	긴조 9호	최갑선, 박중훈, 최동근 (군인)	징자10, 징자7, 징자5→징자2, 징자1집2(최동근)	전주 중앙교회 앞에서 기독교장로회 청년 300여명과 함께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보군		최갑선은 긴조9호 위반으로 징1.6자1집3선고(77. 8. 17.) 받은 경력
							고군 장경삼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34	77. 5. 78. 1-3.	[서울형사지법 1978. 10. 5. 78고합]	긴조 9호	권혁충 (민주통일당)	징자3→징자1.6	유신독재정치 비판하는 '정치인의 양심선언'제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민주통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266] [서울고법 1979. 1. 31. 78노 1611]	사무국 부국장)		이를 배포하고, '함세응 신부 출감소감' 제하 유인물을 소지함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35	78. 6.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8. 10. 19. 78고합34] [대구고법 1979. 2. 7. 78노 885]	긴조 9호	000 (중학 교사)	징1.6자2 →징자2.6	지법 이주성, 박효열, 송창영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36	78. 6. 1.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10. 23. 78고합94] [서울고법 1979. 3. 16. 78노 1574] [대법 1979. 6. 12. 79도863]	긴조 9호, 폭처법, 공무집행방해	신언관, 권오훈, 이병호 (대학생)	징자2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37	78. 9.	아래	긴조 9호, 반공법, 병역법,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000 (군인)	징2자3→징1자2 →선고유예(긴조 면소, 반공법, 직무유기, 병역법 무죄)	보군 송봉준, 이세작, 임주환 고군 황종뢰, 김호현, 김원보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p><사건번호> [육군보통군법회의 1978. 10. 26. 78보군형제470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 1. 16. 78고군형향제789호] [대법 1979. 3. 27. 79도291] [고등군법회의 1979. 6. 19.</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79고군형항 제172호 [대법 1980. 11. 11. 79도2065] [육군고등군법회의 1981. 5. 12. 80고군형항제615호] [대법 1981. 11. 10. 81도1841]							
38	78. 3.	[부산지법 1978. 10. 26. 78고합431] [대구고법 1979. 2. 15. 78노882]	긴조 9호	김천우 (대학생)	징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6.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주의 수호하라, 일본놈 물러가라 고 구호를 외침	지법 주재우, 조건오, 진병춘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1978. 3. 14.)
39	78. 6. 28.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8. 10. 27. 78 고합146] [서울고법 1979. 3. 2. 78노 1553]	긴조 9호	김형국(김대중 비서), 김금동(통일당 인권사무국장), 이성규(국제국 장)	징자2 (김형국, 김금동) 징자1(이성규)	78. 6. 26. 광화문에서 일어난 학생시위소식을 김대 중의 처 이희호에게 말해주고, 6. 26. 학생데모가 아사히 신문에 크게 났다는 말을 민주통일당 중앙 당 집행부서에 얘기하고 6. 29. YMCA 회관 앞에 서 학생들의 데모가 있다는 말을 함(확증없는 헛소 문을 말해 유언비어 유포)	지법 이순우, 장세두, 양동관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이성규는 78. 6. 27. 긴조 9호 위반 으로 징자3집5 선 고받음
40	78. 2. 1., 4. 17.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8. 10. 28. 78고합119] [서울고 법 1980. 3. 13. 78 노1614]	긴조 9호, 신용협동조 합법	인명진(목사), 김수분(조합이 사장), 조지송(목사)	징자1벌30만원 →선고유예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로서 영등포산업개발협 동조합 여신위원인바, 재무부장관 감사명령에 따른 조합운영사항 등 업무검사를 거부하고, 청구할빈교 회 설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진짜 도둑놈들은 밖에 있다, 인혁당 조사했던 검사가 암으로 죽었다" 는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용준, 윤여현, 이홍훈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41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 472] [서울고법 1979. 2. 16. 78노 1624]	긴조 9호, 공무집행방 해, 폭처법	000 (대학생)	징자2→ 징자1	종로 버스정류장부근에서 유신헌법철폐 구호외치 면서 시위하던 중 시위학생 검거하려는 경찰관에게 요치1주의 상해 가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42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 462] [서울고법 1979. 2. 1. 78노 1625]	긴조 9호	허현희 (대학생)	징자2→ 징10월자1	고려대생으로, 6. 26. 종로구 근처에서 유신헌법철폐, 구속학생석방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던 200여명의 학생시위대에 가담하여 시위를 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43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437] [서울고법 1979. 2. 28. 78노1626] [대법 1979. 6. 12. 79도675]	긴조 9호	김현근 (대학생)	단1.6장2자2	서울대생으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울대생 200여 명과 같이 유신철폐 등 구호를 수회 외치고 신문로 방향으로 행진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강안희,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44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438] [서울고법 1979. 2. 16. 78노1627]	긴조 9호	이윤하 (대학생)	징자2→ 징자1집2	서울대생으로 6. 26. 종로구 서린호텔부근 노상에서 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45	78. 2.	[부산지법 1978. 11. 6. 78고합486] [[대구고법 1979. 2. 7. 78노1011]	긴조 9호	이상경, 이희섭, 김승영(대학생)	징자1.6, 장1.6단1자1.6(이희섭)→징자1. 6(이희섭)	부산대, 부산중앙고 중퇴자들로서, 부산대학 내 벽에 '유신, 교련철폐, 박정희 물러가라'고 씌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춘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46	78. 6.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11. 6. 78고합122] [서울고법 1979. 3. 7. 78노1596]	긴조 9호	이광희, 박재순, 김주영 (대학생)	징자2(이광희), 징자1(박재순, 김주영) →징자1집2	서울대생들로서 1978. 6. 12. 교내시위 유인물 '학원 민주선언'을 입수하여 기타 피고인에게 배포(헌법 반대, 긴조 비방하는 유인물 보관소지)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47	78. 6. 14.	[부산지법 1978. 11. 6. 78고합540] [대구고법 1979. 3. 31. 78노992]	긴조 9호	정의영 (무직)	징자1집2	부산대 휴학처분을 받은바 있는 자로, 공소의 이성동, 전중근, 서인자와 수사회합하면서 4.19.의거 18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현시국을 비판하는 유인물 '부대자율화와 민주실천선언서'를 '부산대학 자율화 민주학생단, 부산대학 민족학생연구회'명의로 작성하여 약 500여 매 등사하여 유포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춘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48	78. 6. 24.	[서울형사지법	긴조 9호	강춘구	징자2→	고려대생으로,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생시위	지법	김형기, 강현중,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978. 11. 7. 78고합 452, 633] [서울고법 1979. 2. 26. 79노19]		(대학생)	징1.6자1	에 가담하려다 경찰의 시위진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중,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노동3권보장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강완구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49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7. 78고합 424] [서울고법 1979. 2. 7. 78노 1623]	긴조 9호	임경민 (대학생)	징1.6자2	고려대생으로, 광화문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100여 명의 학생데모에 합세하여 노래와 유신헌법 철폐를 외침(학교장 허가없이 시위)	지법 김형기, 강현중, 강완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50	78. 4.	[대전지법 1978. 11. 10. 78고합78] [서울고법 1979. 3. 23. 78노1645] [대법 1979. 7. 10. 79도 920]	긴조 9호, 반공법	000 (고교교사)	징자3.6→ 징자2→ 징자1(형경정)	수업중, "공산주의가 좋은 점도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민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식하다"고 발언	지법 최규봉, 유계선, 임승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라길조, 주재황, 임항준, 김윤행	형집행 중 긴급조치 9호 해제(1979. 12. 8.)로 긴급조치 부분은 형집행면제(형경정청구, 서울고법 1979. 12. 28. 79초108)
51	78. 4.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1. 10. 78고합141] [서울고법 1979. 2. 28. 78노1644]	긴조 9호, 반공법	000 (목수)	징자1	술마시며 대화중, "우리나라에 비극이 올 것이다, 북한과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진다, 미군이 몰려가야 한다, 박정희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폐, 북한 고무찬양)	지법 김용준, 윤여현, 이홍훈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52	78. 6.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11. 13. 78고합132] [서울고법 1980. 1. 11. 78노 1678]	긴조 9호	연성만 (대학생)	징자2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3년 선고받고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민중생존권보장, 긴급조치 즉각 해제, 구속인사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긴조 9호 위반으로 수감중 재차 긴조 9호 위반, 긴조 해제로 면소
53	78. 6. 29.	[서울지법 수원지	긴조 9호	여균동	징자1.6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년선고받고 복역중, 서울구	지법 이상범, 오세빈,	긴조 9호위반으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원 1978. 11. 13. 78 고합131] [서울고법 1979. 2. 26. 78노 1690]	(대학생)	→징자1	치소내에서 민중생존권보장, 긴급조치 즉각 해제, 구속인사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반복하 여 외침	박형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54	78. 4.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11. 13. 78 고합133] [서울고법 1979. 7. 26. 78노 1679]	김거성 (대학생)	단1.6장2자2 →징자1	연세대생으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내에서 유신헌 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노동자 인권을 보 장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라, 언론탄압 중지하라, 민주헌정 회복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55	78. 6.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11. 13. 78 고합134] [서울고법 1979. 2. 22. 78노 1687]	오성광 (대학생)	징1.6자1 →징자1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 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56	78. 6.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11. 13. 78 고합135]	박태율 (대학생)	징자2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수감중 서울구치 소에서 긴조해제, 학원사찰중지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57	78. 5.	[광주지법 1978. 11. 16. 78고합140] [광 주고법 1980. 1. 10. 78노488]	김광훈 (대학생)	징자2 →면소	한국신학대학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복역중 서 울구치소내에서 긴조해제, 민주헌정회복, 민주인사 석방, 유신헌법철폐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윤 관, 이태우, 입헌택
58	78. 3.	[광주지법 1978. 11. 16. 78고합134] [광 주고법 1980. 1. 10. 78노493]	김창우 (대학생)	징자2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복역중 서울구치소내 에서 긴조급조치 해제, 구속자 석방,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를 외침	지법 문영택, 채영수, 강길봉 고법 윤 관, 이태우, 입헌택
59	78. 9. 1.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8. 11. 17. 78	김천영 (대학생)	징자2→ 징1.6자1	한국외대 학생으로 문무대입소 반대시위를 하기로 하고 '유신체제로 시민, 학생의 자유와 평등이 상	지법 이순우, 장세두, 양동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합185] [서울고법 1979. 2. 26. 78노1646]				실되었다, 유신체제는 독재체제임을 선언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선언문을 작성하여 운동장에서 교련교육중인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함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60	78. 3.	[광주지법 목포지원 1978. 10. 18. 78고합49] [광주고법 1979. 12. 20. 78노437]	긴조 9호	설 훈 (대학생)	징자2 →면소	고려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물러가라, 독재자는 국민앞에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허진명, 김구일, 정남희 고법 윤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2.6확정(78. 5. 9), 긴조해제로 면소
61	78. 2-9.	[서울형사지법 1978. 11. 18. 78고합598] [서울고법 1979. 5. 11. 79노5]	긴조 9호, 집시법	박형규 (목사)	징자5	한완상, 이문영, 서남동, 문익환 등과 함께 박정희 일인독재체제, 유신헌법, 유정희 비판을 내용으로 '3.1민주선언'을 작성하여 78. 2. 24. 기독교회관 급요기도회에서 배포, 낭독발표하고, 9. 4. 기독교장로회 청년 전국연합회 주최의 인권기도회에서 정권 비판발언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중쾌 고법 박우동, 정태우, 정지형	긴조 1호, 내란예비혐의로 15년형 선고복역중 75. 형집행정지 출소
62	78. 6-10.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471, 607] [서울고법 1979. 5. 16. 79노63]	긴조 9호	이호성, 이영우, 안재환(대학생)	징자2(이영우), 장1.3단1자2(이호성), 징1.6자2(안재환)	동국대생들로서, 6. 12. 발생한 서울대 교내시위 유인물 '학원민주선언'을 입수하여 이를 복사하여 충남대 등에 우송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동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중,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철폐, 학원자유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5. 14. 동국대 내 배포된 유신헌법철폐 내용의 '부처님 오신날' 제하 유인물을 씨클모임에서 낭독, 배포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진우, 정상학, 김학세	
63	78. 9.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614] [서울고법 1979. 5. 4. 79노33] [대법 1979. 7. 24.]	긴조 9호,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유수 (학생)	징자2	고려대생으로, 78. 9. 14. 고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반정부집회에 참석하여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고 1, 0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나가려 하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시위하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우, 정지형 대법 양병호, 안병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79도1360]				고, 수위실에서 시위상황을 보고하는 경관을 폭행 함	유태홍, 서운홍
64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 합463, 625(병합)] [서울고법 1979. 4. 27. 79노2]	긴조 9호	송광의 (학생)	징자2→ 징자1	고려대 휴학생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위학생무 리와 불법시위하러다 동대문경찰서로 연행, 서울구 치소에 구속수감중 동년 10. 3. 헌법폐지 구호를 외 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65	78. 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 합445, 634] [서울 고법 1979. 2. 28. 79노23] [대법 1979. 5. 22. 79도 697]	긴조 9호	이승환 (대학생)	징자2	고려대생으로,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생시 위에 가담하여 유신헌법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가담하고,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 치소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등의 구호 를 수회 외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66	78. 6. 12.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 합456] [서울고법 1979. 4. 27. 79노 18]	긴조9호, 폭행	000(학생)	징1.6자2 →징자1	서울대생으로 신문로앞에서 유신헌법철폐 등을 외 치며 학생들과 시위하고(현행협법의 폐지 주장), 데 모학생을 연행하려는 신문로소속 피출소 소속 방 범대원을 우산으로 1회 내리치는 등의 폭력행사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67	78. 9. 14.	[서울형사지법 1978. 11. 30. 78고 합615] [서울고법 1979. 2. 26. 79노 59]	긴조 9호, 특수공무집 행방해	000 (대학생)	징자1→징자1집 2→징10월집2 (형경정청구)	고대 강당에서 개최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 타 도, 학원자유쟁취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고 구호를 외치며 교문밖으로 진출하다 진압경찰관들에게 연 탄 3개를 집어던짐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68	78. 9.	[서울형사지법 1978. 12. 1. 78고합 661] [서울고법 1979. 3. 5. 79노28]	긴조 9호	김주호 (학원생)	징자4→징자3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동일방직해고 근로자 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후 강당출입문 등지에서 "유 신헌법철폐하라, 구속자석방하라, JOC는 빨갱이가 아니고 박정희가 빨갱이다"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대법 1979. 5. 22. 79도681]					대법 이일규,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69	78. 8.	[서울형사지법 1978. 12. 14. 78고합539] [서울고법 1979. 4. 4. 79노206]	긴조 9호, 반공법	000 (필경사)	징자3→ 징자1.6→ 징자1(형경정청 구)	수회에 걸쳐, "북한방송들으면 우리나라에 일어난 큰 사건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000이가 육사 졸업하면 아버지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북한의 전당대회같다" 등의 말을 하고, 태극기 하기식때 "인민공화국 김일성 만세"라고 하고, "북한에는 실업자가 없고 굶어죽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북한고무찬양)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진우, 정상학, 김학제	긴조해제로 형경 정[서울고법 1979. 12. 29. 79초106]
70	78. 8.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12. 14. 78 고합155] [서울고법 1979. 3. 8. 79노6] [대법 1979. 5. 29. 79도745]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4→징자2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승객들에게 "박정희는 XXX다, 이런 놈을 어떻게 뽑았느냐, 연산군과 같은 놈이다, 지금은 왜정시대와 똑같다, 대의원들은 돈을 얼마나 먹었기에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느냐"고 소리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강안희,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만취하여 심신상 실 주장하였으나 배척
71	78. 9. 30.	[서울형사지법 1978. 12. 15. 78고합680] [서울고법 1979. 3. 29. 79노111]	긴조 9호	홍승구 (대학생)	징자2	서강대생으로 고대생으로부터 '78민중선언'제하 유인물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서강대내 아카데미 회원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신헌법 철폐, 독재정권 타도, 양심법 석방 등의 구호외침(헌법폐지주장)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2	78. 7.	[대구지법 경주지 원 1978. 12. 15. 78 고합77] [대구고법 1979. 2. 15. 79노 23] [대법 1979. 4. 24. 79도538]	긴조 9호, 재물손괴, 상해	000 (어업)	징자2	폭행사건으로 파출소로 연행되자, "이 00들 맞좀봐라, 내가 대통령을 죽일려고 서울로 가려했다, 박정희가 윤보선을 쫓아내고 2년간 군정을 하고, 혁명공약에는 정권을 이양한다더니 000 아직도 해먹는다"고 말함	지법 홍기주, 권남혁, 이찬효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73	78. 6.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2. 16. 78고합170] [서울고법 1979. 4. 13. 79노181, 445(병합)]	긴조 9호	김수천, 박치관, 김승배, 박동익, 지영갑, 홍종언, 김창민, 유인택, 임홍순(대학생)	아래	서울대생들로서, 수회에 걸쳐 교내 강의실 등지에서 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요구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원내 질서 병영화, 기관원 사찰, 독도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일자세 미온적, 대령선거에 관련개입 등 내용으로 하는 '학원민주선언문'제하, 78. 6. 26. 종로 네거리에서 집회에 집결하자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고, 6. 12. 교내 강의실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선동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①징자3(김수천), 징10월자1(박치관, 홍종언, 김창민, 유인택, 임홍순), 단8월징10월자1(김승배, 박동익, 지영갑) ②단10월징1자1(지영갑), 징10월자1집2(유인택, 임홍순)							
74	78. 6.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2. 22. 78고합179] [서울고법 1979. 3. 29. 79노170]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징자2	술마시며 노인회관 벽에 걸려있는 대통령의 사진 가리키며 "박정희 저 놈 무식한 놈이다, 한밤중에 총대가리를 들고 들어가 정권을 빼앗은 놈이다"고 외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5	78. 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443] [서울고법 1979. 5. 4. 79노24]	긴조 9호	이정구 (대학생)	장1.6단1자2→ 징자1집2	고려대생으로 6. 26. 서울대생 등 300여명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벌어진 유신철폐데모에 가담하여 긴급조치, 유신헌법철폐, 구속학생석방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76	78. 6. 28.	[광주지법 1978. 12. 21. 77고합170, 200] [광주고법 1979. 2. 27. 79노26, 29]	긴조 9호	정용화, 문승훈, 최동열(대학생)	징자2.6, 징자2, 징자2집3→징자2(문승훈)	전남대생들로, 전남대교수 석방위해 학원자유화와 정권의 시너지 된 전남대를 비방과 함께 자주성을 상실한 현정권은 반민족적 세력의 선봉이라는 내용의 '우리의 교육지표' 및 '전남대 민주학생선언문' 제하 선언문을 작성, 배포하여 동교생들의 농성과 시위를 주도, '민주학생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법 문영택, 박행용, 강길봉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어용교수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집회와 시위주도		
77	78. 9. 14.	[서울형사지법 1978. 12. 28. 78고합611] [서울고법 1979. 5. 11. 79노210]	긴조 9호, 폭처법 000 (대학생)	단1장1.6자1.6 →징자1	고려대생으로 9. 14. 대강당에서 1, 000여명과 함께 '78민중선언'제하의 유신헌법철폐 내용의 유인물을 낭독채택하고 시위를 하고 교문앞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진압경찰에게 돌을 던짐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78	78. 10. 10.	[서울형사지법 1978. 12. 28. 78고합684] [서울고법 1979. 5. 21. 79노208]	긴조 9호 안동일, 김준영(대학생)	단1장1.6자1.6, 징자2.6 →징자1 집2, 징자1.6	동국대생들로, '동국대학교 민주증언단'명의로 '동국인이여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제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10. 10. 교내 도서관 창문에서 교정으로 살포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9	78. 11. 28	[서울지법 1978. 12. 29. 78고합767] [서울고법 1979. 4. 19. 79노214]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3 → 징자1.6	경북대의대 2년중퇴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을지로 4가소재 술집에서 옆자리의 김문규외 2명에게 현정권체제를 비판(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80	78. 9. 14.	[서울형사지법 1978. 12. 29. 78고합613, 766] [서울고법 1979. 5. 16. 79노235] [대법 1979. 8. 21. 79도1432] [서울형사지법 1979. 12. 19. 79초1033]	긴조 9호, 폭처법 000외 2명(대학생)	징자2 →징1집2(000)	고려대생들로서, '피끓는 고대 학우여 즉시 대강당으로 모이자 78민중선언'제하 유인물, '유신헌법' '독재타도' 플랑카드 제작해 9. 14. 강의실에서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대강당으로 모이자로 선동하여 대강당에 모인 1, 0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주도함	지법 김형기, 신명균, 강완구 고법 김진우, 정상학, 김학세 대법 주재황, 임한준, 강안희, 라길조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긴조 해제로 인해 검사의 형경감청 구로 감형
81	78. 7. 13.	[대구지법 1979. 1. 10. 78고합332] [대구고법 1979. 5. 17. 79노97]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집3	경북소재 모 다방에서 "박정희 정권은 정치는 잘하는데 독재다"고 말함(사실 왜곡전파)	지법 박인기, 김성수, 이재철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82	78. 9.	[서울형사지법 1979. 1. 11. 78고합 663] [서울고법 1979. 5. 21. 79노 228]	긴조 9호	최재은, 석원정, 이향순 (대학생)	징자3, 징자1.6, 징자1→징자1 (석원정), 징자1.6(이향순), 징자1집2 (최재은)	숙대생들로, 어용학도호국단체지,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회복, 학원내 모든 기관원 철수, 유신독재정권철폐 등 요구사항을 담은 '교육의 민주화와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고, 교내 화장실 등지 벽에 10. 16.-10. 23. 동맹휴학, 10. 17. 궐기대회, 유신철폐 등 낙서를 하고, '4천 숙명인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자' 제하 유인물 500매를 제작하여 교내에서 배포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83	78. 5.-9.	[서울형사지법 1979. 1. 12. 78고합 719] [서울고법 1979. 6. 20. 79노 232]	긴조 9호	이우재, 성 옥, 양민호(대학생)	징자4(성옥, 이우재), 징자3(양민호)→ 징자3, 징자2	서울대생들로서, 수 회에 걸쳐 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내에 배포하고 6. 12. 교내 시위를 모의하고 6. 26. 세종로 집회를 모의하고 '학원민주선언',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6. 12. 교내에서 선언문 낭독,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민주회복 반독재 선언', '민주시국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9. 13. 교내에서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제	
84	78. 7.-10.	[서울형사지법 1979. 1. 25. 78고합 725] [서울고법 1979. 6. 22. 79노 273] [대법1979. 9. 11. 79도1701]	긴조 9호, 반공법	000 (고교강사)	징3자3	수업중, "박정희가 혼자 입후보해서 혼자 당선되는 이런 선거가 어디 있느냐, 대의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이북 김일성이 오히려 더 똑똑하다"고 말하고 (북한찬양고무),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18세기 프랑스 절대전제군주정치와 같다, 정부에서 국민, 학생에게 궐기대회하도록 지시하고, 중정에서 이북으로 간첩보낸다"고 말함(허위사실유포)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정지영, 황선당, 박천봉	
						대법 이일규,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85	78. 11. 17.	[서울형사지법 1979. 2. 1. 78고합 755] [서울고법 1979. 6. 27. 79노	긴조 9호	손상국 (대학생)	징자1.6	연세대생으로서 '독도는 일본영토인가, 유신체제는 매국체제인가, 입이 있어도 잘못하게 하는 매국독재 박정권을 타도하자, 현 정권은 반공이라는 구실하에 애국자를 공산주의자라하여 옥고를 치루게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천식, 정상학,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316]				한다'는 내용의 벽보를 작성하고, 교내 벽에 부착	김학세	
86	78. 10. 27.	[서울지법 인천지 원 1979. 2. 2. 78고 합150] [서울고법 1979. 4. 19. 79노 288]	긴조 9호	김상우, 박성룡(대학생)	징자2→ 김상우(징자1.6) 징자1(박성룡)	인하공대생으로 유신헌법폐지주장의 유인물을 11. 3. 학생의 날에 살포하기로 공모하고 특히 김상우는 내용구성에 직접참여, 유인물을 작성 살포	지법 주진학, 현순도, 오용호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87	78. 11.	[서울지법 인천지 원 1979. 2. 2. 78고 합165, 770] [서울 고법 1979. 7. 4. 79 노331]	긴조 9호	조용호, 김명식, 광한왕, 안영근, 양홍영(대학생)	징자3(조용호), 징자2.6(안영근), 징자2(김명식, 광한왕, 양홍영)→징자2(조용호), 징자1.6(그외)	인하대생들로, 9. 28. '민주회복에 관한 인하대학생의 선언문' 제하 유인물 400매 제작해 교내등지에 배포, 10. 17. '인하인에게 고향', '양심선언문' 제하 유인물 을 강의실등에 배포하고, 11. 14. 위 대학생으로 긴 조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요구시위를 하기로 하고 유인물, 벽보 등을 제작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지법 주진학, 현순도, 오용호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88	78. 9.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85] [서울고법 1979. 6. 20. 79노374]	긴조 9호	김정남 (무직)	징자2.6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반공교육에 차질있다'는 제목으 로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의 원 중선거구제는 나눠먹기식이다,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긴급조치는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된다,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 신을 작성하여 청와대로 우송하여 도달하게 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89	78. 5.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1] [서울고법 1980. 1. 9. 79노470]	긴조 9호	이대수 (대학생)	징2.6자2 →면소	연대생으로 긴조9호 위반으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 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철폐, 자유민주주의 만세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78. 9.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2확 정, 긴조해제로 면 소
90	78. 6.	[대전지법 1979. 2. 9. 79고합156] [서울고법 1980. 1. 11. 79노480]	긴조 9호	김명원 (대학생)	징1.6자1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2.6자1년 선고 받고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민중생존권보장, 긴급조치 즉각 해제, 구속인사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긴조 9호위반으로 수감중 재차 긴조 9호위반, 긴조 해 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91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61] [서울고법 1980. 1. 23. 79노479]	긴조 9호	양기운 (대학생)	징26자2 →면소	서울대재학중, 긴조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조해제, 구속인사석방, 독재정권 물러가라, 자유와 민주는 고난과 투쟁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92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0] [서울고법 1980. 1. 10. 79노481]	긴조 9호	기길동 (대학생)	징26자2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복역중, 유신철폐,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퇴진,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중지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93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74] [서울고법 1979. 5. 21. 79노465]	긴조 9호	심상완 (대학생)	징16자1 →징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복역중, 유신철폐,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퇴진,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중지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94	78. 6. 2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73] [서울고법 1979. 6. 29. 79노464]	긴조 9호	김용관 (대학생)	징16자1 →징자1	서울대 재학중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년선고받고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즉각 해제, 유신헌법 철폐, 독재정권 물러가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95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77] [서울고법 1979. 6. 21. 79노462]	긴조 9호	이순범 (대학생)	징26자2→ 징16자2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철폐, 민주회복, 긴급조치 해제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96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46] [서울고법 1980. 1. 9. 79노476]	긴조 9호	강성구 (대학생)	징26자2 →면소	연대생으로 긴조9호 위반으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철폐, 자유민주주의 만세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97	78. 10. 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2. 9. 78고	긴조 9호	배규식, 변재용, 조홍섭, 박희옥,	징자2(배규식, 변재용,	서울대생들로, 각 대학의 반정부시위에 동참하고자 '학원민주투쟁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0.	지법 김석수, 임원규, 이영오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합225] [서울고법 1979. 6. 13. 79노 365]		김숙림, 이연숙(대학생)	조홍섭). 징자1(박희욱, 김숙림, 이연숙) →징자1(배규식)	11. 서울대 공대 구내에 배포하고, 서울여대생들로 서 유신헌법, 긴조 9호반대 유인물 '자유민주선언' 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10. 15. 배포하려다가 검거 되어 예비에 그침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98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8]	긴조 9호	이효율 (대학생)	징1.6자1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수감중 서울구치소에서 긴조해제, 학원사찰중지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규봉, 유제선, 이관형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99	78. 3.-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2]	긴조 9호	공유상 (대학생)	징2.6자2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유제선, 이관형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9.)
100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5] [서울고법 1980. 1. 23. 79노473]	긴조 9호	장기영 (대학생)	징2.6.자2 →면소	서울대재학중, 긴조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조해제, 구속인사석방,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제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확정(78. 9. 12.),
101	78. 8. 14. [전주지법 1979. 2. 12. 78고합113] [광주고법 1979. 6. 15. 79노73] [대법 1979. 9. 25. 79도 1601]	긴조 9호	강세현(농업), 김병민, 이철우(전도사)	징자3(강서현, 이철우), 징자2(김병민)	강세현, 김병민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청년회 활동을 하고 이철우는 78. 2. 대법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자1선고 후 만기출소한 자로서, 기독교장로회 전국청년교육대회에서 목사와 전도사 학생들의 석방요구와 유신철폐, 노동3권보장 내용의 가두시위를 주도	지법 이형년, 김기수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확정(이철우)
102	78. 2. [서울형사지법 1979. 2. 14. 78고합 100] [서울고법 1980. 2. 13. 79노 447]	긴조 9호, 반공법	000 (절술인)	징자2.6→징6월 자1, 면소(긴조)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복역중, 긴급조치 철폐하고 민주정치 이룩하라, 반공법철폐하고 남북 대화 이룩하라는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북괴의 남북대화불응 이유에 관한 선전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래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반공법 위반으로 징10월자1(74. 9. 24.), 긴조위반으로 징자2확정(78. 5. 23.), 긴조해제로 면소
103	78. 9.-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2. 16. 78	긴조 9호	하석태, 신명식, 신용남(대학생)	징자3(하석태), 징자2(신명식)	경희대생들로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전체 대학생의 뜨거운 가슴에 호소한다'는	지법 김석수, 임완규, 이영오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고합207, 264] [서울고법 1979. 6. 27. 79노385]			신용남) →징자2, 징자1.6	유인물과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프래카드를 제작하여 78. 9. 19. 교내에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고대, 연대, 동국대, 이대 등 대학 신문사로 위 유인물을 우송하고, 동 사건으로 구속 성동구치소에 수감중, 수회에 걸쳐 유신헌법철폐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름	고법	박천식, 정상하, 김학세
104	78	[부산지법 1979. 2. 22. 78고합708] [대구고법 1979. 7. 26. 79노272]	긴조 9호	유갑중 (민주통일당 부간사장 겸 정치위원)	징자1.6→ 징자10월	74. 4. 16. 긴조 1호로 징자12 선고받고 복역중 75. 3. 16.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자인바, 민주통일당 당사에서 개최된 제 10차 중앙상무위원회에 동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대통령직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초안을 약 6개의 장소에서 반복해서 낭독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 개정 및 반대 주장	지법	주재우, 양태중, 김문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105	78. 5.-6.	[서울형사지법 1979. 2. 23. 78고합714] [서울고법 1979. 6. 29. 79노438]	긴조 9호	조희연, 김준목, 권호영, 이대현 (대학생)	징자4(조희연, 김준목), 징2.6자3 (권호영, 이대현) →징자3, 징자2	서울대, 명지대 중퇴생으로, '범국민민주수호위원회' 명의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언론자유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자 농민 서민의 희생위에 소수만이 배부르는 오늘의 경제체제를 거부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부하자'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서울, 부평, 인천 등지에 발송하고, '우국학도여러분' 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서울대, 숙대, 서강대 등에 발송하여 배포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106	78. 10.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2. 23. 78고합220] [서울고법 1979. 5. 24. 79노391] [대법 1979. 7. 24. 79도1425]	긴조 9호, 반공법	000 (언론인)	징자2→ 징자1.6→ 징자1	신민당 당원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으로, 술마시며 잡담중, "81년에는 박사장도 꺼구러진다, 81년에는 이북에서 쳐들어오는데 반드시 이북이 이긴다, 여기는 말로만 민주주의지 반독재다, 김대중을 박사장이 감금시켜 놓고 있다"고 발언	지법	김석수, 임완규, 이영오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민문기, 이일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김용철, 정태원	
107	78. 6.	[광주지법 1979. 2. 24. 79고합6] [광주 고법 1979. 7. 24. 79노122]	긴조 9호	성래운 (전 연세대 교수)	징자2	76. 2. 연대에서 재임용탈락된 후 해직교수협의회 회장, 인권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전남대 송기숙 과 국민교육현장 및 현재 교육실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제하 유인물을 작성 광주, 서울의 각 대학교수 찬성 서명을 받고 6. 26. 인권운동협의회 석상에서 함석헌, 김승훈, 문동환 등에게 내용을 보고함	지법 심의섭, 한정덕, 권준홍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108	78. 6. 12, 9. 13.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9. 2. 24. 78고합258] [서울고 법 1979. 6. 13. 79노422] [대법 1979. 9. 11. 79도1762]	긴조 9호	양시열, 김영상, 정동구 (대학생)	징10월자1→ 징10월자1집2 (김영상, 정동구)	서울대생으로, 교내에서 200여명의 동료학생들과 유신철폐를 외치는 시위를 함(헌법폐지비방)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박천식, 정상하, 김학세 대법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109	78. 10.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9. 2. 24. 78고합296, 79고합 7] [서울고법 1979. 6. 15. 79노458]	긴조 9호	백삼철, 정경연, 장준영, 김선택, 정태운, 주대환(대학생)	징자2(백삼철), 징자1.6(정경연), 징자1(장준영, 김선택, 정태운, 주대환)	서울대, 고대, 성대, 서강대생들로서 회합하여 78. 10. 12. 기해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시위를 하기로 하고 유인물 제작배포하기로 하고, '6개대학 민주선언'제하의 유인물, 광화문 네거리에서 가두 집회를 가지자, 불법긴급조치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자 등의 행동강령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구속수감된 영등포 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침	지법 고영구, 이홍훈, 박병휴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110	78. 6. 12, 9. 13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9. 2. 24. 78고합257, 259, 79고합10] [서울고법 1979. 6. 21. 79노	긴조 9호	김종복, 조성을, 이은태, 서종원, 이영환, 이연규(대학생)	징자3~징10월자 1집2→징자2~징 10월자1	서울대생들로서, 6. 12. 서울대 교내에서 시위발생 하자 이에 가담하고, 9. 10.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우리의 주장' 제하의 유인물 500매, '민주회복 반독재선언'제하로 500매, '민주시국선언'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고, 9. 13. 서울대 교내에서 이를 배포하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418]				고 유신체제 타도하고 긴급조치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선동하고, 구속수감된 영등포 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해제구호를 외침			
111	78.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2. 24. 78고합295, 79고합13] [서울고법 1979. 5. 31. 79노433]	긴조 9호	유종성, 유인열, 황인성, 옥광섭, 김성남(대학생)	징자2(유종성), 징자1(유인열, 황인성, 옥광섭), 징6월자1(김성남)	서울대, 고대생으로, 반정부시위를 하기로 하고,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 학우에게 고함', '10. 17 민주투쟁선언' 제하 유인물을 초안을 작성하여 시위를 예비하고, 위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옥광섭은 정의가를 부르고 긴급조치 철폐하라고 구호를 외침	지법 고법	고영구, 이홍훈, 박병휴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p>※ 항소이유에서 '긴급조치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헌법 124조 내지 126조에 저촉무효이며, 헌법 53조에 의하면 긴급조치 효력은 잠정적인데 긴급조치 9호는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실효된 것이며, 헌법 53조 규정, 발동목적에 비추어 동 긴급조치 규정 행위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에 중대한 위협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긴급조치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이에 대해 긴급조치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고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조 각 규정의 소위가 구체적으로 국가안전, 공공질서 수호에 중대한 위협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것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p>								
112	78. 11. 6.	[대구지법 1979. 2. 26. 78고합543] [대구고법 1979. 7. 5. 79노276]	긴조 9호	김병호, 김진덕, 박세원, 전상수, 전병욱, 김인재, 김창수 (대학생)	징자1, 단8월장1자1 (박세원, 전상수, 김인재) →징자8월, 단6월장자8월 (박세원, 김인재) 전상수, 김인재)	경북대생으로, 78. 11. 2. '78경북대 구국선언문' 학생시위에서 동료학생들이 구속, 학사처분을 받은 것에 항의하여 11. 6. '제2, 78경북대 구국선언문' 제하 유인물에 구속학생석방, 총장퇴진, 어용교수 사퇴, 학원사찰 중지, 언론자유보장, 유신헌법철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2, 500명과 함께 대구시내에서 가두시위를 주도함	지법 고법	박헌기, 김성수, 이재철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113	78. 11. 2.	[대구지법 1979. 2. 26. 78고합526] [대구고법 1979. 7. 5. 79노275]	긴조 9호	최용식, 장수원, 김동호, 유시대 (대학생)	징자3 →징자2	경북대생들로, 11. 2. '78 경북대 구국선언문' 제하 유인물 500매를 제작해 경북대 교내에 배포하고 호소문을 낭독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주도함	지법 고법	박헌기, 김성수, 이재철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114	78. 9.	[광주지법 순천지	긴조 9호	000	징자3→	수업중, "우리나라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	지법	김용은, 장우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9. 3. 2. 78고합141] [광주고법 1979. 7. 4. 79노 136]		(고교 교사)	징자1.6	에 발전이 적고 세계에서 다섯번째 가는 독재정치를 한다, 우리나라 정치제도 하에서는 박대통령이 늙어 죽을때까지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박정희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지만,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특별 정치로 변해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함	윤여달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115	78. 11.	[서울형사지법 1979. 3. 3. 78고합 763] [서울고법 1979. 6. 20. 79노 498]	긴조 9호	엄주웅 (대학생)	징자2.6	고려대생으로, 유신헌법, 긴급조치폐지를 주장하는 '격문'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11. 9. 교내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동하여 시위주도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116	78. 6.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9. 3. 6. 78고합70] [서울고법 1979. 6. 13. 79노 530]	긴조 9호	김영환 (대학생)	징자1	연대 치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민주헌정회복, 긴급조치 해제, 구속인사석방, 저임금 저곡가 정책 시정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김억규, 박찬주, 김성만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 확정(78. 9. 26.)
117	78.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3. 7. 78고합315, 79고합12] [서울고법 1979. 7. 5. 79노494]	긴조 9호, 증거은닉	000외 5인(대학생)	징자3(000), 징자2(000), 징1.6자2(000, 000, 000), 징자1(000)→징1.6자2(000), 징자1집2(000, 000), 징10월집2(000)	서울대생들로서, 상호공모하여 유신반대시위를 위한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전국의 학우에게 고한다, '일어서라 전국 30만 대학생이여', '10.17. 민주회복 범시민 쫓겨대회', '서울대 15, 000 노예들이여' 제하의 유인물과 전국대학 동맹휴학, 10. 17. 세종문화회관 광장에서 범시민 학생궐기대회 개최, 국회의원 선거거부 등의 행동강령 초안을 작성하여 서울시내 각 대학 부근, 정류장, 버스내에 배포하고, 피고인들중 일인이 체포되자 유인물 제작에 제공한 타자기, 운전동사기 등을 은닉하고, 동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 구치소내에서	지법 이원배, 민세홍, 김승우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긴조 해제로 형정정청구(서울고법 1980. 2. 21. 80초 14)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긴급조치철폐, 구속인사석방 등 구호를 외치고 정의가 등의 노래를 부름			
118	78. 1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3. 7. 78고합311, 79고합8] [서울고법 1979. 7. 6. 79노496] [대법 1979. 9. 25. 79도1862]	김조 9호	이필열, 김용흠, 박병태 (대학생)	징자3(이필열, 김용흠), 징자1→징자1집2(박병태)	시위를 공모하고, '학원자유화투쟁선언',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자', 제하 유인물 1, 800매를 작성하고, 11. 13. 교내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고, 위 행위로 구속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정의를 부르고 구속학생석방, 긴조 해제 등의 구호외침	지법	이원배, 민세홍, 김승우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대법	김용철,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19	78. 11.	[부산지법 1979. 3. 8. 78고합729] [대구고법 1979. 6. 14. 79노315]	김조 9호	손용규 (정치인)	징자3.6 →징자2	한국기민당 부산제3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취임사에서 "박정희가 올바른 정신이 돌아오면 유신 헌법도 새로 바로 잡을 것이고 국회의원에게도 국정감사권을 부여할 것이다" 등의 말을 함	지법	주재우, 양태중, 김문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120	78. 10. 3.	[부산지법 1979. 3. 12. 79고합44] [대구고법 1979. 9. 6. 79노332]	김조 9호	배기선 (무직)	징자1	78. 1. 25. 서울형사지법에서 김조9호 위반으로 징자2 선고받고 김해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로, 구급 당시 구치소 내에서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자유민주 보장하라'고 외침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문종술, 김영일
121	77. 3. -78. 11.	[부산지법 1979. 3. 12. 78고합764] [대구고법 1979. 6. 21. 79노325] [대법 1979. 9. 11. 79도1679]	김조 9호, 집시법	조화순 (목사)	징자5→징자3	한국교회선교협의회회장,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총무로서 77. '민주구국헌장'에 작성자로 서명하고(헌법 폐지주장 표현물제작), 윤보선, 함석헌, 지학순, 박형규, 안병무와 함께 '현하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민주국민에게 고함'을 작성하고, 78. 9. 22.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동일방직 해고여공들과 함께 노동3권보장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속자석방주장집회를 진행함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122	78. 6.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148] [광	김조 9호	한승동 (대학생)	징자1.6 →면소	서강대생으로, 김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철폐, 민주회복, 긴급조치 해제 등의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주고법 1980. 1. 10. 79노156]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26.), 긴조 해제로 면소
123	78. 4.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149]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159]	긴조 9호	장정수 (대학생)	징자1.6 →면소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수감중 서울구치소에서 긴조해제, 학원사찰증거, 대통령 직접선거, 민주정치 구현, 국민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고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확정(78. 9. 26.), 긴조 해제로 면소
124	78. 4.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74] [광주고법 1980. 1. 10. 79노157]	긴조 9호	김현수 (대학생)	징자1.6 →면소	한국신학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라, 민주헌정회복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고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단3장3.6자3확정 (78. 5. 23.), 긴조 해제로 면소
125	78. 6.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98]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152]	긴조 9호	진 철 (대학생)	징자1.6 →면소	한국신학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라, 민주헌정회복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고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2선고, 긴조 해제로 면소
126	78. 8.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3. 22. 78고합176, 79고단227] [서울고법 1979. 7. 5. 79노574]	긴조 9호, 폭처법	000 (주점 경영)	징자4→징자1	동거남에게 "000은 내가 잘 아는 친구언니와 사단장 시절부터 애인관계에 있다, 영화배우 000는 000과 좋아지내는 사이여서 000 부인이 해외로 쫓아보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고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127	78. 3.	[전주지법 1979. 4. 4. 78고합75]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190]	긴조 9호	성종대 (대학생)	징자1 →면소	성균관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복역중, 정치범 석방하라, 구속자 석방하라, 민주헌정회복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고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3. 14.), 78. 8. 15. 형집행정지출소, 긴조 해제로 면소
128	78. 10.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9. 4. 6. 78고]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	자신을 국회직원으로 가장하면서 대화중 "북한은 전 무기와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나 우리나라는 2차	지법	서철모, 조병직, 김완섭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합82 [광주고법 1979. 7. 19. 79노 176]				대전대 쓰던 잠수함을 사용하므로 북한이 국방력이 월등하다, 북한은 배급을 실시하므로 모든 주민이 빈부차가 없다, 000이 김대중씨를 일본에서 데리고 올 때 바다에 빠뜨려 위장해 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등의 발언을 함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129	78. [육본 보통군법회의 1979. 4. 6. 79형 공제32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 6. 29. 79고군형항 제215호] [대법 1979. 10. 16. 79도 2032]	간조 9호, 반공법	000 (군인)	징자2	육본 행정보조원인 군인으로, 대화중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유정회 때문에 선거해봤자 야당이 지게 돼있다, 자기 혼자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헌법을 뜯어고쳐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므로 유신헌법은 없어야 한다, 이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심한 독재는 아니다, 이남에서도 이복에 간첩을 보내고 있다, 군대 장군들이 부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등의 발언을 함	보군 김호현, 이호원, 홍성실 고군 이계훈, 조상흠, 권혁주, 김동준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30	78. 12.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9. 4. 6. 78고 합90]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 184]	간조 9호	000 (노동)	징자2집3 →면소	식당에서 음주만취하여 식당안에 있던 순경 등에게 "나는 이복에 가겠다, 박정희 정권도 독재정치다, 000도 원래는 남로당 출신이며, 000도 남로당의 힘을 받아 되었다"고 말함	지법 서철모, 조병직, 김완섭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131	78. 12.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9. 4. 12. 79 고합24] [대우고법 1979. 9. 6. 79노 430]	간조 9호	김기대 (속박업)	징자8월	김대중의 출감성명서 4부를 종로 기독교회관 출감 환영기도회장에서 입수하여 타인에게 교부배포함	지법 조수봉, 박장우, 서태영 고법 김호영, 문종술, 김영일
132	78. 10.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4. 13. 79 고합3] [서울고법	간조 9호	신언영 (노동)	징8월자2	통일당 총재 양일동 앞으로 '현시국을 신랄히 비판하는 통일당에 성원을 보낸다, 총칼로 억지로 빼앗은 정권을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지한다'	지법 김석수, 임완규, 이영오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7. 19. 79노 626]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써 우체통에 넣어 발송함	박천봉	
133	78. 12. 5.	[부산지법 1979. 4. 16. 79고합58]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424]	긴조 9호	000 (정당인)	징자1→면소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시 경남 제4선거구 공화당입 후보자인바, 선거구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2회에 걸쳐 "미국과 결탁하여 박대통령의 명령으로 북한을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갔다 오라면 갔다오겠습니다, 대단치 않습니다"라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해제로 면소
134	78. 4.-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67, 79고합4] [서울고법 1980. 1. 10. 79노 780]	긴조 9호	임영준 (대학생)	징2자26 →면소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철폐, 민주회복, 긴급조치 해제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 확정(78. 9. 26.)되어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 해제로 면소
135	78. 6.-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47, 79고합8] [서울고법 1979. 10. 24. 79노 770] [대법 1979. 12. 26. 79도2714]	긴조 9호	홍윤기 (대학생)	징2자2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징자1.6형 확정되어 수감복역중인 서울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철폐, 학원사찰 중지, 언론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치고, 공주교도소내에서도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양승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화, 이창구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 확정(78. 10. 24.) 79. 11. 21. 구속집행정지 석방
136	78. 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48, 79고합6] [서울고법 1980. 1. 10. 79노 776]	긴조 9호	이상훈 (대학생)	징1.6자2 →면소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6 확정(78. 10. 26.)되어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해제로 면소
137	78. 3.-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89, 79	긴조 9호	김성만 (대학생)	징2.6자2	고려대 재학중 긴조 위반으로 징1자1 확정되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긴조해제, 민주헌법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78. 9. 26. 긴조 9호위반 징1자1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고합이				회복, 유신헌정철폐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138	78. 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71, 79고합5]	긴조 9호	박찬우 (대학생)	징1.6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정권 물러가라, 유신헌정철폐하라, 유신폐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139	78. 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88, 79고합기]	긴조 9호	이철국 (대학생)	징1.6자2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정권 물러가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유신헌정철폐하라, 유신폐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140	78. 9.-11.	[전주지법 1979. 4. 25. 78고합164, 170]	긴조9호, 국회의원선 거법, 특가법	손주향 (국회의원)	징자3.6→ 징자2.6→ 선고유예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귀향보고회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관권동원한다(허위사실유폐), 박정희가 3권을 다 쥐고 있고 긴조9호로 국민의 눈귀를 막고 있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긴조 9호 비방)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국
		고법					윤 관, 김응렬, 이우전	
		대법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서운홍	
		고법					이재화, 맹천호, 전도영	
141	78. 6.	[대전지법 홍성지 원 1979. 4. 30. 78 고합69] [서울고법 1980. 1. 10. 79노 779]	긴조 9호	김경택 (대학생)	징자1.6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헌정,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퇴진,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중지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김억규, 박찬주, 김성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142	78. 3.	[대전지법 홍성지 원 1979. 4. 30. 78 고합71] [서울고법 1980. 1. 24. 79노 775]	긴조 9호	노영민 (대학생)	징자2.6 →면소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김덕규, 박찬주, 김성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143	78. 4. 15.	[전주지법 군산지	긴조 9호	000	징자1.6→	대입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교육하는 정치경제 담당	지법 서철모, 조병직,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원 1979. 5. 4. 78고합87] [광주고법 1979. 9. 21. 79노230] [대법 1979. 12. 28. 79도 2391]		(학원강사)	징자1.6→ 면소	강사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의 철폐와 개정 주장	김완섭 고법 차상근, 이태우, 임헌택, 대법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서운홍	
144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5. 9. 78고합746] [서울고법 1979. 8. 8. 79노795] [대법 1979. 12. 26. 79도2158]	긴조 9호	박종만, 정연주(전 동아일보 기자)	징자2.6→ 징자1.6→ 면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상임위원들로서 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유언론실천 4주년 맞아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일지를 알리자는 결의를 하고, '진정한 민주민족언론표',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일지' 제하 원고를 작성하여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동아투위소식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래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동아투위 '민권일지'사건.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145	78. 10.	[서울지법 1979. 5. 9. 78고합722] [서울고법 1979. 8. 8. 79노786] [대법 1979. 10. 30. 79도 2142]	긴조 9호	안성열 (무직, 전 동아일보 기자)	징자2→ 징자1.6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회원으로 '동아투위소식'에서 '재야인사 402명 10.17.국민선언발표, 범국민적 서명작업 전개' 제하에 '민주헌정 쟁취활동을 알리고 헌법이 기본권 박탈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실어 회원들에게 배포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래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대법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서운홍	
146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5. 9. 78고합745] [서울고법 1979. 8. 8. 79노794] [대법 1980. 5. 13. 79도2149]	긴조 9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안종필, 홍종민 (전 동아일보 기자)	징자2→ 징자1(홍종민)→ 면소, 공소기각(안종필)	동아일보 해직기자로써,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재야인사 402명, 10.17.국민선언 발표 범국민적으로 서명작업을 전개', '진정한 민주민족 언론의 좌표' 제하 유인물을 제작, 동아투위 월례회에서 배포우송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래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운홍	1980. 2. 29. 안종필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 (대법 1980. 4. 25. 79도 2149]
147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5. 9. 78고합734] [서울고법	긴조 9호	장윤환, 김중철(동아투위원)	징자1.6(장윤환), 징자2.6(김중철) →징자1(장윤환)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동아투위소식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 제하 유인물을 받아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고 동아투위원 홍종민이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래 고법 박천식, 정상학,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979. 8. 8. 79노 787] [대법 1979. 12. 26. 79도2148]			, 징자1.6(김종철) →면소	긴조 위반 혐의로 연행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 를 제작, 배포하고, 기독교회관에서 '동아투위연행 자를 위한 기도회'에서 '현역언론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하여 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를 주장하 고, 이를 배포함	김학제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48	78. 7.	[춘천지법 1979. 5. 17. 79고합8]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3	고대생으로, 친구와 대화중 "땡굴은 남한에서 봤다 고 하더라,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타임즈지는 한국 에서 검열을 해 놓은 내용만 배포한다, 김대중 납 치사건, 000 저격사건은 000가 조정한 것이라더라, 000의 부인이 가수 000과 XXXX이다, 장준하씨가 죽은 것은 실제로는 중정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말함	지법 이태훈, 장준철, 김남태
149	78. 8.	[서울형사지법 1979. 5. 25. 79고합 46] [서울고법 1980. 1. 10. 79노 846]	긴조 9호	계훈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징자2 →면소	문익환, 이문영, 이우정, 문동환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비판하는 내용의 '1978년 8월 15일 민주주의 국민연합'명의의 '1978년 8.15선언' 제하의 유인물 을 작성하고 8. 18.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낭독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150	78. 12. 27.	[부산지법마산지원 1979. 5. 30. 79고합 15]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 548]	긴조 9호	000 (주부)	징자2.6 →면소	TV로 000취임식 상황을 보다 "000가 여자 탈렌트 들과 XX하고, 다음 날 죽지 않을만큼 때려 보낸다, 배우 000에게 별장을 사주었다, 000이 박대통령을 싸 죽이려고 한 것이고 000가 000를 쏘아 죽였다" 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오장희, 오성률, 김형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151	78. 9.	[서울지법 영등포	긴조 9호,	000 외 1인	징1.6자2,	술을 마시며 대화중, "000는 000가 죽이게 지시했	지법 박만호, 윤여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지원 1979. 6. 1. 78 고합322] [서울고법 1979. 9. 19. 79노 840]	반공법	(외판원)	징10월자1→징1 자2(최상륙)	다, 군사혁명은 000이가 일으키고 000가 000을 미 국으로 추방시키고 도둑계급을 달았다, 000 사건은 중정에서 연극한 것이다, 한국헌법이 너무나 모순 이 많다, 종교집회의 자유와 통행금지 시간등이 해 제되어야 한다, 학생들 말이 옳다, 박정희가 세계에 서 가장 악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000는 XX 이 잦아 000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 며칠 공석에 나 오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함	박일환, 고법 박천식, 정상하, 이창구	
152	78. 11.	[서울형사지법 1979. 6. 4. 79고합 26] [서울고법 1979. 10. 23. 79노 839]	긴조 9호, 국회의원선 거법, 부정수표단 속법	000(유홍업), 000(광업)	징자2,6, 징자2(000)→징 자2,6(000)→벌 금150만원(형경 정청구)	000은 대화중 000에게 "언젠가는 각하께서 쉬실때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실 것 같다, 임기전이라도 큰 용단을 내리실지 누가 아느냐, 국가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면 무얼 그리 고생하 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겠느냐"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폐), 000은 대화중, "JP가 출마할 때 우리 JC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전국 최다득표 되도록 앞장 서주기 바란다, 대통령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함	지법 한정진, 이문제, 강종래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해제로 긴조 부분 형집행면제 (형경정청구. [서울 고법 1979. 12. 29. 79초114])
153	78. 12.	[서울형사지법 1979. 6. 14. 79고합 142] [서울고법 1979. 11. 2. 79노 1082] [대법 1979. 12. 28. 79도2773]	긴조 9호	정태현, 장동현, 백병규, 이 범, 김상복(대학생)	징자1.6(정태현, 장동현, 이범, 김성복), 단1장자1.6(백병 규)→징자1(김성 복), 징자1집2(이범) →면소	강남사회복지학교, 고대생들로서 대통령취임식 전후 해 긴급조치 철폐 주장하는 지하신문 '소리들'을 제 작하여 고대생 800여명을 수신인으로 하여 우편함을 이용 배포하고, 고대 도서관 등지에서 배포하고, 향 린교회에서 동일방직사건으로 구속된 김병곤을 위한 기도회에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8천이화인이어' 등 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78 민중선언문'을 습득 소지 함	지법 이재화, 제차룡, 민형기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대법 안병수, 양병호, 유태홍, 서윤홍	긴조 해제로 면소
154	78. 12. 29.	[광주지법 목포지	긴조 9호	000	징자1.6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유신체제	지법 김용은, 김구일,	1976. 8. 16. 서울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원 1979. 6. 20. 79 고합17] [광주고법 1980. 1. 10. 79노 261]		(무직)	→면소	비판과 긴급조치해제, 정치범석방 요구' 등을 요구 하는 김대중명의로의 출감성명서를 소지	정남희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155	78. 9.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9. 6. 22. 79 고합81] [서울고법 1979. 9. 26. 79노 966]	긴조 9호, 사문서위조, 동행사, 밀항단속법, 출입국관리법 , 사문서위조방 지, 동행사방조	000 외 10인	징3(000), 징1.6집3(000 외 3인), 징8월집2(000 외 5인)	미정부의 휴가증명서 및 미군신분증명서를 성명 불상 미국인과 공동하여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인 쇄소에서 위조하여 대한민국 영외로 밀항케 함으 로써 밀항을 방조	지법 오상걸, 임완규, 이영오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156	78. 11.	[서울형사지법 1979. 7. 9. 79고합 172] [서울고법 1980. 1. 11. 79노 1139]	긴조 9호	유구영 (대학생)	징자2.6 →면소	고려대생으로, 유신헌법, 긴급조치폐지를 주장하는 격문, 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1. 9. 교내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동하여 시위주도 함	지법 주진학, 신명균, 강완구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157	78. 12.	[서울형사지법 1979. 7. 10. 79고합 47] [서울고법 1979. 10. 25. 79노 1131] [대법 1979. 12. 26. 79도2704]	긴조 9호	한화갑 (김대중 비서)	징자1.6 →면소	78. 12. 29. 관권정치비판, 긴급조치해제 주장하는 김대중의 출감성명서를 기독교회관 대강당 금요기 도회에서 참석자에게 배포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58	78. 6.	[대구지법 1979. 7. 11. 78고합335] [대	긴조 9호	임성현 (대학생)	징1.6자2→면소	한국신학대학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2년 선 고받고 확정되어 복역중인 서울구치소내에서 긴조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재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구고법 1979. 10. 25. 79노653] [대법 1979. 12. 28. 79도 2711]				해제, 민주헌정회복, 민주인사석방, 유신헌법철폐 등의 구호를 외침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대법 안병수, 양병호, 유태홍, 서운홍	13.), 건조해제로 면소
159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7. 13. 79고합 61] [서울고법 1979. 11. 8. 79노 1226] [대법 1979. 12. 26. 79도2854]	건조 9호	윤활식, 이기중, 성유보 (동아투위 간부)	징자2(성유보), 징자1(윤활식), 징자1.6(이기중) →징10월자1집2 (윤활식), 징자1집2 (이기중), 징자1(성유보) → 면소	동아투위 간부들로서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78년 송년특집 동아투위 소식'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아투위 소식,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제하 유인물을 배부받아 함께 낭독하고, 동아투위 총무 홍종민 등이 건조 위반 혐의로 연행조사받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제작하여 배포함	지법 이재화, 제차룡, 민형기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김운행, 민문기, 한환진, 유태홍	성유보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79. 12. 7.) 건조 해제로 면소
160	78. 12. 7.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7. 20. 79고합147] [서울고법 1979. 12. 27. 79노1098] [대법 1980. 3. 11. 80도 212]	건조 9호, 반공법	000 (학원원장)	징자3→ 징자2집4 (건조는 면소)	간호보조학원원장으로서 경기부평지구 일대 대간첩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사무실내에서 "선거때 되니 쏘하고 있다, 000가 장기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000을 시켜 000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유언비어 날조유포), 북한국기를 그려보이면서 "태극기보다 산뜻하고 보기좋다"고 말함(북한고무찬양)	지법 박만호, 민세홍, 박일환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정태원, 한환진, 김운행, 라길조	
161	78. 4.	[서울형사지법 1979. 7. 27. 79고합 151] [서울고법 1980. 1. 11. 79노 1222]	건조 9호	000 (무직)	징자2.6 →면소	매제인 000이 은행부정용자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대화중, "그 사건은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고 형무소에 보내 배신한 것이다, 박정희는 총대를 거꾸로 메고 대통령이 되어 벼락부자가 되었다"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주진학, 홍석제, 김학대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건조 해제로 면소
162	78. 7.	[서울형사지법 1979. 7. 27. 79고합	건조 9호	000 (광산업)	징자3 →면소	대화중, "000 사건은 정부에서 예비군설치법 문제로 국회가 반대하자 정치적 쇼를 한 것이다, 실미	지법 주진학, 홍석제, 김학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274] [서울고법 1980. 1. 23. 79노 1208]				도 특수부대요원들이 1.21사건에 동원됐다가 사살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유한양행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고위층에서 000이 식당에 들어갈때 들어 보냈다, 이리 열차사건도 정부가 벌인 쇼다"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163	79. 3.	[광주지법 순천지원 1979. 9. 3. 79고합49]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 395]	긴조 9호	정기영, 김창주, 박종선, 양대승, 유중남(신민당, 통일당 간부)	징자3, 징자2집3 (박종선, 양대승) →면소(정기영, 김창주, 유중남)	전 통일당, 신민당 전남 제4지구당 위원장, 상임위원 등 간부들로서, 김대중의 집에서 '3.1운동 60주년에 주유한 민주구국선언' 제하 유인물을 교부받 아 소지하고 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지지하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지방조직을 공보하고 회합하여 이를 낭독함	지법 이석범, 장우건, 윤여달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현택
164	78. 4.	[대전지법 1979. 9. 4. 79고합88] [서울고법 1980. 1. 10. 79노1300]	긴조 9호	송좌빈 (농업)	징16자1 →면소	통일당, 민주주의 국민연합 등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3. 1. 기독교회관 금요기도회에 참석, '옥중에서, 긴급정치범일동' 명의의 '78 옥중자유, 민주, 정의, 진리선언' 제하 유인물을 교부소지하고, 4. 동 장소에서 '만천하에 호소합니다' 제하 선언문 등을 보관소지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165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9. 10. 79고합 179] [서울고법 1980. 1. 9. 79노 1346]	긴조 9호	000 (회사원)	징자2→ 면소	00무역 과장인 사람으로, 술을 마시다 대화중, "00 무역은 000 용돈 대주는 회사다, 대통령이 하사금 주는 게 신문에 보도되는데 그 돈은 전부 우리 회사에서 나간 돈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재화, 제차룡, 민형기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166	78. 7.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9. 22. 79고합146, 223] [서울고법 1980. 1. 11. 79노1394, 1139]	긴조 9호	천영초, 서명숙, 박종원, 윤구영, 조봉훈 (대학원생, 대학생)	징자26(천영초, 조봉훈), 징자2(윤구영), 징자1(서명숙, 박종원)	고대, 한국신학대, 전남대 재학 또는 제적된 자들로, 대통령선거 즉각중지, 통일주체국민회의 자진해산 등의 요구담은 유인물 700매를 제작하여 7. 3. 고대, 서강대, 연대, 이대, 서울시내 등지에 배포하고, '결국 고대는 입을 열었다' 제하 유인물 제작하여 9.	지법 오상걸, 임완규, 이영오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서울고법 1980. 1. 25. 79노1394, 1139]			→면소(천영초, 박종원, 서명숙)	19. 고대 내에 배포하고(천영초, 서명숙, 박종원), 전남대 송기숙 교수의 '우리의 교육지표' 배포건에 대해 민주교육선언교수 즉각석방, 교수제임명제 폐지, 학원사찰 중지, 상주기관원 즉각물러가라 등의 요구 담은 '6.27 양심 교수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을 작성하여 6. 29. 전남대 교내에 배포하고, 6. 29. 전남대 도서관앞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하고(조봉훈), 긴조해제, 정권타도를 위한 전국 각 대학연합시위를 위해 '구국대학생 총연맹'을 조직하기로 하였으나 예비에 그침(천영초, 유구영, 조봉훈)		2), 긴조해제로 면소
167	78. 9.	[대전지법 천안지원 1979. 10. 29. 79고합54, 79고단453] [서울고법 1981. 9. 10. 79노1637]	긴조 9호, 반공법	000 (전 동성중 재단이사장)	징자3집5→ 징자2집4	동성중 재단이사장으로 교사들 앞에서 박정희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며 저항반 단골오입장소가 북한산성이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활동과 구성원들을 찬양, 기자재직당시 김구선생이 남북협상차 이북에 갈때 3.8선까지 따라가보니 북한조직의 장점이 보였다, 자신의 교육이념을 발표하면서 적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며 북괴를 찬양한 바 있고, 일본여행시 조선대 000교수가 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란 책 구입, "김종필 전총리가 3, 000만엔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통일 저해요소는 남한의 미사일개발때문이다, 박정희정권은 썩었다"는 등의 발언함	지법 공아도, 신성철, 김목민 고법 이정락, 박용상, 김 훈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168	78. 9. 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12. 18. 79고합279]	긴조 9호	소준섭 (대학생)	면소	한국외국어대학생으로, 문무대입소반대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고 '유신체제는 독재체제임을 선언한다' 등의 5개항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9. 1. 운동장에서 유인물 300매를 교련교육중인 1학년생들에게 배포함	지법 오상걸, 임원규, 장세두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69	78. 3.	[광주지법 장흥지 원 1979. 12. 27. 78 고합41]	긴조 9호	김경식 (목사)	면소	전남 강진교회 목사로, 3.1절 기념예배설교중 '유신 헌법, 긴급조치 선포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은 파국 적 상태다, 성직자들을 영광하게도 공산주의라고 몰아부쳐 체포수색한다, 살인적 저임금과 혹사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근로자들이 인간적 삶을 요구 하는데 정권은 기업편에서 몽둥이나 고문으로 대 답하고 있다' 등의 내용인 '우리의 인권현실'을 낭 독함	지법 이병호, 채영수, 라종훈
170	78. 6.	[광주지법 1980. 1. 8. 79고합238]	긴조 9호	김선출, 김윤기, 박몽구 (대학생)	면소	전남대생들로서 동 대학 교수 송기숙이 국민교육 현장이 민주주에 역행하고 일제의 척어 연상케한 다고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우리의 교육지 표'를 배포하여 연행조사받자 관련교수들의 석방위 해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을 학내에 배포, 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함	지법 장태규, 곽준흠, 이재기
171	78. 11.	[서울형사지법 1980. 1. 18. 79고합 580] [서울고법 1980. 6. 4. 80노 558] [대법 1980. 9. 9. 80도1680]	긴조 9호, 반공법	000 (서적외판원)	징자1.6 (긴조 면소) →징자1	대화중, "북한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은 정권의 조작 이며 사실은 잘 살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 면 군대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일성 찬양 하는 노래 부름(북한찬양고무)."학생데모는 체계적,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재야인사를 구속해 탄압하 고 있다"고 말함	지법 문영택, 강완구, 김학대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대법 정태원, 한환진, 라길조
172	78. 4.	[대구지법 안동지 원 1980. 1. 23. 79 고합93]	긴조 9호, 반공법	000 (안동시청 일용직원)	징자1집2(긴조 면소)	대화중, "세계를 둘러봐도 민주국가가 공산국가를 이겨 본 역사가 없다, 중공, 6.25, 월남전쟁 등에서도 민주국가가 졌다, 이북이 이남보다 훨씬 잘 사는 것 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발언	지법 박종운, 김성수, 김인수
173	78. 10.	[광주지법 1980. 4. 16. 79고합33]	긴조 9호	김병곤	면소	긴조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급조치 해제 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노동 삼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전충환, 강길봉, 오상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74	78. 8.-12.	[서울지법남부지원 1981. 2. 27. 79고합81] [서울고법 1982. 5. 20. 81노1285] [대법 1983. 5. 24. 82도1572]	긴조 9호, 국회의원선거법, 반공법	000 (정치인)	벌20만원→벌10만원	10대국회의원 민주통일당 입후보자로서, 합동연설회에서 "당선되면 관제공산당을 만드는 국보법, 사회안전법 개정하겠다"고 연설했다.	지법 이정락, 오세빈, 진영 고법 김영진, 김원제, 이근웅 대법 이회창, 이일규, 이성렬, 전상식	사전선거운동부분은 무죄, 기부행위는 유죄, 반공법 위반은 무죄, 긴급조치부분은 면소
175	78. 8. 2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23. 79고합14] [서울고법 1990. 7. 18. 89노2285]	긴조 9호, 국회의원선거법	000 (이사장)	선고유예 (긴조 면소)	무소속국회의원으로 입후보당선된 자인 마,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의정활동보고서를 경기도 일대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78.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긴급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함(긴급조치 비방)	지법 김창엽, 광태철, 황용경 고법 유근완, 오상현, 조용호	긴조해제로 긴조부분은 면소

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9.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1	79. 1. 3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4. 12. 79고합 27] [서울고법 1979. 7. 19. 79노603]	긴조 9호, 명예훼손	000 (공원)	징자4→ 징자3→ 징10월	술을 마시고 잡담중,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박정권을 타도해야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다, 박정희는 XXX다" 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명예훼손)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2	79. 2. 4.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6. 21. 79고합 99] [서울고법 1979. 12. 5. 79노905]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6 →징자1집2	대화중,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성명풀이를 하면서, "다음 대통령선거에는 당신이 안될 것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한구, 오세빈, 박형래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3	79. 3.	[서울형사지법 1979. 6. 25. 79고합186] [서울고법 1979. 11. 14. 79노1016]	긴조 9호, 사기	000 (상업)	징자2→징자2 집3→징1집2 (형정정청구)	잡담중, 000이 텔런트들과 사귀다고 말함(유언 비어 날조유포)	지법	주진학, 신명균, 강완구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4	79. 3.	[부산지법 1979. 7. 24. 79고합283]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750]	긴조 9호	김건용 (무직)	징자1.6집2 →면소	전 신민당중앙당 상무위원으로, 김대중명의로 출감성명서 1부를 배당받아 자택에 소지하고, 민주주의 말살을 위해 설립된 유신체제를 규탄 하는 내용이 기재된 3.1.운동 60주년 기념 민주국선언문 5부를 교부받아 전 신민당 당원 3인에게 각 1부씩 배포	지법	주재우, 김문수, 진병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5	79. 2. 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7. 28. 79고합 55] [서울고법 1979. 11. 22. 79노1185] [대법 1979. 12. 28. 79도2931]	긴조 9호	우기일 (서적도매업)	징자2.6→ 징자1→ 면소	한빛교회 목요기도회에 참석하여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낭독함	지법	오상걸, 임완규, 이영오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서윤홍,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6	79. 5.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8. 16. 79고합160] [서울고법 1980. 1. 10. 79노1260]	긴조 9호	조범원(탁아소 경영, 전직 민주회복국민회의 평택군 상임위원)	징자2.6 →면소	1979. 김대중 집에서 출감성명서, 기독교회관 금요기도회에서 박형규 목사의 항소심 최후진술서, 윤보선, 함석헌 등 명의 성명서를 입수 소지하고, 동년 5. 대화중, "카터대통령이 방한하면 정부에서 긴급조치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구속해 둘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한구,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년확정 만기 출소(1978. 3.).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7	79	[부산지법 1979. 8. 18. 79고합264]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782]	긴조 9호	노경규, 조태원 (무직)	징자2(노경규), 징자1(조태원) →면소	조태원은 76. 6. 17. 부산지법에서 긴급9호로 징자2집3을 선고받은 바, 노경규는 78. 12.부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대중명의로의 상고이유보충서 복사본 1부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민주국민에게 고향'이라는 제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철폐 내용이 적힌 윤보선 외 6인의 공동명의로 유인물을 교회 복사들과 지인들에게 복사하여 배포, 조태원은 독재정권과 유신체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인권운동협의회명의로 성명서 1부를 교부받아 자택에 보관소지하고, 노경규로부터 김대중출감성명서 1부를 교부받아 소지함(사실 왜곡표현물 소지)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 9호위반으로 78. 2. 15. 징자2집3 확정(조태원), 긴급조치 9호 해제
8	79. 4.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9. 9. 19. 79고합36] [서울고법 1979. 12. 27. 79노1393] [대법 1980. 2. 26. 80도201]	긴조 9호, 반공법	000 (어부)	징자3→ 징자1.6→ 면소(긴조)	1978.부터 사상을 소재로 한 객관이론이라는 원고를 작성하고 여인숙에서 같이 하숙 중에 있던 000, 000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독재정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것'이며, 1978. 12. 자신의 숙소에서 같이 동거하는 000에게 '북한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없는 사람은 이북에서 공부하기 쉽다', 1979. 4. 신문구독 권유차 방문한 강	지법 박규석, 이유주, 오행남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서운홍,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긴조 9호위반은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원일보 000에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역설하며 '북한이 훨씬 살기 좋고 군사력도 막강하며 생활수준과 교육수준도 남한보다 훨씬 높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북한을 찬양		
9	79. 4.	[대구지법 1979. 9. 19. 79고합240]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910]	긴조 9호	김재호, 이태현 (학생)	징자1→ 면소	영남대생들로, 김재호는 대구시 소재 예식장에서 개최된 '죽순문학의 밤'에 참석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문학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문학의 창조성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후 약 3회에 걸쳐 회합하여 "'79영남자유청년구국선언'이라는 제목 하에 암담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작성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인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10	79. 4.	[수원지법 1979. 9. 20. 79고합142] [서울고법 1982. 12. 30. 79노1455] [대법 1983. 7. 12. 83도357]	긴조 9호, 반공법	000 (고교 교사)	징자3→징자1 집2, 면소(긴조)	수업중, 문세광의 총탄을 피해 숨는 모습을 취하며 '문세광은 용감했다'고 말하고(북괴지령받아 잠입한 동인활동 찬양함으로써 북한이롭게 함), "북한은 남한보다 통신시설이 발달했고, 000가 '새마음의 길'이란 책을 저술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이한구, 오세빈, 박형래 고법 천경송, 이상현, 유 현 대법 이정우, 김중서, 신정철
11	79. 3.	[서울형사지법 1979. 9. 24. 79고합324] [서울고법 1979. 12. 27. 79노1408]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6 →징자1	대화중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있는 놈은 잘살고 없는 놈은 못살고 있으니 공평하지 못하다, 김대중은 이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박정희XX가 죽었다, 이북은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해서 살기가 좋은데 박정희XX는 독재만 쓰고 있다" 등의 말을 수회에 걸쳐 함	지법 이재화, 이홍복, 이정구
12	79. 5.	[대전지법 1979. 9.	긴조 9호	김용훈	징2.6자2→	전직 신민당 논산지구당 청년부장으로 김대중	지법 최규봉, 임승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7. 79고합89] [서울고법 1980. 1. 9. 79노1483]		(무직, 전 신민당간부)	면소	에게 출감성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헌법개정추진하는 정당의 발족준비단체인 민주헌정동지회 논산지부 조직하면서 동회 가입을 권유함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면소
13	79. 6.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9. 10. 4. 79고합51] [대구고법 1979. 12. 27. 79노928]	긴조 9호, 반공법	000 (행상)	징자3집4→징6월자1집1(긴조면소)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박정희 정권은 곧 무너진다, 박정희는 누구 손에든 곧 죽는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김대중과 김영삼이다. 저번 선거때에도 김대중이 이겼는데 정부 조작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형님이 최고다"라고 발언함.	지법 박종훈, 김성수, 김인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 해제로 면소
14	79. 4.	[서울형사지법 1979. 10. 15. 79고합359] [서울고법 1980. 1. 10. 79노1735]	긴조 9호	000 (신문보급소 총무)	징자4 →면소	신문보급소원들과 대화중, "정부에서 어떤 사건으로 30명을 창고에 넣어 불태워죽였는데 신문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000가 내려올때 당시 000는 000와 영등포에 있어 살아남았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주진학, 강완구, 김학대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술에 취해있었다고 항변,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15	79. 7.	[대구지법 1979. 10. 15. 79고합339]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	청기읍 소재 농협의 권장으로 심은 감자 '시마라바'가 싹이 트지 않자 위원장으로서 감자재배를 권장한 군당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민운동에 앞장서 온 자인바, 보상관계 등으로 동읍 소재 다방을 드나들며 알게 된 다방주인의 딸과 불륜관계로 복잡해지자 함께 여행을 떠나서 약 두달간 소식을 듣지 못한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가을 감자 폐농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에 앞장서고 카톨릭 농민회운동에 관여한다고 반체제인사로 몰려 정보부원에게 납치 감금되어 고문을 받으며 억류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함(정부가 농민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인환	안동농민회'사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것처럼 유언비어 날조유포)		
16	79. 10. 27.	[제주지법 1979. 12. 7. 79고합86] [광주고법 1980. 2. 14. 80노3]	긴조 9호	000 외 2인 (회사원)	정10월자1집2→면소 박정희 시해소식듣고 "우리나라 군부대가 하나 증발되어 스타도 물러났다"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고법	양상훈, 황 익, 양동석 이두형, 이태우, 임현택
17	79. 10. 19.	[제주지법 1979. 12. 10. 79고합84]	긴조 9호	000 (무직)	면소 제주경찰서 타격대 내무반에서 독재정권타도, 민주회복, 유신철폐하라는 '2천 제주대학생에게 고한다' 제하의 유인물 156매를 제작함.	지법	양상훈, 황 익, 양동석
18	79. 10. 17.	[부산지법 1979. 12. 11. 79고합782]	긴조 9호	강명규 (학생)	면소 동아대생으로 근간에 발생했던 YH노사분규 및 신민당총재에 대한 의원제명 등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동아대 본관 앞에서 학생들을 선동해 허가없이 집회 시위를 개최	지법	정만조, 김영기, 김진권
19	79. 9.	[부산지법 1979. 12. 11. 79고합678]	긴조 9호	김맹규, 신흥석, 서석권(학생)	면소 부산공업전문대학생들로, 부산시 대청동 소재 천주교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현정권의 제도적 모순, 노사분규에 공권력개입, 저임금체제와 노동 3권을 박탈해간 독재정권의 억압, 긴급조치로 인한 지식인 청년들의 구금 구속의 자행 등으로 독재정권을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물을 수차례에 걸쳐 800매 가량 등사제작하고, 학생들을 선동해 집회시위주도	지법	정만조, 김영기, 김진권
20	79. 10. 17.	[부산지법 1979. 12. 12. 79고합780]	긴조 9호	000 (표구상)	면소 부산역 광장에서 직전에 시위하다 해산되지 아니한 일부 군중들 사이에 끼어들어 '전날 시위에 참가했다 여자1명, 남자2명이 할복자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정만조, 김영기, 김진권
21	79. 3.	[대전지법 1979. 12. 13. 79고합137]	긴조 9호	000 (고교 교사)	면소 고교 윤리교사로 수업중, "000, 각부 장관들이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많다, 현정부는 정치를 썩어빠지게 하고 있으니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기중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다, 저금을 하면 울산실업같은 기업체에 부정 대출이나 하고 있어 저금을 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함			
22	79. 8. 13.	[전주지법 1979. 12. 14. 79고합131]	긴조9호	000 (목사)	면소	성광교회목사로 봉직중인 자로, 동료목사와 함께 월맹공산당원의 활동을 찬양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77. 11. 5. 전주지법에서 징역10선고, 1978. 6. 27. 대법에서 확정된 사실에 대해 동교회에서 개최된 선교와 인권을 위한 기도회에서 이에 대한 억울함을 신도와 동료목사들 앞에서 호소	지법 정현식, 정은환, 백영엽	긴조 9호 해제
23	79. 1. 10.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9. 12. 15. 79고합 83]	긴조 9호	김주호 (무직)	면소	긴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내 수감중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수회 구호를 외침	지법 박종윤, 김성수, 김인수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선고받고 79. 5. 22. 확정, 긴조 해제로 면소
24	79. 10.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12. 18. 79고합 325]	긴조 9호	인원규, 김남일 (대학생)	면소	한국외국어대생들로서, 유신철폐데모를 결의하고 '자유를 위한 선언서'제하 유인물 200부를 작성하여 10. 24. 교내 학생회관 등지에 배포함	지법 오상걸, 임완규, 장세두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25	79. 9.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12. 18. 79고합 283]	긴조 9호	정해랑, 윤종천 (대학생)	면소	경희대생들로서,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경희인들이여'제하 유인물과 YH사건 책임자처벌, 오원춘 사건 조작극 중지, 유신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작성하여 9. 18. 경희대 교내에서 150매를 배포함	지법 오상걸, 임완규, 장세두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26	79. 10. 18.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9. 12. 18. 79고합 184]	긴조 9호	정인권, 정성기, 옥정애, 최갑순, 박인준 (경남대생)	면소	경남대학생들로 교내에서 학원자유, 민주회복, 독재타도 등 구호외치며 시위함(학교장 허가받지 않은 시위).	지법 이희래, 김용주, 진병춘	긴급조치 해제로 형법상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27	79. 8.	[춘천지법 1979. 12. 20. 79고합48]	긴조9호	전광표, 유경선, 최 윤, 성낙철, 정양언 (대학생)	면소	강원대 학내씨클인 언어문화연구회 선후배지간 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 시위주도를 결의하고 수시회합하면서 '자 유정의, 민주수호'라 표기된 머리띠 100여매와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자유를'이라는 제목아 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은닉소지하고 다니면서 학 내 곳곳에서 배포, 학생들을 선동	지법 박종택, 이주홍, 이원구
28	79. 8.	[춘천지법 1979. 12. 20. 79고합52]	긴조 9호	김성규 (무직, 전 강원대생)	면소	강원대제적생으로 동대학내 연구씨클인 언어문 화연구회에 가입, 상피고인 성낙철, 정양언 등 과 함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 시위 주도를 논의하고, 수시회합하면서 ' 자유정의', '민주수호'라 표기된 머리띠 100여매 와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자유를'이라는 제목 아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은닉소지하고 다니면서 도 서관서 배포, 학생들을 선동	지법 박종택, 이주홍, 이원구
29	79. 5. 18.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9. 12. 22. 79고합 140]	긴조 9호	000 (양돈업)	면소	유신철폐, 민주회복 내용의 김대중 회견문 번 역인쇄물, 국민연합, 민주청년인권협의회 성명 서, 동아투위 소식지 등 헌법왜곡비방, 폐지 주 장하여 긴조 9호 비방하는 표현물소지	지법 김승진, 박준수, 이신섭
30	79. 8.	[대구지법 1979. 12. 22. 79고합405]	긴조 9호	임진호, 권오국, 하종호, 임광호, 정동남, 이창주 (대학생)	면소	계명대, 경북대, 영남대생들로 10여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회동하면서 일시에 3개 대학에서 집단시위를 감행키로 공모하고,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각각 1, 000매 이상씩 복사하여 3개 대학에 배포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인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79. 4.-9.	[서울형사지법 1979. 12. 24. 79고합630]	긴조 9호	김태용 (신민당중앙 상무위원)	면소 (긴조해제)	충북전천문화원에서 개최된 신민당 지구당개편대 회장에 참석하여 동지구당 대의원들에게 축사 도 중, 긴급조치 해제와 구속정치범 석방을 언급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76. 6.	[서울형사지법 1979. 12. 24. 79고합601]	긴조 9호, 폭처법, 공무집행방 해	이경재 (학생)	면소(긴조), 선고유예	고려대휴학생으로 동피고인 박선오, 백완승 등과 공모하여 '유신철폐, 긴조해제, 학원자유, 구속학 생석방 등에 관한 유인물 제작, 전시하고 연세대 에서 회합하여 불온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반정부시위를 감행,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기로 상호 공모하고 현행헌법철폐와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5월민족선언문' 표현물 을 제작하여 고려대 구내에 전시, 살포	지법	주진학, 강완구, 김학대	긴조 9호위반은 면 소
79. 5. 15.	[서울형사지법 1980. 1. 7. 79고합445]	긴조 9호	박선오 (학생)	면소 (긴조해제)	고려대휴학생으로 유신철폐, 긴조해제, 학원자 유, 구속학생석방 등에 관한 유인물 제작, 전시 하고 이경재, 백완승 등과 연세대에서 회합하 여 불온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반정부시위 를 감행,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기로 상호 공모 하고 현행헌법철폐와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 방하는 내용의 '5월민족선언문'을 제작하여 고 려대 구내에 전시, 살포	지법	문영택, 강완구, 김학대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79. 6.-9.	[광주지법 1980. 1. 8. 79고합288]	긴조 9호	윤한봉, 장석웅 (교원), 이세천, 신민정, 조순형(대학생)	면소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전남협의회 회장, 현대 문화연구소 소장(윤한봉), 중학교사, 전남대학 생들로서, '민주학생시국선언'을 작성, 교내에 배포하고, 써클연합으로 시위를 하기로 하고 ' 대학인에게 드리는 편지' 170매를 진주에서 우 체통에 발송하고 전남대생앞으로 우송함	지법	정태규, 박준흠, 이재기	아래
긴조해제로 면소. 윤한봉- 1974. 9.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조1.4호 위반, 내란예비음모, 국보법 위반으로 징자 15선고, 대전교도소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출소. 1977. 5. 10. 대법에서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선고 복역출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35	79. 1. 10.	[청주지법 1980. 1. 14. 79고합66]	긴조 9호	김준영 (대학생)	면소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구속 인사 석방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 를 큰소리로 외침	지법	유근완, 정덕홍, 김 숙
36	79. 9.	[서울형사지법 1980. 1. 20. 79고합688]	긴조 9호	000 (대학생)	면소 (긴조해제)	형과 삼촌이 보던 책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에 대한 사실을 왜곡표현한 내용의 노래가사 용지를 소지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37	79. 5.	[광주지법 1980. 1. 26. 79고합288]	긴조 9호	박병기 (무직)	면소	윤한봉으로부터 돈 2만원을 받아 등사기 등을 구입하여 '박정희 듣거리라' 시작하는 유인물 200매를 제작하여 광주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장석웅, 이세천, 신민정, 조순형, 윤만식 등과 함께 유인물을 제작하여 진주시내 우체통에 투 합발송하고 전남대 270여명에게 우송함	지법	정태규, 박준흠, 이재기
38	79. 7.-8.	[광주지법 1980. 2. 20. 79고합199]	긴조 9호	백윤석 (목사)	면소	79. 7. 9. 민주주의국민연합회 회장등으로 활동 하면서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노동교회 개최 예 배에서 설교중 "유신헌법, 긴급조치는 현정권 유지보장하기 위해 계속 지속하고 있다, 긴급조 치는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해제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전충환, 강길봉, 오상현
39	79. 10.	[광주지법 1980. 2. 20. 79고합279] [광주 고법 1980. 12. 23. 80노143]	긴조 9호, 공용건조물 방화	000, 000 (대학생)	징1.6집2, 면소(000의 긴조위반의 집)	전남대생들로, 기관원들이 대학내 상담지도관 실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동태감시하는 것에 항 의하고자 10. 17. 위 장소에 불을 지르기로 공 모하고 상담지도관실 큰문에 석유를 뿌리고 실 내에 석유를 붓고 불을 켜 넣어서 의자, 유리	지법	전충환, 강길봉, 오상현
							고법	이두형, 김성기, 임현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창 등을 소취함. 교내 화장실벽에 '우리는 유신 헌법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다, 물러가라'고 씌(긴조 해제로 면소)			
40	77. 10. 18. 79. 4.-6.	[대구지법 1980. 3. 12. 79고합366]	긴조 9호	정호경(신부), 정재돈(교회직 원)	면소	천주교 안동교구청 주최 '농민, 근로자, 양심 수인을 위한 기도회' 결의문을 작성하고(긴급조치 비방), 카톨릭농민회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 '오원춘 사건'의 경위서를 작성해 '짓밟히는 농민운동'가톨릭 농민회 임원납치 폭행사건 전모'라는 보고서를 교구내 신부들에게 배포(사실왜곡)	지법 최공웅, 김은집, 이인환	영양불량감자종자 피해보상을 주도한 오원춘을 정보기관에서 납치한 '안동 농민회 사건'
41	78. 6.-79. 1.	[대구지법 1982. 5. 24. 79고합107]	긴조 9호	최형호 (무직)	면소	긴조9호 위반으로 상고심계류중, 구치소내에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타도, 긴급조치 해제, 노동자생존권보장, 구속인사석방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헌법폐지 주장, 긴조 비방)	지법 이용우, 최병덕, 하영곤	긴조 9호로 수감중 재차 긴조위반으로 기소

제 5 장

평가 및 관제

진실화해위원회는 특정 시기나 유형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다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는 달리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과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이 입은 피해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복권의 건의, 사료관을 포함한 과거사 연구재단의 설립 관련 업무 등 화해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종합적 성격을 가진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립목적과 그 성격에 맞게 2006년 사업을 진행하였다. 진실규명신청 접수와 대국민 홍보활동, 조사개시 및 진실규명 결정 등의 조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개정, 인력·예산 확보와 의결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활동 기반 구축,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이 자체 설치한 특별기구와의 협의·조정, 체계적인 자료 수집·관리 및 화해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상 제한된 조사권한의 문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문제,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조사대상의 문제 등에 대한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인력 증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업무 협조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제1절 평 가

1. 진실규명 신청 접수와 대국민 홍보활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1년(2005. 12. 1. ~ 2006. 11. 30.)으로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에서는 「16개 광역시·도 지역순회 간담회」와 「현지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러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 순방을 통한 홍보활동도 벌였다.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 10,845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였다.

2. 조사개시 및 진실규명 결정 등의 조사활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분류·배정하여 총 2,582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진실규명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254건, 전국적인 대형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을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997건)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규명 사건인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하고, 민족독립 규명사건인 김진수의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과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하여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3.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2006. 11. 9.)하였으며, 한편 규칙과 훈령 등 총 22건의 법규를 제·개정하였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 파견 등 조사 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실무협의회 구성 등

을 통해 업무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재외공관을 통한 위원회 활동 홍보 등의 업무협조망을 확대하였다. 또한 실지조사를 위한 유해발굴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및 검증이 한층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4. 인력·예산 확보와 의결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활동 기반 구축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별정직 65명과 전문계약직 12명의 조사 전문 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직제 개편 및 정원 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와 탄력적인 인사운영, 직원 상호간의 화합 노력으로 조직이 빠르게 정착되고 안정화되었다. 위원회 회의의 활성화로 전원위원회 33회 336건, 소위원회 64회 204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다.

5. 과거사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의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자체 설치한 위원회와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조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조사를 방지하며, 관련 자료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협의 조정기능을 높였다.

6. 자료 수집·관리 및 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자료는 진실규명의 중요한 증거이자 제약요소이다. 오래된 과거의 사건인 만큼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며 따라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진실규명의 핵심 활동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도서관, 전문 연구기관과의 전자정보 교류협약 또는 자료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자료수집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록관 설치·운영 등을 통해 자료의 공유와 조사이용도를 높였다. 또한 화해·권고 조치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위령사업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화해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제2절 과 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년도의 활동 경험과 기반을 토대로 진실규명 조사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기본법 개정,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공개 등 협조체제 강화, 조사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미신청자에 대한 대책 등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1. 조사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확보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인력 증원 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며, 기초사실의 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을 세운다.

2.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공개방안 마련 및 협조체제 강화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사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과거 청산을 위해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및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3. 피해자들의 미신청에 대한 대책 마련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신청 접수 건수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피해자 추정 건수보다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미신청 원인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세운다.

4.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위원회 기본법 개정 추진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조사활동을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권한 강화,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조사 허용 범위 확대, 가해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보완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 록

I. 위원회 일반 현황

II. 위원회 활동 현황

III. 위원회 활동 일지

2005. 12. 1.~2006. 12. 31.

I. 위원회 일반 현황

□ 위원회 구성

- 위원 15명(위원장 포함 상임 4명, 비상임 11명)

□ 기구 및 인력

- 1처, 2국, 2관, 3과 · 13팀
- 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국가직		자치 단체 파견	비별도파견		전문 계약직	전문 위원	상근 인력
			중앙 부처 파견	자체 채용		군 법무관	기무 사령부			
정원	192	4	50	66	21	2	2	13	7	27
현원	189	4	49	65	21	2	2	12	7	27

※ '06. 12. 31. 현재, 시행령상 정원 120명

※ '06. 12. 31. 현재 결원 현황

- 국가직 자체채용 1명(7급 상당 1)
- 중앙부처 미파견 1명(법무부 검사 1)
- 전문계약직 1명(가급 1)

□ 예산현황

- 예산액 : 9,410백만원('06.)
 - 인건비 4,669백만원(49.6%), 운영비 4,741백만원(50.4%)

위원회 위원 명단

('06. 12. 31. 현재)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송 기 인	1938. 09. 24.	○ 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 신부
상임위원 (3명)	김 갑 배	1952. 10. 01.	○ 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 변호사
	김 동 춘	1959. 09. 29.	○ 전 참여연대정책위원장 ○ 성공회대 교수
	이 영 조	1955. 06. 19.	○ 전 (사)시장경제연구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 경희대 교수
위 원 (11명)	강 정 혜	1964. 05. 21.	○ 전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서울시립대 교수
	김 경 남	1949. 09. 07.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 목사
	김 영 범	1955. 08. 28.	○ 국무총리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원 ○ 대구대 교수
	김 영 택	1936. 12. 13.	○ 전 한국역사기록연구소장 및 이사장 ○ 국민대 겸임교수
	도 진 순*	1959. 09. 18.	○ 전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 ○ 창원대 교수
	신 광 수 (법 타)	1946. 05. 16.	○ 일연학연구원 이사장 ○ 은혜사 주지
	오 진 환	1959. 02. 25.	○ 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 변호사
	이 삼	1958. 02. 17.	○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변호사
	이 현 희	1937. 03. 13	○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성신여대 명예교수
	정 병 석	1958. 07. 16.	○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전남대 교수
최 일 숙	1966. 02. 2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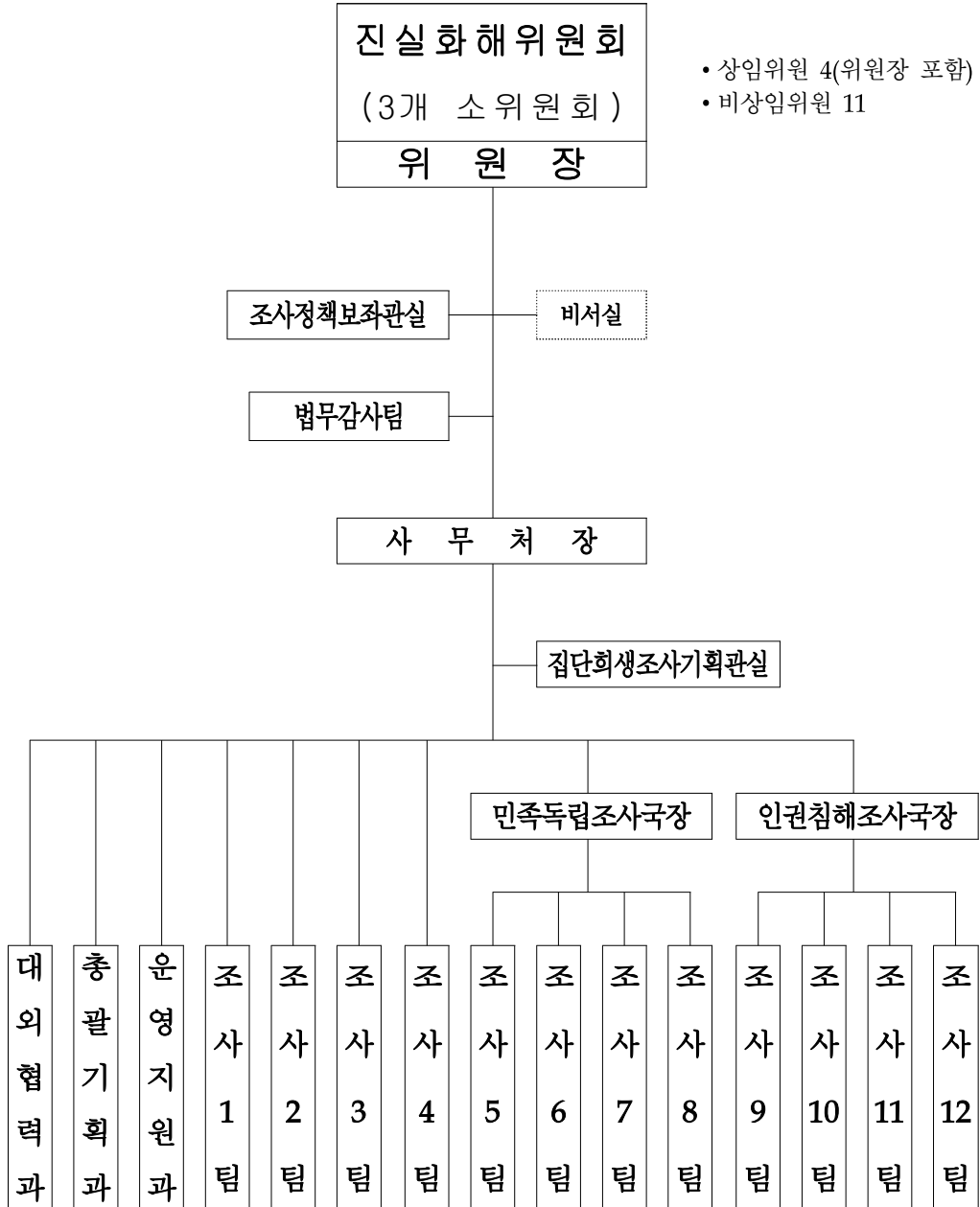
* '07. 1. 3. 임명(대통령 지명)

위원회 사무처 간부 명단

(4급상당 이상, '06. 12. 31. 현재)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사무처장 (고위공무원단)	설동일	1956. 11. 05.	○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의장 ○ 부산 민주공원 관장
민족독립조사국장 (고위공무원단)	고윤환	1957. 05. 20.	○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제주4·3지원단장
인권침해조사국장 (고위공무원단)	이명준	1959. 04. 26.	○ 법무법인 청솔 변호사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이사
잡단학생조사기획관 (3급상당)	이영일	1959. 09. 01.	○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 기획실장
대외협력과장 (4급상당)	유한범	1967. 11. 28.	○ 의문사진상규명위 대외협력 홍보팀장 ○ 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총괄기획과장 (서기관)	문태선	1957. 01. 28.	○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경제조정관실(산업심의관실)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임근기	1952. 04. 11.	○ 행정자치부 기획관실, 주민제도팀
조사1팀장 (4급상당)	김무용	1960. 06. 04.	○ 고려대 한국사학과 강사 ○ 역사학연구소 부소장
조사5팀장 (4급상당)	박철규	1961. 10. 18.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부장 ○ 경성대 초빙외래교수
조사9팀장 (검찰수사서기관)	박성순	1952. 03. 16.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제주지검 사건과장
조사11팀장 (4급상당)	김학철	1958. 09. 18.	○ 의문사진상규명위 특별조사과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조사단장

위원회 기구표



Ⅱ. 위원회 활동 현황

1. 위원회 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 개최

<표 10>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위원회	소위원회				
		소계	민족독립	집단희생	인권침해	
횟 수	33	64	20	23	21	
안전 심의	의 결	124	110	25	23	62
	보 고	202	76	20	28	28
	토 의	10	18	2	15	1
	계	336	204	47	66	91
	1회평균	10.2	3.2	2.4	2.9	4.3

※ '06. 12. 31. 현재

○ 위원회 개최 일람

회차	일자	참석 (명)	주요 결정 사항
제1차	'05. 12. 22.	13	○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의결 ○ 위원회 사무처장 임명제청건 가결 ○ 위원회 운영규칙 및 직제규칙은 준비위원회 구성, 논의 후 심의 의결키로 결정 ○ 위원회 정례회의 일시 확정
제2차	'06. 1. 3.	12	○ 위원회 직제규칙,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등 2건 수정 의결 ○ 위원회 운영규칙(안) 기각(보류) 의결 ○ 소위원회 구성(안) 일부(수정) 의결

제3차	'06. 1. 10.	12	○ 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의결 ○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위원회 구성
제4차	'06. 1. 17.	10	○ 위원회 위원 1차 워크숍 개최 계획(안) 시행 결정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및 검토상황 보고
제5차	'06. 1. 24.	11	○ 2006년도 예산 경상경비 절감 계획(안) 원안 시행 ○ 2006년도 위원회 워크숍 개최 계획(안) 검토
제6차	'06. 2. 7.	12	○ 진실화해위원회 영문명칭 결정 상임위원회 일임 ○ 위원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은 회의 참고자료 제출 결정
제7차	'06. 2. 21.	12	○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 결과 보고(인권침해규명위원회)
제8차	'06. 2. 28.	12	○ 민족독립규명위원회와 인권침해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원안 시행 ○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재논의 후 재상정 결정 ○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안)과 징계규칙(안) 원안 의결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황 보고서 '처리현황' 추가 보고키로 함
제9차	'06. 3. 7.	12	○ 자문회의의 운영규칙(안)은 조항 수정·보완 후 시행 의결 ○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원안 시행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보고 원안 시행
제10차	'06. 3. 21.	14	○ 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안 보류 결정 ○ 공무원행동강령, 인사자문기구 규정, 제2차 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 계획안 등 원안 시행 보고
제11차	'06. 3. 28.	12	○ 위원회의 감사규정,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민족독립규명 위원회와 인권침해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원안 시행(보고)
제12차	'06. 4. 4.	13	○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재심의 결정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중 각하 결정사건 3건 원안 시행 보고 ○ 이의신청 사건 4건은 다음 위원회로 이관
제13차	'06. 4. 11.	14	○ 사무보조원 운용규정 원안 시행 보고 ○ 위임·전결규정은 원안대로 시행키로 함 ○ 직제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원안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원안 의결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 4건 기각 결정
제14차	'06. 4. 1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의 이의신청 사건 4건 기각 결정
제15차	'06. 4. 2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의 조사개시결정 4건 원안 의결, 1건 부결
제16차	'06. 5.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시행키로 함
제17차	'06. 5. 1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규명위원회에서 기각결정 주문된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 원안 의결
제18차	'06. 5. 2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10건) 원안 의결 ○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안 의결 ○ 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재심의 결정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의결
제19차	'06. 6. 1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 의결 ○ 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안 의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제20차	'06. 7.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7건) 의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안) 의결 ○ 2005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의결 ○ 2006년도 상반기 조사보고서(안) 수정의결
제21차	'06. 7.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제22차	'06. 7. 2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위촉 및 제1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2건) 의결(1건 수정의결) ○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2건) 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 결과 의결

제23차	'06. 8. 8.	1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제24차	'06. 8. 22.	12	○ 제4차 위원회 위원 워크숍 계획안 토의 ○ 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 및 원안 시행 결정
제25차	'06. 9. 5.	10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 결과 의결 ○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차기 회의 재상정 결정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발굴 사업계획안 및 유해매장 추정지조사 사업계획안(집단희생규명위원회) 토의
제26차	'06. 9. 19.	12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 관련 유해발굴 및 유해매장 추정지조사 추진현황, 유해발굴사업 계획안, 유해매장 추정지조사 사업계획안,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토의 및 소위원회 위임 결정 ○ 조직진단연구용역 수행계획(안) 시행 결정 ○ 위원장 시·도지역순회간담회 중간보고 ○ 민간인학살범국민위 농성 관련 경과보고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 결과 의결(2건) ○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 의결 ○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제27차	'06. 10. 10.	11	○ 국민보도연맹사건 직권조사 심의·의결안 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의결(2건)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 의결 ○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토의
제28차	'06. 10. 24.	11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의결
제29차	'06. 11. 7.	9	○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직권조사 심의·의결안 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 의결(2건, 각각)
제30차	'06. 11. 21.	11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보완 및 재상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긴급조치위반 판결문 분석 직권조사 심의·의결안 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보완 및 재상정 결정
제31차	'06. 11. 2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 의결(5건, 기각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의결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일가 고문 가혹행위 사건 등 2건, 진실규명결정 의결)
제32차	'06. 12. 0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안 의결(기각)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의결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불능 결정)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재상정 (김예태수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진실규명불능)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의결 (태영호 남북사건 진실규명결정 의결)
제33차	'06. 12. 1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직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령(안), 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안) 원안 의결 ○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 의결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심의·의결안 의결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의결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진실규명불능결정)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 의결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2건 진실규명결정 의결)

- 상임위원회 협의·조정('06. 12. 31. 현재)
 - 총 41회 개최, 안건 135건 처리(1회 평균 3.3건)
- 위원회 자문회의, 자문소회의 개최 및 위원 위촉
 - 위원회 자문회의(1차 : 7. 19. 2차 : 12. 12.)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자문회의(1차 : 7. 18. 2차 : 11. 16.)
 -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자문회의(1차 : 7. 6.)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자문회의(1차 : 7. 28.)

□ 위원회 워크숍 개최

- 위원 워크숍
 - 1차 워크숍('06. 2. 7.) : 현지방문 및 견학 등
 - 인권침해 현장(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남영동 대공분실)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지(고양 금정굴)
 -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 등
 - 2차 워크숍('06. 4. 4.) : 발제와 토론
 - 진실화해위원회의 역사적 책무 및 진실화해기본법의 정신과 내용
 -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
 - 3차 워크숍('06. 5. 19. ~ 5. 20.)
 - 조사개시 결정 이후 사건조사 방향과 목표 및 기대효과 등 종합 토론
 - 집단희생지(경산 코발트광산) 견학 및 유족 의견 청취
 - 4차 워크숍('06. 9. 5.) : 발제와 토론
 - 조사활동시 발생한 문제점과 대책
 - 상반기 조사개시결정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수준 및 방향
 - 하반기 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본방향 등

2.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

<표 11>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현황

지역	일자	참가자	내용
울산	'06. 6. 21.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유한범 과장 등	○ 시장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인천	'06. 7. 20.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유한범 과장 등	○ 시장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강원	'06. 8. 10.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유한범 과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광주	'06. 8. 17.	송기인 위원장, 김갑배 상임위원, 이영일 기획관, 전수일 팀장 등	○ 시장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부산	'06. 8. 24.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유한범 과장 등	○ 시장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대전	'06. 8. 30.	김갑배 상임위원, 김동춘 상임위원, 유한범 과장 등	○ 시장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충남	'06. 8. 30.	김갑배 상임위원, 김동춘 상임위원, 유한범 과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제주	'06. 9. 1.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유한범 과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전북	'06. 9. 12.	김갑배 상임위원, 이영일 기획관, 전수일 팀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경북	'06. 9. 14.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유한범 과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대구	'06. 9. 14.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유한범 과장 등	○ 시장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경남	'06. 9. 18.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전수일 팀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전남	'06. 9. 25.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유한범 과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서울	'06. 9. 26.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김갑배 상임위원, 이영조 상임위 원, 유한범 과장 등	○ 시장 면담, 협조 요청 ○ 위원회 출입기자 간담회
경기	'06. 9. 27.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춘 국장, 유한범 과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충북	'06. 9. 29.	송기인 위원장, 김동춘 상임위원, 김학철 팀장, 전수일 팀장 등	○ 도지사 면담, 협조 요청 ○ 시민단체·유족회 간담회 ○ 기자회견

<표 12> 해외순회 간담회 개최 현황

지역	일자	참가자	내용
러시아 연해주	'06. 9. 13.	이영조 상임위원, 이원용 팀장	○ 연해주 지역 고려인 단체장 간담회(16명)
미국 워싱턴	'06. 10. 22. ~10. 23.	송기인 위원장, 이영조 상임위원, 대외협력과 박영일 외 2명	○ 주미대사, 워싱턴 총영사, 국제한민족재 단 상임의장 면담 사건 신청 협조요청 ○ 워싱턴 동포 설명회 및 간담회(23명) ○ 워싱턴 천주교 한인교회 교인 대상 강론 ○ 언론사 인터뷰(WK-TV, TVK24, 워싱턴 미주방송, KBC) 및 동포 언론사 합동기 자회견 등
미국 뉴욕	'06. 10. 24. ~10. 25.	“	○ 뉴욕 부총영사 면담, 사건신청 협조요청 ○ 뉴욕 동포 설명회 및 간담회(16명) ○ 언론사 인터뷰(MKTV, TKC TV) 및 동 포언론사 합동기자 회견 등
미국 LA	'06. 10. 26. ~10. 27.	“	○ LA총영사 면담 사건신청 협조요청 ○ LA동포 설명회 및 간담회(17명) ○ 언론사 인터뷰(KTAN-TV, 라디오코리아, RADIO SEOUL 및 동포언론사 합동기 자 회견 등
일본 도쿄	'06. 11. 7. ~11. 8.	송기인 위원장, 김갑배 상임위원, 조사5팀 강효숙 외 2명	○ 주일대사 면담 사건 신청 협조요청 ○ 도쿄 재일동포 진실규명 설명회(30명) 및 인권단체 관계자 설명회(20명) ○ 언론사 합동기자 회견
일본 오사카	'06. 11. 8. ~11. 10.	“	○ 오사카총영사 면담, 사건신청 협조요청 ○ 오사카 재일동포 진실규명 설명회(40명) 및 인권단체 관계자 설명회(9명) ○ 언론사 합동기자 회견

□ 홍보물 제작배포

- 영문 브로슈어 제작(2,000부) : 유관기관, 재외공관 배포('06. 4.)
- 포스터·전단지 제작(각 50,000부) : 시·도, 시·군·구 배포('06. 5~6.)
- 리플릿 제작(110,000부) : 시·도, 시·군·구 배포('06. 8.)
- 국문 브로슈어 제작(4,000부) : 시·도, 시·군·구 배포('06. 8.)
- 홍보 기념품 제작 : 수건, 시계, 볼펜, 문진, 티슈('06. 9.)
- 언론보도 자료집 제작(100부) : 시·도, 유관기관 배포(매분기)
- 소식지 '진실화해' 발간·배포(10,000부) : 자치단체, 신청인

□ 진실규명 신청 안내 광고 및 홍보

- 지역방송(126회), 주요일간지, 주간지 등을 통한 홍보
- KTX 열차 내, 정부중앙청사 대형 전광판,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동영상 게재
- 연합뉴스 등 인터넷 배너를 활용한 광고
- MBC, KBS, SBS, KTV, CBS 등 TV 및 Radio(지역언론 포함) 언론사 대담 및 인터뷰(방송 특강 등) 실시
- 16개 시·도 지역순회 간담회, 현지조사 설명회, 조사개시 기자회견 등
- 미주, 일본 등 교민대상 해외 홍보활동(위원장, 상임위원 등)
- 추석 명절 기간 주요 역·터미널 길거리 홍보 실시
 - ※ 「진실규명 신청안내」 티슈 및 리플릿 증정(티슈 4만개, 리플릿 5만부)

□ **지방자치단체 협력**

- 위원장 16개 시·도 방문('06. 6. 21.~9. 29.)
- 지자체 홍보실태 파악 2회('05. 12. 19.~12. 21., '06. 4. 5.~4. 28.)
- 지자체 반상회보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 의뢰(3회)

□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과의 정례모임 및 확대모임 개최**

- 참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부기관 산하 3개 위원회 위원장 외
관련 간부

<표 13>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과의 정례모임 개최 현황

회 차	일 자	주요 참석자	주 요 내 용
1차	'06. 2. 21.	각 기관별 위원장(4명)	위원장간 상견례 및 위원회간 정례모임 명칭 결정
2차 (정기)	'06. 3. 30.	각 기관별 위원장(4명)	위원회간 정례모임, 간사, 참석범위, 개최주기 결정
3차 (정기)	'06. 4. 27.	"	위원회간 합동수련회 개최 추진 협의
4차 (확대)	'06. 5. 25.	각 기관별 위원장(4명), 각 기관장(3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5차 (정기)	'06. 6. 29.	각 기관별 위원장(4명)	중복 조사사건 협의를 위한 방향 논의
6차 (정기)	'06. 7. 27.	"	7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의·조정
7차 (정기)	'06. 8. 31.	"	8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의·조정, 국회 관련 공동 현안사항 확인과 검토
8차 (확대)	'06. 9. 21.	각 기관별 위원장(4명), 각 기관장(3명)	9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의·조정, 관련 자료 요청
9차 (정기)	'06. 10. 26.	각 기관별 위원장(4명)	10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의·조정
10차 (정기)	'06. 11. 30.	"	11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의·조정, 자료협조 방안 마련

3. 조사·지원 및 교육 활동

<표 14> 2006년 하반기 자료 수집 현황

(단위 : 권, 점, 개)

구분	형태별	수집량	주요 내용
문서류	문서	200	고양금정굴사건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서류철, 국무회의록, 미국립문서보관소 노근리 관련문서, 미8군 작성 인민군 전쟁범죄 목록, 부산형무소 재소인원일표(1950), 공주교도소 수용자 신분장(1950) 117매 등
간행물류	단행본	1,621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의 진상,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강 게오르기 바실리에 비치, 카자흐스탄 韓人史 관련,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 김 부르트, 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등
	논문	25	민주주의 이행기 과거청산운동의 동학, 3.1運動의 地域別 主導勢力 研究, 참의부연구 등
	정기간행물	7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등
	팸플렛	42	문경(석달)양민집단학살 피학살자, 경산코발트광산 합동위령제, 국민보도연맹 80위 합동위령제, 반공 민간인 희생자 명단 등
	위원회 간행물	19	과거사 신청접수 관련 포스터, 청원·진천 보도연맹 사건 지역설명회 등
시청각류	CD	18	해외 한국독립운동사료, 동방전우, 국방부 한국전쟁 관련 등
	DVD	111	러시아 한민족리포트, 강제이주 관련 바람의 땅 연해주의 고려인들, 카레이스키 한민족리포트 등
	Video Tape	15	충북지역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 KBS 스페셜 : 최초공개 누가 일제의 훈장을 받았나, 사할린25시 어떤 망각과 체념에 대한 보고서 등
	사진	1	신민당사건 관련 사진

<표 15> 부서별 수집자료 현황

(단위 : 건)

	계	총괄 기획과	조 사 국				
			소계	민족독립 조사국	집단희생 조사기획관실	인권침해 조사국	
합 계	2,127	1,258	869	338	431	100	
문 서	200		200	27	173		
단 행 본	1,621	1,162	459	267	116	76	
논 문	25	4	21	7	10	4	
정 기 간 행 물	75	49	26	26			
팜 플 렛	42	3	39	1	38		
시청각 자료	소 계	145	21	124	10	94	20
	C D	18	8	10	4	5	1
	D V D	111	10	101	1	88	12
	비디오테이프	15	3	12	5	1	6
	카세트테이프						
	사 진	1		1			1
위 원 회 간 행 물	19	19					

<표 16> 조사관 전문교육 실시 현황

	교육회수 (회)	교육시간(시간)		연인원(명)	
		소계	회당평균	소계	회당평균
합 계	35	80	2.3	793	22.7
전 체 공 통	1	1	1	100	100.0
민족독립조사국	6	12	2.0	90	15.0
집단희생조사기획관실	22	52	2.4	505	23.0
인권침해조사국	6	15	2.5	98	16.3

※ '06. 12. 31. 현재

<표 17> 실지조사 활동 현황

(단위 : 회)

	총계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현장 확인	관련기관 방문	자료조사
합 계	1,812	1,117	99	153	453
항일독립운동	142	47	23	32	40
해외동포사	7	3	1	1	2
민간인집단희생	1,356	886	59	82	329
적대세력 관련	61	30	3	18	20
인권침해	246	151	13	20	62

<표 18> 현지조사 설명회 개최 현황

(단위 : 명)

사 건 명	조사개시 결정일자	개최 장소	개최일시	참석자
고양·파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06. 4. 25.	고양시청	'06. 5. 18.	50
단양곡계굴사건	'06. 4. 25.	단양군청	'06. 5. 11.	110
경산코발트광산사건	'06. 4. 25.	경산시청	'06. 5. 8.	30
문경석달사건	'06. 4. 25.	문경시청	'06. 5. 10.	50
함평11사단사건	'06. 4. 25.	함평군청	'06. 5. 10.	50
청원·진천지역보도연맹사건	'06. 5. 30.	오창초등학교	'06. 7. 13.	100
산청시천·삼장민간인 희생사건	'06. 5. 30.	덕산문화의집	'06. 7. 6.	100
익산역미군폭격사건	'06. 5. 30.	익산시청	'06. 7. 19.	50
국민보도연맹사건(직권조사)	'06. 10. 10.	위원회	'06. 10. 17.	30
제주예비검속사건	'06. 10. 24.	제주도청	'06. 11. 2.	100
여순사건	'06. 10. 31.	여수보건소	'06. 11. 16.	130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직권조사)	'06. 11. 7.	대전시청	'06. 12. 7.	50

※ '06. 12. 31. 현재

4. 조직정비 및 제도개선

□ 시행령 개정 추진

- '06. 11. 9. 시행령 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19728호)
 - '06. 6. 13. 정원증원은 추후 추진 의결(제19차 위원회 회의)
 - '06. 9. 27. ~ 12. 26.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 위원회 자체법규 재개정

- 규칙 9건(17회), 훈령 13건(17회) 제·개정

□ 위원회 자체법규 현황(규칙 : 9건, 훈령 : 13건, 예규 : 1건)

구분	제·개정일	규 칙 명
제정(제1호)	'06. 1.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정(제2호)	'06. 1.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제3호)	'06. 1.24.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제4호)	'06. 2.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정(제5호)	'06. 2.28.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규정
제정(제6호)	'06. 3.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개정(제7호)	'06. 4.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정(제8호)	'06. 4.11.	진실규명에기여자에대한보상및지원에관한규칙
제정(제9호)	'06. 7. 4.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개정(제10호)	'06. 7.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개정(제11호)	'06. 8.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제12호)	'06. 9.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제13호)	'06. 9.19.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개정(제14호)	'06.12.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개정(제15호)	'06.12.19.	진실규명에기여자에대한보상및지원에관한규칙
개정(제16호)	'06.12.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제17호)	'06.12.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구분	제·개정일	훈 령 명
제정(제1호)	'05.12.21.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정
제정(제2호)	'06. 1. 4.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정(제3호)	'06. 1.2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제4호)	'06. 2.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처리규정
개정(제5호)	'06. 3.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제6호)	'06. 3.1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제7호)	'06. 3.1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자문기구 규정
제정(제8호)	'06. 3.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개정(제9호)	'06. 3.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제10호)	'06. 3.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정(제11호)	'06. 4.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보조원운용규정

개정(제13호)	'06. 4.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정(제14호)	'06. 4.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정(제15호)	'06. 5.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개정(제16호)	'06. 6.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정(제17호)	'06. 7.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구분	제·개정일	예 규 명
	'06. 5.25.	일상감사 실시지침

※ '06. 12. 31. 현재

Ⅲ. 위원회 활동 일지('05. 12. 1. ~ '06. 12. 31.)

<2005년>

- 5월 3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기본법) 국회 통과
- 12월 1일 ▸ 기본법·시행령 공포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출범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개시
- 12월 14일 ▸ 위원회 사무처 임시직제 구성
- 12월 22일 ▸ 위원회 현판식, 위원 임명장 수여(15명)
 -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심의 1)
- 12월 23일 ▸ 진실규명신청 홍보(지방자치단체 반상회보 게재 및 현수막 개시)
- 12월 26일 ▸ 파견공무원 부서배치 인사발령(25명)
- 12월 29일 ▸ 주요일간지 「진실규명 신청 안내」 게재

<2006년 1월>

- 1월 2일 ▸ 2006년 위원회 시무식, 위원회 홈페이지 개통
 - KBS R "뉴스매거진" 이영조 상임위원 인터뷰
- 1월 3일 ▸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 보고 2, 토의 1)
 - 회계관직 공무원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의결
 - 위원회 직제규칙(안),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의결
- 1월 4일 ▸ KBS R "안녕하세요,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인터뷰
- 1월 10일 ▸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2, 보고 1)
 - 위원회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의결
 - 위원회 운영규칙(안) 의결
 - PBC R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위원장 인터뷰
- 1월 17일 ▸ 제4차 전원위원회 개최(토의 1)
 - 위원회 사무처장 임용장 수여
- 1월 18일 ▸ 위원회 홈페이지 시연회 개최
- 1월 20일 ▸ 박보영 위원 사퇴
- 1월 23일 ▸ KTV 한국정책방송 「정책포커스」 좌담(김동춘 상임위원)
- 1월 24일 ▸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
- 1월 25일 ▸ 위원회 직원증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제3호)
- 1월 26일 ▸ 위원회 약칭('진실화해위원회') 홍보(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 1월 27일 ▸ 위원회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2006년 2월>

- 2월 2일 ▸ 주한 일본대사와의 간담회(대사관 방문)
- 2월 3일 ▸ 5급 이상 파견공무원 임명장 수여(국장 1, 과장 2, 팀장 10)
- 2월 6일 ▸ 진실규명 신청 접수 1,000건 돌파
- 2월 7일 ▸ 제6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 토의 1)
 - 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안) 의결▸ 제1차 위원회 위원 워크숍(고양 금정굴 등 3개소 현지방문)
- 2월 8일 ▸ 6급 이하 파견공무원 인사발령(28명)
- 2월 10일 ▸ 위원회 영문명칭 확정(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2월 14일 ▸ 과거사 관련 주요언론기사 모음집(I) 발간
- 2월 16일 ▸ 위원회 학술세미나 개최, “진실과 화해,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 2월 17일 ▸ 제1차 별정직공무원 특별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 독립기념관 방문(상임위원 외 7명)
- 2월 21일 ▸ 제7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
 - 제1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 2월 23일 ▸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誌) 이영조 상임위원 인터뷰
- 2월 27일 ▸ 「중국동포타운신문」 이영조 상임위원 인터뷰
- 2월 28일 ▸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4, 의결 3)
 - 위원회 범제업무 처리 규정 시행 결정
 - 위원회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안), 위원회 징계규칙(안) 의결

<2006년 3월>

- 3월 2일 ▸ 강정혜 위원 임명장 전수
 - 민족독립조사국 워크숍 개최
- 3월 7일 ▸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 보고 2)
 - 위원회 직원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 위원회 운영규칙(안) 의결
- 3월 9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교육(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진상규명의 한계)
- 3월 10일 ▸ KBS R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김동춘 상임위원 인터뷰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교육(유족의 목소리)
- 3월 11일 ▸ 집단희생조사국 워크숍 개최
- 3월 13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교육(개별사건 사례발표와 시청각 교육)
- 3월 14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교육(구술과 증언방법 등 : 제주 4·3사건의 사례)
 - 재외동포재단 방문(상임위원 외 2명)

- 3월 15일 ▸ 제1차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채용직원 교육(60명)
- 3월 16일 ▸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 제2차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채용직원 교육(60명)
 - 안경환 위원 사퇴
- 3월 17일 ▸ 「인사자문규정」 제정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교육(유해발굴의 방법과 사례)
- 3월 20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교육(학살현장의 사적지 보존방안 : 경산 코발트광산의 사례)
 - 반상회 통한 「진실규명 신청」 홍보협조 요청
- 3월 21일 ▸ 제10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 보고 3)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위원회 인사자문기구 규정 의결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교육(사건조사 처리실무)
 - 감사규정 제정
- 3월 22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개별사건 사례발표와 시청각 교육)
 - '진실규명 신청 안내' 광고
- 3월 23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 실시(유해발굴의 방법과 사례)
- 3월 24일 ▸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국정원)
- 3월 27일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 3월 28일 ▸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4)
 - 위원회 감사규정, 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의결
 - 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정
- 3월 30일 ▸ 제2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2006년 4월>

- 4월 1일 ▸ 홍보 동영상 배포(중앙청사 대형 전광판, 전국 시·도 및 시·군·구)
- 4월 4일 ▸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 보고 1)
 - 지방자치단체 반상회보 게재 및 현수막 게시 홍보
 - 제2차 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
- 4월 11일 ▸ 제13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 의결 3)
 - 위원회 사무보조원 운영규정,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의결
 - 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안,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의결
- 4월 12일 ▸ 진실규명신청서 작성 설명회 참석(충북 옥천군청)
 -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홍보(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 4월 13일 ▸ 제2차 별정직 인사발령(40명)
 -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홍보(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

- 4월 14일 ▸ 위원회 홍보 영문소책자(브로셔) 발간 및 배포(2000부)
- 4월 18일 ▸ 제14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2, 의결 1)
 - 사무관리규정 의결
- 4월 19일 ▸ 진실규명신청 접수 및 홍보(강원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 4월 20일 ▸ KTV “과워특강” 위원장 특별강의(과거사 정리의 당위성과 이를 통한 미래비전)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과거사 정리의 의의와 전망)
- 4월 21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현재의 미래)
- 4월 25일 ▸ 1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및 기자회견
 - 제15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3, 의결 4)
 - 조사개시 결정
 -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 김진수의 중국 내 항일독립운동(이상 항일독립운동)
 - 반탁운동가 19인의 소련유형 진실규명(해외동포사)
 - 제주 예비검속 사건
 -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 문경 석달 사건, 함평 11사단 사건(이상 민간인집단희생)
 - 양평 민간인희생 사건
 - 가평 민간인희생 사건
 - 남양주 민간인희생 사건
 - 포천 민간인희생 사건(이상 적대세력관련)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이수근 이중간첩 의혹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 신귀영일가 간첩의혹사건(이상 인권침해)
 - CBS ‘오늘과 내일’ 김동춘 상임위원 인터뷰
- 4월 26일 ▸ “통일뉴스” 김동춘 상임위원 인터뷰
- 4월 27일 ▸ 제3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 제2차 신규직원 실무능력배양 교육(조사기법 특강 및 실무교육)
- 4월 29일 ▸ 강화양민학살 위령제 참석

<2006년 5월>

- 5월 1일 ▸ 위원회 정보공개규정 발령 및 시행
- 5월 2일 ▸ 제16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 정보공개 규정 의결
- 5월 3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과제, 여순 사건과 민간인 학살)
- 5월 4일 ▸ 별정6급 신규채용 공무원 임명장 수여
 - 민족독립조사국,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방법)
- 5월 8일 ▸ 임용장 전수(정병석 위원, 이명춘 인권침해조사국장)
- 5월 9일 ▸ 학살규명범국민위원회 관계자 위원장 면담
- 5월 10일 ▸ 문경 석달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문경시청)
 - 함평 11사단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함평군청)
- 5월 11일 ▸ 김동춘 상임위원 월간 “말” 인터뷰
 -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조사의 원칙과 실제, 신청사건개요와 각하처리의 실례)
 -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단양군청)
- 5월 15일 ▸ 제3차 별정직·전문계약직·전문위원 채용 면접 실시
 -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법의학)
- 5월 17일 ▸ 제주 첫알오름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제주시청)
 -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견학)
- 5월 18일 ▸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고양시청)
 -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경산시청)
- 5월 19일 ▸ 제17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 보고 1)
 - 제3차 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경산 코발트광산 방문 등)
- 5월 22일 ▸ 하광용 위원 사퇴
- 5월 25일 ▸ 제4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 5월 26일 ▸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 보고 2)
- 5월 30일 ▸ 조사개시 결정
 - 강화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 창원·진천지역 보도연맹 사건
 -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 청도 보도연맹 사건
 - 익산역 미군폭격 사건
 - 나주 동박재굴 사건
 -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2차)
 - 함평 11사단 사건(2차, 이상 민간인집단희생)
 - 강릉 민간인희생 사건
 - 양평 민간인희생 사건(2차, 이상 적대세력관련)

<2006년 6월>

- 6월 1일 * 국회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위원회 현황 및 주요업무 설명)
- 6월 7일 * 국회도서관간 전자정보 교류 협정 조인식
- 6월 8일 *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워크숍 참석(경남 함양, 34명)
- 6월 12일 *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6월 13일 * 제19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 보고 3)
 -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 * 조사개시 결정
 -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항일독립운동)
 - 김익환일가 고문·가혹행위 의혹사건(인권침해)
- 6월 14일 * SBS “한수진의 선데이 클릭” 위원장님 촬영(전남 함평)
- 6월 16일 *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후생복지위원회 개최
- 6월 20일 * 민주사법국민연대 임원진 위원장 면담
- 6월 21일 * 위원장 울산광역시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실시
 - * 前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 초청강연
- 6월 26일 * 박준선 위원 사퇴
- 6월 27일 * 제260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 6월 28일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 6월 29일 * 제5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2006년 7월>

- 7월 4일 * 제20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4, 보고 4)
 - 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의결
 -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안) 의결
- * 조사개시 결정
 - YH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이상 인권침해)
- 7월 6일 * 제1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최(자문위원 위촉)
 - *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덕산문화의집)
- 7월 11일 * 제2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4, 의결 1)
 - 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 * 조사개시 결정

- 80년 사북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인권침해)
- 7월 13일
 - 청원·진천 보도연맹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오창초등학교)
 - 국가기록원 정보센터 개관식 참가
- 7월 18일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자문위원 위촉)
- 7월 19일
 - 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자문위원 위촉)
 - 익산역 미군 폭격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익산시청)
- 7월 20일 ▸ 위원장 인천광역시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7월 25일
 - 제22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 보고 3)
 - 조사개시 결정
 - 구례군 봉성산 여순사건
 - 청원 분터골 보도연맹 사건
 - 나주 11사단 사건
 -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2차)
 - 함평 11사단 사건(3차, 이상 민간인집단희생)
- 7월 27일 ▸ 제6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2006년 8월>

- 8월 1일 ▸ 위원회 '06년도 상반기 조사보고서 대통령 보고
- 8월 4일 ▸ 집단희생조사국 조사관 전문교육(한국전쟁 관련 미군자료 수집과 활용)
- 8월 8일
 - 제23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 보고 3)
 - 조사개시 결정
 - 이성지의 항일독립운동 규명
 - 장도원의 함흥 만세운동 규명(이상 항일독립운동)
- 8월 9일 ▸ 이영조 상임위원 재외동포재단 방문
- 8월 10일 ▸ 위원장 강원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8월 16일 ▸ 위원회 '06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국회 보고 및 배포(청와대/국회 등)
- 8월 17일
 - 위원장 광주광역시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자료교환협정 체결(부산민주공원)
- 8월 22일
 - 제24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 토의 1)
 - 조사개시 결정
 - 정상운의 신간회 활동 등 항일독립운동 규명(항일독립운동)
 - 재일교포 복송 저지공작 사건(인권침해)
- 8월 23일 ▸ 위원장 국회 방문
- 8월 24일 ▸ 위원장 부산광역시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8월 28일 ▸ 행정심판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 8월 30일 ▸ 김갑배 상임위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8월 31일 ▸ 제7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2006년 9월>

- 9월 1일 ▸ 위원장 제주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9월 4일 ▸ 위원장 16개 시·도 지역순회 간담회 중간평가 보고
 - 집단희생조사국 직원교육(김동춘 상임위원, 민간인희생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9월 5일 ▸ 제25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 보고 2)
 - 조사개시 결정
 -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사건(인권침해)
 - 제4차 위원회 위원 워크숍(조사개시결정 사건의 진실규명 수준 및 방향 등)
- 9월 12일 ▸ 민간인 집단학살 범국민위 위원장 면담
 - 김갑배 상임위원 전라북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9월 13일 ▸ 이영조 상임위원 러시아 연해주 방문(해외순회 간담회)
- 9월 14일 ▸ 위원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위원장 대구 MBC “박영석의 이슈&이슈” 출연(06.9.17 방영)
 - 김동춘 상임위원 대구 CBS R 전화 인터뷰
- 9월 18일 ▸ 위원장 경상남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마산 MBC ‘시사포커스’ 녹화방송
- 9월 19일 ▸ 제26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 보고 5)
 - 위원회 직제규칙 개정령안, 운영규칙 개정령안 의결
 - 조사개시 결정
 - 이윤희의 항일독립운동 규명
 - 박창래의 독립운동 규명(이상 항일독립운동)
- 9월 20일 ▸ KBS TV "시사투나잇" 인터뷰(이영일 기획관)
- 9월 21일 ▸ 제8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 9월 25일 ▸ 위원장 전라남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및 KBS광주 방송 녹화
 - 2006년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9월 26일 ▸ 위원장 서울특별시 방문 및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지역순회 간담회)
- 9월 27일 ▸ 위원장 경기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 직원소양고사 및 보안교육 실시
- 9월 29일 ▸ 조사개시 결정
 - 제주 예비검속 사건(2차)
 - 구례군 봉성산 여순사건(2차)
 - 청원·진천지역 보도연맹 사건(2차)
 - 청원 분터골 보도연맹 사건(2차)

-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2차)
-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희생 사건(2차)
- 익산역 미군폭격 사건(2차, 이상 민간인집단희생)
- 양평 민간인희생 사건(3차, 적대세력관련)
- 위원장 충청북도 방문(지역순회 간담회)

<2006년 10월>

- 10월 2일 · 위원장 KBS 1R, 김동춘 상임위원 청주 KBS R 인터뷰
 - 주요 역·터미널 진실규명신청 안내 홍보
- 10월 10일 · 제27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4, 보고 3, 토의 2)
 - 조사개시 결정
 - 직권조사 결정 : 국민보도연맹 사건(민간인집단희생)
 - 진보당 조봉암 사건
 - 태영호 납북 사건
 - 80년 사북사건 피해자 명예회복(2차, 이상 인권침해)
- 10월 11일 · 조직진단 착수 보고회 개최
- 10월 12일 · 제1차 상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10월 17일 · 국민보도연맹 직권조사 관련 기자회견
- 10월 19일 · 위원장 전주MBC "유기하 시사토론" 출연
 - 언론보도자료 모음집(III) 발간
 -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운 연구위원 초청강연
- 10월 22일 · 위원장 미국 워싱턴 방문(해외순회 간담회)
- 10월 24일 · 제28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 보고 2)
 - 조사개시 결정
 - 제주 예비검속 사건(3차)
 - 강화지역 민간인희생 사건(2차, 이상 민간인집단희생)
 -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 사건(인권침해)
 - 위원장 미국 뉴욕 방문(해외순회 간담회)
- 10월 25일 ·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김갑배 상임위원 면담
- 10월 26일 · 제9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 위원장 미국 LA 방문(해외순회 간담회)
- 10월 30일 · 위원회 소식지 "진실화해-준비1호" 발간 및 배포
 - 진실규명신청 취약지역 홍보방문(임실·군산·순창)
 - 조사개시 결정
 - 지북동의 행방불명 후 사망한 사건(항일독립운동)

- 10월 31일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사개시 결정
 - 여순사건(민간인집단희생)

<2006년 11월>

- 11월 1일 ◦ 제주 예비검속 사건 현지조사 설명회(제주도청)
- 11월 3일 ◦ 위원회 직원 체육대회 실시
- 11월 6일 ◦ 위원장 일본 출장
- 11월 7일 ◦ 제29차 전원위원회(의결 2, 보고 4)
 - 조사개시 결정
 - 직권조사 결정 :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 이태호의 군복면 장날 만세운동 규명
 - 흑룡강성 항일열사 214명 진실규명
 - 길림성 183명 항일행적 진실규명
 - 장동엽의 남원 3·1독립운동 규명(이상 항일독립운동)
 - 위원장 일본 도쿄 방문(해외순회 간담회)
- 11월 8일 ◦ 위원장 일본 오사카 방문(해외순회 간담회)
 - 김동춘 상임위원 KBS R 전화인터뷰(제주예비검속사건관련)
- 11월 9일 ◦ 시행령 개정령 공포
- 11월 14일 ◦ 제35차 상임위원회 개최(시·도실무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 11월 15일 ◦ 'KAL 858기 가족회' 진실규명 신청 및 김갑배 위원 면담
- 11월 16일 ◦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제2차 자문회의 개최(직권조사사항 논의)
 - 그룹웨어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직원 교육 실시
 - 여순사건 현지조사 설명회(여수보건소)
- 11월 21일 ◦ 제30차 전원위원회(보고 3, 의결 3)
- 11월 22일 ◦ '07년도 예산안 국회 행자위 심의(국회)
- 11월 23일 ◦ '07예산안 국회 행자위 소위심사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 11월 24일 ◦ '07년도 예산안 심사
- 11월 27일 ◦ 한국전쟁 관련 전문가 초청 자문·면담
- 11월 28일 ◦ 제31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4, 보고 3)
 - 진실규명 결정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이상 인권침해)
- 11월 29일 ◦ 조직진단 공청회 개최(직원 및 유족단체 등 참석)
- 11월 30일 ◦ 제10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 위원장 YTN 저녁뉴스 출연, KBS R 전화 인터뷰
 - 안병욱 위원 사퇴

<2006년 12월>

- 12월 1일 ▴ 위원회 설립1주년 기념행사
- 12월 5일 ▴ 제32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5, 보고 2)
- 진실규명 결정 : 태영호 남북 사건(인권침해)
 - 진실규명불능 결정 :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 장터 만세운동(이상 항일독립운동)
- ▴ 조사개시 결정
- 신희종의 항일운동과 명예회복(항일독립운동)
 -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
 - 아람회 사건(이상 인권침해)
- 12월 6일 ▴ 월간 “말”誌 위원장 인터뷰
- 12월 7일 ▴ 전국형무소소재조사현지조사 설명회(대전광역시)
- 12월 12일 ▴ 제2차 전원위원회 자문회의 개최(설립1주년 경과보고 및 조직진단 중간보고)
- 12월 13일 ▴ 시·도 진실규명 관계관 회의 개최
- 12월 14일 ▴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국내·외 권고사례 연구 및 위원회 운영방향 모색)
- 12월 19일 ▴ 제33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8, 보고 4)
- 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위원회 운영규칙안 일부개정령안,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안) 의결
 - 진실규명 결정 :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 사건(이상 인권침해)
- ▴ 조사개시 결정
- 미군관련 희생 사건(민간인집단희생)
 - 정준도 의문사 사건
 - 석달윤 간첩조작 의혹사건(이상 인권침해)
- ▴ 이삼, 이현희 위원 임명
- 12월 21일 ▴ 위원장 MBC R "손석희의 시선집중" 생방송 인터뷰
- 12월 28일 ▴ 제11차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 특별기구 위원장 정례모임 개최
- 12월 29일 ▴ 위원회 중무식(15:00)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년 1월 인쇄

2007년 1월 발행

발행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0-728)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2~4층

Tel : (대) 02) 3406-2500

Fax : (대) 02) 3406-2505

<http://www.jinsil.go.kr>

작성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작 : 아이윌(I WILL)

<비매품>

